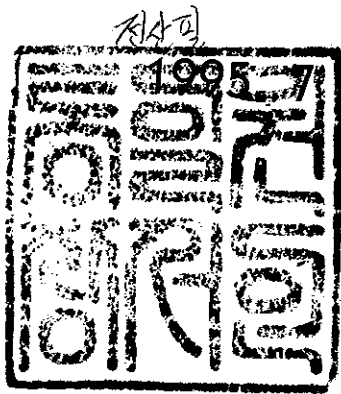


판문점 수첩

(증보판)



남북회담사무국

목 차

1. 판문점 개관	5
가. 판문점의 옛모습	5
나. 판문점의 유래	7
다. 판문점의 변천	10
라. 판문점과 주변 지역	15
2. 남북연락사무소	29
가. 연혁	29
나. 기능	30
다. 전화통지문 교환	31
3. 남북적십자회담 상설 연락사무소	46
가. 연 혁	46
나. 기 능	46
다. 전화통지문 교환	46
4. 남북직통전화	48
가. 연혁	48
나. 운용 중단	50
다. 운용 현황	53

5. 판문점 통과 남북왕래	55
가. 개관	55
나. 내국인의 남북왕래	56
다. 외국인의 남북왕래	59
6. 정전협정	60
가. 개관	60
나. 정전협정 기구	66
다. 북한의 정전협정 무실화 기도	71
7. 판문점 방문 절차	108
참고 문헌	109
부 록	
1. 판문점 일지(1951년~1995년)	115
2. 한국정전협정(53. 7. 27)	148
3. 한국정전협정체결 이후 군정위 썬방간 추가 합의 사항	181
4. 남북적십자회담 상실연락사무소 설치 합의문(71. 9. 29)	254
5. 서울~평양간 남북직통전화 가설 협의 통신기술실무자회의 합의사항 (72. 4. 28, 29)	256
6. 서울~평양간 남북직통전화 가설 및 운용에 관한 합의서 (72. 7. 4)	258

7. 적십자 본회담 기타 진행절차와 일시에 관한 쌍방 합의문 (72. 8. 11)	260
8. 남북적십자회담 본회담을 위한 통신기술 실무자회의 합의문 (72. 8. 16)	276
9. 남북적십자사 중앙기관 사이의 직통전화 운용절차 합의서 (72. 8. 25)	288
10. 남북적십자간 직통전화 운영 재개합의 관련 전화통지문	292
11. 남북연락사무소의 설치 운영에 관한 합의서(92. 5. 7)	295
12. 판문점 방문 규정(92. 9. 14)	297

1. 판문점 개관

가. 판문점의 옛모습

역사 문헌에 의하면 판문점 일대는 고려 시대 송림현(松林縣) 지역이었던 곳으로 조선조 태종 임금 시절에 장단군(長湍郡)에 편입되었으며, 송림현의 남쪽이라는 뜻으로 송남면(松南面)으로 불리게 되었다. 그후 일제 시대에 개성군의 일부 지역과 합쳐 장단군 진서면(津西面)으로 되었다.¹⁾ 고려사와 조선왕조실록에는 이 지역이 개성부(開城府) 판문평(板門平)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이 부근에 널문다리(板門橋)가 있었기 때문이었다.²⁾

이 지역에는 조선 초기에 한양으로 가던 중국 사신이 잠시 쉬면서 술 한잔 마시고 간 것이 계기가 되어 사천강 부근에 주막이 생겨나게 되었으며, 그 후로 한양을 찾는 길손들이 잠시 휴식을 취하며 피로를 푸는 이름있는 주막촌이 되었다 한다.³⁾ 임진왜란 때에는 고니시 유키나가(小西行長)가 이끄는 왜군이 충주를 함락시켰다는 비보를 보고 받은 선조 임금이 왕세자 광해군과 신하 100명을 데리고 몽진(蒙塵)의 길에 올랐을 때, 장단부사(長湍府使) 마고연(馬考淵)이 마련한 음식을 이곳에서 들고 의주를 향해 길을 떠났다고 한다.⁴⁾

이 주막 마을은 개풍군(開豐郡)과 장단군(長湍郡)의 군계(郡界)에 걸쳐 있었기 때문에 뚜렷한 이름이 없다가, 언제부터인지 『널문리』라고 불

1) 배우리, 『우리 땅이름의 뿌리를 찾아서』, (서울: 토담, 1994), 169쪽

2) 여영무, “국제정치 질서의 맥박 판문점”, 『북한』(1989년 7월), 37쪽

3) 이원복, 『논픽션 판문점 700일』 상권, (서울: 대림기획, 1989), 119쪽

4) 중앙정보부, 『군사정전회담자료집(51년-74년)』, (서울: 을유문화사, 1974), 193쪽

리기 시작하였는데,⁵⁾ 마을 이름이 왜 「널문리」로 불렸는지에 대해서는 주장이 나뉜다.

가장 많이 알려진 바로는 이 마을 앞을 흐르는 강(沙川江)에 널판지 다리가 있었기 때문에 「널문리」로 불리게 되었다는 것이다.⁶⁾ 또 다른 주장은 이 마을에는 널판지로 만든 대문(널문)이 많았기 때문에 널문리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한다.⁷⁾ 최근에 제기된 새로운 주장에 의하면 연백평야의 일부 지역인 이 널문리는 너른 물(黃川)이라는 뜻인 「널물」의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⁸⁾ 임진강의 한 지류인 사천이 북동쪽에서 가늘게 흘러내리다가 이 곳의 큰 들을 만나 넓게 퍼지고 있음을 봐서도 그렇다는 것이다.⁹⁾

널문리의 널판지 대문(板門)과 널문 다리(板門橋)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전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¹⁰⁾

옛날 어느 임금이 이곳을 지나기 위해 강을 건너게 되었는데 다리가 없이 건너지 못하게 되었다. 이때 마을사람들이 나서 집집마다 널판지 대문을 뜯어다가 판자 다리를 놓아 임금이 무사히 건널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또 다른 전설에 의하면 이 고을 사또에게 미모의 딸이 있었는데 한 천민 총각이 사또의 딸을 남몰래 사랑하다가 그만 상사병으로 죽고 말았다. 그 후부터 이 지역을 흐르는 사천강이 범람하여 이곳에 놓인 다리가

5) 이원복, 『논평선 판문집 700일』 상권, (서울 : 대림기획, 1989), 119쪽

6) 여영부, "국제정치 질서의 백박 판문집", 『북한』, (1989년 7월), 37쪽.

7) 김기민, 『가고픈 산하, 북녘의 땅이름』, (서울 : 지식산업사, 1990), 229쪽

8) '널음'의 뜻이 들어간 삼국시대 옛 지명들은 영(仍), 황(黃), 남(南), 노(奴)자가 주로 취해졌다. (배우리, 『우리땅 이름의 뿌리를 찾아서』, 1994, 169쪽)

9) 배우리, 『우리땅 이름의 뿌리를 찾아서』, (서울 : 토담, 1994), 169쪽.

10) 김기민, 『가고픈 산하 북녘의 땅이름』, (서울 : 지식산업사, 1990), 229쪽

떠내려가기 일쑤였다. 어느 날 밤 사또의 딸이 꿈을 꾸었는데 머리가 셋 달린 흑룡이 나타나서 “나는 그대를 짝사랑하다가 죽은 총각인데, 내일 사천강에 판자로 다리를 놓고 제사를 지낸 후 제일 먼저 그대가 그 다리를 건너면 모든 일이 무사해 질 것이다.”라고 말하고는 홀연히 사라졌다. 이튿날 사또의 딸이 마을 사람들을 모아 이곳에 널판지로 다리를 놓고 다리 위를 건너가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검은 용이 한 마리 나타나서 사또의 딸을 데리고 하늘로 올라갔다. 그 후부터 강물의 범람이 사라지게 되었다고 전해진다.

사람들은 이 널판지 다리를 널문다리(板門橋)라고 불렀다. 이 다리의 정확한 위치에 대해서는 잘 알려지지 않고 있다.¹¹⁾ 개성군면지(開城郡面紙)에 의하면 판문교는 개성쪽에서 널문리를 지난 지점에 위치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에 따라서 판문교는 사천강을 건너기 위한 다리로 보이며, 개성에서 서울로 가기 위한 것이라면 서울~개성간 1번 국도선상에 있는 지금의 「돌아오지 않는 다리」이거나, 이 다리 부근에 위치했을 가능성이 높다.

나. 판문점의 유래

한국전쟁 직전 널문리는 경기도(京畿道) 서북쪽의 장단군(長湍郡) 진서면(津西面) 선적리(仙跡里)와 개풍군(開豐郡) 봉동면(鳳東面) 침송리(針松里)의 경계지역에 위치한 농촌 마을이었다.

이와 같이 지도상에도 나타나 있지 않았던 조그만 농촌 마을인 널문리가 휴전회담이 이곳에서 진행되면서부터 갑자기 국제적인 이목을 끌게

11) 일부 자료에서는 이 다리가 한국전쟁 때 파괴되었다고도 한다. (김기빈, 상계서, 229쪽)

되었다. 물론 한국전쟁 휴전 협상이 처음부터 이곳에서 시작된 것은 아니었다. 당초 휴전회담 예비회담은 1951년 7월 8일 개성 북쪽에 위치한 내봉장(來鳳莊)에서 개최되었다.

휴전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회담장소 주변에서 북한군이 의도적으로 부력 시위를 벌이는 등 회담장소의 중립성이 문제가 되자 국제연합군측은 1951년 9월 6일 회담장소 이전을 공산측에 제의하였다.¹²⁾

북한측은 1951년 10월 7일 새로운 회담장소로 널분리 주막 마을을 제의하였고, 국제연합군측이 다음 날인 10월 8일 이에 동의함으로써 회담장소가 개성에서 널분리 마을로 옮겨지게 된 것이다. 휴전회담 쌍방은 1951년 10월 22일 널분리에 친박을 치고 첫 연락장교 접촉을 가졌으며, 널분리를 새로운 회담장소로 하여 중단된 휴전회담을 재개하기로 공식 합의하였다.

새로운 회담장은 널분리의 집막(店幕)¹³⁾ 앞 콩밭에 지어졌다. 그런데 새로운 휴전회담의 장소가 된 「널분리」를 중국측이 한자로 표기할 수가 없어 회담장소인 널분리와 회담장 부근에 있던 집막(店幕)을 합쳐 판문점(板門店)으로 표기하기로 하였다. 이리하여 「판문점」이라는 지명이 탄생하게 된 것이다.¹⁴⁾

12) 회담장소 이전을 제의한 국제연합군측의 의도는 공산군측을 유엔군 권한지역으로 끌어들이 휴전회담에서 공산군측의 발언을 약화시키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북한은 개성의 전략적 중요성을 감안하여 휴전 성립 이후 개성 확보를 목적으로 개성에서 10 km 남쪽에 위치한 널분리를 새로운 휴전회담 장소로 제의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이 휴전회담 장소가 개성에서 널분리로 이전됨으로써 고려 왕조의 수도이자 한국전 당시 중요한 상업도시인 개성을 북쪽에 고스란히 넘겨주게 되었다. (국방정보본부, 『군사정전위원회 변람 제2집』, 군인공제회 제1인쇄 사업소, 1993, 16쪽.)

13) 집막(店幕)은 음식을 팔고 나그네를 제우는 것을 업으로 하는 집을 말한다. (이기문 감수, 『동아세국어사전』, 동아출판사, 1993, 2065쪽)

14) 배우리, 『우리 땅 이름의 뿌리를 찾아서』, (서울 : 토답, 1994), 170쪽.

판문점의 지명유래에 대해 북한쪽은 다른 주장을 펴고 있다. 즉, 판문점은 널문리에 있는 가게 이름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서울과 개성으로 오가던 길손들이 판문교 부근에 있는 가게를 판문점으로 불렀고 이것이 차차 마을 이름으로 되었다는 것이다. 8·15 이전에 만든 개성군면지(開城郡面紙) 제5권을 비롯하여 여러 기록들에서 판문점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판문점을 지나서 판문교를 넘어서면 진서면과 군내면에 이른다고 하였다는 것이다.¹⁵⁾

이처럼 판문점을 유명하게 만든 휴전회담을 통해 한국전 교전 쌍방은 우여곡절 끝에 휴전회담 본회의 159회를 비롯하여 총 765회에 이르는 각종 회의를 거쳐 드디어 1953년 7월 27일 판문점에서 「국제연합군 사령관을 일방으로 하고 조선인민군 총사령관 및 중국인민지원군 사령원을 다른 일방으로 하는 한국(조선) 군사정전 협정」이라는 긴 이름을 가진 휴전협정을 조인하게 되었다.¹⁶⁾

그런데 휴전회담이 진행되었고 정전협정이 조인된 판문점은 오늘날 판문점으로 불리우는 공동경비구역(Joint Security Area)에서 개성 쪽으로 약 1km 정도 떨어진 지점에 위치해 있다. 휴전협정 성립 이후 군정위 쌍방이 정전협정 기구들의 회의 장소로 사용하기 위해 1953년 10월 군사분계선상에 공동경비구역을 설정하면서 오늘날 판문점으로 불리우는 지역이 생겨났다.

현재 판문점은 우리측의 행정구역상 경기도 파주군(坡州郡) 진서면(津西面)에 속해 있다. 판문점은 비무장지대 내의 군정위 본부구역에 위치

15) 이정근, 『판문점』,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86), 14쪽

16) 정전협정은 협정문 원본 9통과 부분(副本) 9통이 각기 한글, 영문, 중국어로 작성되어 국제연합군, 북한군, 중국군간 교환되었다. (국방정보본부, 『군사정전위원회 편람』, 광진문화사, 1986, 30쪽)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이 살고 있지 않다. 다만 판문점 인근에 있는 대성동 마을은 북한의 기정동 마을과 함께 군정위 쌍방에 의해 한국전쟁 당시 주민에 한해 거주가 허용되어 있을 뿐이다.

북한은 1952년 12월 22일 황해남도 판문군을 신설하고,¹⁷⁾ 1955년 개성시 판문군으로 개편하였다. 현재 판문점은 북한 행정구역상 개성직할시 판문군에 속해 있다.

판문점은 서울에서는 북방 약 60 킬로미터, 평양에서는 남방 약 180 킬로미터 지점에 위치해 있다. 판문점에서 가장 가까운 도시는 개성으로 판문점에서 겨우 10 킬로미터 정도 떨어져 있다. 판문점의 지도상 좌표는 북위 37도 57분, 동경 126도 40분이다.

다. 판문점의 변천

이렇듯 휴전회담을 계기로 하여 국제적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한 판문점은 휴전 협정 조인 이후 국제정치의 흐름과 남북관계의 진전에 따라 「긴장」과 「화해」라는 두가지의 극히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왔다. 판문점은 동서 냉전의 시기에는 동서 양진영의 이념이 격돌하는 장소였으며, 세계적인 화해 분위기속에서는 대화와 화해를 모색하는 장소가 되었다.

정전협정 체결 직후인 1950년대와 1960년대의 판문점은 한국전쟁의 뒷처리와 교전 쌍방간 이념적 대결의 장소였다. 1950년대에는 전쟁포로의 교환과 한국전 유해 송환이 이루어졌고, 정전협정 제4조에 따라 정치회의 예비회담이 개최되기도 하였다. 또한 중립국 시찰 소조가 남북 각기 5개 항구에서의 정협협정 위반 감시활동을 중단하고 판문점으로 철수

17) 북한은 한국전쟁 기간중인 1952년 12월 22일 행정구역개편을 통해 기존의 면(面)단위는 폐지하였다.

하기도 했다.

1960년대에 접어들면서 북한은 소위 『4대 군사노선』이라는 무력증강 정책을 통해 다시 한번 무력 통일의 기회를 엿보기 시작했다. 4·19 혁명과 5·16 군사 쿠데타 등 한국내 정치적 변혁기를 맞아 남북평화협정 체결 및 주한미군철수 주장 등 대남 평화 공세를 펴는 동시에 1·21 청와대 무장간첩 침투, 울진·삼척 지구 무장공비 침투 등 대남 무장책동을 강화하였다. 이에 따라 판문점은 서로 상대측의 정전협정 위반을 거칠게 항의하는 장소가 되었다. 판문점 유엔사 전방기지가 북한군의 습격을 받기도 했으며, 유엔사측 공동일직장교가 북한군에게 피습되기도 하였다. 또한 원산 앞바다에서 북한에 억류된 미 정보함 푸에블로 호 승무원의 송환 협상이 미국과 북한간 판문점에서 이루어지기도 했다.

1970년대에 접어들어 세계적인 동서 화해의 분위기 속에서 남북간에도 대화의 물꼬가 트이기 시작하면서 판문점은 남북 대화를 상징하는 장소가 되었다. 1971년 8월 20일 남북 이산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남북적십자 파견원접촉이 판문점 중감위회의실에서 이루어졌다. 휴전 이후 18년만에 남북간 대화가 성사된 것이다. 이 파견원접촉을 효시로 남북적십자 예비회담, 남북조절위원회 관련 접촉 등이 빈번하게 판문점에서 이루어졌다.

특히 1971년 9월 20일 남북적십자 제1차 예비회담에서 쌍방은 판문점 「자유의 집」과 판문각에 「남북적십자회담 상설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연락사무소간 직통전화를 가설하기로 합의함으로써 남북간 통신 두절 이후 23년만에 남북간 연락통로가 마련되었다. 그후 판문점에서 크고 작은 각종 남북회담·접촉이 진행되었으며, 판문점을 통해 남북적십자회담과 남북조절위원회 쌍방 대표단이 서울과 평양을 오고 갔다.

그러나 북한은 한편으로 남북대화에 응해오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남

침용 땅굴을 파고, 일부 아프리카 국가나 반미 단체 소속 인원들을 판문점으로 데려와 반미 시위를 벌이게 하는 등 적대적인 자세를 버리지 않았다.

1975년에는 판문점 국제연합군 지원부대 부사령관 헨더슨 소령이 북측 경비병들에 의해 구타당하였으며, 1976년 8월 18일에는 비류나무를 절단하던 국제연합군측 경비병이 북한군 경비병에 의해 도끼로 살해되기까지 하였다. 이 8·18 도끼만행사건을 계기로 공동경비구역은 군사분계선을 경계로 각기 자기측 지역을 경비하는 「분할경비체제」로 전환되었다. 이로써 휴전선상의 유일한 비분단 지역이었던 공동경비구역마저 분단되고 말았다.

북한은 공동경비구역이 분할 관리에 들어가게 되자 자기측 초소들을 소방서 망루처럼 3, 4층으로 증축하였으며, 판문점에서 바라보이는 북측 기정동의 농가들도 방루식 고층건물로 개축하였고, 마을 앞 국기게양대도 160 미터가 넘는 초대형으로 세워놓았다. 북한의 이같은 비현실적인 과시용 건축물은 모두가 8·18 도끼만행 사건 이후 판문점을 시찰한 김정일의 「통이 큰 명령」에 의한 것이라고 한다.¹⁸⁾

1970년대에 시작된 남북대화는 간헐적인 중단상태 속에서도 지속되어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1984년 수제불자 인도·인수에 이어 1985년도에는 남북 이산가족 고향 방문 및 예술공연단 교환이 이루어져 이들이 판문점을 통과하여 남북을 왕래하였다. 그 밖에 남북경제회담, 남북국회회담 준비접촉, 남북체육회담, 남북고위급회담 예비회담 등이 판문점에서 개최되었다.

1990년 9월 제1차 남북고위급회담 우리측 대표단이 판문점을 통해 평

18) 김집, “통일업원이 서린 판문점 36년사”, 『북한』(1989년 7월), 61쪽

양을 방문한 이래 8차례에 걸쳐 쌍방 고위급회담 대표단이 서울과 평양을 오갔으며, 제6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는 역사적인 「남북기본합의서」의 발효와 함께 남북고위급회담 4개 분과위원회구성·운영합의서,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 등이 발효되었다. 뒤이어 1992년에는 남북정치분과위원회, 남북군사분과위원회, 남북경제분과위원회, 남북사회문화분과위원회 등 4개 분과 위원회와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 남북화해공동위원회, 남북군사공동위원회,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 및 남북사회문화공동위원회 등 5개 공동위원회가 발족되었다.

「남북기본합의서」 발효 이후 1992년 한해 동안 판문점에서 총 94회에 이르는 남북회담이 개최되어 월평균 8회의 회담이 판문점에서 개최되기도 하였다.

또한 1992년 5월 18일 남북연락사무소가 판문점 「평화의 집」과 「통일각」에 개설됨으로써 1948년 남과 북에 서로 다른 정부가 수립된 이후 44년만에 쌍방 당국간에 연락 통로가 마련되었다. 남북연락사무소가 개설되기 이전에는 남북적십자회담 상설 연락사무소와 남북적십자 중앙기관간 직통전화로 통해 연락업무를 수행해 왔으나, 남북연락사무소가 개설됨으로써 책임있는 남북당국간 연락업무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로써 판문점은 1970년도 초반에 시작된 남북대화가 꾸준히 진행된 결과 남북당국간 연락을 주고 받는 공간이자 남북왕래시 남북을 출입하는 장소로 굳어지게 되었다.

그런데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북한이 미·북간 평화협정 체결 주장을 강화하며¹⁹⁾ 정전협정의 무실화를 기도함에 따라 판문점이 정전협정 기구

19) 북한은 1962년 6월 20일 최고인민회의 제2기 제11차 회의에서 남북간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하다가 1974년 3월 25일 최고인민회의 명의 미국 의회 앞 서한에서 미·북 평화협정 체결로 태도를 바꾸었다.

의 회의장으로서의 제 구실을 다하지 못하게 되었다.

북한은 군정위 국제연합군측 수석대표의 한국군 장성 임명(91. 3. 25)을 계기로 하여 한국을 배제하고 미국과의 직접 협상을 통해 군사분계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노골화시켰다. 북한은 1994년 4월 28일 군정위에서 북한대표단을 철수시킨 후 1994년 5월 24일 「조선인민군 판문점 대표부」라는 북한군 대표부를 일방적으로 판문점에 설치하였다.²⁰⁾

군정위 중국측 대표단마저 1994년 12월 15일에 군정위에서 철수함으로써 정전협정의 군사정전위원회는 현재 유엔사측만 남아있는 「반쪽의 기구」로 전락하게 되었다.

또한 북한은 체코슬로바키아 연방공화국의 분리를 기회로 1993년 4월 중감위 체코슬로바키아 대표단을 철수시키고, 1995년 2월에는 중감위 폴란드 대표단을 축출한 결과 정전협정의 양대 시행기구 중의 하나인 중립국감독위원회도 유명무실하게 되었다.

북한이 군정위에서 철수한 이후 북한지역에 추락한 미군 헬기의 승무원 송환 협상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가운데 북한군과 미군이 만나는 모양으로 이루어졌다. 북한은 미군헬기 격추사건 이후 판문점에서 미군과의 장성급접촉을 줄기차게 요구해오고 있다. 우리 정부는 미국 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현 정전협정의 유지는 한반도의 안정에 긴요하다는 입장을 천명하고 북한이 정전협정의 정상화에 복귀할 것을 촉구하였다.

현재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는 정전협정 기구인 군사정전위원회 회의실,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 및 두 기구의 휴게실이 군사분계선상에 위치해 있으나, 북한이 군정위에서 철수한 이래 군정위의 공식회의는 한번

20) 북한이 「조선인민군 판문점 대표부」를 설치한 목적은 미국과 직접 협상을 통해 이른바 「새로운 평화보장 체계」 수립 문제를 논의하려는 것이다.

도 개최되지 않았다. 또한 북한은 북한측이 관리하는 판문점 중감위사무실과 휴게실을 일방적으로 폐쇄하였다.

이러한 북한의 정전협정 무실화 기도 때문에 한반도 휴전관리 기능의 공백이 우려되는 가운데 판문점은 정전협정의 테두리 속에서 휴전관리 기능을 회복시키려는 국제연합군측과, 한국을 배제한 체 미·북평화협정 체결을 성사시키려는 북한측의 시도가 맞부딪치는 공간이 되고 있다.

라. 판문점과 주변지역

판문점에는 정전협정에 따라 정전협정 기구들의 회의장 건물과 남북회담 건물들이 위치해 있다. 정전협정 기구들의 회담장 지역으로서의 판문점은 「공동경비구역」으로 설정되어 있다.

공동경비구역(Joint Security Area)은 정전협정 기구들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판문점 군사분계선상에 설정한 일정한 구역을 말한다. 판문점은 휴전협정 이전부터 존재하는 「널문리」라는 자연 부락에서 유래된 지명인데 반해, 공동경비구역은 휴전협정 조인 이후 군정위 회의 개최 지역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군사분계선상에 인위적으로 설정한 구역이다.

즉, 공동경비구역이란 1953년 10월 19일 「군사정전위원회 본부구역, 본부구역 안전 및 본부구역의 수축에 관한 합의」에 따라 설치되었다. 군정위 본부구역의 범위는 문산-개성간 1번 국도에 인접한 비무장지대를 약1.5~1.7 킬로미터 폭으로 구획한 지역으로 갑(A)구와 을(B)구로 나누어져 있다.²¹⁾ 공동경비구역은 이 군정위 본부구역 갑(A)구에 속해 있

21) 군정위 본부구역은 판문점 부근의 비무장지대에 위치하고 있으며, 비무장지대에 위치하였지만 독립지역으로 군사분계선 각측의 군정위 본부구역은 A구와 B구로 구분된다. (『국제연합군, 주한미군 지침 11-9: 70. 7. 8』)

으며,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남북 400 미터, 동서 800 미터의 타원형 지역이다. 공동경비구역의 범위는 1953년 9월 3일과 5일에 정전협정 쌍방이 합의하였다.²²⁾

공동경비구역이란 이름은 이 구역을 군정위 쌍방이 「공동」으로 경비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공동경비구역 경비인원은 공동경비구역 내에서는 군사분계선의 개념이 없이 상대측 지역을 출입할 수 있었다.

그러나 1976년 8월 18일 발생한 도끼만행 사건 직후 공동경비구역은 「공동」 경비에서 「분할」 경비로 전환되었다. 즉, 쌍방 경비병간의 충돌을 예방하기 위해 분할경비체제를 채택하기로 하여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은 쌍방 경비병이 공동경비구역내라도 군사분계선을 넘어 상대측 지역으로 출입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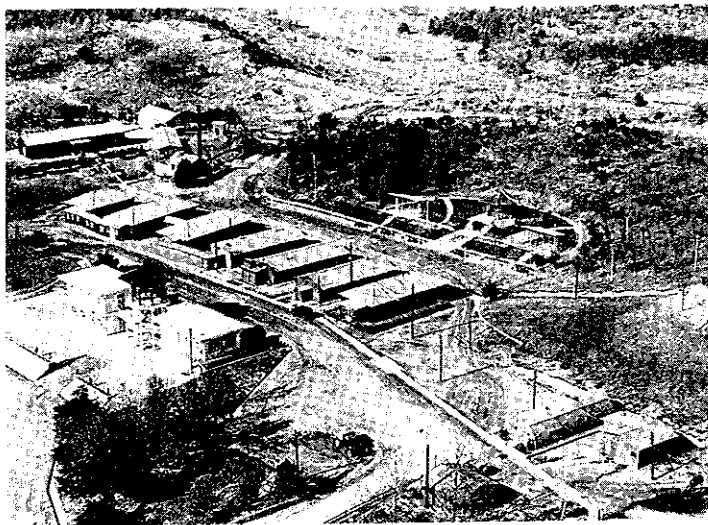
공동경비구역 우리측 지역의 경비는 국제연합군 사령관 직할 공동경비구역경비대(JSA-SF)가 담당하고 있으며, 북측 지역은 북한 인민부력부 직할 경비대가 담당하고 있다.

쌍방이 각기 장교 10명과 사병 90명으로 자기측 군정위 본부구역 전역의 경비에 임하고 있으며 그 중 공동경비구역은 장교 5명과 사병 30명이 내로 한정하여 경비에 임하고 있다. 그런데 북한은 군정위에서 철수한 1994년 4월 28일 이후 수차례에 걸쳐 의도적으로 공동경비구역의 경비인원을 40명으로 일사 증강 배치하기도 하였다.

공동경비구역으로서의 판문점에는 애당초 군정위 회의실, 중감위 회의실과 군정위 및 중감위의 휴게실 건물만 있었다. 세월이 흐르면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의 모습도 점차 바뀌게 되었다. 먼저 북한이 1964년 현

22) 『군사정전위원회 본부구역, 본부구역의 안전 및 본부구역 수축에 관한 합의』 제 2형 2복, 『국제연합군, 주한미군 11-9: 70. 7. 8』에는 공동경비구역은 원칙적으로 중립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재의 판문각 자리에 육각정을 건립하였고, 1965년에는 우리쪽에서 「자유
의 집」을 지었다. 이 당시의 판문점 모습은 아래와 같다.



북한은 우리측의 「자유 의 집」이 건립되자 비교적 규모가 왜소한 육각
정을 헐고 걸보기에 웅장한 모습의 판문각을 1969년에 건립하였다. 북한
이 판문각을 건립한 직후의 판문점 모습은 아래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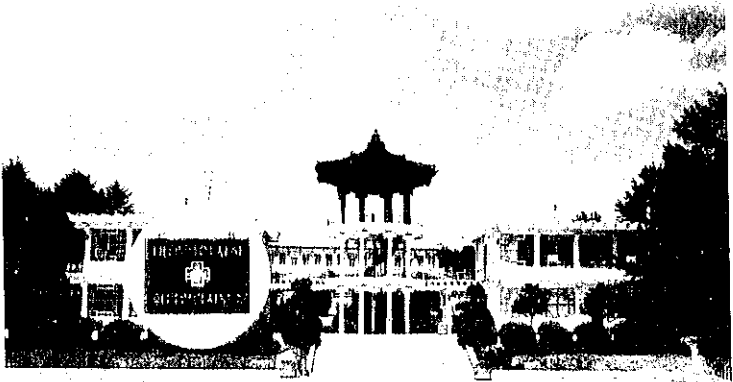


그후 남북회담이 진전을 보이면서 우리측의 「평화의 집」과 북측의 「통일각」이 새롭게 건축되어 지금의 판문점 모습을 이루고 있다.

판문점내의 남북회담 건물로는 우리측에서 「자유의 집」, 「평화의 집」이 있고 북측에서는 「판문각」, 「통일각」이 있다.

(1) 「자유의 집」

「자유의 집」은 1965년 9월 30일 준공되었다. 길이 115 피트, 넓이 26 피트, 연건평 113평의 조립식 건물로 건물 중앙에 팔각정을 두었다. 「자유의 집」은 준공 후 국제연합군측에 기증되었다. 1971년도 9월 남북적십자회담 상설 연락사무소가 「자유의 집」에 개설되었다. 「자유의 집」은 1970년대에는 남북회담 장소로 사용되기도 했다.



(2) 「평화의 집」

판문점내 우리측 회담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1989년 12월 19일 준공되었다. 1992년 5월 18일에 남북연락사무소가 「평화의 집」에 설치되었다. 「평화의 집」은 연건평 998평의 3층 석조건물로서 1층은 귀빈실과 기자회견실, 2층은 회담장, 3층은 연회실로 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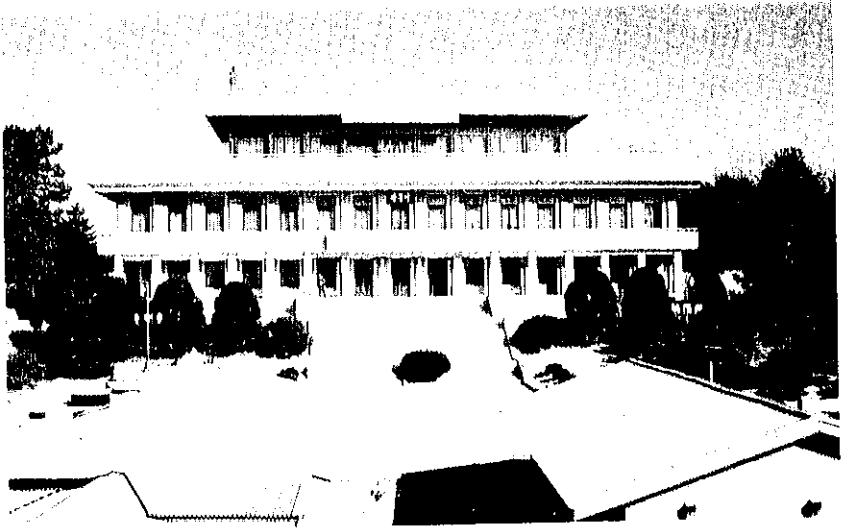


(3) 「판문각」

북한은 정전협정 체결 이후 12년간 판문점을 일반인에게 공개하지 않다가 1964년부터 공개하기 시작하면서 현재의 판문각 자리에 육각정을 지었다. 그후 1969년 9월 육각정을 헐고 「판문각」을 신축하였다. 2층의 「판문각」은 남쪽에서 보면 웅장한 석조건물로 보였으나, 건물내의 폭이 매우 좁았다.

북한은 1994년 5월 24일 북한군 판문점 대표부를 설치한 후 그해 8월

관문각 증축공사를 시작하여 그해 12월에 증축공사가 완공되었는데 건물을 3층으로 한 층 높이고, 폭을 확장하였다.



(4) 「통일각」

1985년도 8월 북측이 관문점 회담시설로 준공한 「통일각」은 연건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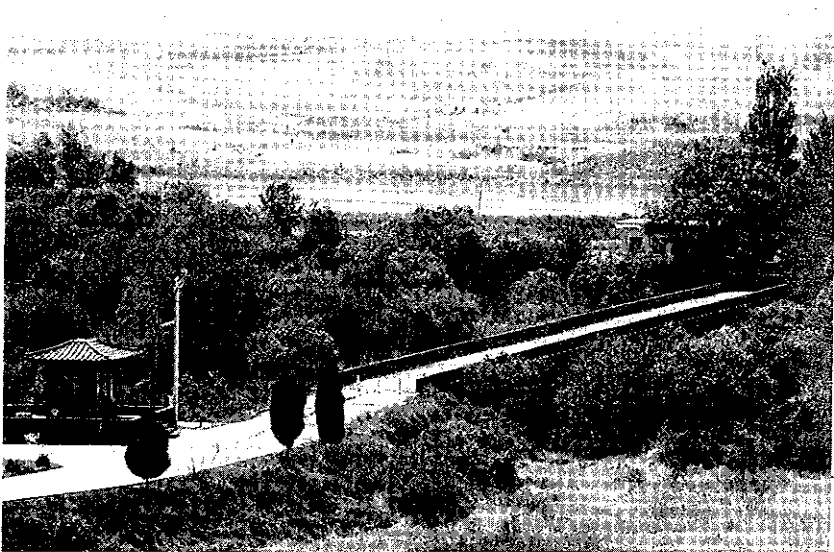


460평으로 지하 1층, 지상 1층 건물이다. 판문점 북측 지역에서 개최되는 분야별 주요회담은 대부분 통일각에서 개최되었다.

판문점과 판문점 주변에는 이름난 다리들과 군사분계선에 인접한 「비무장 지대 마을」들이 있다. 먼저 판문점과 그 주변의 유명한 다리를 살펴보면 「돌아오지 않는 다리」, 「72시간 다리」, 「자유의 다리」 등이 있다.

(1) 「돌아오지 않는 다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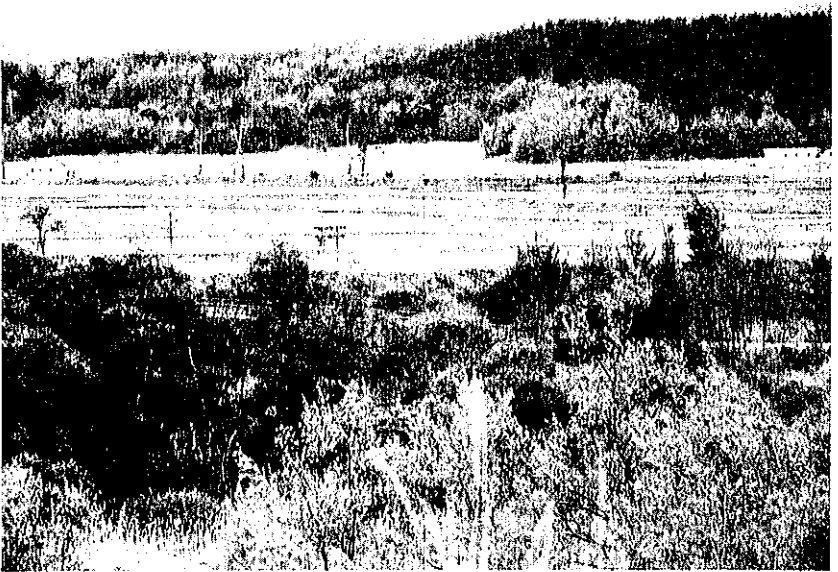
「돌아오지 않는 다리」는 공동경비구역 우리측 지역 「평화의 집」 뒷쪽 사천강 위에 위치해 있다. 이 다리 중간에는 군사분계선이 가로지르고 있다. 휴전협정 조인 후 이 다리를 통해 포로 교환이 이루어졌다. 이때 양측 포로들이 이 다리를 통해 남쪽과 북쪽으로 송환되었는데 포로들이 일단 이 다리만 건너면 그 누구도 다시는 돌아올 수 없다고 해서 「돌아오지 않는 다리」(Bridge of No Return)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돌아오지 않는 다리」는 개성에서 공동경비구역으로 출입하는 다리로 사용되었으나 1976년 「8·18 도끼만행」 사건 이후 국제연합군측은 이 다리의 통행을 금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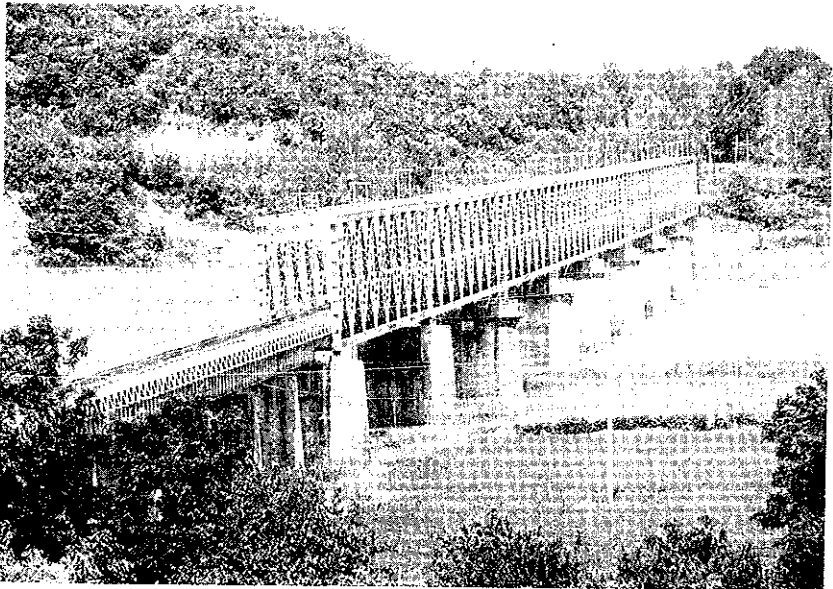
(2) 「72시간 다리」

「72시간 다리」는 1978년 8월 「돌아오지 않는 다리」가 폐쇄되자 공동 경비구역으로 출입하기가 어려워진 북한이 긴급히 「통일각」 뒷쪽의 사천강에 다리를 하나 건설하였는데, 이 다리를 건설하는데 소요된 시간이 72시간이라고 해서 「72시간 다리」라고 부른다.



(3) 「자유의 다리」

「자유의 다리」는 일제시대에 건설된 경의선(京義線) 철도의 철교였다. 6·25 전쟁의 와중에 상하행선이 모두 파괴되었으나 휴전과 더불어 포로 교환이 시작되자 하행선을 목조로 급조해 만든 것이 지금까지 계속 되어 오고 있는 것이다. 휴전이 성립된 후 1만 2천7백 73명의 포로들이 이 다리를 건너 다시 자유의 품에 안기면서 “자유 만세!”를 외쳤다고 해서 「자유의 다리」라고 불리게 되었다. 이 다리의 오른 쪽에는 아직도 경의선 상행선 철교의 잔해가 남아있다. 현재는 포로교환 당시 급조한 목조 다리는 폐쇄하고 임진철교를 보수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자유의 다리」 입구에는 임진각과 「망향의 동산」이 있다.



이 밖에 판문점 주변에는 한반도에서 유일하게 존재하는 비무장지대 마을이 둘 있다. 우리측 지역의 대성동 마을과 북측 지역의 기정동 마을이 바로 그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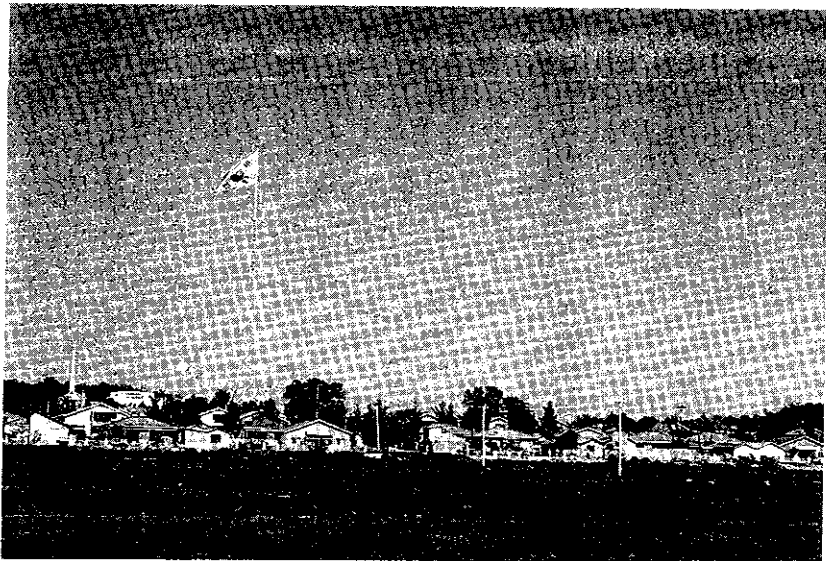
(1) 대성동 「자유의 마을」

대성동 「자유의 마을」은 비무장지대내에 위치한 한국 유일의 국제연합군의 군정마을이다.²³⁾ 이 마을은 한국 전쟁으로 마을의 대부분이 파괴되었으나, 군정위 제6차 본회의(53. 8. 3)에서 “정전협정 이전 비무장지대내 거주자는 계속 입주를 허용한다”고 쌍방이 합의함에 따라 휴전 후 다른 곳으로 피난가지 않은 대성동 주민 30세대 160여명의 거주가 허용되었다. 대성동 마을은 전쟁으로 인해 마을의 민가가 거의 전부 파괴되었다. 그러나 대성동은 정부의 특별 지원하에 두차례의 종합개발사업을 거쳐 이제는 대한민국내에서 최고의 부농 마을이 되었다. 전쟁전 약 스무마지기였을 때 불과했던 세대당 평균 경작지가 현재는 3만평 이상으로 확대되었으며, 가구당 평균소득은 연4천만원을 넘고 있다.

대성동 주민은 휴전 이후 거의 늘지 않았다. 현재 대성동 주민은 약 51세대 230명으로 강릉 최씨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대성동 주민 중 남자는 결혼을 하여 배우자를 대성동으로 데려와 살 수 있으나, 여자는 결혼을 하면 남편을 데려와 살수가 없기 때문에 휴전협정 이후 마을 주민의 성씨(姓氏) 구성이 거의 변화하지 않았다.

대성동 주민의 또 다른 특징은 납세와 병역의 의무를 면제 받고 있다는 점이다. 주민들은 또한 연중 8개월 이상은 대성동에서 거주해야 한다. 기타 공법상(公法上) 권리와 의무는 일반 국민의 경우와 같다.

23) 김응섭, “판문점과 자유의 마을 대성동”, 『북한』(1989년 7월), 70쪽



대성동은 한국전쟁 이전 장단군 임진면에 속해 있었으나 지금은 파주군 군내면에 속해 있고 행정상의 마을 이름은 조산리(造山里)이다. 이 마을에 있는 대성동 국민학교는 비무장 지대 내에 위치한 유일한 대한민국 공공기관으로 현재 약 30명의 학생이 9명의 교사로부터 교육을 받고 있다. 또 대성동 국민학교 졸업생은 학군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원하는 중학교는 어디든지 진학할 수 있다.

(2) 기정동 마을

기정동은 대성동 「자유의 마을」에서 직선 거리 1.8 킬로미터 북방의 비무장 지대에 위치하고 있다. 기정동 마을도 휴전협정 체결 당시의 주민들에 한해 군정위 제6차 본회의에서 거주가 허용되었다. 그러나 북한은 1970년도에 마을 주민을 전원 개성 지역으로 이주시켜 지금은 일반 주민이 살고 있지 않다.

북한은 1976년 「8·18 도끼만행 사건」 이후 이 마을의 가옥을 2-3층 망루식 건물로 증축하여 대남 선전마을로 활용하고 있다. 이 마을을 선전마을로 보는 이유는 마을 전체의 점등과 소등이 일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마을 골목에 부녀자나 어린이의 모습을 볼 수가 없을 뿐 아니라 농촌 마을에 있을 법한 가축들도 거의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 마을에는 높이 160 미터나 되는 「세계에서 제일 높다」는 국기 게양대가 있으며 여기에 폭 30미터의 대형 인공기(人共旗)가 일년 내내 게양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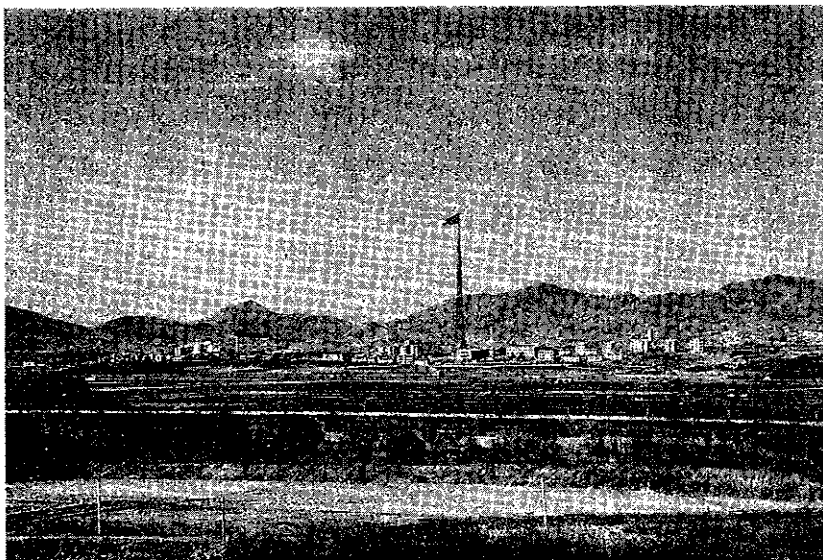
그런데 북한은 이 마을에 사람이 살고 있지 않다는 주장을 부정하고 있다. 1994년 4월 아동 60명과 성인 200명을 사전에 배치해 놓고 서방인론에게 이 마을을 공개하기도 하였다. 오히려 대성동 「자유의 마을」을 사람이 살고 있지 않는 선전 마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은 “대성동은 30여채의 단층집들이 있는 자그마한 마을로 한 세대당 가족 수를 5~6명으로 잡으면 200명 가까운 사람이 살고 있을 것인데 1984년 9월 남조선 수재민들에 대한 구호 조치가 실현되었을 때 대성동에도 구호물자가 전달되었는데 아무도 얼씬하지 않았다”라고 그 이유를 설명한다.²⁴⁾

북한의 자료에 의하면 기정동 마을은 원래 평화리에 속해 있었으나 그 후 행정구역 명칭이 변경되어 비무장지대에 있는 이 마을만을 따로 「관분집리」로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²⁵⁾ 오늘 날 북한의 행정 구역에 따르면 기정동은 개성직할시 관분군 관분집리이다.²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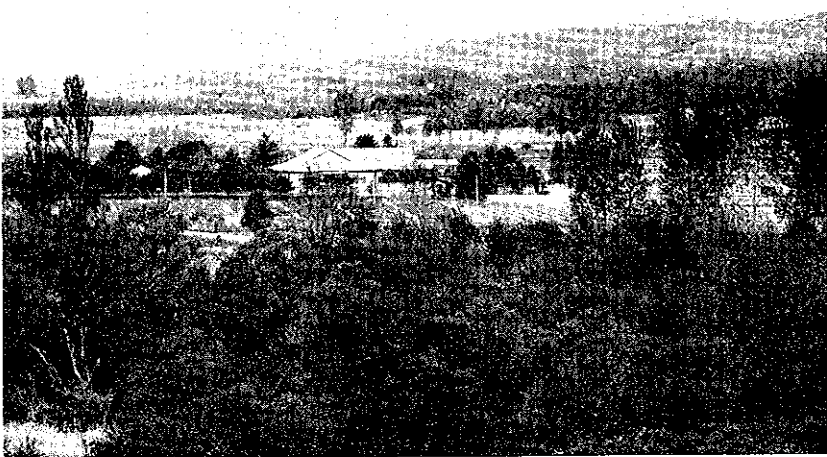
24) 이정근, 『관분집』, (평양:조선로동당 출판사, 1986) 104쪽

25) 이정근, 『관분집』, (평양:조선로동당 출판사, 1986) 101쪽

26) 이정근, 리명렬 공저, 『원한의 군사분계선』, (평양:조선로동당출판사, 1990)



그 밖에 판문점 주변에 특기할 만한 것으로는 현재의 판문점에서 북쪽으로 약 800미터 지점에 위치한 휴전협정 조인식장이 있다. 이 조인식장



은 북한이 건축한 것으로 단층 한옥이다.

북한은 휴전협정 조인 이후 이 건물을 개조하여 「평화박물관」으로 이름을 짓고 북한측 판문점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조국해방 전쟁의 승리와 미제국주의에 섬멸적 타격을 입힌」증거물을 전시하고 정치적 선전 장소로 활용하고 있다.²⁷⁾

27) 북한은 한국전쟁을 「조국해방전쟁」으로, 정전협정 조인일인 7월 27일은 「조국해방전쟁 승리기념일」로 부르고 있다.

2. 남북연락사무소

가. 연 혁

남북연락사무소 설치 문제는 제1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우리측이 먼저 서울과 평양에 상주연락대표부를 설치할 것을 제의함으로써 대두되었다. 북측은 이같은 우리의 제의에 대해 「두개 조선을 상징하는 기구를 상대방 행정중심지에 설치하는 것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함으로써 남과 북은 남북연락사무소의 설치 문제에 대해 서로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이러한 쌍방간의 이견은 그 후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남북연락사무소를 판문점에 설치하는 것으로 절충되었다.

제7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남북연락사무소의 설치·운영에 관한 합의서」가 합의되었고, 1992년 5월 18일 남북연락사무소 구성원 명단의 상호 통보와 함께 판문점 우리측 지역 「평화의 집」과 북측 지역 「통일각」에 남북연락사무소가 각기 개설되었다. 이로써 1948년 남과 북에 각기 다른 정부가 수립된 후 44년만에 쌍방 정부당국간 연락사무소가 공식적으로 설치된 것이다.

나. 기 능

「남북연락사무소의 설치·운영에 관한 합의서」 서문에는 「남북기본합의서 제7조에 따라 서로의 긴밀한 연락과 협의를 통하여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평화와 통일을 앞당기는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남북연락사무소의 설치 목적을 못박고 있다.

남북연락사무소는 위의 합의서에 따라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즉, 위임에 따라 남북사이에 제기되는 연락업무를 수행하며, 의뢰에 따르는 연락업무도 수행할 수 있다. 위임에 따라 남북사이의 합의 사항 이

행과 관련한 실무협의의 진행 및 남북사이의 각종 왕래와 접촉에 따르는 안내와 편의를 제공한다.

남북연락사무소의 운영시간은 평일에는 오전 9시에서 오후 4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9시에서 정오까지 운영하며, 쌍방 공휴일과 일요일 그리고 일방이 휴무를 통보하는 날은 휴무한다. 운영일자와 시간은 쌍방이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운영일에는 아침 9시와 오후 4시(토요일은 정오) 쌍방 연락사무소간에 직통전화의 시험호출을 하고 있다.

쌍방은 필요에 따라 연락관 접촉을 가지며, 연락사무소 구성원들 사이의 연락은 접촉 또는 전화를 통하여 진행한다. 또한 연락사무소 소장간 소장회의를 수시로 진행한다고 합의서에 명시되어 있으나 아직까지 소장회의는 북측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 한번도 개최되지 못하고 있다.

남북연락사무소의 구성원은 합의서에 따라 자기측 지역을 왕래하는 상대방측의 연락사무소 구성원에 대해서는 신변안전과 휴대품에 대한 불가침을 보장받고 있다.

남북연락사무소는 남과 북이 각기 소장 1인과 부소장 1인 그리고 필요한 수의 연락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장, 부소장과 연락관 교체시 이를 상대방측에게 통보하게 되어 있다. 현재 서로 상대방측에게 통보된 연락관은 남측이 12명, 북측이 10명이다.

그런데 북한측은 북측 연락관 1명을 우리측에게 통보도 하지 않은 체 적십자회담 상설 연락사무소 연락관으로 근무시키기도 했다. 또한 김일성 사후 북한측이 우리측 연락관의 교체를 알리는 전화통지문의 접수를 거부하여 우리측은 연락관 교체를 구두로 통보하기도 했다.

남북연락사무소 연락관은 연락사무소간 직통전화를 통해 전화통지문을 교환하는 것 이외에도 판문점에서 개최되는 남북 회담·접촉시 공동경비구역 상대방 지역을 방문하는 대표단의 군사분계선 통과 방법과 통과 시

간 등 절차 문제를 협의하며, 자기측 지역으로 오는 상대측 회담대표단의 안내 등을 담당하고 있다. 남북을 왕래하는 행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다.

다. 전화통지문 교환

남북연락사무소간에는 직통전화 2회선이 가설되어, 이 직통전화를 통해 남북간 전화통지문 교환 등 연락업무가 이루어진다. 남북연락사무소 개설 이후 1995년 6월말까지 쌍방이 주고 받은 전화통지문은 146건에 이른다.

그런데 북한측은 김일성 사망 직후인 1994년 7월 11일 우리측 전화통지문을 접수한 이래 장기간 전화통지문을 접수하지 않다가 1995년 2월 23일 단 한 차례 전화통지문을 접수하였다.

남북연락사무소 개설 이후 1995년 6월말까지 쌍방이 교환한 전화통지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남북연락사무소간 전화통지문 교환 현황

(95년 6월말 현재)

일 시	발 신 명 의	수 신 명 의	내 용 요 지
92. 6. 1. 10:18-10:52	정원식 국무총리	연형북 정무원 총리	해문제 해결에 북측의 성실한 자세 촉구
92. 6. 4. 15:10-15:15	연형북 정무원 총리	정원식 국무총리	해통제공동위 제6차 회의 개최 제의
92. 6. 20. 10:02-10:10	공로명 해통제공동위 남측위원장	최우진 해통제공동위 북측위원장	해통제공동위 제6차 회의 개최일자 수정 제의
92. 6. 20. 10:15-10:17	연형북 정무원 총리	정원식 국무총리	정무원 총리 명의 편지 전달 예고
92. 6. 22. 10:00-10:04	정원식 국무총리	연형북 정무원 총리	정무원 총리 명의 편지 접수 동의
92. 6. 23. 10:00-10:12	최우진 해통제공동위 북측위원장	공로명 해통제공동위 남측위원장	해통제공동위 제6차 회의 개최 동의
92. 6. 25. 09:02-09:06	정원식 국무총리	연형북 정무원 총리	국무총리 명의 편지 전달 예고
92. 6. 25. 14:00-14:05	연형북 정무원 총리	정원식 국무총리	국무총리 명의 편지 접수 동의
92. 7. 4. 10:00-10:05	정원식 국무총리	연형북 정무원 총리	국무총리 명의 편지 전달 예고
92. 7. 6. 14:09-14:12	연형북 정무원 총리	정원식 국무총리	국무총리 명의 편지 접수 동의
92. 7. 18. 10:00-10:03	공로명 해통제공동위 남측위원장	최우진 해통제공동위 북측위원장	해통제공동위 남측 위원 교체 통보
92. 7. 21. 10:00-10:06	박용욱 군사분과위 남측위원장	김영철 군사분과위 북측위원장	군사분과위원장 접촉 제의

일 시	발 신 명 의	수 신 명 의	내 용 요 지
92. 7. 21. 15:05-15:10	김영철 군사분과위 북측위원장	박용옥 군사분과위 남측위원장	군사분과위원장 접촉 동의
92. 7. 24. 15:00-15:05	임동원 교류협력 분과위 남측위원장	김정우 교류협력 분과위 북측위원장	교류협력 분과위 남측 위원 교체 통보
92. 7. 28. 11:20-11:25	김정우 교류협력 분과위 북측위원장	임동원 교류협력 분과위 남측위원장	교류협력 분과위 북측 위원 교체 통보
92. 8. 12. 15:00-15:25	연형묵 정무원총리	정원식 국무총리	이인모 실총 보도에 대한 진상 규명과 그 의 송환촉구
92. 8. 17. 10:00-10:05	이동복 정치분과위 남측위원장	백남준 정치분과위 북측위원장	정치분과위 남측 위원 교체통보
92. 8. 26. 10:00-10:04	정원식 국무총리	연형묵 정무원 총리	고위급회담 남측대표 교체통보
92. 8. 26. 10:04-10:08	공로명 핵통제공동위 남측위원장	최우진 핵통제공동위 북측위원장	핵통제공동위 남측 위원 교체 통보
92. 8. 31. 10:40-10:46	백남준 정치분과위 북측위원장	이동복 정치분과위 남측위원장	정치분과위 위원장 접촉 제의
92. 8. 31. 15:05-15:10	이동복 정치분과위 남측위원장	백남준 정치분과위 북측위원장	위원장 접촉 제의에 동의
92. 9. 5 09:00-09:07	최봉춘 남북고위급 회담 북측책임연락원	김용환 남북고위급 회담 남측책임연락관	책임연락관 접촉 제의
92. 9. 5. 09:42-09:47	김정우 교류협력 분과위 북측위원장	임동원 교류협력 분과위 남측위원장	위원장 접촉 제의
92. 9. 5. 11:00-11:05	김용환 남북고위급 회담 남측책임연락관	최봉춘 남북고위급 회담 북측책임연락원	책임연락관 접촉 동의
92. 9. 5. 11:00-11:05	임동원 교류협력 분과위 남측위원장	김정우 교류협력 분과위 북측위원장	위원장 접촉일자 동의

일 시	발 신 명 의	수 신 명 의	내 용 요 지
92. 10. 7. 10:00-10:08	손인교 남북연락 사무소 남측소장	최봉춘 남북연락 사무소 북측소장	군사당국자간 직통전화 설치·운영협의 통신 실무자 접촉제의
92. 10. 9. 11:00-11:13	북측 김동국	남측 김용수	최각규 부총리 방북 관련 실무접촉 거부
92. 10. 9. 14:00-14:15	이동복 정치분과위 남측위원장	백남준 정치분과위 북측위원장	『간첩단 사진』관련 남북정치분과위 긴급 소집 제의
92. 10. 9. 15:00-15:06	최봉춘 남북연락 사무소 북측소장	손인교 남북연락 사무소 남측소장	군사당국자간 직통전화 설치·운영협의 통신 실무자 접촉 수정제의
92. 10. 12. 10:55-11:07	최봉춘 남북고위급 회담 책임연락원	김용환 남북고위급 회담 남측 책임연락원	화해공동위 북측위원 장 급수 통보
92. 10. 12. 11:55-12:15	백남준 남북정치 분과위 북측위원장	이동복 남북정치 분과위 남측위원장	정치분과위원회 긴급 소집제의 거부
92. 10. 13. 14:00-14:06	손인교 남북연락 사무소 남측소장	최봉춘 남북연락 사무소 북측소장	최각규 부총리 방북 관련 실무접촉 무산에 유감 표시
92. 10. 13. 14:06-14:12	손인교 남북연락 사무소 남측소장	최봉춘 남북연락 사무소 북측소장	화해공동위 구성 인원 명단 교환일자 수정 제의
92. 10. 13. 14:34-14:48	최봉춘 남북연락 사무소 북측소장	손인교 남북연락 사무소 남측소장	정부원 총리 명의 편 지 전달 예고
92. 10. 14. 10:00-10:03	손인교 남북연락 사무소 남측소장	최봉춘 남북연락 사무소 북측소장	정부원 총리 명의 편 지 접수 동의
92. 10. 14. 12:55-13:05	최봉춘 남북연락 사무소 북측소장	손인교 남북연락 사무소 남측소장	화해공동위 구성인원 명단 교환일자 수정제 의에 동의

일 시	발 신 명 의	수 신 명 의	내 용 요 지
92. 10. 14. 14:48-14:53	손인교 남북연락 사무소 남측소장	최봉춘 남북연락 사무소 북측소장	군사당국자간 직통전 화 설치·운영 협의 통신실무자 접촉 수정 제외에 동의
92. 10. 16. 15:07-15:14	최우진 핵통제 공동위 북측위원장	공로명 핵통제공동위 남측위원장	핵통제공동위 제9차 회의 개최 제의
92. 10. 19. 10:00-10:05	공로명 핵통제공동위 남측위원장	최우진 핵통제공동위 북측위원장	핵통제공동위원장 단독 접촉 수정 제의
92. 10. 20. 10:00-10:05	손인교 남북연락 사무소 남측소장	최봉춘 남북연락 사무소 북측소장	국무총리 명의 편지 전달 예고
92. 10. 20. 11:00-11:05	최우진 핵통제공동위 북측위원장	공로명 핵통제공동위 남측위원장	핵통제공동위 제9차 회의 개최 일자 수정 제의
92. 10. 20. 15:00-15:04	공로명 핵통제공동위 남측위원장	최우진 핵통제공동위 북측위원장	핵통제공동위 제9차 회의 개최 동의
92. 10. 20. 15:04-15:07	공로명 핵통제공동위 남측위원장	최우진 핵통제공동위 북측위원장	핵통제공동위 남측 위원 교체 통보
92. 10. 21. 10:00-10:05	최봉춘 남북연락 사무소 북측소장	손인교 남북연락 사무소 남측소장	국무총리 명의 편지 접수 동의
92. 10. 21. 14:00-14:03	손인교 남북연락 사무소 남측소장	최봉춘 남북연락 사무소 북측소장	화해공동위 남측위원 장 급수 통보
92. 10. 26. 14:00-14:06	현승중 국무총리	연형묵 정무원총리	화해공동위 남측 구성 인원 명단 통보
92. 10. 26. 14:07-14:15	현승중 국무총리	연형묵 정무원총리	경제공동위 및 사회 문화공동위 남측 위원 교체 통보
92. 10. 26. 14:57-15:05	연형묵 정무원총리	현승중 국무총리	화해공동위 북측 구성 인원 명단 통보

일 시	발 신 명 의	수 신 명 의	내 용 요 지
92. 10. 27. 10:00-10:07	현승중 국무총리	연형복 정무원총리	4개 공동위의 운영 협의 의 고위급회담 대표 접촉 제의
92. 10. 28. 11:50-11:58	연형복 정무원총리	현승중 국무총리	4개 공동위의 운영 협의 의 남북고위급회담 대표 접촉 거부
92. 10. 30. 14:00-14:10	손인교 남북연락 사무소 남측소장	최봉춘 남북연락 사무소 북측소장	군사당국자간 직통전화 협의 통신실무지 제2차 접촉 제의
92. 10. 31. 11:49-12:28	연형복 정무원 총리	현승중 국무총리	『대규모 군사연습』 중지요구
92. 11. 2. 15:00-15:23	현승중 국무총리	연형복 정무원 총리	4개 공동위 제1차 회의 개최 촉구
92. 11. 3. 13:32-13:40	최봉춘 남북연락 사무소 북측소장	손인교 남북연락 사무소 남측소장	군사당국자간 직통전화 설치·운영 관련 통신 실무 제2차 접촉 거부
92. 11. 6. 10:37-10:52	최우진 해통제공동위 남측위원장	공로명 해통제공동위 남측위원장	해통제공동위 제10차 회의 개최 연기 제의
92. 11. 9. 15:00-15:20	공로명 해통제공동위 남측위원장	최우진 해통제공동위 북측위원장	해통제공동위 제10차 회의 개최 연기 동의
92. 11. 19. 15:00-15:05	손인교 남북연락 사무소 남측소장	최봉춘 남북연락 사무소 북측소장	남북연락사무소 남측 연락관 교체 통보
92. 12. 1. 15:00-15:30	최우진 해통제공동위 북측위원장	공로명 해통제공동위 남측위원장	해통제공동위 제12차 회의 개최 제의
92. 12. 2. 15:05-15:30	공로명 해통제공동위 남측위원장	최우진 해통제공동위 북측위원장	해통제공동위 제12차 회의 일자 수정 제의 및 위원 접촉 제의

일 시	발 신 명 의	수 신 명 의	내 용 요 지
92. 12. 3. 14:00-14:05	최우진 핵통제공동위 북측위원장	공로명 핵통제공동위 남측위원장	핵통제공동위 제12차 회의 수정 제의에 동의
92. 12. 4. 15:00-15:07	공로명 핵통제공동위 남측위원장	최우진 핵통제공동위 북측위원장	핵통제공동위 제12차 회의 개최 동의
92. 12. 4. 15:58-16:45	안병수 남북고위급 회담 북측대변인	공로명 남북고위급 회담 남측대변인	제9차 고위급회담이 제 날짜에 열릴수 있 도록 T/S훈련 재개 결정 취소 요구
92. 12. 10. 12:00-12:10	공로명 남북고위급 회담 남측대변인	안병수 남북고위급 회담 북측대변인	T/S 훈련문제 입장 표 명 및 제9차 고위급 회담 개최 촉구
92. 12. 10. 15:00-15:05	김용환 남북고위급 회담 남측책임연락관	최봉춘 남북고위급 회담 북측책임연락원	제9차 고위급회담 준 비·협의를 위해 책임 연락관 접촉 제의
92. 12. 11. 15:00-15:12	최봉춘 남북고위급 회담 북측책임연락원	김용환 남북고위급 회담 남측책임연락관	책임연락관 접촉 거부
92. 12. 12. 11:00-11:42	북측4개 공동위원장	남측4개 공동위원장	T/S훈련재개 비난
92. 12. 19. 10:00-10:08	공로명 핵통제공동위 남측위원장	최우진 핵통제공동위 북측위원장	핵통제공동위 위원 접 촉 제의
92. 12. 21. 10:05-11:18	현승중 국무총리	강성산 정무원총리	제9차 고위급회담 및 각 공동위 정상화 호 응 촉구
92. 12. 21. 15:00-15:15	최우진 핵통제공동위 북측위원장	공로명 핵통제공동위 남측위원장	위원접촉과 핵통제공 동위 제14차 회의 병 행 개최 제의

일 시	발 신 명 의	수 신 명 의	내 용 요 지
92. 12. 22. 10:00-10:07	공로명 해통제공동위 남측위원장	최우진 해통제공동위 북측위원장	해통제공동위 위원 접 촉 동의
92. 12. 23. 09:00-09:15	최우진 해통제공동위 북측위원장	공로명 해통제공동위 남측위원장	해통제공동위 제14차 회의 개최 촉구
92. 12. 23. 15:00-15:06	공로명 해통제공동위 남측위원장	최우진 해통제공동위 북측위원장	해통제공동위 위원접 촉 제의
92. 12. 26. 09:03-09:20	최우진 해통제공동위 북측위원장	공로명 해통제공동위 남측위원장	해통제공동위 위원접 촉 거부
92. 12. 26. 12:13-12:38	공로명 해통제공동위 남측위원장	최우진 해통제공동위 북측위원장	해통제공동위 위원접 촉 거부
93. 1. 11. 10:30-10:50	최우진 해통제공동위 북측위원장	공로명 해통제공동위 남측위원장	위원접촉과 제14차 회 의 속개 제의
93. 1. 13. 11:00-11:22	공로명 해통제공동위 남측위원장	최우진 해통제공동위 북측위원장	세차례 위원접촉을 신 행하고 그 성과를 토 대로 제14차 회의 개 최 제의
93. 1. 14. 10:00-10:24	최우진 해통제공동위 북측위원장	공로명 해통제공동위 남측위원장	위원접촉과 제14차 회 의 개최 촉구
93. 1. 14. 14:00-14:12	공로명 해통제공동위 남측위원장	최우진 해통제공동위 북측위원장	위원접촉에 나갈 것이 며 제14차 회의는 위 원접촉시 합의
93. 1. 14. 16:30-16:40	최우진 해통제공동위 북측위원장	공로명 해통제공동위 남측위원장	제14차 회의에 호응해 나올 것을 재촉구
93. 1. 18. 15:30-16:03	공로명 해통제공동위 남측위원장	최우진 해통제공동위 북측위원장	쌍방위원장 접촉 제의
93. 1. 20. 15:25-15:50	최우진 해통제공동위 북측위원장	공로명 해통제공동위 남측위원장	T/S군사훈련 토의를 전제로 위원장 접촉에 동의

일 시	발 신 명 의	수 신 명 의	내 용 요 지
93. 1. 21. 11:10-11:18	공로명 핵통제공동위 남측위원장	최우진 핵통제공동위 북측위원장	위원장접촉에는 상호 핵사찰 규정 채택 문 제등이 논의될 것
93. 1. 26. 09:15-09:23	손인교 남북연락 사무소 남측소장	최봉춘 남북연락 사무소 북측소장	93 T/S훈련실시 통보 및 훈련에 북측의 참관 초청
93. 3. 12. 10:00-10:07	손인교 남북연락 사무소 남측소장	최봉춘 남북연락 사무소 북측소장	이인모 노인 송환 실 무절차 문제 협의에 동의
93. 3. 13. 11:00-11:05	최봉춘 남북연락 사무소 북측소장	손인교 남북연락 사무소 남측소장	이인모 노인 송환 결 정을 알리고 실무절차 문제 협의 제의
93. 3. 13. 11:57-12:00	손인교 남북연락 사무소 남측소장	최봉춘 남북연락 사무소 북측소장	이인모 노인 송환 실 무 접촉에 의사 1명 참석 통보
93. 3. 24. 10:00-10:07	최봉춘 남북연락 사무소 북측소장	손인교 남북연락 사무소 남측소장	천도교단의 초청장 전 달을 위해 연락관 접 촉 제의
93. 3. 25. 15:00-15:04	최봉춘 남북연락 사무소 북측소장	손인교 남북연락 사무소 남측소장	북측 천도교 정신혁위 원장 초청 거부
93. 4. 19. 10:00-10:04	손인교 남북연락 사무소 남측소장	최봉춘 남북연락 사무소 북측소장	우리측 연락관 교체 통보
93. 5. 19. 10:00-10:04	황인성 국무총리	강성산 정무원 총리	남북연락사무소 남측 소장 교체 통보
93. 5. 19. 10:05-10:10	이준구 남북연락 사무소 남측소장	최봉춘 남북연락 사무소 북측소장	국무총리 명의 편지 전달 예고
93. 5. 20. 10:00-10:05	최봉춘 남북연락 사무소 북측소장	이준구 남북연락 사무소 남측소장	국무총리 명의 편지 접수 동의

일 시	발 신 명 의	수 신 명 의	내 용 요 지
93. 5. 20. 10:05-10:12	이준구 남북연락 사무소 남측소장	최봉춘 남북연락 사무소 북측소장	고위급회담 남측 대표 명단 통보
93. 5. 25. 10:00-10:05	최봉춘 남북연락 사무소 북측소장	이준구 남북연락 사무소 남측소장	정무원 총리 명의 편 지 전달 예고
93. 5. 25. 11:00-11:04	이준구 남북연락 사무소 남측소장	최봉춘 남북연락 사무소 북측소장	정무원 총리 명의 편 지 전달 접수 동의
93. 5. 29. 10:00-10:38	황인성 국무총리	강성산 정무원총리	해문제 해결과 그와의 남북간 현안문제 및 북측이 제기한 문제협 의 고위급 회담대표 접촉 제의
93. 5. 31. 11:00-11:30	강성산 정무원총리	황인성 국무총리	특사교환 문제협의 실무자 접촉 제의
93. 6. 2. 09:30-09:47	황인성 국무총리	강성산 정무원총리	해문제와 특사교환 문 제 동시 협의 당국간 실무대표 접촉 제의
93. 6. 4. 15:00-15:35	강성산 정무원총리	황인성 국무총리	특사교환 실무절차 토 의 실무자 접촉 제의
93. 6. 7. 09:30-09:54	황인성 국무총리	강성산 정무원총리	해문제와 특사교환 문 제 동시 협의 실무접 촉 동의
93. 6. 8. 09:30-09:55	강성산 정무원총리	황인성 국무총리	특사교환 협의 실무자 접촉 수정 제의
93. 6. 9. 10:00-10:17	황인성 국무총리	강성산 정무원총리	해문제 포함 특사교환 논의 실무대표 접촉 수정 제의
93. 6. 11. 10:00-10:17	강성산 정무원총리	황인성 국무총리	특사교환 실무자 접촉 촉구

일 시	발 신 명 의	수 신 명 의	내 용 요 지
93. 6. 14. 09:30-09:47	황인성 국무총리	강성산 정무원총리	쌍방 사이의 이견해소를 위한 실무대표 접촉 제의
93. 6. 15. 14:00-14:16	강성산 정무원총리	황인성 국무총리	특사교환을 위한 실무자 접촉 제의
93. 6. 22. 15:00-15:25	황인성 국무총리	강성산 정무원 총리	핵문제와 특사교환 문제 실무대표 접촉 제의
93. 8. 3. 15:35-15:45	최봉춘 남북연락 사무소 북측소장	이준구 남북연락 사무소 남측소장	서울 개최 범민족대회 3자 실무접촉 북측대표 명단 통보 및 신변 안전 보장 요구
93. 8. 4. 10:00-10:28	황인성 국무총리	강성산 정무원 총리	핵통제공동위 회의 개최 제의와 남측구성원 통보
93. 8. 4. 13:20-13:33	최봉춘 남북연락 사무소 북측소장	이준구 남북연락 사무소 남측소장	서울 개최 범민족대회 3자 실무접촉 북측대표의 신변 안전 보장 요구
93. 8. 7. 10:00-10:20	최봉춘 남북연락 사무소 북측소장	이준구 남북연락 사무소 남측소장	3자 실무접촉 참가 북측대표 300명의 판문점 통과 신변 안전 보장 요구
93. 8. 10. 10:00-10:24	이준구 남북연락 사무소 남측소장	최봉춘 남북연락 사무소 북측소장	북측이 요구한 남북인간띠 잇기 대회와 범민족대회 동시 개최 거부
93. 8. 12. 15:30-15:30	최봉춘 남북연락 사무소 북측소장	이준구 남북연락 사무소 남측소장	범민련 북측본부 백인준 의장 요청 전통문을 통일원장관에게 전달요청

일 시	발 신 명 의	수 신 명 의	내 용 요 지
93. 9. 2. 15:00-15:30	황인성 국무총리	강성산 정무원총리	해분제를 우선 해결하고 특사교환 실무절차 협의실무대표 접촉제의
93. 9. 3. 15:00-15:05	강성산 정무원총리	황인성 국무총리	남북연락사무소 북측 소장 교체통보
93. 9. 6. 14:00-14:25	강성산 정무원총리	황인성 국무총리	남측의 태도표명을 전제로 특사교환 실무대표 접촉일자 수정제의
93. 9. 8. 10:00-10:15	황인성 국무총리	강성산 정무원총리	전제조건없는 특사교환 실무대표 접촉 촉구
93. 10. 2. 10:00-10:15	강성산 정무원총리	황인성 국무총리	실무접촉 일자 수정제의 및 북측실무대표 명단 통보
93. 10. 4. 10:00-10:15	황인성 국무총리	강성산 정무원총리	실무대표접촉 일자 수락 및 남측 실무대표 명단 통보
93. 10. 14. 11:00-11:15	이성택 남북연락 사무소 북측소장	이준구 남북연락 사무소 남측소장	김인식 · 함세환 북송 요구
93. 11. 3. 16:10-16:23	특사교환을 위한 실무대표접촉 북측단장 박영수	특사교환을 위한 실무대표 접촉 남측 수석대표 송영대	국방부장관 발인을 이유로 특사교환 실무대표접촉 무기연기 통보
93. 11. 4. 10:30-10:56	특사교환을 위한 실무대표접촉 남측 수석대표 송영대	특사교환을 위한 실무대표접촉 북측 단장 박영수	실무대표접촉 호응 촉구
93. 12. 21. 10:00-10:05	이준구 남북연락 사무소 남측소장	이성택 남북연락 사무소 북측소장	갈리UN사무총장 편본 점통과 방북 지원 문제 협의 연락관 접촉제의

일 시	발 신 명 의	수 신 명 의	내 용 요 지
93. 12. 22. 13:00-13:06	이성덕 남북연락 사무소 북측소장	이준구 남북연락 사무소 남측소장	갈리유엔사무총장 판 문점통과 문제 협의 연락관 접촉제의 거부
94. 1. 20 10:00-10:17	범민련 북측본부 의장 백인준	이영덕 통일원 장관	문익환 목사 조의 방 문단 서울 파견 관련 연락관 접촉 제의
94. 1. 20 10:40-10:47	범민련 북측본부 의장 백인준	고문익환 목사 장례대책위	문익환 목사 조의 방 문단 서울파견 사실 통보
94. 1. 24 10:00-10:14	남북연락사무소 북측소장 이성덕	남북연락사무소 남측소장 이준구	조선천도교회중앙지도 위 명의 편지전달 요청
94. 2. 1 10:00-10:20	남북연락사무소 남측소장 이준구	남북연락사무소 북측소장 이성덕	천도교중앙총부 교령 의뢰 전통문 전달요청
94. 2. 28 10:00-10:20	남북연락사무소 남측소장 이준구	남북연락사무소 북측소장 이성덕	천도교중앙총부 교령 의뢰 전통문 전달요청
94. 2. 28 09:30-09:42	특사교환실무대표 접촉 남측수석대표 송영대	특사교환실무대표접촉 북측단장 박영수	3. 1 특사교환을 위한 실무대표접촉 제의
94. 3. 1 11:00-11:23	특사교환실무대표 접촉 북측단장 박영수	특사교환실무대표접촉 남측수석대표 송영대	특사교환을 위한 실무 대표접촉 일자 수정 제의
94. 3. 2 09:30-09:42	특사교환실무대표 접촉 남측수석대표 송영대	특사교환실무대표접촉 북측단장 박영수	북측의 수정 제의에 동의
94. 4. 4 14:00-14:03	남북연락사무소 남측소장 이준구	남북연락사무소 북측소장 이성덕	남북연락사무소 남측 연락관 교체 통보

일 시	발 신 명 의	수 신 명 의	내 용 요 지
94. 4. 11 15:55-16:00	남북연락사무소 북측소장 이성덕	남북연락사무소 남측소장 이준구	남조선당국·단체·개 별 인사에게 보내는 편지 전달 연락관 파견
94. 4. 12 15:00-15:06	남북연락사무소 남측소장 이준구	남북연락사무소 북측소장 이성덕	편지접수 거부
94. 4. 20 10:00-10:20	남북연락사무소 북측소장 이성덕	남북연락사무소 남측소장 이준구	법민련 북측본부 의장 이 통일원 장관 및 문익환 목사장래위원 회 앞 편지전달 요청
94. 5. 21 10:00-10:15	남북연락사무소 북측소장 이성덕	남북연락사무소 남측소장 이준구	조평통 서기국 명의 통일원 앞 진화통지문 전달 요청
94. 5. 25 14:00-14:22	남북연락사무소 북측소장 이성덕	남북연락사무소 남측소장 이준구	조평통 명의 통일원 장관 앞 진통문에서 민족대회 소집제이에 호응 촉구
94. 6. 20 10:00-10:15	이영덕 국무총리	강성산 정부원총리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예비접촉 제의
94. 6. 23 14:00-14:05	이영덕 국무총리	강성산 정부원 총리	남북정상회담 예비접 촉 우리측 대표단 명 단 통보
94. 6. 25 09:50-09:55	강성산 정부원 총리	이영덕 국무총리덕	남북정상회담 예비접 촉 북측 대표단 명단 통보
94. 7. 5 10:00-10:10	이홍구 남북정상회담 을 위한 부총리급 예 비접촉 남측 수석대표	김용순 남북최고위급 회담을 위한 부총리급 예비접촉 북측 단장	남북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쌍방 통신 및 경 호 실무자접촉 남측 대표 명단 통보

일 시	발 신 명 의	수 신 명 의	내 용 요 지
94. 7. 6 09:30-09:35	김용순 남북최고위급 회담을 위한 부총리급 예비접촉 북측단장	이홍구 남북정상회담 을 위한 부총리급 예비접촉 남측 수석 대표	남북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쌍방통신 및 경 호 실무자접촉 북측 대표 명단 통보
94. 7. 8 11:00-11:05	남북연락사무소 남측 소장 이준구	남북연락사무소 북측소장 이성덕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부총리급 예비접촉 남 측 수석대표가 북측 단장에게 보내는 편지 전달 통보
94. 7. 9 09:40-09:43	남북연락사무소 북측 소장 이성덕	남북연락사무소 남측소장 이준구	남측 수석대표 명의 서한접수 의사 통보
94. 7. 11 11:00-11:04	남북연락사무소 남측 소장 이준구	남북연락사무소 북측 소장 이성덕	남측 수석대표 명의 서한전달 취소 통보
95. 2. 23 10:00-10:06	남북연락사무소 남측 소장 이준구	남북연락사무소 북측 소장 이성덕	아시아 연대회의 참가 북측대표단의 판문점 통과 및 신변안전보장 수교를 위한 연락관 접촉 제의

3. 남북적십자회담 상설 연락사무소

가. 연혁

제1차 남북적십자 예비회담(71. 9. 20)에서의 합의에 따라 남북 적십자 쌍방은 1971년 9월 22일 판문점 「자유집」과 「관문각」에 남북적십자회담 상설 연락사무소(이하 “적십자 연락사무소”라 한다)를 설치하고 연락사무소간 직통전화 2회선을 개통시켰으며, 제2차 예비회담(71. 9. 29) 합의서에 포함시켜 이를 문서화하였다.

이 합의서에 따르면 적십자 연락사무소는 쌍방 각기 2명의 연락관을 배치하되, 평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정오(12:00)까지 근무하고 일요일은 휴무하기로 하였다.

나. 기능

적십자 연락사무소의 연락업무는 적십자 연락사무소간 직통전화를 이용하여 쌍방 적십자단체 사이의 문서전달이 필요한 경우에는 쌍방 연락관이 직통전화로 사전 연락을 취한 후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에서 만나 전달하기로 하였다. 적십자 연락사무소는 주로 판문점에서 개최되는 각종 남북회담과 접촉, 또는 남북간 왕래 행사에 필요한 절차업무를 협의하고 남북간 서신의 전달과 접수 업무를 수행해 왔다.

다. 전화통지문 교환

남북적십자간 전화통지문은 서울-평양간 적십자 중앙기관 사이의 직통전화를 주로 이용해서 주고 받았다.

그런데 1993년 8월 9일 북한은 북한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대리 명의의 대한 적십자사 총재 앞 전화통지문을 서울-평양간 적십자 중앙기

관간 직통전화가 아닌 판문점 적십자 연락사무소간 직통전화를 통해 보내왔다. 그후 쌍방 적십자간 전화통지문은 적십자 연락사무소간 직통전화를 이용하여 교환하는 것이 상례가 되었다.

그런데 최근 북한은 1995년 5월 31일과 1995년 6월 13일 두차례에 걸쳐 납북된 「제86호 우성호」와 그 선원의 즉각 송환을 요청하는 대한적십자사 총재 명의 전화통지문의 접수를 뚜렷한 이유없이 거부하였다.

판문점 적십자 연락사무소간 직통전화를 이용한 전화통지문의 교환은 지금까지 10건으로 그 현황은 다음과 같다.

남북적십자회담 상설 연락사무소간 전화통지문 교환 현황

1995년 6월말 현재

일 시	발신 명의	수신 명의	내 용 요 지
93. 8. 9. 10:00~10:30	조선적십자회 대리 이성호	대한적십자사 강영훈	총재 KNCC 권호경 총무에게 보내는 전화통지문 전달 요청
93. 11. 24. 10:00~10:18	조선적십자회 대리 이성호	대한적십자사 강영훈	총재 거제도 포로의 유품 송환 요구
93. 12. 3. 10:00~10:08	대한적십자사 강영훈	조선적십자회 대리 이성호	위원장 거제도 포로 유품 및 북 김인서·함세환 송환 요구 거부
93. 12. 7. 15:40~16:10	조선적십자회 대리 이성호	대한적십자사 강영훈	총재 거제도 포로 유품 및 북 김인서·함세환 송환 촉구
94. 4. 19 10:00~10:35	조선적십자회 대리 이성호	대한적십자사 강영훈	총재 김인서·함세환 송환 촉구
94. 4. 22 10:00~10:15	대한적십자사 강영훈	조선적십자회 대리 이성호	위원장 김인서·함세환 송환 거부 및 동진호 송환원과 남북인사 송환 촉구
94. 4. 26 10:00~10:15	조선적십자회 대리 이성호	대한적십자사 강영훈	총재 김인서·함세환 송환 촉구
94. 4. 27 10:00~10:43	조선적십자회 대리 이성호	대한적십자사 강영훈	총재 미전향장기수 김병주 송환의 딸 김지현 송환 촉구
94. 5. 19 09:57~10:29	조선적십자회 대리 이성호	대한적십자사 강영훈	총재 김인서·함세환과 미전향장기수 김병주의 딸 송환 촉구
95. 2. 23 09:57~10:29	조선적십자회 대리 이성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공동대표	아시아 연대회의 참가 북측 대표단의 신변 안전보장각서 요구

4. 남북직통전화

가. 연혁

남북간 전화통신 단절 이후 남북간 직통전화가 재개되기까지는 26년이 걸렸다.²⁵⁾ 1971년 9월 20일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에서 공개회의로 열린 제1차 남북직접자 예비회담에서 남북직통전화를 가설·운영하기로 합의했던 것이다.

대한적십자측이 회담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 판문점 지역에 쌍방의 상설연락사무소의 설치와 연락관 상주, 그리고 쌍방 연락사무소를 연결하는 직통전화의 가설·운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 북한 조선적십자회가 이에 동의함으로써 남북간 직통전화 2회선이 가설되게 되었다.

이러한 합의에 따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내에 있는 「자유의 집」과 「판문각」에 각기 상설 연락사무소를 설치하였으며, 1971년 9월 22일 두 연락사무소간을 잇는 남북직통전화 2회선이 개통되었다.

또한 남북적십자회담이 진행되는 동안 남북간 정치적 대화 문제가 대두되어 고위층의 평양방문을 위한 쌍방 실무자간 비밀 접촉에서 우리측의 제의로 1972년 서울과 평양을 잇는 남북직통전화 1회선이 비밀리에 가설되었다.

25) 남북간의 전화통신은 38선까지 진주한 소련군에 의해 1945년 9월 6일 완전히 차단되었다. 전화통신이 차단된 후 남북간에는 한국전쟁이 발발하기 전까지 이른바 「38 우편물」교환을 통해 제한적인 연락이 이루어졌다.

(조규하·이경문·강성제 공저, 『남북의 대화』, 고려원, 1987, 61쪽)

서울-평양간 남북직통전화 개통 직후 평양을 방문한 우리측 이후락 당시 중앙 정보부장이 김일성과 만나는 자리에서 「남북간 예기치 않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기 위한 남북간 수시 대화통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남북직통전화의 공식화를 제의하였다. 김일성이 이에 동의함으로써 1972년 7월 4일 「남북공동성명」과 함께 「남북직통전화 가설 및 운용에 관한 합의서」가 공표되었다.

또 1972년 8월 11일 적십자 본회담을 위한 제25차 예비회담에서 남북 적십자 중앙기관간(대한적십자사와 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 2회선을 포함한 남북적십자 회담용 전화선 20회선을 개설하기로 합의하였으며, 같은 해 8월 18일 이를 개통 시켰다.

1984년 11월 15일 관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된 제1차 남북경제 회담에서 우리측의 제의에 의해 경제회담용 1회선 가설키로 합의, 같은 해 12월 20일 이를 개통하게 되었다.

이어 1992년 5월 18일 남북연락사무소간 직통전화 2회선이 가설됨으로써 남북간 직통전화회선은 남북조절위 회선 1회선, 적십자회담용 회선 20회선, 남북경제 회담용 1회선, 남북연락사무소 및 적십자 연락사무소간 4회선 등 모두 26회선으로 확대되었다.

남북직통전화는 분야별 회담개최에 따른 절차문제 협의 이외에도 휴전선 총격사건, 남북 어부 및 어선의 송환문제 협의통로로 되기도 하였다.

남북직통전화의 운용시간은 각기 직통전화 설치·운용 합의서의 근거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다. 남북조절위원회 서울 평양간 직통전화는 「남북직통전화 가설 및 운용절차에 관한 합의서」에 따라 매일 오전 9시에서 정오까지와 오후4시에서 오후 8시까지 운용되었다.

적십자 중앙기관간 직통전화는 「남북적십자 중앙기관 사이의 직통전화 운용 절차 합의서」에 따라 매일 오전 10시에서 정오까지와 오후 4시에서

오후 6시까지 운용되다가 직통전화 중단 이후 84년 수제불자 인도인수를 계기로 매일 오전 9시 에서 정오까지와 오후 2시에서 오후 5시까지로 운용시간이 조정되었다.

관분집 「자유의 집」과 「관분각」 사이에 가설된 직십자 연락사부소간 직통전화는 제2차 직십자 예비회담의 합의에 따라 쌍방의 공휴일을 제외한 매일 오전 9시에서 오후 4시까지 운용되고 있다.

남북연락사부소간 직통전화의 운용시간은 「남북연락사부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합의서」에 의해 일요일과 공휴일 및 어느 일방이 통보한 휴부일을 제외한 매일 오전 9시에서 오후 4시까지 운용되고 있다.

나. 운용 중단

남북직통전화는 1973년 8월 28일 북한의 일방적인 대화중단 선언으로 남북대화가 교착상태에 빠진 뒤에도 계속 운용되어오다가 1976년 「8·18 도끼만행 사건」 직후인 같은 해 8월 30일 한직측이 동해에서 고기잡이 작업중 납북된 「제3 신진호」 송환분제를 협의하기 위한 전화통지문을 발송하려 했으나 평양측이 전수를 거부함으로써 사실상 이 날짜로 남북직통전화는 두절되었다.

남북직통전화의 두절 상태는 약 3년 4개월간 지속되었다. 남북조절위원회 서울측과 대한직십자사는 남북직통전화 불통기간중에도 매일 아침 남북간 합의서가 정한 시각에 북한측을 호출하였으나 북한측은 응답하지 않았다.

북한측은 1980년 1월 11일 오후 4시 평양방송을 통해 중앙통신사 명의로 「최근 평양과 서울 사이의 직통전화로 남조선측에 거듭 신호를 보냈으나 상대측에서 나오지 않은 관계로 통화를 하지 못했다。」고 사실과

상반되는 주장을 하면서 「1980년 1월 11일 오후 6시를 기해 직통전화를 새롭게 개통하겠다.」고 통보해왔다.

남북조절위원회 서울측과 대한적십자사는 이 같은 북한측의 방송 보도를 접하고 1980년 1월 11일 오후 6시에 북한측의 호출 신호를 기다렸으나, 북한측은 「남북 직통전화 가설 및 운용에 관한 합의서」와 「남북적십자 중앙기관 사이의 직통전화 운용절차 합의서」에 정한 전화운용 종료 시간인 오후 8시를 넘긴 오후 8시 7분 에서야 남북조절위원회 회선으로 호출신호를 보내왔다.

북한측의 호출에 남북조절위원회 서울측 통화자가 신호에 응답하자 북한측 호출자는 자신을 「평화통일위원회 직원」이라고 밝히면서 서울측 통화자에게 통화 내용의 필기를 요구하였다. 이에 서울측 통화자는 「이 회선을 통한 통화는 남북 직통전화 가설 및 운용에 관한 합의서에 따라 남북조절위원회의 지정된 통화자만 이 가능하다.」고 지적하고 합당한 통화자가 나올 것을 요구하였으나 북측은 이를 거부하고 8시 12분 통화를 일방적으로 중단시켰다.

중단된 남북직통전화는 1980년 2월 6일 남북총리회담 절차문제 협의를 위한 제1차 실무대표접촉에서 쌍방이 적십자회담용 2회선을 개통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재운용 되었다. 이때 개통된 2회선은 총리회담 실무대표들간에 사용되었다. 우리측이 남북 조절위원회 회선의 재개를 시도하였으나 북측이 불응함으로써 남북조절위원회 회선은 사실상 기능이 정지되었다.

남북총리회담을 계기로 재개된 남북직통전화는 제11차 실무대표 접촉을 앞둔 1980년 9월 24일 북한이 방송을 통해 일방적으로 실무접촉 중단을 선언한 그 다음 날인 1980년 9월 25일 북측에 의해 단절되고 말았다.

이와 같은 우여곡절 끝에 남북직통전화는 1984년 9월 18일 수재물자인도·인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남북적십자 실무접촉에서 쌍방이 1984

년 9월 29일부터 적십자 회담용 회선을 재개하기로 합의함으로써 현재까지 이어져오고 있다.

남북직통전화의 구성연혁은 아래의 표와 같다.

남북직통전화 개설 연혁

- 71. 9. 20 남북적십자회담 제1차 예비회담에서 남북적십자회담 상설 연락사무소간 직통전화 2회선을 개설하기로 합의
- 71. 9. 22 적십자회담 상설 연락사무소간(남:「자유의 집」, 북:「판문」각) 직통전화 2회선 개통
- 72. 4. 29 이후락 중앙정보부 부장실과 김영주 조선로동당 조직지도부 부장실간 직통전화 1회선 비밀 개통
- 72. 7. 4 남북직통전화기설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 공표로 남북조절위 회선 공식화
- 72. 8. 11 남북적십자 본회담을 위한 20회선 가설 합의
- 72. 8. 25 남북적십자 중앙기관간 직통전화 2회선 개통 및 서울 평양간 회담용 18회선 가설
- 76. 8. 30 남북직통전화 두절
- 80. 2. 7 남북직통전화 일부 재개
※ 남북총리회담을 위한 실무대표접촉 기간중 적십자회담용 회선 2회선 재개. 그러나 우리측이 남북조절위원회 회선 재개를 시도하였으나 북측은 불응

- 80. 9. 25 남북직통전화 운용 재중단
- 84. 9. 29 남북직통전화 운용 재개
※ 북측의 수재물자 인도인수시 적십자회선 2회선 재개
- 84. 12. 20 남북경제회담 1회선 개통
- 92. 5. 18 남북연락사무소간 직통전화 2회선 개통

다. 운용 현황

남북직통전화는 현재 26회선이 가설되어 있다. 이를 회선내역과 시기 별로 보면 남북적십자회담 연락사무소간 직통전화 2회선이 71년 9월, 남북조절위용 1회선이 72년 4월, 남북적십자회담용 회선 18회선과 적십자 중앙기관간 2회선이 72년 8월, 남북경제회담용 1회선이 84년 11월, 남북 연락사무소간 직통전화 2회선이 92년 5월 각기 개통되었다.

26회선중 4회선은 판문점내 남북연락사무소간 2회선과 남북적십자회담 상설 연락사무소간 2회선이며, 나머지 22회선은 서울과 평양간 회선이다. 남북간 회담이 서울 또는 평양에서 개최되는 경우 회담지원용 18회선을 사용해 왔다.

회담지원용 회선 18회선중 2회선은 「서울기계실」과 「평양기계실」간 시험회선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두 기계실간에는 매일 아침 9시 시험호출을 주고 받고 있다.

또한 남북연락사무소와 남북적십자 상설 연락사무소간 직통전화는 매일 아침 9시와 오후 4시에 시험통화를 하고 있다. 단 토요일은 아침 9시와 정오에 시험통화를 하며, 공휴일과 일요일 및 어느 일방이 통보한 휴

부일에는 통화불 하지 않는다.

남북직통전화 회선 구성 현황

서울-평양간 회선	관분점 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남북조절위선 : 1회선○ 남북경제회담선 : 1회선○ 직십자 중앙기관선 : 2회선○ 회답지원용 회선 : 18회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남북연락사부소간 : 2회선○ 직십자 상설 연락사무소간 : 2회선
계 : 22회선	계 : 4회선

5. 판문점 통과 남북 왕래

가. 개관

판문점은 1945년 한반도의 허리를 자르는 38선이 설정된 이후 남북을 왕래하는 통로로 이용되어 1948년 10월 평양에서 개최된 남북제정당 사회단체 연석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김구, 김규식 선생 일행이 1948년 4월 20일 판문점을 통해 서울과 평양을 오고 간 적이 있다.

특히 휴전협정 체결 이후에는 판문점은 군사분계선을 통과하여 남북을 왕래하는 유일한 육상 통로로 활용되어 왔다. 휴전협정상에는 중감위 관련 인원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군사분계선 월선이 금지되어 있으며, 군사분계선을 월선하기 위해서는 상대측 관할 사령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970년대에 들면서 남북회담 쌍방 대표들이 군사분계선을 통과하여 서울과 평양을 왕래하기 시작하였다. 남북적십자회담과 남북조절위원회 대표단이 판문점을 통해 남북을 왕래하게 된 것이다.

군정위 유엔사측은 판문점에서 개최되는 남북회담이나 남북 당국이 합의하는 행사와 또는 인원의 군사분계선 통과는 허용한다는 방침을 견지하고 있다.

지금까지 판문점을 통해 남북을 왕래한 인원은 주로 남북회담 대표들이 가장 많았으며, 최근 들어 외국인의 남북왕래가 몇 차례 있었다.

판문점을 통한 군사분계선 월선 사례 중 특기할 만한 것은 1989년 8월 15일 임수경학생과 문규현 신부가 군정위 유엔사측의 월선 불허통보에도 불구하고 군사분계선을 통과하여 남쪽으로 귀환한 일이다.

군정위 북측은 임수경, 문규현 두 사람의 군사분계선 통과 허용을 유엔사측에 요구하여 왔으나, 군정위 유엔사측은 남북 당국간 합의가 없는

인원의 군사분계선 통과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에 따라 이를 불허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수경 학생과 문규현 신부는 북한측의 방조하에 판문점 군정위 회담장 구역의 군사분계선을 넘어 남쪽으로 걸어내려 왔다.

나. 내국인의 남북왕래

남북 주민을 포함한 양측 내국인의 판문점 통과 남북왕래는 주로 남북 회담 관련 인원이 주를 이루었다. 1970년도 이후 판문점을 통과하여 남북을 왕래한 사례는 아래와 같다.

내국인의 판문점 통과 남북왕래

순번	연월일	왕래사유
1	72. 3. 28~ 3. 31	정홍진 평양 방문
2	72. 4. 19~ 4. 21	김택현 서울 방문
3	72. 5. 2~ 5. 5	이후락 중앙정보부장 평양 방문
4	72. 5. 29~ 6. 1	박성철 제2부수상 서울 방문
5	72. 8. 29~ 9. 2	제1차 남북적십자회담 참가 우리측대표단 평양 방문
6	72. 9. 12~ 9. 16	제2차 남북적십자회담 참가 북측대표단 서울 방문
7	72. 10. 23~ 10. 26	제3차 남북적십자회담 참가 우리측대표단 평양 방문
8	72. 11. 2~ 11. 4	제2차 남북조절위 공동위원장회의 참가 우리측위원장 평양 방문
9	72. 11. 22~ 11. 24	제4차 남북적십자회담 참가 북측대표단 서울 방문

순번	연 월 일	왕 래 사 유
10	72. 11. 30~12. 2	제3차 남북조절위 공동위원장회의 참가 북측 위원장 서울 방문
11	73. 3. 14~ 3. 16	제2차 남북조절위회의 참가 우리측대표단 평 양 방문
12	73. 3. 20~ 3. 23	제5차 남북적십자회담 참가 우리측대표단 평 양 방문
13	73. 5. 8~ 5. 11	제6차 남북적십자회담 참가 북측대표단 서울 방문
14	73. 6. 12~ 6. 14	제3차 남북조절위회의 참가 북측대표단 서울 방문
15	73. 7. 10~ 7. 13	제7차 남북적십자회담 참가 우리측대표단 평 양 방문
16	85. 5. 27~ 5. 30	제8차 남북적십자회담 참가 북측대표단 서울 방문
17	85. 8. 26~ 8. 29	제9차 남북적십자회담 참가 우리측대표단 평 양 방문
18	85. 9. 10~ 9. 12	제1차 고향방문단 및 예술공연단 교환관련 공 연장 사전답사 인원 서울·평양 교환 방문
19	85. 9. 20~ 9. 23	제1차 고향방문단 및 예술공연단 서울 평양 교환방문
20	85. 12. 2~12. 5	제10차 적십자회담 참가 북측대표단 서울 방문
21	89. 8. 15	임수경·문규현 불법적으로 군사분계선 월선 귀환
22	90. 9. 4~ 9. 7	제1차 남북고위급회담참가 북측대표단 서울 방문
23	90. 10. 13	북경 아주경기대회 참가 우리 대표단 평양 남 북통일축구에 참가후 귀환
24	90. 10. 14~10. 24	범민족통일음악회 서울전통음악연주단 평양 방문

순번	연 월 일	왕 래 사 유
25	90. 10. 16~10. 19	제2차 남북고위급회담참가 우리측 대표단 평양 방문
26	90. 10. 21~10. 25	남북통일축구참가 북측선수단 서울 방문
27	90. 12. 8~12. 13	남북통일음악회 평양민족음악단 서울 방문
28	90. 12. 11~12. 14	제3차 남북고위급회담 참가 북측대표단 서울 방문
29	91. 4. 27~ 5. 5	85차 IPU 평양총회 참가 우리측 대표단 평양 방문
30	91. 5. 6~ 5. 9	제6회 세계청소년 축구선수권대회 준비 서울 평가전 참가 북측 선수단 서울 방문
31	91. 5. 10~ 5. 13	제6회 세계청소년 축구선수권대회준비 평양 평가전 참가 우리측 선수단 평양 방문
32	91. 6. 29	제6회 세계청소년 축구선수권 대회 참가 코리아팀 우리측 선수단 귀환
33	91. 10. 22~10. 25	제4차 남북고위급회담 참가 우리측대표단 평양 방문
34	91. 11. 25~11. 29	남북여성세미나 참가 북측 대표단 서울 방문
35	91. 12. 10~12. 13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 참가 북측대표단 서울 방문
36	92. 2. 18~2. 21	제6차 남북고위급회담 참가 우리측대표단 평양 방문
37	92. 2. 26	UNDP주최 두만강지역 개발회의 참가 북측대표단 서울 방문(제3국 출국)
38	92. 5. 5~ 5. 8	제7차 남북고위급회담 참가 북측대표단 서울 방문
39	92. 7. 19~ 7. 25	북한 김달현 부총리 서울 방문
40	92. 9. 1~ 9. 6	제3차 평양여성토론회 참가 우리측 여성대표단 평양방문
41	92. 9. 15~ 9. 18	제8차 남북고위급회담 우리측대표단 평양 방문
42	92. 10. 6~10. 9	남포조사단 평양 방문

다. 외국인의 남북왕래

외국인이 판문점 군사분계선을 통과하여 남북을 오고간 사례는 1990년도 이후 들어 증가하고 있다. 특히 미·북 합의에 따라 워싱턴과 평양에 쌍방 연락사무소가 설치될 경우 판문점을 통한 외국인의 남북왕래가 많이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의 판문점 통과 남북왕래

순번	연월일	사	례
1	66. 4. 23	페트리 중국주재 스웨덴 대사, 방한하여 중감위 공산측 캠프 방문 후 중국으로 귀임	
2	84. 11. 23	평양주재 소련대사관 통역원 마투조크 판문점 관광도중 판문점 군사분계선을 넘어 미국 망명 요청	
3	93. 10. 12	미국하원 야태소위 애커먼 위원장 판문점을 통해 서울을 방문하고 제3국으로 출국	
4	93. 12. 24	갈리유엔사무총장 판문점을 통해 평양을 방문하고 제3국으로 출국	
5	94. 6. 15~6. 18	카터 전 미국 대통령 방북 후 귀환	
6	94. 12. 12	미국 상원의원 2명(사이몬, 머코스키) 북경에서 방북 후 판문점 통과 방한	
7	94. 12. 22	미국 하원의원 리차드슨 북경에서 방북후 판문점 통과 방한	
8	94. 12 28~12. 30	미 국무부 부차관보 허바드 방북후 귀환	

6. 정전협정

가. 개관

한국전쟁의 휴전문제는 1950년 12월 12일 아시아와 이랍의 13개국이 국제 연합(UN) 정치위원회에 한국전쟁의 휴전을 위한 3인위원회 설치안을 제출한 것이 가결되어 3인 정전위원회가 발족되면서 처음으로 논의가 공식화되었다.

국제연합의 휴전안에 대해 소련과 중공이 반대하여 최초의 한국휴전 논의는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다. 당시 한국에서는 38도선 휴전설이 유포되자 「완전 통일 없는 휴전반대」 입장을 천명하고 휴전반대 여론이 들끓었다.

그후 1951년 6월 23일 소련의 국제연합 대표 말리크가 방송을 통해 한국전쟁의 휴전안에 호응해왔다. 이러한 말리크의 제안에 대해 미국과 한국전 참전 16개국 대표들은 워싱턴에서 회합을 가지고, 커크 주소련 미국대사를 통해 소련정부의 실명을 요구하였다.

1951년 6월 28일 소련 외상 그로미코는 소련주재 미국 대사를 불러, 한국전의 휴전분제는 국제연합군과 대한민국 군사대표들과 북한 및 중국 의용군 군사대표들이 교섭할 것과, 휴전협상은 순전히 군사적 문제에 국한하며 어떠한 정치적, 영토적 문제를 포함시키지 않고 전쟁 재개 방지를 보장하는 문제를 토의한다고 설명했다.

트루먼 미국 대통령은 한국정부의 38도선 휴전반대 주장이 완강함에도 불구하고 1951년 6월 29일 리지웨이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에게 휴전협상의 추진을 지시하였다. 이에 리지웨이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은 1951년 6월 30일 방송을 통해 「북한 원산항내의 덴마크 병원선 유탄관디아

6. 정전협정

가. 개관

한국전쟁의 휴전문제는 1950년 12월 12일 아시아와 이랍의 13개국이 국제 연합(UN) 정치위원회에 한국전쟁의 휴전을 위한 3인위원회 설치안을 제출한 것이 가결되어 3인 정전위원회가 발족되면서 처음으로 논의가 공식화되었다.

국제연합의 휴전안에 대해 소련과 중공이 반대하여 최초의 한국휴전 논의는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다. 당시 한국에서는 38도선 휴전설이 유포되자 「완전 통일 없는 휴전반대」 입장을 천명하고 휴전반대 여론이 들끓었다.

그후 1951년 6월 23일 소련의 국제연합 대표 말리크가 방송을 통해 한국전쟁의 휴전안에 호응해왔다. 이러한 말리크의 제안에 대해 미국과 한국전 참전 16개국 대표들은 워싱턴에서 회합을 가지고, 커크 주소련 미국대사를 통해 소련정부의 실명을 요구하였다.

1951년 6월 28일 소련 외상 그로미코는 소련주재 미국 대사를 불러, 한국전의 휴전분제는 국제연합군과 대한민국 군사대표들과 북한 및 중국 의용군 군사대표들이 교섭할 것과, 휴전협상은 순전히 군사적 문제에 국한하며 어떠한 정치적, 영토적 문제를 포함시키지 않고 전쟁 재개 방지를 보장하는 문제를 토의한다고 설명했다.

트루먼 미국 대통령은 한국정부의 38도선 휴전반대 주장이 완강함에도 불구하고 1951년 6월 29일 리지웨이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에게 휴전협상의 추진을 지시하였다. 이에 리지웨이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은 1951년 6월 30일 방송을 통해 「북한 원산항내의 덴마크 병원선 유탄관디아

(Jutlandia)상에서 휴전협상 회의를 개최할 것」을 제의하였다.

공산측은 1951년 7월 1일 김일성과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 팡덕회(彭德懷) 공동 명의로 「38도선상에 있는 개성(開城)에서 회담을 개최하자」고 북경방송을 통해 호응해 왔다. 공산측이 회담장소로 제의해 온 개성은 고려 왕조의 수도였고 또 1951년 7월 현재 공산군이 장악하고 있어서 개성에서의 회담은 공산측에게 「정치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결정적인 이익」을 줄 위험성이 있었다. 결국 미국 트루먼 대통령은 회담의 시일 문제는 조정하되, 장소문제는 양보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리지웨이 장군은 장소문제로 개성을 수용하되 시일은 다시 결정하기로 하고 예비회담부터 열자고 제의, 공산측이 호응함에 따라 1951년 7월 8일 개성 「내봉장」에서 예비회담이 개최되었다.²⁷⁾이 예비회담에서 쌍방은 아래 5개항에 합의를 보았다.

- (1) 본회담 개최일자: 1951년 7월 10일
- (2) 장소: 개성 「내봉장」
- (3) 대표단 인원: 73명
- (4) 대표단 사용 표지: 백기
- (5) 양측의 대표단 명단 교환

이렇게 시작된 휴전협상 과정에서 1951년 7월 10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본회의 159회를 비롯 765회에 이르는 각종회의가 개최되었다. 쌍방은 토의 의제와 기자단의 개성 출입 문제, 외국 군대 철수 문제 등을 둘러싸고 설전을 벌이다가 1951년 7월 26일 아래와 같이 「5개항의 의사 일정」에 합의하였다.

27) 김학준, “한국정전협정의 성립과정”, 『동일논총』(1986년 12월), 177쪽

의제 1항 : 의제의 채택

의제 2항 : 군사분계선 및 비무장지대 설정

의제 3항 : 휴전감시 방법 및 기능 분제

의제 4항 : 포로교환 분제

의제 5항 : 쌍방 각국 정부에 관한 권고

「군사분계선 설정」분제에 대해 국제연합군측은 쌍방 접촉선을, 공산측은 38도선을 주장하였다. 국제연합군측은 앞으로 체결될 정전협정이 지정하는 시간에 쌍방은 이 분계선으로부터 2 킬로미터씩 철수하여 그 지역을 정전 동안 비무장 지대로 할 것을 제의, 공산측이 이를 수락했다. 군사분계선 분제는 1952년 1월 27일 타결되었다.²⁸⁾

「휴전감시 방법 및 기능」분제에 대해 쌍방은 전부행위 중지 시점, 휴전감시기구 설치, 협정조인후 무력 증강 금지, 합동 감시단의 남북통행 방법 등을 둘러싸고 대립하였다. 1952년 5월 2일 서로의 입장이 아래와 같이 절충되었다.

휴전협정 발효 후 24시간 이내에 적대행위 중지, 쌍방 무장부대 협정 발효후 72시간 이내 철수, 쌍방 무장부대는 휴전 협정 발효 후 5일 이내 상대방 연안에서 철수, 스위스·스웨덴과 폴란드·체코슬로바키아로 중립국감시위원회 구성 등이다.

「쌍방 각국 정부에 관한 권고」에 대해 공산측은 휴전협정 조인 후 3개월 이내에 정치회의를 개최하자고 제의하였으며, 국제연합군측은 이 정치회의에 한국이 참가토록 하며 토의 의제는 한국 분제에 국한한다는 조건을 전제로 동의함으로써 1952년 2월 9일 타결되었다.²⁹⁾

28) 김학준, “한국정전협정의 성립과정”, 『통일논총』(1986년 12월), 187쪽

29) 국방정보본부, 『군사정전위원회 편람』, (서울 : 광진문화사, 1986), 23쪽

그러나 「포로교환」문제는 쉽게 타결점을 찾지 못했다. 1951년 12월 11일 「포로교환 합동분과위원회」가 설치되었으나 국제연합군측의 자유송환 방식과 공산측의 강제송환 방식을 둘러싸고 이 문제는 교착상태에 빠졌다. 이 문제는 국제 연합(UN) 총회에까지 회부되어 인도의 타협안이 채택되었으나 공산측은 이를 거부 하였다. 이러한 정황속에서도 쌍방은 부상병의 우선 송환에 합의하여 1953년 4월 20일부터 같은 해 5월 30일까지 11차에 걸쳐 부상포로의 송환이 이루어졌다.

부상병의 송환 이후 1953년 5월 25일 국제연합군측이 송환불원(送還不願) 포로 석방 주장을 철회하였다. 이에 대해 한국정부는 강력히 반발하였고 급기야 1953년 6월 18일 반공포로를 일방적으로 석방하게 이르렀다. 이 때 석방된 반공포로는 수용된 반공포로의 약 80%에 해당하는 26,666명이었다.

한국정부의 전격적인 반공포로 석방조치로 인해 미국은 1953년 7월 12일 한국정부가 휴전의 조건의 하나로 요구해오던 한미상호방위 조약 체결에 동의하였다.³⁰⁾ 공산측은 처음에는 1953년 6월 20일 부터 휴전협정 조인식장 건축 작업을 중단하고 최악의 경우 전면전을 재개할 수 있다고 시위를 하였으나, 휴전회담은 1953년 7월 10일에 재개되어 1953년 7월 20일에는 군사정전의 일자 확정 등 휴전협정의 마무리 작업이 이루어졌다.

이리하여 1953년 7월 27일 오전 10시 판문점 정전협정 조인식장에서 국제연합군측 수석대표 해리슨 중장과 공산측 수석대표 남일 대장이 만나 한글, 영어, 중국어로 된 정전협정 문본 9통과 부분 9통에 서명하여

30) 1953년 8월 8일 딜레스 미국 국무부 장관이 방한하여 변영태 외무부 장관과 한미방위조약에 가조인하였으며, 1953년 10월 1일 변영태 외무부 장관이 방미하여 이 조약에 정식 조인하였다.

교환하였다. 이로부터 3시간뒤 분산극장에서 국제연합군 총사령관 클라크 미군 대장이 한국군 최석신 소장과 참전 16국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전협정 확인·서명을 마쳤다. 공산측은 김일성과 썬팅회가 평양에서 확인·서명하였다.

휴전협정의 정식 명칭은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을 일방으로 하고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및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을 다른 일방으로 하는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이다.³¹⁾

휴전협정은 서언과 5개조 63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언」에서 휴전협정은 오직 군사적 성질에 국한되며 한국에서의 교전 쌍방에만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 1조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에서 확정된 군사분계선으로부터 각기 2킬로미터씩 후퇴하여 비무장지대를 설정하고, 비무장지대내와 비무장지대를 향한 적대행위 금지, 군사정전위원회의 허가없이 군사분계선 월선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제2조 「정화(停火) 및 정전의 구체적 조치」에서는 한국 경외(境外)로부터 군사인원의 증원과 작전비행기, 장갑 차량 등 부기의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또 정전 협정의 실시를 감독하며, 정전협정 위반사건의 협의·처리를 위해 각기 5명의 고급장교로 구성되는 군사정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밑에 비서처와 공동감시 소조를 두고 있다.

또한 중립국감독위원회는 공산측의 체코슬로바키아와 폴란드, 국제연합군측의 스위스와 스웨덴으로 구성되었다.³²⁾ 중감위는 한국 경외로부터

31) 북한에서는 정전협정의 정식 명칭을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및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을 일방으로 하고 인함국군 사령관을 다른 일방으로 하는 조선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으로 쓰고 있다.

32) 여기서 중립국이란 그 전부대가 한국전쟁에 참가하지 않는 국가를 뜻한다.

군사인원의 증원 금지, 작전물자의 반입 금지와 군정위 일방 또는 군정 위 일방의 수석대표가 요청한 비무장 지대 밖에서의 정전협정 위반 사건을 조사하는 것을 주요 임무로 하고 있다. 중감위는 이러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중립국감독소조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조는 「전쟁포로에 관한 조치」로서 정전협정 조인 전 쌍방이 합의한 전쟁포로의 석방과 교환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전쟁포로의 교환 지점은 판문점으로 하고 국제연합군 참전 16국의 적십자 대표와 북한 및 중국의 적십자대표로 공동적십자 소조를 구성하고, 전쟁포로 송환 문제를 관할하기 위해 전쟁포로 송환위원회를 설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4조는 「쌍방 관계정부들에의 건의」로 한국으로부터의 모든 외군(外軍) 철수와 한국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정전협정 조인 후 3개월내에 한급 높은 정치회의를 소집할 것을 못박고 있다.

제5조 「부칙」은 정전협정의 수정과 증보, 효력 발생 및 효력 유효에 관해 명시하고 있다. 정전협정의 수정과 증보는 쌍방 사령관의 상호 합의를 거쳐야 하며, 일체의 규정은 1953년 7월 27일 22시부터 효력이 발생하여 다른 협정의 규정에 의해 교체될 때까지 계속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다.

휴전협정이 발효함에 따라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DMZ)가 설정되었다. 비무장지대는 폭 4 킬로미터, 길이 250 킬로미터로 한반도의 허리를 서해안에서 동해안까지 가로지르고 있다.

또 휴전의 구체적 조치로 군사정전위원회와 중립국 감독위원회 등 정전협정 기구들이 설치 운영되었다.

한국전의 전쟁포로는 1953년 8월 1일부터 같은 해 9월 1일까지 한달 동안 교환되었다. 국제연합군측에서 공산측 전쟁포로를 82,493명을, 공산측에서는 국제연합군측 전쟁포로를 13,444명을 송환하였다.

그리고 정전협정 제4조에 따라 판문점에서 한글 높은 정치회의 예비회담이 1953년 10월 26일 개최되었으나 1954년 1월 18일 결렬되었다. 곧 이어 제네바에서 정치회의가 개최되었으나 역시 서로의 상반된 입장만을 확인한 채 결렬되었다.

정전협정에 조인한 국제연합군측과 공산측은 서로 상대방을 향해 「정전협정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협정의 모든 조항을 난폭하게 위반하였다」고 비난하였다. 실제로 정전협정의 많은 조항들이 사문화되었다. 최근 들어 북한은 군사정전위원회에서 철수와 중감위 공산측 대표단을 축출시킴으로써 정전협정이 존재의 위기에 몰린 것은 사실이나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만은 아직 쌍방이 준수해오고 있다.

나. 정전협정 기구

정전협정은 협정의 시행과 위반사항 감시를 위해 군사정전위원회와 중립국감독 위원회라는 양대 기구를 두고 있다.

(1) 군사정전위원회

군사정전위원회(Military Armistice Commission)는 10명의 고급장교로 구성되며, 그 중의 5명은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이, 나머지 5명은 북한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이 공동으로 임명한다.

군정위의 전반적 임무는 정전협정을 준수하며, 정전협정 위반사건을 협의의 처리하는 것이다. 군정위는 본부를 판문점에 두고, 전쟁포로송환위원회, 실향사민귀향협조위원회를 감독·지도한다. 또한 적대 쌍방 사령관 사이의 연락을 담당하며, 중립국감독위원회에 비무장지대 이외의 지역에서 특별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군정위는 쌍방사령관에게 정전협정

의 수정 증보에 대한 건의를 제출할 수 있다.

「군정위 본회의」는 주요한 휴전협정 위반사항을 협의·처리하기 위해 소집한다. 군정위 본회의는 제459차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하여 북측이 군정위 유엔사측 수석 대표의 한국장성 임명(91. 3. 25)을 이유로 제460차 군정위 본회의 소집(92. 5. 29)에 불응함으로써 중단되었다.

「비서장 회의」는 비교적 경미한 휴전협정 위반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소집한다. 그러나 제 508차 비서장회의(92. 9. 24) 이후 북측의 불응으로 공식적으로는 전혀 소집되지 않고 있다.

「공동일직장교 회의」는 군정위 상호간 연락체계를 24시간 유지하기 위해 설치된 공동일직장교간 회의로써 군정위 쌍방의 행정사항 전달 등을 목적으로 수시로 개최되었다.

「언어장교 회의」는 군정위 본회의나 비서장 회의 등 주요 회의의 회의록이나 합의서의 언어 문안 통일을 협의하기 위해 소집된다.

「경비장교 회의」는 공동경비구역의 쌍방 경비장교간의 회의로 공동경비구역내 긴장완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필요시 소집된다.

그런데 북한이 1994년 4월 28일 군정위에서 철수하고, 1994년 12월 15일 군정위 중국측 대표단도 철수함으로써 군정위는 「반쪽의 기구」로 전락, 사실상 정전협정의 시행기구로서의 기능이 정지되었다.

(2) 중립국감독위원회

중립국감독위원회(Neutral Nations Supervisory Commission)는 군사정전위원회와 함께 정전협정의 양대기구중의 하나로 정전협정 제37항에 따라 4명의 고급장교로 구성되는데, 2명은 국제연합군측 총사령관이 지명한 국가(스위스, 스웨덴)가, 다른 2명은 조중측 사령관이 공동으로 지명한 국가(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가 각각 임명되었다.

중감위의 주요 임무는 아래와 같다.

- 한국 경외로부터 증원되는 군사인원과 작전물자의 반입에 대한 감독과 시찰 실시
- 비무장지대 이외의 지역에서 발생한 정전협정 위반사항에 대한 감시와 시찰 활동
- 중립국 시찰소조 편성·운영 및 시찰소조의 활동 결과를 군정위에 보고

중립국 시찰소조는 1953년 8월 19일 조직되어 활동을 개시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공산측 중감위 체코슬로바키아, 폴란드 요원들과 결탁하여 남한 내에서 이들이 간첩 행위를 자행하도록 사주하였다. 또한 북한지역 내 중감위 스위스·스웨덴 요원들의 활동을 봉쇄한 가운데 중립국 시찰소조가 주재하지 않는 출입항을 통해 중국과 소련으로부터 각종 무기와 장비들을 반입, 정전협정의 주요 항목을 위반함으로써 중립국 시찰소조 운영의 불필요성이 제기되었다.³³⁾

1955년 4월 13일 제189차 중감위회의에서 스웨덴 대표는 중립국 시찰소조의 철수를 제의하였으며 군정위 유엔사측은 1956년 5월 31일 제70차 군정위 본회의에서 중립국 시찰소조의 활동 중지를 선언하였다. 이에 1956년 6월 9일 중립국시찰소조는 활동을 중지하고 쌍방 군사통제지역내 5개 출입항에서 판문점으로 철수하였다.

중립국감독위원회는 중립국감시소조의 활동 중지 이후에도 정전협정 기구중의 하나로 활동을 계속하면서 매주 화요일 오전 11시에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에서 정례적으로 회의를 개최해왔다.

33) 국방정보본부, 『군사정전위원회편람』, (서울 : 공인공제회 제1인쇄사업소, 1993), 396쪽.

그런데 1985년 이후 동구와 소련 등 공산권의 몰락과 함께 중감위 체코·폴란드가 북한이 참관을 거부하였던 팀스피리트 훈련에 참관단을 파견하는 등으로 북한과의 불협화음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북한은 1991년 3월 25일 군정위 유엔사측의 수석대표가 한국군 장성으로 임명되자 중감위가 이를 막지 못했다는 억지 이유를 들면서 중감위 무용론을 주장하였다.

북한의 중감위에 대한 적대적인 태도는 이후 1991년 5월 22일 대중감위 공식활동 중단을 통보하고 중감위가 군정위에 보고하는 중감위 월간 보고서의 접수를 거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북한은 1991년 8월 28일 중감위 요원의 평양 방문을 금지시켰으며 1992년 1월 1일부터 체코슬로바키아 연방공화국이 체코와 슬로바키아 공화국으로 분리되자 중감위 체코 슬로바키아 대표단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체코 공화국의 중감위 자격을 부인, 1993년 4월 3일 중감위 체코슬로바키아 대표단을 판문점에서 철수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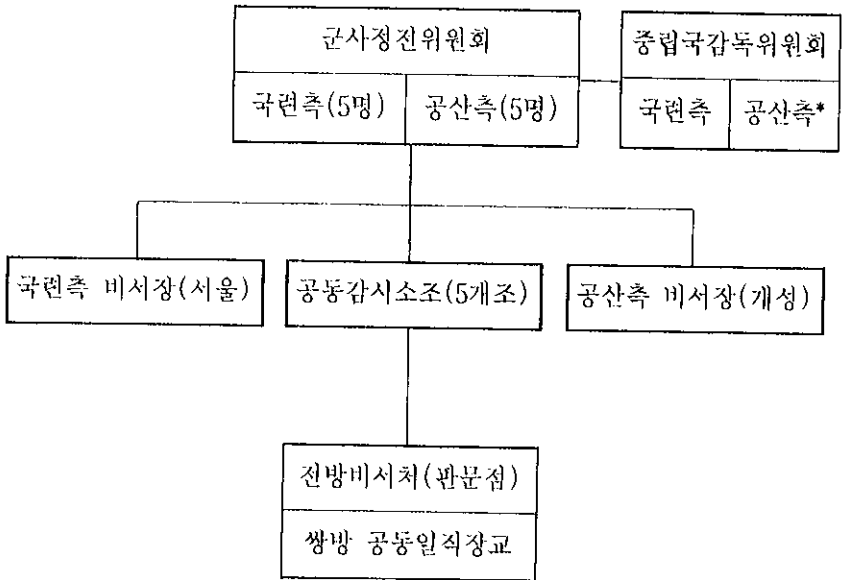
북한은 중감위 체코슬로바키아 대표단의 철수에 이어 중감위 폴란드 대표단도 축출하였다. 북한은 외교부 명의 서한을 폴란드 정부에 보내 중감위 폴란드 대표단의 자진 철수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폴란드 정부는 중감위는 한국정전협정이라는 국제협약에 의해 설립된 기관으로 정전협정 쌍방의 합의에 의해서만 폐지될 수 있다며 중감위 고수 입장을 밝혔다. 그러자 북한은 1995년 2월 28일까지 폴란드 대표단이 판문점에서 철수할 것을 최후 통첩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폴란드 대표단을 비무장지대내의 불법 외국인으로 체포하겠다고 위협하였다. 이에 따라 중감위 폴란드 대표단은 1995년 2월 28일 판문점에서 철수하였다.

그러나 폴란드 정부는 여전히 중감위 지위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중감위 폴란드 대표가 서울을 방문하여 스위스, 스웨덴 대표단과 함께 중감위 기능을 유지할 것을 공동으로 천명하였다.

중감위 3국 대표들은 폴란드 대표단이 참석하지 않는 중감위 회의에서는 중감위와 관련한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기로 합의하였으며, 폴란드 대표단은 바르샤바에 주재하되 필요시 방한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한국전 교전 쌍방의 고급장교로 구성되는 군정위가 사실상 마비된 상태에서 중감위의 기능도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다.

정전협정 기구



다. 북한의 정전협정 무실화 기도

한국정전협정은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쌍방간 무력충돌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제도적 장치이다. 정전협정의 주요 내용은 군사분계선을 획정하고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남북으로 각기 2 킬로미터씩 비무장지대를 설치하여 비무장지대 내에서와 비무장지대를 향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금지 하고 있다. 이러한 일체의 적대행위 금지의 효력은 정전협정이 다른 협정으로 교체되기까지는 유효한 것이다.

그러나 정전협정은 한반도의 군사적 문제만을 규정하고 있다. 즉, 한반도의 분단 해소와 같은 정치적 문제는 「보다 급이 높은 정치회의」에서 해결할 것을 위임하고 있다. 이러한 정전협정의 특성 때문에 정전협정은 현상을 유지하는 것만을 목적으로 한다. 즉 한국전쟁의 원인 해결이나 남북통일을 규정하는 장치가 아닌 것이다.

정전협정 체결 이후 정전협정에 따라 판문점에서 개최된 정치회의에 비회담과 제네바 정치회의도 서로 상반된 주장만을 되풀이하여 결렬되고 말았다.

북한은 정전상태를 평화상태로 전환하기 위해 정전협정을 평화 협정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북한은 1974년 3월 25일 제5기 최고인민회의 제3차 회의에서 북·미 평화협정 체결을 제의하기 전까지는 남북한 평화협정체결을 주장하였다. 물론 남북한 평화협정 체결의 전제조건은 모든 외국 군대의 철수와 군비경쟁 중지 및 군비 축소였다. 1984년 1월 10일 중앙인민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연합회의에서 남·북·미 3자회담을 제의하고 남북간에는 불가침 선언을 채택하고, 북·미간에는 평화협정을 체결 하자고 주장하였다. 북한의 이러한 주장은 남북고위급회담

에서의 북측 기초 발언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³⁴⁾

그런데 북한이 정전협정의 시행기구중의 하나인 군사정전위원회를 무실화 시키려고 기도한 것은 국제연합군측 군정위 수석대표에 한국군 장성을 임명한 것 (91. 3. 25)을 계기로 삼았다. 북측은 한국군은 정전협정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군정위 본회의 참가를 거부하면서 국제연합군 수석대표의 교체를 요구 하였다. 이에 대해 국제연합군측은 국제연합군측 수석대표 임명은 국제연합군 사령관의 고유 권한임을 밝히고 한국군 장성의 수석대표직을 철회하지 않자, 북한 무장간첩 침투사건을 협의하기 위해 국제연합군측이 1992년 5월 29일 소집한 제460차 군정위 본회의에 불응하였으며, 1994년 4월 28일에는 전격적으로 군정위에서 철수를 선언했다. 군정위 공산측의 다른 일방인 중국측도 1994년 12월 15일 군정위에서 철수함으로써 사실상 군정위는 기능이 마비되었다.

군정위에서 철수한 직후 북한은 1994년 5월 14일 「조선인민군 판문점 대표부」를 일방적으로 설치하고, 미국과 새로운 평화보장체계 수립분제를 논의 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이와 관련 북한은 북한군 판문점 대표부 설치 이후 미북간 장성급 접촉을 집요하게 요구해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군 헬기의 북한 지역 추락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은 종래에는 정전협정에 따라 군사정전위원회에서 협의·처리하여야 했다. 그러나 군정위의 기능이 마비된 상황에서 미북간 변칙적인 군사접촉이 판문점에서 이루어 질수 밖에 없었으며, 추락된 미군 헬기의 생존 승무원 1명과 사망자의 유해 송환·협의 과정에서 미국은 쌍방 군사분계선을 협의하기 위한 미·북간 창구를 유지한다는데 동의 하였다.

34) 제1차 남북고위급회담 북측 기초연설에서 북측대표는 "북남 사이에 서로 상대방을 침략하지 않는에 대한 불가침선언을 채택하고, 조·미 사이에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북측의 군정위 무실화 기도에 대해 국제연합군측은 정전협정의 수정과 증보는 정전협정 서명 쌍방 사령관의 후임 사령관의 합의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지적하고, 이 문제를 북한측과 협의할 용의가 있음을 북한측에 알렸다.

국제연합군측은 원칙적으로 「현정전협정이 계속 유효한 군사협정으로 한반도의 군사적 문제를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정전협정 위반사건 발생시 이를 북측과 협의하고 처리하는 통로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장성급 접촉문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한편, 북한이 정전협정 관련기구를 마비시키기 위해 일련의 조치를 취해오고 있는 상황에서 군정위 국제연합군측 요원과 북한군 판문점 대표부 요원간에 간헐적인 접촉이 판문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 접촉에서 미북간 장성급 접촉 과 한국전 참전 미군 유해 송환문제가 주로 논의되었다.³⁵⁾

그러나 북한은 최근 『미국측이 새로운 평화보장 체계 수립 제의에 대해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있다』고 미국을 비난해오다가 1995년 6월 22일 판문점에서 미군과의 비공식 접촉을 통해 「1995년 6월 25일을 기해 정전협정을 폐기할 것」이라고 위협하였으나 한국전 발발 45주년이 되는 이날 북측의 정전협정 폐기선언은 발표되지 않았다.

다음은 국제연합군측 수석대표에 한국군 장성이 임명된 이후 정전협정과 관련된 북한의 주요 판문점 동향이다.

35) 한국전 참전 유해 송환은 90년 이후 10차례에 걸쳐 총 209구가 송환되었다.

북한의 정전협정 기구 무실화 일지

91. 3. 25 · 유엔사측, 군정위 수석대표에 한국군 장성(황원탁 소장) 임명
- 북한, 군정위 유엔사측 수석대표(소장 황원탁) 신임장 접수 거부(11:00)

91. 3. 27 군정위 북측, 유엔사측 수석대표에 한국군 장성 임명을 비난하는 성명 발표

* (중양 · 평양 방송)

- 남조선군은 유엔군도 아니며 조선정전협정의 체약 일방도 아님. 더구나 남조선군은 정전협정 체결 자체를 반대하였음.
- 그러므로 남조선군 장성이 조선인민군과 중국군, 유엔군 사이에 체결된 정전협정을 이행 감시하는 기구인 군정위 유엔군측 수석대표로 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함.
- 정전협정 제20항에는 군정위를 10명의 고급군관으로 임명하되 그중 5명은 유엔군 총사령관이 임명하게 되어 있음. 이는 정전협정 체약 일방인 유엔군 중에서 임명해야 한다는 것이지 임의의 대상에서 선발해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음.
- 지금까지 남조선군 장성이 군정위 회의에 참석해온 것을

복인한 것은 남조선 군대도 정전협정의 구속을 받게 하자는 데 목적이 있었음.

- 미국이 굳이 남조선군 장성을 우리와 마주 앉히려 한다면 최소한 그에 따르는 법률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협상을 할 데 대한 신축성있는 안을 유엔군측에게 제안한 바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엔군측이 자격도 권한도 없는 남조선 장성을 수석대표에 임명함으로써 수석대표 명의 전화통지문 교환과 군정위 회의를 할 수 없는 사태를 빚어 놓았음.

※ 유엔사측, 수석대표의 한국군 장성 임명은 적법하다는 입장 견지

- 정전협정 제2조 20항에 의하면 군사정전위원회의 위원 자격을 「계급요건」만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군정위 수석대표 및 위원들의 교체는 쌍방 사령관들의 고유권한이므로 상대방의 동의없이 일방이 임의로 임명할 수 있음.

- 따라서 한국은 한국전쟁의 당사자이며 유엔사령관이 유엔군 및 한국군을 대신하여 정전협정에 서명했기 때문에 유엔군 사령관이 한국군 장성을 유엔사측 군정위 수석대표직에 임명함은 적법한 것임.

91. 3. 28 북측 공동일직장교 손철수 대위, 미군 주도하의 군정위 참모장교회의는 계속 유지 언급

- 유엔사측 수석대표가 참여하는 군정위 본회의나 수석대표명의 서한 교환은 수용할 수 없으나
- 미군이 주도하는 비서장회의 및 그 이하 참모장교회의는 계속 유지할 것임.

91. 4. 13 군정위 북측 언어과장 조복영 대좌, 군정위 언어장교회의에서 군정위 기능 회복을 위해 최의웅 소장과 황원탁 소장간 『비공식 판본집 점촉』을 주선할 수 없겠느냐고 유엔사측에 의사 타진해 옴.

※ 본 제의에 대하여 유엔사측 비서장 텔리 내령은 『비공식 점촉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나 대표 5명 전원참석 원칙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쌍방 수석대표간의 비공식 점촉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

91. 5. 9 군정위 북측, 「군사인원 유회통보」 교환 중단 통보

- 정전협정 제13항 2목에 따라 쌍방이 제출하는 군사인원 유회통보는 정전후 조선의 북과 남에 외국 군대의 증원을 막는데 그 목적이 있음.
- 우리측에서는 58년 중국인민지원군이 완전 철수한 후부터 외국군사 인원의 유회문제가 제기되지 않았음.
- 유엔사측이 비법적으로 남조선군 장성을 수석대표로 임명함으로써 정전기구 주요기능이 마비된 상태에서 더 이상 이러한 문서들을 제출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게 되었음.

91. 5. 15 군정위 북측 수석대표 최의웅 소장, 중감위 스웨덴 대표 홀름베르크 소장에게 황원탁 소장과의 「비공식 판문점 접촉」 주선을 요청

- 이에 대해 황원탁 소장은 「군정위 수석대표 자격」으로서 접촉에 언제든지 요청에 응할 수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북측이 군정위 본회의 소집을 제의해야 하며, 공개회의를 꺼린다면 비공개 회의도 좋다는 입장을 북측에 전달해 줄 것을 요청

91. 5. 23 군정위 북측 이종철 상좌, 북한의 대중감위 공식 활동 중단 통보

* 판문각으로 중감위 4국 비서장을 불러 구두 통보

- 향후 중감위의 공식활동에 북측 요원 불참할 것임.
- 북한의 공식행사에 중감위 요원을 일체 초청하지 않을 것임.
- 중감위 요원의 북한여행경비 지원을 중단하며, 다만 중감위 체코·폴란드 요원의 자비 여행은 허용함.
- 중감위와의 비공식 접촉은 유지할 것임.

91. 5. 31 군정위 북측 비서장 김련기 대좌, 연어장교회의 기능 중 「중감위」 회의 관련 기능 중단 통보

91. 6. 3 북한 외교부 부부장 송호경, 평양주재 폴란드 대사를 불러
중감위 폴란드 대표단의 조기 철수 종용
- 폴란드 대표단이 본국으로 철수한다해도 북한정부는 이
에 반대하지 않을 것임.
91. 6. 8 군정위 북측 수석대표 최의웅 소장, 평양주재 폴란드 대사
와 만나 정전협정 기구 기능 마비 언급
- 중감위 기능 뿐만 아니라 가까운 장래에 군정위 기능 마
지 완전 마비될 것임.
 - 91. 6. 15 이후에는 중감위 대표들과의 비공식 접촉도 불
허할 것임.
91. 6. 11 북한, 중감위 휴게실의 중감위 대표용 안락의자 철거
91. 6. 11 군정위 유엔사측 비서장 텔리 대령, 91. 5. 15 군정위 북측
수석대표가 중감위 스웨덴 대표에게 군정위 쌍방 수석대표
간 「판문점 비공식접촉」추진을 요청한 것에 대해 북측의 진
의 분의
- 군정위 북측 비서장 김런기 대좌, 황원탁 소장과 최의웅
소장간 「비공식 판문점 접촉 주선설」부인
91. 7. 3 군정위 북측 비서장 김런기 대좌, 황원탁 소장 명의 신입유
엔사 비서장(오다우드 대령)의 신입장 접수를 거부
91. 7. 9 군정위 북측 수석대표 최의웅 소장, 중감위 체코·폴란드
대표단의 북한내 활동 제한 구두 통보

- 북한 당국이 중감위의 철수를 직접적으로 요구하지는 않을 것이나
- 앞으로 중감위 체코·폴란드 요원의 평양방문은 월1회, 물자 지원은 주 1회로 제한될 것임.
- 중감위 체코·폴란드 대표단 숙소에 근무하는 취사, 청소 인원을 감축시킬 것임.

91. 7. 26 북한, 군정위 북측 보고서를 유엔 안보리에 제출

- 미국측이 지난 37년동안 56회에 걸쳐 미군 장성으로 임명해 오던 유엔사측 수석대표를 남조선군 장성으로 임명한 것은 정전협정 위반이며, 군정위 주요기능을 마비시키고, 중감위 역할을 체계적으로 파괴시키는 행위이며, 정전상대방에 대한 모독임.
- 유엔사측은 남조선에 각종 핵무기와 그 운반수단을 무제한으로 반입하여 남조선을 극동 최대의 핵기지로 만들었음.

91. 7. 27 군정위 북측, 정전협정 조인 제38주년 기념행사(개성)에 중감위 요원을 초청하지 않음.

91. 7. 29 북한, 평양주재 체코무관 철수 송별연에 중감위 스위스·스웨덴 대표 참석 불허

91. 8. 8 중감위 파견 4개국가 회의 개최

* 스위스 배론

- 53년 체결된 정전협정은 한반도에 평화를 유지함에 있어 국제적으로 인정된 유일한 법적 장치임.
- 중감위는 정전협정에 의거, 군정위와 같이 양대 집행 기구이며, 중감위의 존재와 기능은 정협체제 구성요소의 하나임.
- 중감위 국가들은 정전협정 서명당사자간 상호 합의에 의한 정전협정의 변경, 수정 또는 증보에 의해서만 조치되어야 한다는 것을 환기하는 바임.

- 91. 8. 28 북한, 중감위 체코·폴란드 요원의 서울 방문 금지
- 91. 8. 31 북한, 중감위 체코 대표단 차석대표 네메츠 대령의 서울방문 불허
- 91. 9. 3 중감위 요원, 군정위 북측 수석대표의 평양 철수 언급
 - 군정위 북측 수석대표 최의웅 소장과 주요 참모요원들은 군정위 기능이 사실상 마비되었다면서 평양으로 철수하였으며 주요 관심사 발생시만 개성으로 내려옴.
- 91. 9. 3 북한, 중감위 체코·폴란드 요원의 공동경비구역 출입제한(화, 토요일 허용)
- 91. 10. 30 북한 중감위 체코, 폴란드 요원 서울 방문 허용
- 91. 11. 29 군정위 북측 비서장 김련기 대좌, 군정위 기능을 대체할 새

로운 기구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

* 유엔사측 비서장 오다우드 대령과의 접촉

- 이러한 3자간 소위원회 구성은 군정위 기능이 사실상 마비되어 있는 실정에서 군정위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기구가 필요함.

- 남북한과 미국이 참가하는 3자간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것을 제의

- 남북고위급회담의 「군사공동위원회」구성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언급

91. 12. 10 군정위 북측 비서장 김련기 대좌, 군정위 대체 기구설치 필요성 재언급

* 유엔사측 비서장 오다우드 대령과의 비공식 접촉

- 현존 군정위 기구의 활성화를 위한 접촉에는 일체 응하지 않겠음.

- 남북한과 미국간 3자가 참여하는 협의기구에서 현 정전협정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고, 현 군정위 기능을 대체할 새로운 별도 기구를 만들어야 할 것을 주장

※ 유엔사측 비서장은 「3자 소위원회」구성은 군정위 설치 목적과 배치되는 것으로 협의될 수 없으며, 현재의 「정협」범위내에서 군정위 기능을 정상화시키는 방법을 강구할 것을 촉구

91. 12. 18 북측 공동일직장교 손철수, 남북기본합의서 채택이후 군정위는 남북군사공동위로 대체될 것이라고 언급
- 정전협정 문제는 기본적으로 북한·미국간에 해결될 사항임.
 - 남북한이 합의에 따라 92. 5. 18 이전에 남북군사공동위원회가 설치되면 현 군정위 업무를 대신하게 될 것이며 이 경우 최근 우리가 제의한 것처럼 남북한과 미국이 참가하는 「3자 소위원회」의 설치가 필요하게 될것임.
 - 남북기본합의서가 교환 발효되고 남북군사공동위원회가 설치되면 군정위가 수행하고 있는 기능과 유사한 기능을 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경험있는 인원들이 많이 참여하게 될 것이므로 현재의 군정위는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 흡수되어야 할 것으로 봄.
 - 그렇게 될 경우 군정위 기능이 정지되는 시기는 내년 6월경으로 봄.
 - 남북군사공동위원회가 가동되면 남북의 당사자들이 마주 앉아 자주적으로 남북 관련 사항들을 협의·이행하게 될 것임.
 - 군정위 북측 수석대표인 최의웅 소장이 황원탁 장군과 대화를 기피하는 것은 제도적인 차이 때문이며, 앞으로 남북

군사공동위원회가 설치되면 서로 대화를 하게 될 것임.

92. 1. 17 군정위 북측 비서장 김련기 대좌, 군정위 기능 정지 언급

* 군정위 유엔사측 특별고문 제임스 리와 비공식 접촉

92. 1. 18 군정위 북측요원, 남북군사공동위원회가 군정위 기능을 흡수할 것임을 시사

* 중감위 주최 신년 리셉션

- 남북군사공동위원회가 가동될 경우 현재의 군정위는 92년 6월경이면 그 기능이 정지되고 다른 것으로 바뀐다는 설이 나오고 있음.

92. 1. 31 북한군 부총참모장 권중영 중장, 유엔총회 의장에게 서한을 보내 유엔사 해체 시도 계획 표명

* 군정위 유엔사측 참모장 레코드 소장 주최 신년 리셉션

- 남북간 합의에 의해 북남군사공동위원회가 구성·운영되고 북남관계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섰다고 판단되면 외교부장 명의 서한을 유엔총회 의장에게 보낼 것을 검토중임.

- 이 서한에서 남북간 불가침에 관한 합의서가 채택되고 남북합의서 실천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남북군사공동위원회가 구성되어 실질적인 활동을 발휘하고 있는 입장에서 한국에서의 휴전종식과 유엔군사령부의 해체를 위해 유엔회원국의 협조를 요청할 것임.

- 이러한 3개 현안문제는 동시에 협의하되 형식적으로는 서로 다른 별개 문제로 처리되어야 함.

92. 3. 11 군정위 북측 비서장, 미국과 남·북한 3자 장성급 회담언급

* 군정위 유엔사측 비서장과 비공식 접촉

- 남북간에 남북군사공동위원회가 설치된다고 해도 군정위는 존속시키고 침체된 군정위의 기능을 정상화 시키기 위해 남북한과 미국군의 3자 장성급회담을 가졌으면 함.

※ 유엔사측이 “동 문제를 협의하려면 유엔사측 군정위 수석대표 황원탁 소장을 인정해야 된다”고 하자, 북측은 “그러면 이인모 노인을 송환할 것이냐”고 타진했음.

92. 3. 13 군정위 북측 대표 이찬복 대좌, 이인모 송환문제에 대해 김정일 특별지시 언급

* 군정위 유엔사측 특별고문 제임스 리와 비공식 접촉

- 남북한과 미국간 3자 장성급회담 제의는 이인모 노인의 송환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것임. 이인모 노인의 송환을 김정일 최고사령관이 군정위에게 특별히 지시하였기 때문임.

- 이러한 3자 장성급회담을 제의하였다고 해서 황원탁 장군을 유엔사측 수석대표로 인정하는 것은 아님.

92. 3. 19 군정위 북측 비서장 김련기 대좌, 유해송환은 군정위 채널

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강조

*** 군정위 유엔사측 비서장과 비공식 접촉**

- 한국전 참전 미군유해 송환 문제와 관련하여 유엔사 참모장 레코드 소장이 북한군 부총참모장 권중영 중장에게 보내는 서한에서 「군정위를 통해 미군 유해 30구 송환」이라는 구절에서 「군정위를 통해」를 삭제할 것을 요구

92. 3. 19 군정위 북측 수석대표, 중감위 기능 약화가 당 방침임을 언급

*** 중감위 스위스 대표 산도 소장과 비공식 접촉**

- 중감위의 입장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으나, 중감위의 지위와 기능을 약화시킨다는 것이 당의 방침이므로 이해를 요망함.

92. 4. 13 김일성 80회 생일 행사에 중감위 요원 비공식 초청

92. 5. 12 북한군 부총참모장 권중영 중장, 유엔사 참모장 레코드 소장에게 미군 유해 송환 협의 정례화를 위해 합의서 작성 제의

92. 5. 13 북한군 부총참모장 권중영 중장, 미군유해 송환이 북한군과 미군사이에서 이루어졌다고 주장

*** 미군 유해 15구 송환 직후 가진 기자회견**

- 이번 미군 유해 송환 협의는 조선인민군과 미군 사이에

서 진행되었음.

- 군정위는 정전협정 기구이고, 정전협정 관련 유해는 지난 54년 10월에 이미 완결되었으므로 이번 송환은 군정위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 아님.

92. 5. 29 북측, 제460차 군정위 본회의에 불응

- 92. 5. 22 북한군(3명) 무장침투 사건 발생과 관련, 유엔사측이 소집을 요구한 제460차 군정위 본회의에 북측 불응

92. 6. 2 군정위 북측 비서장 김련기 대좌, 제460차 군정위 본회의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주장

* 군정위 유엔사측 비서장과 비공식 접촉

- 우리는 유엔사측이 소집한 제460차 군정위 본회의에 대해 동의한 적이 없으므로 정전협정 위반이 아님.
- 유엔사측이 한국군 장성을 군정위 수석대표로 임명한 것이 정전협정을 위반한 것임.

92. 8. 24 군정위 북측 수석대표 최의웅 소장, 군정위에서 인민무력부 로 소환, 후임자 미임명

92. 8. 30 공동경비구역 북측 경비장교, 경비장교회의에 유엔사측 경비장교로 한국군 장교가 참석하자 퇴장

- 남조선군은 유엔사의 일원이 아니며, 이 지역에 대한 경

비책임을 담당하는 경비장교가 될 수 없음

92. 11. 16 군정위 북측 대표 이찬복 소장, 남북군사공동위에서 남북간 군사적 현안문제를 처리해야 한다고 언급

* 군정위 유엔사측 특별고문 제임스 리와 비공식 접촉

- 앞으로 남북군사공동위원회가 열리게 되면 북남간 군사적 현안문제는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 다루게 될 것임.
- 우리는 한국군 장성이 수석대표로 있는 한 절대로 군정위에서 마주앉아 있지 않을 것임.

92. 12. 30 중감위 체코대표단, 93. 1. 1 부터 중감위 체코슬로바키아 연방공화국의 지위를 체크 공화국이 승계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북한측에 전달.

93. 1. 7 중감위 휴게실에서 개최된 중감위 신년 리셉션에 북측 불참.

93. 1. 12 중감위 체코슬로바키아 대표단에 대한 북한의 공식 입장 표명

- 체코 연방은 해체되었으므로 현 체코대표단은 중감위 대표단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상실하였으며, 이에 따라 더 이상 비무장지대내에서 체류할 수 없음.
- 체코대표단을 대체할 국가와 대체 시기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나 적절한 국가를 유엔사측과 협조하여 결정할 것임.

- 체코 대표단의 철수로 인해 중감위 폴란드 대표단에게 어떤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며, 체코 대표단도 원한다면 북한내에 체류를 허락할 것임.
- 이러한 결정은 정전협정 조항을 준수하는 것이며 어느 일방에 의해서 정전협정 조항이 폐기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함.

93. 1. 18 중감위 4국 특별회의를 개최, 결의문 채택

- 정전협정 37항에 따라 중감위는 4국 고급장교로 구성되며, 어떤 이유에서 어느 1국이 중감위에서 추방된다면 정전협정 체결 쌍방은 합의에 의해 새로운 대표로 대체될 때까지 그 추방의 효력은 무효임.
- 새로운 중감위 선정국이 중감위회의에 참석할 때까지 중감위 3국은 중감위의 임무를 수행해 나갈 것임.

93. 3. 2 군정위 북측 비서장, 유엔사측 비서장 앞 서한을 발송하여 중감위 체코대표단 추방에 대한 북한측의 입장 전달

- 북한이 지명 초청한 체코슬로바키아 연방공화국은 이미 없어졌으므로 이 나라를 대표하던 대표단을 철수시키는 것은 불가피한 일임.
- 중감위 성원국가 선택문제는 정전협정 37항에 따라 전적으로 북한측에 있음.
- 체코 공화국은 정전협정 조약 일방인 북한측과 아무런

협의도 없이 중감위 체코슬로바키아 연방의 대표단을 계승한 것으로 결정하고 유엔사측과 함께 북한에게 접수시키려고 하는 행위는 자주권의 침해이며 내정간섭 행위임.

- 북한은 중감위 성원국을 선택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북한의 자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체코 공화국은 지명하지 않을 것임.

93. 3. 8 군정위 북측 비서장 김련기 대좌, 군정위 북측 대표 소환 언급

* 군정위 유엔사측 비서장과 비공식 접촉

- 군정위 수석위원 최의웅 소장 소환에 이어 군정위 북측 대표인 김진익, 남종득 대좌를 인민무력부로 소환하였음.
- 지금까지 서로 교환해온 정전협정 위반사항 통계 문건은 앞으로 전달하지도, 접수하지도 않을 것임.

93. 4. 6 군정위 북측 비서장 김련기 대좌, 유엔사측 비서장 앞 서한에서 중감위를 T/S훈련에 참관 초청한 것을 비난

- T/S 합동군사훈련에 중감위 성원국을 초청하는 것은 중감위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파괴하는 행위로 중감위의 존립 자체에 위기를 조성하는 것임.
- 정전감독기구의 유지를 위해 중감위를 정치적 목적에 악용하는 행위를 그만두고, 부당한 수석위원 교체로 마비

상대에 빠진 군정위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실제적인 조치를 취하기 바람.

93. 4. 10 중감위 체코슬로바키아 대표단 철수

93. 4. 13 중감위 3국 공동선언문 채택

- 체코 공화국이 체코슬로바키아 연방공화국의 지위를 승계하여 중감위 성원국이 되었으며, 이 결정에 대해 유엔사측은 수락하였으나 북한측은 거부하였음.

- 정전협정 37항에 따라 체코대표단의 후임국을 북한이 제의하고, 군정위 쌍방이 협의하여 체코대표단 철수 이전에 선정되어야 함.

93. 4. 22 군정위 유엔사측 비서장, 북측 비서장 앞 서한에서 T/S훈련에 중감위 성원국의 초청이 정당한 것과 체코 후임국의 조속 선정을 촉구

- 유엔사측은 지난 10년간 T/S 훈련에 북측과 중감위측을 쌍방간 신뢰구축을 위해 초청해왔음.

- 북측은 지체없이 체코 대표단의 후임국을 선정하기 바람.

93. 4. 28 군정위 유엔사측 비서장, 북측 비서장 앞 서한에서 중감위 폴란드 대표단에 대한 북측의 대우가 가혹함을 지적하고 체코 대표단 후임국 조속 선정 촉구

93. 7. 5 군정위 쌍방 비서장 접촉에서 한국전 참전 유엔군 유해 송

환에 관한 합의서(MOU)안 합의

- 합의서 체결 주체는 유엔군과 조선인민군으로 하며, 서명권자는 쌍방 소장급 장성으로 함.
- 북한 지역에 있는 유엔군 유해와 발굴 및 송환에 대해 협조하며 유엔군은 필요한 기술을 제공함.
- 유해발굴 확인과 협조를 위해 대령급을 대표로 하는 실무반(7명)을 구성함.

93. 8. 24 군정위 유엔사측 대표 러닝 소장과 북한군 대표 이덕규 소장 사이에 「유해분제에 관한 합의서」체결

- 쌍방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있는 연합국군 인원들의 유해를 수색, 발굴, 송환 및 확인하기 위해 서로 협조함.
- 조선인민군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매장된 연합국군 군인들의 유해를 수색하고 발굴하여 연합국군에게 송환함.
- 본 합의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대령급을 단장으로 하는 실무단 구성에 합의함. 실무단의 운영절차는 각방의 단장들이 공동으로 정함.
- 쌍방은 본 합의서 목적달성 정도를 계속 평가하며 쌍방은 본 합의서의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한 추가적인 대책을 고려함.

93. 9. 23 북한군, 유해송환 실무단 구성에 한국군의 참여 배제를 요구

93. 11. 1 유엔사측 유해송환 실무단에 한국군 장교가 포함되었음을
들어 북측, 「유해송환 실무단 운영 세칙」서명 거부

94. 4. 28 군정위 북측 비서장 김련기 대좌, 군정위에서 북한 인원 철
수 통보

- T/S 군사훈련, 패트리엇 미사일 반입 등 군비 증강과
한국군 장성을 수석대표로 임명하는 등 유엔사측이 정전
협정 기구를 체계적으로 파괴시키면서 정전기구를 무용
지물로 만들었음.

- 군정위 북측 인원 전원을 소환하고 중감위 폴란드 대표
단을 철수시킬 것임.

- 북한군 최고사령관이 임명하는 인사가 군정위 북측 요원
을 대신하여 군정위 해체문제와 평화보장체계 수립문제
를 미군측과 협의하게 될 것임.

※ 북측 비서장은 정전체제가 새로운 평화체제로 전환될 때
까지 현 정전협정 조항을 준수하고 판문점 직통선(공동
일직장교간 직통전화)을 유지할 것임을 구두 통보함.

94. 4. 29 북한군 병사 40여명, 자동화기로 무장한 채 공동경비구역
진입

※ 53년 군정위 쌍방간 합의에 의해 장교 5명과 사병 30명
을 넘는 병력이 공동경비구역에 진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94. 5. 24 북측, 군정위를 대체하는 대표단 명칭 및 대표단 명단 유엔 사측에 통보

- 대표단 명칭 : 「조선인민군 판문점 대표부」

- 대표단 명단 : 대표 이찬복 소장 등 전직 군정위 북측 요원들로 구성

94. 6. 6 제510차 군정위 비서장회의 북측 불응

※ 북한측의 군정위에서 철수와 중감위 폴란드 대표단에 대한 철수 압력에 항의하기 위해 유엔사측이 소집

94. 6. 7 군정위 북측 통역 장교, 정전협정 일방적 파기 가능성 언급

* 남북연락사무소 우리측 연락관과 비공식 접촉

- 최근 군정위에서 철수하고, 조선인민군 판문점 대표부를 설치했지만, 북한이 정전협정에 서명 당사국이기 때문에 정전협정 사항을 준수해야 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음.

- 그러나 미국이 핵문제를 구실로 북한과 3단계 회담을 일방적으로 철회시키고, 계속 복잡한 문제를 일으킨다면 북한은 일방적으로 정전협정을 파기시킬 수도 있을 것임.

- 북한은 판문점 대표부를 설치한 이상 앞으로 「군정위 명칭」을 사용하는 회의에는 일체 나가지 않을 것임.

94. 8. 1 북한군 이덕규 소장, 미군 판문점 대표부 설치 촉구

* 중감위 창설 기념행사

- 정전협정은 한반도의 평화에 장애가 되는 요소로 반드시 평화협정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북한은 군정위에서 철수하였음.
- 미국도 이에 상응하는 대표부를 구성하도록 남조선측이 협조하여야 함.

94. 9. 2 북한군 판문점 대표부 연락군관, 군정위 중국측 철수 언급

- 군정위 중국측 성원들의 철수는 확정되었으며 철수일자 등 구체적인 철수계획은 앞으로 구체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임.

94. 9. 19 북한군 판문점 대표부 부대표 박임수 대좌, 미군의 판문점 대표부 설치 의향 타진.

* 군정위 유엔사측 슈메이커 대령과 비공식 접촉

94. 10. 4 군정위 중국측 대표부 정도근 소장, 중국 대표단 철수 언급

- 군정위 중국측 대표단은 10월에서 12월사이에 철수할 것임.

94. 10. 14 북한군 판문점 대표부 부대표 박임수 대좌, 정전협정 수정 회의 당사자는 북한과 미국이라고 언급

94. 10. 19 중감위 폴란드 비서장 포템스키 중령, 북한이 폴란드 대표단 철수를 통보해 왔다고 언급

94. 11. 4 북한, 군정위 중국측 대표단의 조기철수 희망표시

* 남북연락사무소 우리측 연락관과 북한군 판문점대표부 연락관의 비공식 접촉

- 우리 공화국 정부는 중국대표단이 빨리 철수하는 것을 원하고 있으나, 중국측이 정확히 언제 떠날런지는 아직 미정임.

94. 11. 15 북한군 판문점 대표부 부대표 박임수 대좌, 정전협정 수정분제를 북·미 중장급 장성접촉에서 논의하자고 제의

* 유엔사측 비서장 슈메이커대평과 비공식 접촉

- 정전협정 파기는 유엔사측이 56년에 중감위의 기능을 중지시킨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으며, 황원탁 장군을 협상 대표로 임명한다는 것은 황당무계한 일임.

- 정전협정체제 관련분제는 북·미 중장급 장성회의에서 먼저 협의해 나가고

- 한국군이 협상에 포함되는 분제는 장성급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을 것임.

- 중국대표단은 본국으로 철수를 결정하였으므로 더이상 협상에 참여할 수 없으며, 중국대표단은 북한군에 대해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음.

94. 12. 11 군정위 중국측 대표단 개성에서 평양으로 철수

* 중감위 폴란드 비서장 워로중령 언급

- 군정위 중국측 대표단이 12. 11. 개성에서 평양으로 떠났으며, 12. 15. 평양에서 본국으로 철수할 것임.

94. 12. 15 군정위 중국측 대표단 철수

94. 12. 15 북한군 판문점 대표부 부대표 박임수 대좌, 북·미 장성급 접촉에 군정위 유엔사측 위원인 왓킨스 제독 대신 유엔사 기획참모부장인 스미스 소장의 참석을 요구

* 유엔사측 비서장 슈메이커 대령과 비공식 접촉

94. 12. 21 94. 12. 17 북한지역에 불시착한 미군헬기 승무원 사망자와
-12. 30 생존자 송환을 위한 쌍방 장성급 접촉(미: 스미스소장, 북: 이찬복 중장, 장소: 북측지역 「판문각」)

· 제 1 차 접촉(94. 12. 21)

- 사망 승무원 유해송환 협의

· 제 2 차 접촉(94. 12. 26)

- 생존 승무원 송환 협의

· 제 3 차 접촉(94. 12. 27)

- 생존 승무원 송환 협의

· 제 4 차 접촉(94. 12. 30)

－ 생존 승무원 송환 합의

· 제 5 차 접촉(94. 12. 30)

－ 생존 승무원 인계인수서 서명: 판문점 군정위 회의실

95. 1. 23 북한군 판문점대표부 대표 이찬복 중장, 중감위 폴란드 대표단에 대한 불자 지원 중단 통보

* 중감위 폴란드 대표 오프차레크 소장에게 구두 통보

－ 예산이 중단되어 폴란드대표단에 대한 차량, 불자 공금을 2월말부터 중단하겠음.

－ 폴란드대표단 숙소에 근무하는 모든 지원인원(북한 주민과 군인)은 모두 철수시킬 것임.

－ 폴란드 대표단도 2월말 이전에 철수하는 것이 좋을 것임.

95. 1. 23 북한, 폴란드 외무부에 중감위 폴란드 대표단에 대한 지원 중단 통보

* 북한 외교부 명의 폴란드 외무부 앞 공한

－ 중감위 임무를 규정하고 있는 조선정전협정 제41항은 미국측에 의해 1950년대에 유린되기 시작하여 오늘에 와서는 전혀 이행되지 못하고 있음.

－ 협정체약 일방이 그 협정을 유린 말살하는 경우 타방은 그에 대치할 수 있는 자주적 권리를 가지는 것이 국제법

를행위의 상례임.

- 조선정전협정과 그 감시기구가 일방에 의하여 유린 파괴된 조건에서 북한군 및 중국군이 군정위에서 철수한 것은 자주권에 속하는 문제임.
- 조선정전 감시기구의 기본을 이루는 군정위 일방이 없어진 조건에서 그 부속기구인 중감위에 폴란드를 지명 초청했던 법률적 효력은 끝났다는 것이 법률상 견지에서나 이치상 견지에서나 자명한 일임
- 북한 외교부는 군정위 일방이 없어진 것으로 하여 중감위 폴란드 대표단의 생활을 보장해 줄 기구와 예산도 없어지게 된 조건에서 폴란드 정부가 판문점에 와 있는 폴란드 대표단의 거취문제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바람.

95. 1. 31 중감위 3국, 북한의 폴란드 대표단에 대한 지원 중단 통보에 항의 서한 발송

* 중감위 3국 대표 공동명의 북한군 판문점 대표부 대표 이찬복 소장 앞 서한

- 95. 2. 28 이후 폴란드대표단에 대한 완전보호와 물자 지원 중단 통보는 정전협정 제2조 13항 g목과 h목에 대한 위반임.

- 정전협정 제5조 61항 및 62항에 의거, 정전협정을 변경하거나 대체하는데 상호 동의 할 때까지 북한군측이 이를

준수할 것을 요청함.

95. 2. 8 북한, 중감위 폴란드 대표단의 추방에 항의하는 유엔사 비서장 명의 편지 접수 거부

95. 2. 9 중감위 3개국(폴란드, 스위스, 스웨덴)대표 공동명의, 북한군 판문점 대표부 대표 이찬복 중장 앞 서한 발송

- 북한군 판문점 대표부가 95. 2. 10부터 폴란드대표단에 대한 군수 지원은 물론 변책특권도 종료된다고 구두 통보한 것은 정전협정 제2조 13항 j, g, h목에 위반이며, 국제사회에 부정적으로 비취질 것임.

- 정전협정을 변경시키거나 대체하는데 쌍방이 동의할 때까지 북한군이 고 김일성원수가 서명한 정전협정을 준수 하길 기대함.

95. 2. 9 북한군 판문점 대표부 부대표 박임수 대좌, 중감위 폴란드 대표단 철수 시한 통보

* 폴란드 대표단 숙소를 방문하여 구두 통보

- 95. 2. 9. 이후 폴란드대표단이 폴란드캠프 이남 지역으로의 이동을 금함.

- 95. 2. 28. 까지 북한으로부터 철수하지 않으면 폴란드 대표단을 비무장지대에 불법 체류하는 외국인으로 간주 하여 의법 처리할 것임.

- 95. 2. 18. 까지 철수계획을 제출해주기 바람.

95. 2. 13 북한, 중감위 폴란드 대표단 추방에 항의하는 유엔사측 비서장 명의 서한 접수 재거부
95. 2. 18 북한, 폴란드 대표단 추방에 항의하는 유엔사측 군정위 대표 4명(수석 대표 제외) 공동명의 서한 접수 거부
- * 주한 유엔군사령부는 95. 2. 22. 중감위 폴란드대표단 축출 움직임에 항의하는 공식 서한을 발송했다고 발표
95. 2. 18 북한군 판문점 대표부 부대표 박임수, 폴란드 대표단 철수 시한 재차 구두 통보
- 95. 2. 27부터 승용차, 통신장비, 전기, 급수 등 지원을 중단할 것임.
 - 95. 2. 28. 폴란드 숙소에 근무하는 경비병, 고용원 전원을 철수시킬 것임.
95. 2. 20 북한군 병사 40여명, 자동화기로 무장한 채 공동경비구역 진입(06:00~06:30)
95. 2. 21 북측, 유엔사측의 판문점 부대표 접촉 제의 거부(공동경비구역 무장병력 투입 관련)
- 유해송환 보상문제와 새로운 판문점 대표부 설치문제 협의 이외에는 어떠한 접촉도 갖지 않겠음.
95. 2. 22 북한군 판문점 대표부 부대표 박임수, 유엔사측 군정위대표 왓킨스 준장과 북한군 판문점 대표부 대표 이찬복 중장 사

이의 접촉 제의 거부

95. 2. 22 북한군 병사 40여명, 자동차기로 무장한 채 공동경비구역 진입(07:15~07:50)
95. 2. 24 북한 외교부 대변인, 「평화보장 체계 수립」 관련 한국을 비난하는 담화 발표
- 미국이 정전협정에 서명했으므로 평화협정 문제 해결의 당사자는 남한이 아니라 미국임.
 - 한국이 평화보장 체계에 개입하려는 것은 남북합의서를 백지화하려는 시도임
95. 2. 25 북한, 중감위 폴란드 대표단에 대한 철수압력 중지 및 지원 회복을 촉구하는 유엔군 사령관 명의서한 접수
- 유엔군 사령관은 중감위의 어떠한 변경에도 동의한 적이 없음. 폴란드 대표단에 대한 철수압력은 정전협정상 의무 위반임.
 - 정전협정이 정치적 수준에서 평화적 방법으로 대체될 때까지 이를 준수해야함.
 - 북한군 최고사령관은 폴란드대표단에 대한 전면적인 지원이 회복되도록 명령할 것을 요청함.
95. 2. 28 폴란드 대표단(6명) 고려민항을 이용 중국으로 철수
95. 2. 28 북한 외교부 대변인, 중감위 폴란드 대표단 철수 관련 담화

발표

- 미국이 먼저 정전협정을 체계적으로 파괴해왔음.
- 중감위 폴란드 대표단의 철수 이유로 정전상태의 종식과 평화보장 체계 수립을 내세움.

95. 3. 2 북한, 유엔사측 선임비서장의 선임장 접수 거부

- 북한은 유엔사측 비서장이라는 직책을 인정하지 않음.
- 북한은 지금 「조선인민군」과 「미육군」 대표 자격으로 만나는 것임.

95. 3. 3 북한, 중감위 폴란드대표단 추방에 항의하는 중감위 스위스·스웨덴 대표 공동명의 서한 접수 거부

95. 3. 9 중국 외교부 대변인, 한반도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것을 지지한다는 입장 천명

95. 3. 13 중국 외교부 아주국장(전학장), “남북대화가 조속히 재개되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남북한 당사자에 의한 한반도 평화보장 체계 수립을 추진하는 한국정부의 입장을 이해한다”고 밝힘.

95. 3. 28 북한군 판문점 대표부 부대표 박임수대표, 미·북 장성급 접촉 재촉구

- 최근 주한미군의 무력을 증가시켜 T/S훈련을 대체할 전쟁연습으로 조선반도의 정세를 긴장시키고 있음.

- 이러한 군사훈련 강화는 정전협정 파기의 의도이며, 정전협정 파기에 대응해 우리는 준비가 되어있음.
 - 미국측은 조·미장성급 접촉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 이는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보장에 대한 우리의 제의를 외면하는 처사임.
95. 4. 19 비무장지대 중서부지역에서 북한군 6명(4명은 부장)이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으로 월선(10:52), 정찰활동 후 복귀
95. 4. 23 비무장지대 중서부지역에서 북한군 2명이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으로 월선(09:00), 정찰활동 후 복귀
95. 4. 26 북한, 비무장 지대 북한군 군사분계선 월선 사건을 협의하기 위해 유엔사측이 비서장급회의 개최를 제의하였으나 이를 묵살함.
95. 5. 1 중감위 폴란드 대표 오프차레크 소장, 판문점 스위스·스웨덴 캠프 방문
95. 5. 3 북한군 판문점 대표부 부대표 박임수 대좌, 유엔사측 옴스 대령에게 공동경비구역 북측지역 폐쇄 및 북측관리 건물 폐쇄 통보
- 판문점 중감위 사무실, 휴게실, 오락실을 폐쇄함.
 - 앞으로 미군, 중감위 요원, 기자 등은 북측의 허가없이 공동경비구역 북측 지역으로 넘어오지 못함.
 - 비무장지대 남측지역에 남조선의 무력증강과 군사적 도

발을 계속한다면 비무장지대 지위와 관련되는 조치를 취할 것임.

95. 5. 3 북한군 판문점 대표부 책임연락군관 유영철 상좌, 중감위 스위스·스웨덴 대표단의 비서장에게 북한의 중감위 건물 폐쇄 및 공동경비구역 북측지역 출입금지 조치 통보
95. 5. 5 중감위 스위스·스웨덴 대표는 방한한 폴란드 대표와 함께 용산 군정위 비서처 회의실에서 회의를 갖고 공동성명 채택
- 중감위 폴란드 대표단은 잠정적으로 바르샤바에서 중감위 활동을 지속함.
 - 스위스·스웨덴 대표는 판문점 중감위본부에서 주례회를 계속하되, 폴란드 대표의 참석없이 중감위는 어떠한 결정도 하지 않음.
 - 폴란드 대표는 최소한 3개월에 1회 또는 필요시 스위스·스웨덴 대표와 회동하기로 함.
95. 5. 19 유엔사측(미군측), 판문점 미·북 군사전화로 미·북 장성급 접촉 제의
95. 5. 24 북한, 북한군 판문점 대표부 대표 이찬복 중장 명의 유엔사 기획참모부장 스미스 소장 앞 서한 전달
- 조·미 장성급 접촉에는 조선과 미국 이외의 나라 사람이 참석하는 것은 반대함.
 - 조·미 장성급 접촉은 이찬복 중장과 스미스 소장간 단

독점측으로 하고 이 단독접촉에서 참석인원, 범위 등을 협의해 나갔으면 함.

95. 5. 25 유엔사측(미군측), 스미스 소장 명의 이찬복 중장 앞 서한 전달

- 우리측의 기본 입장은 의제는 군사현안문제로 국한하며, 참석인원은 6~7명중 한국군과 영국군 장성이 참석한다는 것임.

- 미·북 장성간의 단독접촉은 받아들일 수 없음.

95. 6. 5 북한군 판문점 대표부 책임연락관과 유영철 상좌, 미·북 장성급 접촉에 미국 이외의 다른 나라 장성이 참석하는 것에 반대 표명

95. 6. 15 북한군 판문점 대표부 연락군관 신군성 중좌, 미·북 장성급 접촉에 한국군 장성이 발언권이 없는 옵저버 자격으로 참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

95. 6. 22 북한군 판문점 대표부 책임연락군관 유영철 상좌, “유엔사측이 이른바 군정위의 틀을 유지해가면서 장성급 접촉을 가질려면 유엔사의 구성국인 다른 나라 장성은 포함될 수 있으나 한국군 장성은 참석할 수 없다”고 언급

95. 6. 22 북한군 판문점 대표부 책임연락군관 유영철 상좌, 「조선인민군의 지시」라며 정전협정 파기 시사등 6개항을 유엔사측에 전달

- 미국측이 허바드 부차관보의 「쌍방 군사포럼 유지」 약속을 불이행하고 있음.
- 북한은 더 이상 국제연합군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미군만을 인정할 것임.
- 미국측이 장성급 회담에 관심이 없다면 북한도 구걸하지는 않을 것임.
- 북한은 95년 6월 25일부로 정전협정 파기를 선언할 것임.
- 남측이 비무장지대에 중무기를 반입하고 있으므로 북한은 이에 따른 대응조치를 취할 것임.
- 미국측이 실무급 접촉을 파기하였으며, 이는 미국측의 책임임.

7. 판문점 방문절차

판문점은 한국전쟁의 총성을 멈추게 한 휴전협정의 조인장소로 국제적으로 알려졌으며, 오늘 날에는 세계사에서 가장 긴 휴전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장소이자 지구상 마지막 남은 분단국의 냉전적 대결의 장소로 우리 나라를 찾는 외국인들에게는 반드시 가고 싶어하는 관광의 명소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민족에게 판문점은 한국전쟁의 총성이 멈춘지 40년이 넘도록 여전히 동족상잔의 상처와 남북분단의 아픔을 뼈아프게 체험할 수 있는 장소로 다가선다. 판문점에는 비록 무장한 병사들이 대치하고 있지는 않지만, 판문점 「자유의 집」 팔각정에서 바로 코앞에 자리잡고 있는 군사분계선과 인민군의 모습에서 세삼 우리가 분단된 나라에서 살고 있음을 실감하게 된다.

판문점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판문점을 관할하고 있는 국제연합군 규정에 따른다. 국제연합군의 판문점 방문 규정은 내국인과 외국인을 구분하고 있다. 외국인은 국제연합군의 위탁을 받은 여행사가 방문절차를 대행하고 있다. 지금은 「대한여행사」가 방한하는 외국인의 판문점 방문을 폐지 여행 상품 형식으로 대행하고 있다.

내국인의 경우 국제연합군은 우리 정부가 정한 일정한 절차를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통일원 남북회담사무국에서 판문점을 방문하고자 하는 내국인의 방문절차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방문절차 규정은 부록 참조)

참 고 문 헌

1. 국방정보본부, 『군사정전위원회 편람』, 서울, 광진문화사, 1986
2. 국방정보본부, 『군사정전위원회 편람 제2집』 서울, 군인공제회 제1인쇄사업소, 1993
3. 국토통일원, 『개방화하는 동아시아의 남북대화』, 서울, 1987
4. 국토통일원, 『남북대화백서』, 서울, 1988
5. 김기빈, 『가고픈 산하, 북녘의 땅이름』, 서울, 지식산업사, 1990
6. 김석영, 『판문점 20년』, 서울, 진명문화사, 1973
7. 김학준, “한국정전협정의 성립과정”, 『통일논총』 (1986년 12월)
8. 남북회담사무국, 『남북대화사료집』 1권-12권, 서울, 남북회담사무국, 1994
9. 남북조절위원회 편, 『남북대화백서』, 서울, 남북조절위원회, 1979
10. 대한공론사 편, 『판문점 13년』, 서울, 대한공론사, 1966
11. 이정근, 『판문점』, 평양, 조선로동당 출판사, 1986
12. 이정근·리병렬 공저, 『원한의 군사분계선』 평양, 조선로동당 출판사, 1990
13. 배기찬, 『신북한 지리지』, 서울, 도서출판 다나, 1994
14. 배우리, 『우리 땅 이름의 뿌리를 찾아서』, 서울, 토담, 1994
15. 북한문제연구소, 『북한』(1989. 7.), 1989
16. 사회과학출판사, 『정치사건』, 평양, 평양종합인쇄공장, 1973
17. 송효순, 『대석방』, 서울, 신현실사, 1976
18. 웨인 커크브라이트, 『판문점』, 서울, 한림출판사, 1992
19. 이동준, 『자유의 길 판문점』, 서울, 승리문화사, 1959
20. 이원복, 『논픽션 판문점 700일』, 서울, 대림기획, 1989

21. 중앙정보부 편, 『군사정전회담 자료집』, 서울, 을유문화사, 1973
22. 조규하 · 이경문 · 강성재 공저, 『남북의 대화』, 서울, 고려원, 1987
23. 통일원, 『북한지지도요람』, 서울, 1993
24. 통일원, 『통일백서』, 1990, 1992, 1994
25. 통일원, 『남북회담 추진경과 I, II』, 서울, 1993
26. 통일원, 『남북대화관련 쌍방 서신 및 직통전화통지문』, 서울, 1993, 1994
27. 통일원, 『남북대화연표(1981-1990)』, 서울, 1991
28. 통일원, 『남북대화연표』, 서울, 1994
29. 피터 현, 『북한 기행』, 서울, 한진출판사, 1980
30. 한국관광자원공사, 『북한의 관광자원』, 서울, 1991

부

부

부 록 목 차

1. 관문점 일지(1951년~1995년)	115
2. 한국정전협정(53. 7. 27)	148
3. 한국정전협정체결 이후 군정위 쌍방간 추가 합의 사항	181
4. 남북적십자회담 상설연락사무소 설치 합의문(71. 9. 29)	254
5. 서울~평양간 남북직통전화 가설 협의 통신기술실무자 회의 합의사항(72. 4. 28, 29)	256
6. 서울-평양간 남북직통전화 가설 및 운용에 관한 합의서(72. 7. 4)	258
7. 적십자 본회담 기타 진행절차와 일시에 관한 쌍방 합의문 (72. 8. 11)	260
8. 남북적십자회담 본회담을 위한 통신기술 실무자회의 합의문 (72. 8. 16)	276
9. 남북적십자사 중앙기관 사이의 직통전화 운용절차 합의서 (72. 8. 25)	288
10. 남북적십자간 직통전화 운영 재개합의 관련 전화통지문	292
11. 남북연락사무소의 설치 운영에 관한 합의서(92. 5. 7)	295
12. 관문점 방문 규정(92. 9. 14)	297

1. 판문점 일지(1951년~1995년)

- 51. 7. 8 정전협정 예비회담 개최(10:00, 개성시 내봉장)
- 51. 7.10 제1차 정전회담 개최(14:00, 개성시 내봉장)
- 51. 9. 6 유엔군측, 휴전회담 장소를 개성에서 타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한 연락장교 접촉 제의
- 51. 9.27 유엔군측 송현리 근처 양측 전선 중간지점에서 회담을 가질 것을 제의
- 51.10. 7 북측, 회담장소를 판문점으로 이전할 것을 제의
- 51.10. 8 유엔군측 판문점으로 회담장소 이전에 동의하는 서한 전달
- 51.10.19 쌍방 연락장교 판문점 첫 접촉
- 51.10.22 쌍방 연락장교 접촉에서 판문점을 새로운 회담장소로 합의
- 53. 7.27 『한국정전협정』체결(10:00, 현 판문점 북쪽 800미터 지점)
- 53.10.19 군정위 본부구역 및 공동경비구역 설치
- 53.10.26 판문점 정치회의 예비회담 제1차 회의
- 53.10.27 판문점 정치회의 예비회담 제2차 회의
- 53.10.28 판문점 정치회의 예비회담 제3차 회의
- 53.11. 6 판문점 정치회의 예비회담 제4차 회의
- 53.11.17 판문점 정치회의 예비회담 제5차 회의
- 53.11.25 판문점 정치회의 예비회담 제6차 회의
- 53.12. 8 판문점 정치회의 예비회담 제7차 회의
- 53.12.12 판문점 정치회의 예비회담 제8차 회의
- 54. 1.18 판문점 정치회의 예비회담 결렬
- 54. 9. 1 한국전 참전 유엔군 유해 4,091구 인수
- 56. 5.31 유엔사측, 제70차 군정위 본회의에서 유엔사측 통제구역내 중립국 및 중립국 시찰소조 활동 중지 선언

- 56. 6. 9 중립국시찰 소조 활동 중지 및 판문점으로 철수
- 58. 3. 7 대한항공사소속 민항기탑승객 34명중 24명 귀환(한국인 22, 미국인2, 독일인2)
- 59. 1.27 소련 프라우다지 평양지국 기자 이동준 월남
- 64. 1.25 판문점 방문객 월북 및 동행자 남북(14 : 15)
- 65. 9.30 「자유의 집」 준공
- 66. 4.23 페트리(Petry) 중국주재 스웨덴 대사, 중감위 공산측 캠프에서 중국으로 귀임
- 66. 8. 5 군정위 북측 중공대표 제 288차 군정위 본회의 불참
- 67. 3.22 북한 중앙통신사 부사장 이수근 위장 귀순(17 : 20)
- 67. 8.28 판문점 남방 미군 막사 피습(16 : 45)
- 68. 2. 2 푸에블로 호 납북 관련 미·북간 단독 판문점 비밀회담 시작(28차까지 지속)
- 68. 4.12 유엔사측 공동일직장교 피습(13 : 40)
- 68. 4.14 유엔사측 경비병 트럭 피습(23 : 00)
- 68.12.23 푸에블로 호 승무원 82명 귀환 및 유해 14구 송환(11 : 30)
- 69. 9. 판문각 건립
- 70.10. 9 북측 경비병 군정위 회담장 구역에서 난동(08 : 00)
- 71. 7. 6 군정위 북측 중공대표 318차 군정위 본회의 복귀
- 71. 8.20 남북적십자 파견원 제1차 접촉(12 : 00, 중감위회의실)
- 71. 8.26 남북적십자 파견원 제2차 접촉(12 : 00, 중감위회의실)
- 71. 8.30 남북적십자 파견원 제3차 접촉(12 : 00, 중감위회의실)
- 71. 9. 3 남북적십자 파견원 제4차 접촉(12 : 00, 중감위회의실)
- 71. 9.16 남북적십자 파견원 제5차 접촉(12 : 00, 중감위회의실)
- 71. 9.16 대한적십자사 전방회담사무소 설치
- 71. 9.20 남북적십자 제1차 예비회담(11 : 00, 중감위회의실)

- 적십자회담 상설연락사무소 설치와 연락사무소간 직통전화
설치 구두 합의

71. 9.22 「자유의 집」과 「판문각」 사이 직통전화 가설(45년 이후 26년만)
71. 9.29 남북적십자 제2차 예비회담(11:00, 중감위원회의실)
 ◦ 「적십자회담 상설연락사무소 설치 운영 합의서」 합의
- 71.10. 6 남북적십자회담 제3차 예비회담(11:00, 중감위원회의실)
- 71.10.13 남북적십자회담 제4차 예비회담(11:00, 중감위원회의실)
- 71.10.20 남북적십자회담 제5차 예비회담(11:00, 중감위원회의실)
- 71.10.27 남북적십자회담 제6차 예비회담(11:00, 중감위원회의실)
- 71.11. 3 남북적십자회담 제7차 예비회담(11:00, 중감위원회의실)
- 71.11.11 남북적십자회담 제8차 예비회담(11:00, 중감위원회의실)
- 71.11.19 남북적십자회담 제9차 예비회담(11:00, 중감위원회의실)
- 71.11.20 정홍진↔김덕현 제1차 접촉(10:05, 중감위원회의실)
- 71.11.24 남북적십자회담 제10차 예비회담(11:00, 중감위원회의실)
- 71.12. 3 남북적십자회담 제11차 예비회담(11:00, 중감위원회의실)
- 71.12.10 남북적십자회담 제12차 예비회담(11:00, 중감위원회의실)
- 71.12.10 정홍진↔김덕현 제2차 접촉(14:30, 중감위원회의실)
- 71.12.17 남북적십자회담 제13차 예비회담(11:00, 중감위원회의실)
 ※ 회담취재 남북기자 충돌
- 71.12.17 정홍진↔김덕현 제3차 접촉(14:30, 중감위원회의실)
72. 1.10 남북적십자회담 제14차 예비회담(11:00, 중감위원회의실)
72. 1.19 남북적십자회담 제15차 예비회담(11:00, 중감위원회의실)
72. 1.28 남북적십자회담 제16차 예비회담(11:00, 중감위원회의실)
72. 1.29 정홍진↔김덕현 제4차 접촉(14:10, 중감위원회의실)
72. 2. 3 남북적십자회담 제17차 예비회담(11:00, 중감위원회의실)
72. 2.10 남북적십자회담 제18차 예비회담(11:00, 중감위원회의실)

- 72. 2.17 남북적십자회담 제19차 예비회담(11:00, 중감위회의실)
- 72. 2.21 제1차 적십자회담 의제분안정리를 위한 제1차 실무회담
(10:00, 중감위회의실)
- 72. 2.24 제1차 적십자회담 의제분안정리를 위한 제2차 실무회담
(10:00, 중감위회의실)
- 72. 2.28 제1차 적십자회담 의제 분안정리를 위한 제3차 실무회담
(10:00, 중감위회의실)
- 72. 3. 6 제1차 적십자회담 의제 분안정리를 위한 제4차 실무회담
(10:00, 중감위회의실)
- 72. 3. 7 정홍진↔김택현 제5차 접촉(10:00, 중감위회의실)
- 72. 3.10 제1차 적십자회담 의제 분안정리를 위한 제5차 실무회담
(10:00, 중감위회의실)
- 72. 3.10 정홍진↔김택현 제6차 접촉(13:30, 판문각)
- 72. 3.14 정홍진↔김택현 제7차 접촉(10:25, 자유의 집)
- 72. 3.16 정홍진↔김택현 제8차 접촉(10:00, 판문각)
- 72. 3.17 정홍진↔김택현 제9차 접촉(14:00, 자유의 집)
- 72. 3.17 제1차 적십자회담 의제 분안정리를 위한 제6차 실무회담
(10:00, 중감위회의실)
- 72. 3.20 정홍진↔김택현 제10차 접촉(10:00, 판문각)
- 72. 3.22 정홍진↔김택현 제11차 접촉(10:00, 자유의 집)
- 72. 3.24 제1차 적십자회담 의제 분안정리를 위한 제7차 실무회담
(10:00, 중감위회의실)
- 72. 3.28 정홍진 판문점 통과(09:30) 평양 방문
- 72. 3.31 정홍진 판문점 통과(15:40) 서울 귀환
- 72. 4.17 제1차 적십자회담 의제 분안정리를 위한 제8차 실무회담
(10:00, 중감위회의실)

- 72. 4.19 김덕현 판문점 통과(09 : 45) 서울 방문
- 72. 4.21 김덕현 판문점 통과(10 : 50) 평양 귀환
- 72. 4.25 이후락 중앙정보부장 평양 방문 질차협의 제1차 실무접촉
(15 : 00, 판문각)
- 72. 4.26 이후락 중앙정보부장 평양 방문 질차협의 제2차 실무접촉
(10 : 00, 자유의 집)
- 72. 4.29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실과 김영주 조선로동당 조직지도부장실간 직
통전화 비밀 개통(12 : 45)
- 72. 5. 2 이후락 중앙정보부장 판문점 통과(14 : 00) 평양 방문
- 72. 5. 5 이후락 중앙정보부장 판문점 통과(11 : 00) 서울 귀환
- 72. 5. 9 제1차 적십자회담 의제 문안정리를 위한 제9차 실무회담
(10 : 00, 중감위회의실)
- 72. 5.12 제1차 적십자회담 의제 문안정리를 위한 제10차 실무회담
(10 : 00, 중감위회의실)
- 72. 5.17 박성철 부수상 서울 방문 질차협의 제1차 실무접촉(11 : 00, 판문각)
- 72. 5.19 제1차 적십자회담 의제 문안정리를 위한 제11차 실무회담
(10 : 00, 중감위회의실)
- 72. 5.22 제1차 적십자회담 의제 문안정리를 위한 제12차 실무회담
(10 : 00, 중감위회의실)
- 72. 5.25 박성철 부수상 서울 방문 질차협의 제2차 실무접촉
(10 : 00, 자유의 집)
- 72. 5.29 박성철 부수상 판문점 통과(10 : 50) 서울 방문
- 72. 6. 1 박성철 부수상 판문점 통과(10 : 00) 평양 귀환
- 72. 6. 5 제1차 적십자회담 의제 문안정리를 위한 제13차 실무회담
(10 : 00, 중감위회의실)
- 72. 6.16 남북적십자 제20차 예비회담(11 : 00, 중감위회의실)

72. 6.21 7·4 남북공동성명문안 작성 협의 제1차 실무접촉(10:00, 판문각)
72. 6.23 7·4 남북공동성명문안 작성 협의 제2차 실무접촉
(16:00, 자유의 집)
72. 6.25 7·4 남북공동성명문안 작성 협의 제3차 실무접촉(10:00, 판문각)
72. 6.27 7·4 남북공동성명문안 작성 협의 제4차 실무접촉
(14:00, 자유의 집)
72. 6.28 7·4 남북공동성명문안 작성 협의 제5차 실무접촉(12:30, 판문각)
72. 6.30 7·4 남북공동성명문안 작성 협의 제6차 실무접촉
(16:00, 자유의 집)
72. 7. 1 7·4 남북공동성명문안 작성 협의 제7차 실무접촉(09:40, 판문각)
72. 7. 4 남북직통전화 가설 및 운용에 관한 합의서 공포
72. 7.10 남북적십자 제21차 예비회담(11:00, 중감위원회의실)
72. 7.14 남북적십자 제22차 예비회담(11:00, 중감위원회의실)
72. 7.16 남북공동위원장 제1차회의 질차협의 제1차 실무접촉
(09:35, 판문각)
72. 7.19 남북적십자 제23차 예비회담(11:00, 중감위원회의실)
72. 7.19 남북공동위원장 제1차회의 질차협의 제2차 실무접촉
(14:00, 자유의 집)
72. 7.26 남북조절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협의 제1차 실무접촉(14:00, 판문각)
72. 7.26 남북적십자 제24차 예비회담(11:00, 중감위원회의실)
72. 7.27 제1차 적십자 본회담 진행절차를 위한 실무회의
(10:00, 중감위원회의실)
72. 7.28 남북조절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협의 제2차 실무접촉
(15:00, 자유의 집)
72. 7.31 남북조절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협의 제3차 실무접촉(11:00, 판문각)
72. 8. 1 남북조절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협의 제4차 실무접촉

- (14 : 00, 자유의 집)
72. 8. 3 제2차 적십자 본회담 진행절차를 위한 실무회의
(10 : 00, 중감위회의실)
72. 8. 9 제3차 적십자 본회담 진행절차를 위한 실무회의
(10 : 00, 중감위회의실)
72. 8.10 남북조절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협의 제5차 실무접촉(10 : 00, 판문각)
72. 8.11 남북적십자 제25차 예비회담(11 : 00, 중감위회의실)
72. 8.16 적십자 본회담 대비 남북간 전신전화 가설 통신실무자 회의
(10 : 00, 중감위 회의실)
72. 8.17 남북간 연결 전신전화회선 가설 남북공동작업(10 : 00)
72. 8.18 남북적십자 본회담용 직통전화(서울-평양간) 20회선 가설
72. 8.24 남북조절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협의 제6차 실무접촉(10 : 00, 판문각)
72. 8.24 적십자 본회담을 위한 제1차 남북연락관 회의
(12 : 00, 중감위회의실)
72. 8.25 적십자 본회담을 위한 제2차 남북연락관 회의(12 : 00, 중감위회의실)
72. 8.25 서울 평양간 적십자 중앙기관간 직통전화 개통
72. 8.29 남북적십자회담 제1차 본회의참가 우리측대표단 판문점 통과
(09 : 30) 입북
72. 9. 2 남북적십자회담 제1차 본회의참가 우리측대표단 판문점 통과
(15 : 30) 귀환
72. 9.12 남북적십자회담 제2차 본회담참가 북측대표단 판문점 통과
(10 : 00) 입경
72. 9.16 남북적십자회담 제2차 본회담참가 북측대표단 판문점 통과
(12 : 00) 귀환
72. 9.29 남북조절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협의 제7차 실무접촉
(10 : 00, 자유의 집)

- 72.10. 4 남북공동위원장 제1차회의 질차협의 제3차 실무접촉(14 : 35, 판문각)
- 72.10. 4 남북조절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협의 제8차 실무접촉(14 : 00, 판문각)
- 72.10. 6 남북공동위원장 제1차회의 질차협의 제4차 실무접촉
(10 : 00, 자유의 집)
- 72.10.12 제1차 남북공동위원장회의(10 : 10, 자유의 집)
- 72.10.16 남북공동위원장 제2차회의 질차협의 제1차 실무접촉(10 : 00, 판문각)
- 72.10.18 남북공동위원장 제2차회의 질차협의 제2차 실무접촉
(14 : 00, 자유의 집)
- 72.10.23 남북적십자회담 제3차 본회담 참가 우리측 대표단 판문점 통과
(09 : 35) 입북
- 72.10.26 남북적십자회담 제3차 본회담 참가 우리측 대표단 판문점 통과
(14 : 55) 귀환
- 72.10.27 남북공동위원장 제2차회의 질차협의 제3차 실무접촉(14 : 00, 판문각)
- 72.10.31 남북공동위원장 제2차회의 질차협의 제4차 실무접촉
(14 : 00, 자유의 집)
- 72.11. 2 남북공동위원장 제2차회의 참가 우리측 위원장 판문점 통과
(10 : 00) 입북
- 72.11. 4 남북공동위원장 제2차회의 참가 우리측 위원장 판문점 통과
(11 : 00) 귀환
- 72.11.22 남북조절위원회 공동위원장 제3차회의 질차협의 실무접촉
(10 : 00, 판문각)
- 72.11.22 남북적십자회담 제4차 본회담 참가 북측 대표단 판문점 통과
(07 : 00) 입경
- 72.11.24 남북적십자회담 제4차 본회담 참가 북측 대표단 판문점 통과
(15 : 00) 귀환
- 72.11.24 남북조절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협의 제9차 실무접촉(14 : 00, 자유의 집)

- 72.11.30 남북조절위원회 공동위원장 제3차회의 참가 북측위원장 판문점 통과(10:00) 입경
- 72.12. 2 남북조절위원회 공동위원장 제3차회의 참가 북측위원장 판문점 통과(10:00) 귀환
73. 1.24 남북조절위원회 제2차회의 절차협의 제1차 실무접촉(10:00, 판문각)
73. 2.10 남북조절위원회 제2차회의 절차협의 제2차 실무접촉
(11:00, 자유의 집)
73. 2.20 남북조절위원회 제2차회의 절차협의 제3차 실무접촉(10:00, 판문각)
73. 3.10 남북조절위원회 제1차 간사회의(10:05, 판문각)
73. 3.14 남북조절위원회 제2차회의 우리측 대표단 판문점 통과(10:00) 입북
73. 3.16 남북조절위원회 제2차회의 우리측 대표단 판문점 통과(15:57) 귀환
73. 3.20 남북적십자회담 제5차 본회담 참가 우리측 대표단 판문점 통과
(09:30) 입북
73. 3.23 남북적십자회담 제5차 본회담 참가 우리측 대표단 판문점 통과
(15:00) 귀환
73. 4.17 남북조절위원회 제3차회의 절차협의 실무접촉(11:00, 자유의 집)
73. 4.24 남북조절위원회 제2차 간사회의 회의(10:08, 자유의 집)
73. 5. 8 남북적십자회담 제6차 본회담 참가 북측 대표단 판문점 통과
(10:00) 입경
73. 5.11 남북적십자회담 제6차 본회담 참가 북측 대표단 판문점 통과
(11:00) 귀환
73. 5.23 남북조절위원회 제3차 간사회의 회의(10:05, 판문각)
73. 6.12 남북조절위원회 제3차회의 북측 대표단 판문점 통과(09:48) 입경
73. 6.14 남북조절위원회 제3차회의 북측 대표단 판문점 통과(10:00) 귀환
73. 7.10 남북적십자회담 제7차 본회담 참가 우리측 대표단 판문점 통과
(09:30) 입북

- 73. 7.13 남북적십자회담 제7차 본회담 참가 우리측 대표단 판문점 통과
(15 : 00) 귀환
- 73.11.21 남북적십자 연락책임자 접촉(10 : 00, 중감위회의실)
- 73.11.28 남북적십자 제1차 대표회의(11 : 00, 중감위회의실)
- 73.12. 5 남북조절위원회 제1차 부위원장 회의(10 : 00, 판문각)
- 73.12.19 남북조절위원회 제2차 부위원장 회의(10 : 00, 자유의 집)
- 74. 1.30 남북조절위원회 제3차 부위원장 회의(10 : 00, 판문각)
- 74. 2.25 남북적십자 제2차 대표회의(11 : 00, 중감위회의실)
- 74. 2.27 남북조절위원회 제4차 부위원장 회의(10 : 00, 자유의 집)
- 74. 3. 3 북측 정비병 유엔사측 공동일직장교, 경비소대장 구타(14 : 00)
- 74. 3.11 남북적십자 제3차 대표회의(11 : 00, 중감위회의실)
- 74. 3.27 남북조절위원회 제5차 부위원장 회의(10 : 00, 판문각)
- 74. 4. 3 남북적십자 제4차 대표회의(11 : 00, 중감위회의실)
- 74. 4.24 남북조절위원회 제6차 부위원장 회의(10 : 00, 자유의 집)
- 74. 4.29 남북적십자 제5차 대표회의(11 : 00, 중감위회의실)
- 74. 5.22 남북적십자 제6차 대표회의(11 : 00, 중감위회의실)
- 74. 5.29 남북적십자 제7차 대표회의(11 : 00, 중감위회의실)
- 74. 6.28 남북조절위원회 제7차 부위원장 회의(10 : 00, 판문각)
- 74. 7.10 남북적십자 제1차 실무회의(10 : 00, 중감위회의실)
- 74. 7.24 남북적십자 제2차 실무회의(10 : 00, 중감위회의실)
- 74. 8.28 남북적십자 제3차 실무회의(10 : 00, 중감위회의실)
- 74. 9.21 남북조절위원회 제8차 부위원장 회의(10 : 00, 자유의 집)
- 74. 9.25 남북적십자 제4차 실무회의(10 : 00, 중감위회의실)
- 74.11. 5 남북적십자 제5차 실무회의(10 : 00, 중감위회의실)
- 74.11.29 남북적십자 제6차 실무회의(10 : 00, 중감위회의실)
- 75. 1. 8 남북조절위원회 제9차 부위원장 회의(10 : 05, 판문각)

- 75. 1.24 남북적십자 제7차 실무회의(10 : 00, 중감위회의실)
- 75. 2.28 남북적십자 제8차 실무회의(10 : 00, 중감위회의실)
- 75. 3.14 남북조절위원회 제10차 부위원장 회의(10 : 00, 자유의 집)
- 75. 3.26 남북적십자 제9차 실무회의(10 : 00, 중감위회의실)
- 75. 5. 8 남북적십자 제10차 실무회의(10 : 00, 중감위회의실)
- 75. 5.27 북측 경비병 한국군 경비장교 김명근 중위 구타
- 75. 7.21 남북적십자 제11차 실무회의(10 : 00, 중감위회의실)
- 75. 8.22 남북적십자 제12차 실무회의(10 : 00, 중감위회의실)
- 75. 8.26 대성동 농부 김세연 피납(13 : 00)
- 75.10.23 남북적십자 제13차 실무회의(10 : 00, 중감위회의실)
- 75.11.28 남북적십자 제14차 실무회의(10 : 00, 중감위회의실)
- 76. 2.12 남북적십자 제15차 실무회의(10 : 00, 중감위회의실)
- 76. 4.10 남북적십자 제16차 실무회의(10 : 00, 중감위회의실)
- 76. 6. 9 남북적십자 제17차 실무회의(10 : 00, 중감위회의실)
- 76. 6.26 북측 경비병 유엔사측 경비부대 헨더슨 소령 구타(09 : 18)
- 76. 8.18 북측 경비병 보니파스 경비소대장 등 유엔사측 경비병을 도끼로 살해(10 : 50)
- 76. 8.20 남북적십자 제18차 실무회의(10 : 00, 중감위회의실)
- 76. 8.28 제381차 군정위 본회의에서 공동경비구역 분할 경비키로 합의
- 76. 8.30 북한 남북직통전화 23회선 모두 두절시킴
- 76.10.19 남북적십자 제19차 실무회의(10 : 00, 중감위회의실)
- 76.12.10 남북적십자 제20차 실무회의(10 : 00, 중감위회의실)
- 77. 2.11 남북적십자 제21차 실무회의(10 : 00, 중감위회의실)
- 77. 4.28 남북적십자 제22차 실무회의(10 : 00, 중감위회의실)
- 77. 7.15 남북적십자 제23차 실무회의(10 : 00, 중감위회의실)
- 77.10.14 남북적십자 제24차 실무회의(10 : 00, 중감위회의실)

- 77.12. 9 남북적십자 제25차 실무회의(10 : 00, 중감위회의실)
- 78.10.16 판문점 부근 제3땅굴 발견
79. 2.17 남북조절위 서울측 대표와 북한의 조국전선 대표사이의 제1차 변칙 접촉(10 : 00, 중감위회의실)
79. 2.27 제35차 세계탁구선수권대회(평양) 단일팀 구성을 위한 남북한 탁구협회 제1차 회의(10 : 00, 중감위회의실)
79. 3. 5 제35차 세계탁구선수권대회(평양) 단일팀 구성을 위한 남북한 탁구협회 제2차 회의(10 : 00, 중감위회의실)
79. 3. 7 남북조절위 서울측 대표와 북한의 조국전선 대표사이의 제2차 변칙 접촉(10 : 00, 중감위회의실)
79. 3. 9 제35차 세계탁구선수권대회(평양) 단일팀 구성을 위한 남북한 탁구협회 제3차 회의(10 : 00, 중감위회의실)
79. 3.12 제35차 세계탁구선수권대회(평양) 단일팀 구성을 위한 남북한 탁구협회 제4차 회의(10 : 00, 중감위회의실)
79. 3.14 남북조절위 서울측 대표와 북한의 조국전선 대표사이의 제3차 변칙 접촉(10 : 00, 중감위회의실)
79. 3.14 남북조절위 서울측 대표와 북한의 조국전선 대표사이의 제3차 변칙 접촉(10 : 00, 중감위회의실)
80. 1.11 북한측 남북직통전화 변칙 통화 시도 후 중단
 ◦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직원이 남북조절위원회선 사용
80. 2. 6 남북총리회담의 절차문제협의를 위한 제1차 실무대표접촉(10 : 00, 중감위회의실)
 ◦ 80. 2. 7. 10 : 00를 기해 남북직통전화 재개에 합의
80. 2. 7 남북직통전화 재개통(10 : 08)
 ◦ 북측 남북조절위원회 북측선만은 일방적으로 폐선 조치
80. 2.19 남북총리회담의 절차문제협의를 위한 제2차 실무대표접촉

(10:00, 판문각)

- 80. 3. 4 남북총리회담의 절차문제협의를 위한 제3차 실무대표접촉
(10:00, 자유의집)
- 80. 3.18 남북총리회담의 절차문제협의를 위한 제4차 실무대표접촉
(10:00, 판문각)
- 80. 4. 1 남북총리회담의 절차문제협의를 위한 제5차 실무대표접촉
(10:00, 자유의 집)
- 80. 4.18 남북총리회담의 절차문제협의를 위한 제6차 실무대표접촉
(10:00, 판문각)
- 80. 5. 6 남북총리회담의 절차문제협의를 위한 제7차 실무대표접촉
(10:00, 자유의 집)
- 80. 5.22 남북총리회담의 절차문제협의를 위한 제8차 실무대표접촉
(10:00, 판문각)
- 80. 6. 구 평화의 집 건립
- 80. 6.24 남북총리회담의 절차문제협의를 위한 제9차 실무대표접촉(10:00,
자유의 80. 8. 20 남북총리회담의 절차문제협의를 위한 제10차 실
무대표접촉(10:00, 판문각)
- 80. 9.25 남북직통전화 복측 운용 중단
- 81.10.30 중감위 체코슬로바키아 요원 오르짤 일병 월선(08:30) 미국 망명
요청
- 82. 6.10 유엔사측 경비병 화이트 미군 일병 월북
- 84. 4. 9 LA 올림픽 단일팀 구성 협의 제1차 남북체육회담
(10:00, 중감위회의실)
- 84. 4.30 LA 올림픽 단일팀 구성 협의 제2차 남북체육회담
(10:00, 중감위회의실)
- 84. 5.25 LA 올림픽 단일팀 구성 협의 제3차 남북체육회담

- (10 : 00, 중감위회의실)
84. 9.18 수재물자인수 관련 남북적십자 실무접촉(10 : 00, 중감위회의실)
 ◦ 남북직통전화 운용 재개키로 합의
84. 9.29 남북직통전화 20회선 운용 재개
- 84.11.15 남북경제회담 제1차회담(10 : 00, 중감위회의실)
 ◦ 경제회담용 1회선 별도 지정 운용 합의
- 84.11.20 제8차 남북적십자 본회담 재개를 위한 예비접촉
 (10 : 00, 중감위회의실)
- 84.11.23 병양주제 소련대사관 통역원 마투조크 판문점 월선(11 : 35)미국
 망명 요청
- 84.12.20 남북경제회담용 1회선 구성을 위한 통신실무자 접촉(중감위회의실)
- 84.12.21 남북경제회담용 1회선 개통
85. 5.17 남북경제회담 제2차 회담(10 : 00, 중감위회의실)
85. 5.20 제8차 남북적십자회담 제1차 연락관 접촉(14 : 00, 중감위회의실)
85. 5.23 제8차 남북적십자회담 제2차 연락관 접촉(14 : 00, 중감위회의실)
85. 5.25 제8차 남북적십자회담 제3차 연락관 접촉(11 : 00, 중감위회의실)
85. 5.25 제8차 남북적십자회담 통신실무자 접촉(11 : 00, 중감위회의실)
85. 5.27 남북적십자회담 제8차 본회담 참가 북측 대표단 판문점 통과
 (09 : 05) 입경
85. 5.30 남북적십자회담 제8차 본회담 참가 북측 대표단 판문점 통과
 (11 : 01) 귀환
85. 6.20 남북경제회담 제3차회담(10 : 00, 중감위회의실)
85. 7. 9 남북이산가족 고향방문 및 예술공연단 교환 방문 관련 실무접촉에
 앞선 제1차 비공식 접촉(10 : 30, 중감위회의실)
85. 7.12 남북이산가족 고향방문 및 예술공연단 교환 방문 관련 실무접촉에
 앞선 제2차 비공식 접촉(10 : 00, 중감위회의실)

- 85. 7.15 제1차 고향방문단 및 예술공연단 교환 관련 남북적십자 제1차 실무대표 접촉(10:00, 중감위회의실)
- 85. 7.19 제1차 고향방문단 및 예술공연단 교환 관련 남북적십자 제2차 실무대표 접촉(10:00, 중감위회의실)
- 85. 7.23 남북국회회담 제1차 예비 접촉(10:00, 중감위회의실)
- 85. 8. 통일각 건립
- 85. 8.17 남북적십자 실무대표접촉 타결을 위한 비공식 접촉(15:00, 중감위회의실)
- 85. 8.19 남북적십자 실무대표접촉 타결을 위한 비공식 접촉(16:00, 중감위회의실)
- 85. 8.19 제9차 남북적십자회담 개최를 위한 제1차 연락관 접촉(10:00, 중감위회의실)
- 85. 8.22 제1차 고향방문단 및 예술공연단 교환 관련 남북적십자 제3차 실무대표 접촉(10:00, 중감위회의실)
- 85. 8.23 제9차 남북적십자회담 개최를 위한 제2차 연락관 접촉(10:00, 중감위회의실)
- 85. 8.26 제9차 남북적십자회담 개최를 위한 제3차 연락관 접촉(08:00, 중감위회의실)
- 85. 8.26 남북적십자회담 제9차 본회담 참가 우리측 대표단 판문점 통과(09:35) 입북
- 85. 8.29 남북적십자회담 제9차 본회담 참가 우리측 대표단 판문점 통과(12:10) 귀환
- 85. 9. 8 남북이산가족 고향방문 및 예술공연단 교환 방문 공연장 사전답사를 위한 연락관 접촉(10:00, 중감위회의실)
- 85. 9.10 공연장 사전답사 인원 상호 교환 방문
- 85. 9.10 남북이산가족 고향방문 및 예술공연단 교환을 위한 연락관 제1차

- 접촉(09 : 00, 중감위회의실)
85. 9.12 공연장 사전답사 인원 귀환
85. 9.13 남북이산가족 고향방문 및 예술공연단 교환을 위한 연락관 제2차
 접촉(10 : 00, 중감위회의실)
85. 9.16 남북이산가족 고향방문 및 예술공연단 교환을 위한 연락관 제3차
 접촉(10 : 00, 중감위회의실)
85. 9.17 남북이산가족 고향방문 및 예술공연단 교환을 위한 연락관 제4차
 접촉(10 : 00, 중감위회의실)
85. 9.18 남북경제회담 제4차 회담(10 : 00, 중감위회의실)
85. 9.18 남북이산가족 고향방문 및 예술공연단 교환을 위한 연락관 제5차
 접촉(13 : 30, 중감위회의실)
85. 9.19 남북이산가족 고향방문 및 예술공연단 교환을 위한 연락관 제6차
 접촉(10 : 00, 중감위회의실)
85. 9.20 남북이산가족 고향방문 및 예술공연단 교환을 위한 연락관 제7차
 접촉(09 : 20, 중감위회의실)
85. 9.20 이산가족 고향방문 및 예술공연단 교환 방문
85. 9.23 이산가족 고향방문 및 예술공연단 교환 귀환
85. 9.25 남북국회회담 제2차 예비접촉(10 : 00, 중감위회의실)
- 85.11.20 남북경제회담 제5차 회담(10 : 00, 중감위회의실)
- 85.11.25 제10차 남북적십자회담 제1차 연락관 접촉(10 : 00, 중감위회의실)
- 85.11.28 제10차 남북적십자회담 제2차 연락관 접촉(15 : 00, 중감위회의실)
- 85.12. 2 남북적십자회담 제10차 본회담 참가 북측 대표단 판문점 통과
 (10 : 00) 입경
- 85.12. 5 남북적십자회담 제10차 본회담 참가 북측 대표단 판문점 통과
 (11 : 05) 귀환
- * 86년에는 판문점 회담·접촉이 전무

* 87년에는 판문점 회담·접촉이 전무

88. 8.18 남북국회회담 준비접촉을 위한 연락관 접촉 및 통신실무자 접촉(15:00, 중감위회의실)
88. 8.19 남북국회회담 제1차 준비접촉(11:00, 통일각)
88. 8.20 남북국회회담 제2차 준비접촉(11:00, 평화의 집)
88. 8.22 남북국회회담 제3차 준비접촉(11:00, 통일각)
88. 8.26 남북국회회담 제4차 준비접촉(11:00, 평화의 집)
- 88.10.13 남북국회회담 제5차 준비접촉(10:00, 통일각)
- 88.11.17 남북국회회담 제6차 준비접촉(10:00, 평화의 집)
- 88.12.29 남북국회회담 제7차 준비접촉(10:00, 통일각)
89. 2. 8 남북고위급회담 제1차 예비회담(10:00, 평화의 집)
89. 3. 2 남북고위급회담 제2차 예비회담(10:00, 통일각)
89. 3. 9 북경 아시안 게임 단일팀 구성 논의 제1차 남북체육회담(10:00, 평화의 집)
89. 3.28 북경 아시안 게임 단일팀 구성 논의 제2차 남북체육회담(10:00, 통일각)
89. 7.29 군정위 북측의 중국군 좌수개 소령 부부 판문점 월선(11:00) 미국 망명 요청
89. 8.15 임수경, 문규현 군사분계선 불법 월선(14:26) 귀환
89. 9.27 제2차 고향방문단 및 예술단 교환 관련 남북적십자 제1차 실무대표접촉(10:00, 중감위회의실)
- 89.10. 6 제2차 고향방문단 및 예술단 교환 관련 남북적십자 제2차 실무대표접촉(10:00, 중감위회의실)
- 89.10.12 남북고위급 회담 제3차 예비회담(10:00, 평화의 집)
- 89.10.16 제2차 고향방문단 및 예술단 교환 관련 남북적십자 제3차 실무대표접촉(10:00, 중감위회의실)

- 89.10.20 북경 아시안 게임 단일팀 구성 논의 제3차 남북체육회담
(10 : 00, 평화의 집)
- 89.10.25 남북국회회담 제8차 준비접촉(10 : 00, 평화의 집)
- 89.11. 8 제2차 고향방문단 및 예술단 교환 관련 남북적십자 제4차 실무대표접촉(10 : 00, 중감위회의실)
- 89.11.13 제2차 고향방문단 및 예술단 교환 관련 남북적십자 제5차 실무대표접촉(10 : 00, 중감위회의실)
- 89.11.15 남북고위급회담 제4차 예비회담(10 : 00, 통일각)
- 89.11.16 북경 아시안 게임 단일팀 구성 논의 제4차 남북체육회담
(10 : 00, 통일각)
- 89.11.21 제2차 고향방문단 및 예술단 교환 관련 남북적십자 제6차 실무대표접촉(10 : 00, 중감위회의실)
- 89.11.24 북경 아시안 게임 단일팀 구성 논의 제5차 남북체육회담
(10 : 00, 평화의 집)
- 89.11.27 제2차 고향방문단 및 예술단 교환 관련 남북적십자 제7차 실무대표접촉(10 : 00, 중감위회의실)
- 89.11.29 남북국회회담 제9차 준비접촉(10 : 00, 통일각)
- 89.12. 1 북경 아시안게임 단일팀 구성 논의 남북체육회담 제1차 실무대표접촉(10 : 00, 중감위회의실)
- 89.12. 4 남북체육회담 실무대표접촉 수석대표 개별접촉
(10 : 00, 중감위회의실)
- 89.12. 6 북경 아시안게임 단일팀 구성 논의 남북체육회담 제2차 실무대표접촉(10 : 00, 중감위회의실)
- 89.12.15 북경 아시안게임 단일팀 구성 논의 남북체육회담 제3차 실무대표접촉(10 : 00, 중감위회의실)
- 89.12.15 「평화의 집」 건립

- 89.12.20 남북고위급회담 제5차 예비회담(10:00, 평화의 집)
- 89.12.22 북경 아시안 게임 단일팀 구성 논의 제6차 남북체육회담
(10:00, 통일각)
- 90. 1.10 북경 아시안 게임 단일팀 구성 논의 남북체육회담 제4차 실무
대표접촉(10:00, 중감위회의실)
- 90. 1.15 북경 아시안 게임 단일팀 구성 논의 남북체육회담 제5차 실무
대표접촉(10:00, 중감위회의실)
- 90. 1.18 북경 아시안 게임 단일팀 구성 논의 남북체육회담 제7차 회의
(10:00, 평화의 집)
- 90. 1.22 북경 아시안 게임 단일팀 구성 논의 남북체육회담 제6차 실무
대표접촉(10:00, 중감위회의실)
- 90. 1.24 남북국회회담 제10차 준비접촉(10:00, 평화의 집)
- 90. 1.29 북경 아시안 게임 단일팀 구성 논의 남북체육회담 제8차 회의
(10:00, 통일각)
- 90. 1.31 남북고위급회담 제6차 예비회담(10:00, 통일각)
- 90. 2. 7 북경 아시안 게임 단일팀 구성 논의 남북체육회담 제9차 회의
(10:00, 평화의 집)
- 90. 5.28 한국전 참전 유엔군 유해 5구 인수
- 90. 7. 3 남북고위급회담 제7차 예비회담(10:00, 평화의 집)
- 90. 7. 6 남북고위급회담 예비회담 제1차 실무대표 접촉
(10:00, 중감위회의실)
- 90. 7.12 남북고위급회담 예비회담 제2차 실무대표 접촉
(10:00, 중감위회의실)
- 90. 7.26 남북고위급회담 제8차 예비회담(10:00, 통일각)
- 90. 8.23 제1차 남북고위급회담 책임연락관 접촉(15:00, 중감위회의실)
- 90. 8.28 제1차 남북고위급회담 책임연락관 접촉(10:30, 중감위회의실)

- 90. 8.30 제1차 남북고위급회담 책임연락관 접촉(15:30, 중감위회의실)
- 90. 9. 4 제1차 남북고위급회담 참가 북측 대표단 판문점 통과(10:00)
입경
- 90. 9. 7 제1차 남북고위급회담 참가 북측 대표단 판문점 통과(11:40)
귀환
- 90. 9.17 유엔가입분제 실무대표접촉 관련 남북고위급회담 책임연락관
접촉(10:00, 평화의 집)
- 90. 9.18 유엔가입분제 관련 제1차 실무대표접촉(10:00, 중감위회의실)
- 90. 9.22 유엔가입분제 실무대표접촉 관련 책임연락관 접촉
(10:00, 통일각)
- 90. 9.25 유엔가입분제 실무대표접촉 관련 책임연락관 접촉
(15:00, 평화의 집)
- 90.10. 5 유엔가입분제 관련 제2차 실무대표접촉(10:00, 중감위회의실)
- 90.10. 8 제1차 남북통일축구대회 관련 연락관 접촉
(10:00, 중감위회의실)
- 90.10. 8 범민족통일음악회 관련 연락관 접촉(15:00, 중감위회의실)
- 90.10. 9 제2차 남북고위급회담 책임연락관 접촉(10:00, 통일각)
- 90.10.12 제2차 남북고위급회담 책임연락관 접촉(15:00, 평화의 집)
- 90.10.13 남북통일축구 참가 우리측 선수단 판문점 통과(13:00) 귀환
- 90.10.14 범민족 통일음악회 참가 서울전통음악연주단 판문점 통과
(11:00) 입북
- 90.10.15 제2차 남북통일 축구대회 관련 연락관 접촉
(15:00, 중감위회의실)
- 90.10.16 제2차 남북고위급회담 참가 우리측 대표단 판문점 통과
(08:47) 입북
- 90.10.18 남북통일축구대회 2차전 관련 연락관 접촉

(14 : 00, 중감위회의실)

- 90.10.19 제2차 남북고위급회담 참가 우리측 대표단 판문점 통과
(13 : 30) 귀환
- 90.10.21 남북통일축구 북측선수단 판문점 통과(10 : 00) 입경
- 90.10.24 범민족 통일음악회 참가 서울전통음악연주단 판문점 통과
(12 : 00) 귀환
- 90.10.25 남북통일축구 북측선수단 판문점 통과(12 : 00) 귀환
- 90.10.27 유엔가입문제관련 남북고위급회담 책임연락관 접촉
(10 : 00, 통일각)
- 90.10.30 유엔가입문제관련 남북고위급회담 책임연락관 접촉
(15 : 00, 평화의 집)
- 90.11. 7 남북적십자회담 쌍방 수석대표 개별접촉(10 : 00, 중감위회의실)
- 90.11. 8 제2차 고향방문단 및 예술공연단 교환 관련 남북적십자 제8차 실무대표접촉(10 : 00, 중감위회의실)
- 90.11. 9 유엔가입문제 관련 제3차 실무대표접촉(10 : 00, 중감위회의실)
- 90.11.13 제3차 남북고위급회담 책임연락관 접촉(15 : 00, 통일각)
- 90.11.17 제3차 남북고위급회담 책임연락관 접촉(10 : 00, 평화의 집)
- 90.11.21 제3차 남북고위급회담 준비 제1차 실무대표접촉(10 : 00, 통일각)
- 90.11.26 90년 송년통일전통음악회 관련 연락관 접촉(10 : 00, 중감위회의실)
- 90.11.27 제3차 남북고위급회담 준비 제2차 실무대표접촉(10 : 00, 평화의 집)
- 90.11.28 90년 송년통일전통음악회 관련 연락관 접촉(10 : 00, 중감위회의실)
- 90.11.29 주요 국제경기대회 단일팀 구성 논의 남북체육회담 제1차 회의
(10 : 00, 통일각)
- 90.12. 1 제3차 남북고위급회담 준비 제3차 실무대표접촉(10 : 00, 통일각)
- 90.12. 3 90년 송년통일전통음악회 관련 연락관 접촉(11 : 00, 중감위회의실)
- 90.12. 5 제3차 남북고위급회담 준비 제4차 실무대표접촉(10 : 00, 통일각)

- 90.12. 7 제3차 남북고위급회담 준비 제5차 실무대표접촉(11:00, 평화의 집)
- 90.12. 8 평양만족음악단 33명 판문점 통과(11:46) 서울 방문
- 90.12.11 제3차 남북고위급회담 북측 대표단 판문점 통과(10:00) 입경
- 90.12.13 평양만족음악단 33명 판문점 통과(11:46) 평양 귀환
- 90.12.14 제3차 남북고위급회담 북측 대표단 판문점 통과(11:10) 귀환
91. 1.15 주요 국제경기대회 단일팀 구성논의 남북체육회담 제2차 회의
(10:00, 평화의 집)
91. 1.30 주요 국제경기대회 단일팀 구성논의 남북체육회담 제3차 회의
(10:00, 통일각)
91. 2.12 주요 국제경기대회 단일팀 구성논의 남북체육회담 제4차 회의
(10:00, 평화의 집)
91. 2.18 제4차 남북고위급회담 책임인락관 접촉(14:00, 통일각)
91. 2.21 주요 국제경기대회 탁구 단일팀 구성논의 제1차 실무접촉
(10:00, 통일각)
91. 2.22 주요 국제경기대회 축구 단일팀 구성논의 제1차 실무접촉
(10:00, 평화의 집)
91. 2.26 주요 국제경기대회 축구 단일팀 구성논의 제2차 실무접촉
(10:00, 통일각)
91. 2.27 주요 국제경기대회 탁구 단일팀 구성논의 제2차 실무접촉
(10:00, 평화의 집)
91. 3. 1 공동경비구역 유엔사측 경비병 김유찬 일명 밀북(01:30)
91. 3.25 유엔사측 군정위 수석대표직에 한국군 장성 임명
91. 4.27 제85차 IPU 평양 총회 참가 우리측 대표단 판문점 통과(09:00)
입북
91. 5. 5 제85차 IPU 평양 총회 참가 우리측 대표단 판문점 통과(12:30)
귀환

- 91. 5. 6 제6회 세계청소년 축구선수권대회 남북단일팀 구성 서울 평가전
참가 북측 선수단 판문점 통과(10:00) 입경
- 91. 5. 9 제6회 세계청소년 축구선수권대회 남북단일팀 구성 서울 평가전
참가 북측 선수단 판문점 통과(11:30) 귀환
- 91. 5.10 제6회 세계청소년 축구선수권대회 남북단일팀 구성 평양 평가전
참가 우리측 선수단 판문점 통과(09:00) 입북
- 91. 5.13 제6차 세계청소년 축구선수권대회 남북단일팀 구성 평양 평가전
참가 우리측 선수단 일부 판문점 통과(12:40) 귀환
- 91. 5.17 제6차 세계청소년 축구선수권대회 남북단일팀(코리아팀) 판문점
통과(12:40) 입경
- 91. 5.22 북측은 대중감위 공식활동 중단을 통보하고 중감위 월간보고서 접
수 거부
- 91. 6.24 한국전 참전 유엔군 유해 11구 인수(11:35)
- 91. 6.29 제6회 세계청소년 축구선수대회(포르투갈) 참가 남북단일팀 우리
측 선수단 판문점 통과(12:30) 귀환
- 91. 7.19 제4차 남북고위급회담 책임연락관 접촉(10:00, 통일각)
- 91. 8. 5 제4차 남북고위급회담 준비 제1차 실무대표 접촉(10:00, 통일각)
- 91. 8.10 제4차 남북고위급회담 준비 제2차 실무대표 접촉(10:00, 통일각)
- 91. 8.16 제4차 남북고위급회담 준비 제3차 실무대표 접촉(10:00, 평화의 집)
- 91. 8.20 제4차 남북고위급회담 책임연락관 접촉(10:00, 통일각)
- 91. 8.21 제4차 남북고위급회담 책임연락관 접촉(10:00, 평화의 집)
- 91. 8.22 제4차 남북고위급회담 책임연락관 접촉(10:00, 통일각)
- 91. 8.23 제4차 남북고위급회담 책임연락관 접촉(10:00, 평화의 집)
- 91. 9.18 건국대-김일성대 대학생 제1차 실무접촉(15:00, 중감위회의실)
- 91. 9.24 건국대-김일성대 대학생 제2차 실무접촉(15:00, 중감위회의실)
- 91.10.17 제4차 고위급회담 책임연락관 접촉(10:00, 평화의 집)

- 91.10.22 제4차 남북고위급회담 우리측 대표단 판문점 통과(08 : 30) 입북
- 91.10.25 제4차 남북고위급회담 우리측 대표단 판문점 통과(13 : 07) 귀환
- 91.11. 9 남북여성세미나 관련 예비실무접촉(10 : 00, 중감위원회의실)
- 91.11.11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 준비 제1차 실무대표접촉(10 : 00, 통일각)
- 91.11.15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 준비 제2차 실무대표접촉(10 : 00, 평화의 집)
- 91.11.20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 준비 제3차 실무대표접촉(10 : 00, 통일각)
- 91.11.25 남북여성세미나 참가 북측여성대표단 판문점 통과(11 : 00) 입경
- 91.11.26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 준비 제4차 실무대표접촉(10 : 00, 평화의 집)
- 91.11.29 남북여성세미나 참가 북측여성대표단 판문점 통과(11 : 53) 귀환
- 91.12. 2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 책임연락관 접촉(15 : 00, 통일각)
- 91.12. 5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 책임연락관 접촉(15 : 00, 평화의 집)
- 91.12.10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 북측 대표단 판문점 통과(10 : 10) 입경
- 91.12.13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 북측 대표단 판문점 통과(16 : 52) 귀환
- 91.12.26 핵문제 관련 제1차 대표접촉(10 : 00, 통일각)
- 91.12.28 핵문제 관련 제2차 대표접촉(10 : 00, 평화의 집)
- 91.12.31 핵문제 관련 제3차 대표접촉(10 : 00, 통일각)
- 92. 1.14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서명문건 교환을 위한 남북대표
접촉(15 : 00, 중감위원회의실)
- 92. 1.21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서명문건 교환을 위한 남북대표접촉
(15 : 00, 중감위원회의실)
- 92. 1.23 「남북합의서」 이행기구협의를 위한 제1차 남북대표접촉
(10 : 00, 평화의 집)
- 92. 1.29 「남북합의서」 이행기구협의를 위한 제2차 남북대표접촉
(10 : 00, 평화의 집)
- 92. 2. 7 「남북합의서」 이행기구협의를 위한 제3차 남북대표접촉
(10 : 00, 평화의 집)

92. 2. 8 「두만강지역 개발회의」 북측대표단 참가문제 관련한 실무대표접촉
(11 : 00, 중감위원회의실)
92. 2.10 KNCC 서울 총회 관련 실무대표접촉(15 : 00, 중감위원회의실)
92. 2.11 제6차 남북고위급회담 책임연락관 접촉(15 : 00, 평화의 집)
92. 2.13 제6차 남북고위급회담 책임연락관 접촉(15 : 00, 통일각)
92. 2.14 제6차 남북고위급회담 책임연락관 접촉(15 : 00, 평화의 집)
92. 2.18 제6차 남북고위급회담 우리측 대표단 판문점 통과(08 : 30) 입북
92. 2.21 제6차 남북고위급회담 우리측 대표단 판문점 통과(13 : 15) 귀환
92. 2.21 「두만강지역 개발회의」 관련 남북연락관 접촉
(10 : 00, 중감위원회의실)
92. 2.26 「두만강지역 개발회의」 관련 북측대표단(3명) 판문점 통과 입경
92. 2.27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 구성을 위한 제2차 대표접촉
(10 : 00, 통일각)
92. 3. 3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 구성을 위한 제3차 대표접촉
(10 : 00, 평화의 집)
92. 3. 4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 구성을 위한 제4차 대표접촉(10 : 00, 통일각)
92. 3. 6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 구성을 위한 제5차 대표접촉
(10 : 00, 평화의 집)
92. 3. 9 남북정치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10 : 00, 평화의 집)
92. 3.10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 구성을 위한 제6차 대표접촉
(10 : 00, 통일각)
92. 3.13 남북군사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10 : 00, 통일각)
92. 3.14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 구성을 위한 제7차 대표접촉
(10 : 00, 통일각)
92. 3.17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문건 교환
(15 : 00, 중감위원회의실)

- 92. 3.18 남북교류·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10:00, 평화의 집)
- 92. 3.19 남북해통제공동위원회 제1차 회의(10:00, 통일각)
- 92. 3.25 남북교류·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위원접촉(10:00, 중감위원회의실)
- 92. 3.27 남북정치분과위원회 제2차 회의(10:00, 통일각)
- 92. 4. 1 남북해통제공동위원회 제2차 회의(10:00, 평화의 집)
- 92. 4. 2 남북교류·협력분과위원회 제2차 위원접촉(10:00, 중감위원회의실)
- 92. 4.10 남북교류·협력분과위원회 제3차 회의(10:00, 중감위원회의실)
- 92. 4.18 남북교류·협력분과위원회 제2차 회의(10:00, 통일각)
- 92. 4.21 남북해통제공동위원회 제3차 회의(10:00, 통일각)
- 92. 4.23 남북정치분과위원회 제3차 회의(10:00, 평화의 집)
- 92. 4.27 남북교류·협력분과위원회 제3차 회의(10:00, 통일각)
- 92. 4.28 남북교류·협력분과위원회 제4차 위원접촉(10:00, 중감위원회의실)
- 92. 4.29 남북정치분과위원회 위원접촉(10:00, 중감위원회의실)
- 92. 4.30 남북군사분과위원회 제3차 회의(10:00, 통일각)
- 92. 5. 1 남북고위급회담 책임연락관 접촉(10:00, 평화의 집)
- 92. 5. 5 제7차 남북고위급회담 북측 대표단 판문점 통과(09:52) 입경
- 92. 5. 6 제41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 우승컵 인계·인수(15:00, 중감위원회의실)
- 92. 5. 8 제7차 남북고위급회담 북측대표단 판문점 통과(11:07) 귀환
- 92. 5.12 남북해통제공동위원회 제4차 회의(10:00, 평화의 집)
- 92. 5.13 군정위 북측, 유엔사측에 미군유해 15구 송환(10:10)
- 92. 5.15 남북해통제공동위원회 제1차 위원접촉(10:00, 중감위원회의실)
- 92. 5.15 남북고위급회담 책임연락관 접촉(10:00, 통일각)
- 92. 5.18 남북연락사무소 개설
- 92. 5.19 남북정치분과위원회 제4차 회의(10:00, 통일각)
- 92. 5.20 남북해통제공동위원회 제2차 위원접촉(10:00, 중감위원회의실)
- 92. 5.23 남북해통제공동위원회 제3차 위원접촉(10:00, 중감위원회의실)

92. 5.25 남북군사분과위원회 제4차 회의(10:00, 평화의 집)
92. 5.27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 제5차 회의(10:00, 평화의 집)
92. 5.28 한국전 참전 유엔군 유해 15구 인수(10:10)
92. 5.29 제460차 군정위본회의 북측의 불참으로 무산
92. 5.30 남북교류·협력분과위원회 제4차 회의(10:00, 통일각)
92. 6. 5 「이산가족 노부모 방문단 및 예술단」 교환관련 제1차 남북적십자
실무 대표접촉(10:00, 중감위회의실)
92. 6. 9 남북정치분과위원회 제5차 회의(10:00, 평화의 집)
92. 6.12 「이산가족 노부모 방문단 및 예술단」 교환관련 제2차 남북적십자
실무 대표접촉(10:00, 중감위회의실)
92. 6.19 남북군사분과위원회 제5차 회의(10:00, 통일각)
92. 6.22 「이산가족 노부모 방문단 및 예술단」 교환관련 제3차 남북적십자
실무 대표접촉(10:00, 중감위회의실)
92. 6.26 남북교류·협력분과위원회 제5차 회의(10:00, 평화의 집)
92. 6.30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 제6차 회의(10:00, 평화의 집)
92. 7. 2 남북정치분과위원회 제6차 회의(10:00, 통일각)
92. 7. 8 「노부모 방문단」 교환 관련 남북적십자 실무대표 제4차 접촉
(10:00, 중감위회의실)
92. 7.10 남북정치분과위원회 위원장 접촉(10:00, 평화의 집)
92. 7.14 「노부모 방문단」 교환 관련 남북적십자 실무대표 제5차 접촉
(10:00, 중감위회의실)
92. 7.16 남북군사분과위원회 제6차 회의(10:00, 통일각)
92. 7.18 남북정치분과위원회 제1차 위원접촉(10:00, 중감위회의실)
92. 7.19 북한 김달현 부총리 판문점 통과(10:00) 서울 방문
92. 7.20 「노부모 방문단」 교환 관련 남북적십자 실무대표 제6차 접촉
(10:00, 중감위회의실)

- 92. 7.21 남북핵통제공동위 제7차 회의(10 : 00, 통일각)
- 92. 7.23 남북군사분과위원회 위원장 접촉(10 : 00, 통일각)
- 92. 7.25 「노부모 방문단」 교환 관련 남북직접자 실무대표 제7차 접촉
(10 : 00, 중감위원회의실)
- 92. 7.25 북한 김달현 부총리 귀환(16 : 20)
- 92. 7.28 남북교류협력분과위원회 제6차 회의(10 : 00, 통일각)
- 92. 7.30 남북정치분과위원회 제2차 위원접촉(10 : 00, 중감위원회의실)
- 92. 8. 3 남북군사분과위원회 제1차 위원접촉(10 : 00, 중감위원회의실)
- 92. 8. 4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제3차 평양여성토론회 관련 실무
접촉(14 : 00, 중감위원회의실)
- 92. 8. 5 남북정치분과위원회 제3차 위원 접촉(10 : 00, 중감위원회의실)
- 92. 8. 7 「노부모 방문단」 교환 관련 남북직접자 실무대표 제8차 접촉
(10 : 00, 중감위원회의실)
- 92. 8.10 남북교류협력분과위원회 제5차 위원 접촉(10 : 00, 중감위원회의실)
- 92. 8.12 남북군사분과위원회 제2차 위원 접촉(10 : 00, 중감위원회의실)
- 92. 8.15 북측, 제3차 범민족대회 진행(12 : 00~19 : 00)
- 92. 8.19 남북정치분과위원회 제4차 위원접촉(10 : 00, 중감위원회의실)
- 92. 8.20 남북군사분과위원회 제3차 위원 접촉(10 : 00, 중감위원회의실)
- 92. 8.25 북한은 중감위요원의 평양 방문 제한 통보
- 92. 8.26 남북군사분과위원회 제7차 회의(10 : 00, 평화의 집)
- 92. 8.27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제3차 평양여성토론회 관련 남북
연락관 접촉(10 : 00, 중감위원회의실)
- 92. 8.28 남북정치분과위원회 제7차 회의(10 : 00, 평화의 집)
- 92. 8.29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제3차 평양여성토론회 관련 남북
연락관 접촉(10 : 00, 중감위원회의실)
- 92. 8.31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의 제8차 회의(10 : 00, 평화의 집)

92. 9. 1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제3차 평양여성토론회 참가 우리
측 여성대표단(30명) 판문점 통과(10:00) 입북
92. 9. 3 남북교류협력분과위원회 제7차 회의(10:00, 평화의 집)
92. 9. 4 남북정치분과위원회 위원장 접촉(10:00, 통일각)
92. 9. 5 남북군사분과위원회 제8차 회의(10:00, 통일각)
92. 9. 6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제3차 평양여성토론회 참가 우리측
여성대표단 판문점 통과(17:30) 귀환
92. 9. 7 남북고위급회담 책임연락관 접촉(10:00, 통일각)
92. 9. 7 남북교류·협력분과위원회 위원장 접촉(15:00, 통일각)
92. 9. 8 남북정치분과위원회 위원장 접촉(10:00, 평화의 집)
92. 9.10 남북고위급회담 책임연락관 접촉(10:00, 평화의 집)
92. 9.15 제8차 남북고위급회담 우리측 대표단(90명) 판문점 통과(09:30)
입북
92. 9.18 제8차 남북고위급회담 우리측 대표단 판문점 통과(12:30) 귀환
92. 9.19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 위원 접촉(10:00, 중감위원회의실)
92. 9.28 「남포조사단」 관련 실무접촉(15:00, 중감위원회의실)
92. 9.30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 위원 접촉(10:00, 중감위원회의실)
92. 9.30 「남포조사단」 방북 관련 실무접촉(15:00, 중감위원회의실)
- 92.10. 1 남북고위급회담 대표 접촉(10:00, 통일각)
- 92.10. 5 남북고위급회담 대표 접촉(10:00, 평화의 집)
- 92.10. 6 「남포조사단」 판문점 통과(09:53) 입북
- 92.10. 9 「남포조사단」 판문점 통과(16:12) 귀환
- 92.10.14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 위원 접촉(10:00, 중감위원회의실)
- 92.10.22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 제9차 회의(10:00, 통일각)
- 92.10.28 군사당국자간 직통전화 설치관련 실무접촉(10:00, 중감위원회의실)
- 92.10.29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 위원 접촉(10:00, 중감위원회의실)

- 92.11.18 남북해통제공동위원회 제10차 회의(10 : 00, 평화의 집)
- 92.11.27 남북해통제공동위원회 제11차 회의(10 : 00, 통일각)
- 92.12.10 남북해통제공동위원회 제12차 회의(10 : 00, 평화의 집)
- 92.12.14 남북해통제공동위원회 위원 접촉(10 : 00, 중감위원회의실)
- 92.12.17 남북해통제공동위원회 제13차 회의(10 : 00, 통일각)
- 93. 1.25 남북해통제공동위원회 생방 위원장 접촉(10 : 00, 평화의 집)
- 93. 1.28 유엔사측 공동일직장교 사무실 이전
- 93. 3.16 이인모 노인 방북절차 협의관련 남북연락관 접촉
(10 : 00, 중감위원회의실)
- 93. 3.19 미전향 장기수 이인모 노인 복송(11 : 00)
- 93. 4. 3 중감위 체코대표단, 판문점 철수
- 93. 7.12 한국전 참전 유엔군 유해 17구 인수(13 : 22)
- 93. 8. 9 북한 적십자회 위원장 대리 명의 대한적십자사 총재 앞 전화통지
문을 적십자 연락사무소간 직통전화를 통해 처음으로 발송해옴.
- 93. 8.13 「제4차 범민족 대회」 관련 북측 인원 판문점 출현
(09 : 25~12 : 30)
- 93.10. 5 제1차 남북특사교환을 위한 실무대표 접촉(10 : 00, 통일각)
- 93.10.12 미국하원 아·태소위 에커먼 위원장 평양을 거쳐 판문점통과 입국
(12 : 00)
- 93.10.15 제2차 남북특사교환을 위한 실무대표 접촉(10 : 00, 평화의 집)
- 93.10.25 제3차 남북특사교환을 위한 실무대표 접촉(10 : 00, 통일각)
- 93.11.30 한국전 참전 유엔군 유해 33구 인수(11 : 54)
- 93.12. 7 한국전 참전 유엔군 유해 31구 인수(11 : 40)
- 93.12.14 한국전 참전 유엔군 유해 33구 인수(11 : 42)
- 93.12.21 한국전 참전 유엔군 유해 34구 인수(11 : 50)
- 93.12.24 갈리 유엔사무총장 서울을 거쳐 판문점 통과(12 : 00) 입북

- 94 1.28 군정위 유엔사측 대표 미군 준장 왓킨스와 군정위 북측 대표 소장 이찬복간 비공식 접촉(09:00~11:40, 중감위 휴게실)
- 94 2. 1 서해상에서 표류중 구조된 북한병사 2명을 송환하기 위한 제509차 군정위 비서장 회의(15:00, 군정위 회의실)
- 94 3. 3 남북특사교환을 위한 제4차 실무대표접촉(10:00~12:15, 평화의 집)
- 94 3. 9 남북특사교환을 위한 제5차 실무대표접촉(10:00~12:00, 통일각)
- 94 3.12 남북특사교환을 위한 제6차 실무대표접촉
(10:00~13:25, 평화의 집)
- 94 3.16 남북특사교환을 위한 제7차 실무대표접촉(10:00~12:00, 통일각)
- 94 3.19 남북특사교환을 위한 제8차 실무대표접촉
(10:00~10:55, 평화의 집)
- 94 4.28 북한, 군정위에서 철수
- 94 4.29 자동소총으로 무장한 북한 군인 40여명 공동경비구역 일시 진입
(17:50~20:27)
- 94 5. 6 군정위 유엔사측, 군정위 북한측 인원 철수에 대한 입장을 담은 서한 전달
- 94 5.24 북한 「조선인민군 판문점 대표부」 설치
- 94 6. 6 유엔사측이 소집한 제510차 비서장 회의에 북측 불참
- 94 6.15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 판문점 통과(11:00) 입북
- 94 6.18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 판문점 통과(08:30) 귀환
- 94 6.28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부총리급 예비접촉
(10:00~21:00, 평화의 집)
- 94 7. 1 남북정상회담 실무절차 협의를 위한 제1차 대표접촉
(10:00~15:00, 통일각)
- 94 7. 2 남북정상회담 실무절차 협의를 위한 제2차 대표접촉
(10:00~18:43, 평화의 집)

- 94. 7. 8 남북정상회담 준비 남북 경호실무자 접촉(10:00~11:00, 통일각)
- 94. 8.14 제5차 범민족대회 참가를 주장하는 북측 인원 판문점 출현 집회
(07:50~12:00,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북측 지역)
- 94. 8.15 제5차 범민족대회 참가를 주장하는 북측 인원 판문점 출현 집회
(13:25~15:55,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북측 지역)
- 94. 8.22 「판문각」 증축 공사 착수
- 94. 9.13 한국전 참전 유엔군 유해 14구 인수(11:00, 군정위원회의실과 중감
위 회의실 사이)
- 94.10.27 군정위 중국측 대표단, 판문점에서 철수
- 94.11.17 북한의 핵연료봉 처리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북한을 방문중인 미국
핵전문가단 일행인 퀴노네스 미국 국무부 북한과장이 공동경비구
역 우리측 지역으로 넘어와 미국 정부와 진화통화 후 북측으로 귀
환 (15:30~?)
- 94.12.12 북경을 통해 방북한 미국 상원의원 2명(미코스카, 사이먼) 판문점
통과(15:15) 입경
- 94.12.15 군정위 중국측 대표단, 중국으로 철수
- 94.12.15 「판문각」 증축 공사(2층에서 3층으로) 완공
- 94.12.21 북한에 추락한 미군헬기 승무원 송환을 협의하기 위해 스미스 미
군 소장과 북한군 판문점 대표부 대표인 중장 이찬복간 제1차 접
촉(18:20~20:15, 판문각)
- 94.12.22 북경을 통해 방북한 미국 하원 의원 리차드슨, 미군헬기 사망 승
무원 유해 송환과 함께 판문점 통과(10:00) 입경
- 94.12.24 추락한 미군헬기 관련 유엔군사령관 명의 서한을 북측에 전달
(09:00, 군사분계선상에서)
- 94.12.26 미군헬기의 생존 승무원 송환 협의 미군 소장 스미스와 북한군 판
문점 대표부 중장 이찬복간 제2차 접촉(10:00~11:30, 판문각)

- 94.12.27 미군헬기의 생존 승무원 송환 협의 미군 소장 스미스와 북한군 판문점 대표부 중장 이찬복간 제3차 접촉(14:00~17:50, 판문각)
- 94.12.28 미 국무부 부차관보 허바드, 판문점 통과(10:50) 입북
- 94.12.29 중감위 3국(스위스, 스웨덴, 폴란드) 대표 공동명의 북한군 판문점 대표부 대표 중장 이찬복 앞 서한전달
- 94.12.30 미군 헬기의 생존
- 94.12.30 미군헬기의 생존 승무원 송환과 방북한 미 국무부 부차관보 허바드 판문점 통과(11:00) 입경
95. 2.20 북한군 병사 40여명, 자동화기로 무장한 채 공동경비구역 진입(06:00~06:30)
95. 2.22 북한군 병사 40여명, 자동화기로 무장한 채 공동경비구역 진입(07:15~07:50)
95. 2.28 북한, 중감위 폴란드 대표단 축출
95. 4.16 뫼입북 대중교 총전교 안호상 일행(2명), 판문점 통과(11:30) 귀환
95. 5. 3 북한, 판문점내 북측관리 건물인 중감위 사무실 폐쇄 및 공동경비구역 북측지역 출입금지 조치
95. 5. 5 중감위 3국 대표(스위스, 스웨덴, 폴란드) 중감위 기능을 유지키로 합의

2. 한국정전협정 (53. 7. 27)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을 일방으로 하고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및 중국 인민지원군 사령원을 다른 일방으로 하는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서 언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을 일방으로하고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및 중국 인민지원군 사령원을 다른 일방으로하는 하기의 서명자들은 쌍방에 막대한 교통과 류혈을 초래한 한국 총들을 정지시키기 위하여서와 최후적인 평화적 해결이 달성될 때까지 한국에서의 적대행위와 일체 무장행동의 완전한 정지를 보장하는 정전을 확립할 목적으로 하기 조항에 기재된 정전 조건과 규정을 접수하며 또 그 제약과 통제를 받는데 각자 공동 호상 동의한다. 이 조건과 규정들의 의도는 순전히 군사적 성질에 속하는 것이며 이는 오직 한국에서의 교전쌍방에만 적용한다.

제 1 조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

1. 한개의 군사분계선을 확정하고 쌍방이 이 선으로부터 각기 이(2)키로미터씩 후퇴함으로써 적대군대 간에 한개의 비무장지대를 설정한다. 한개의 비무장지대를 설정하여 이를 완충지대로 함으로써 적대행위의 재발을 초래할수 있는 사건의 발생을 방지한다.
2. 군사분계선의 위치는 첨부한 지도에 표시한바와 같다.(첨부한 지도 제1도를 보라.)
3. 비무장지대는 첨부한 지도에 표시한 북경계선 및 남경계선으로써

이를 확정한다.(첨부한 지도 제1도를 보라.)

4. 군사분계선은 하기와 같이 설립한 군사정전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이를 명백히 표식한다. 적대쌍방 사령관들은 비무장지대와 각자의 지역 간의 경계선에 따라 적당한 표식물을 세운다. 군사정전위원회는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의 량 경계선에 따라 설치한 일체 표식물의 건립을 감독한다.

5. 한강 하구의 수역으로서 그 한쪽 강안이 일방의 통제하에 있고 그 다른 한쪽 강안이 다른 일방의 통제하에 있는 곳은 쌍방의 민용선박의 항행에 이를 개방한다. 첨부한 지도(첨부한 지도 제2도를 보라.)에 표시한 부분의 한강 하구의 항행 규칙은 군사정전위원회가 이를 규정한다. 각방 민용선박이 항행함에 있어서 자기측의 군사통제하에 있는 륵지에 배를 대는 것은 제한받지 않는다.

6. 쌍방은 모두 비무장지대 내에서 또는 비무장지대로부터 또는 비무장지대에 향하여 어떠한 적대행위도 감행하지 못한다.

7. 군사정전위원회는 특정한 허가없이 어떠한 군인이나 사민이나 군사분계선을 통과함을 허가하지 않는다.

8. 비무장지대 내의 어떠한 군인이나 사민이나 그가 드리갈려고 요구하는 지역의 사령관의 특정한 허가없이 어느 일방의 군사통제하에 있는 지역에도 드리감을 허가하지 않는다.

9. 민사행정 및 구제사업의 집행에 관계되는 인원과 군사정전위원회의 특정한 허가를 얻고 드러가는 인원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군인이나 사민이나 비무장지대에 드리감을 허가하지 않는다.

10. 비무장지대 내의 군사분계선 이남의 부분에 있어서의 민사행정 및 구제사업은 국제련합군 총사령관이 책임진다. 비무장지대 내의 군사분계선 이북의 부분에 있어서의 민사행정 및 구제사업은 조선인민군 최고사

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 사령원이 공동으로 책임진다. 민사행정 및 구제 사업을 집행하기 위하여 비무장지대에 들어갈것을 허가받는 군인 또는 시민의 인원수는 각방 사령관이 각각 이를 결정한다. 단 어느 일방이 허가한 인원의 총수는 언제나 천(1,000)명을 초과하지 못한다. 민사행정 경찰의 인원수 및 그가 휴대하는 무기는 군사정전위원회가 이를 규정한다. 기타 인원은 군사정전위원회의 특정한 허가없이는 무기를 휴대하지 못한다.

11. 본 조의 어떠한 규정이든지 모두 군사정전위원회 그의 보조인원 그의 공동감시소조 및 소조의 보조인원 그리고 하기와 같이 설립한 중립국 감독위원회 그의 보조인원 그의 중립국시찰소조 및 소조의 보조인원과 군사정전위원회로부터 비무장지대로 들어갈 것을 특히 허가받은 기타의 모든 인원, 불자 및 장비의 비무장지대 출입과 비무장지대 내에서의 이동의 완전한 자유를 방해하는것으로 해석하여서는 안된다. 비무장지대 내의 두 지점이 비무장지대 내에 전부 들어 있는 도로로써 연결되지 않는 경우에 이 두 지점 간의 반드시 경과하여 할 통로를 왕래하기 위하여 어느 일방의 군사통제하에 있는 지역을 통과하는 이동의 편리를 허여한다.

제 2조 평화 및 정전의 구체적 조치

가. 총 칙

12. 적대생방 사령관들은 특 해 공군의 모든 부대와 인원을 포함한 그들의 통제하에 있는 모든 무장력량이 한국에 있어서의 일체 적대행위를 완전히 금지할 것을 명령하고 또 이를 보장한다. 본 항의 적대 행위의 완전정지는 본 정전협정이 조인된지 십이(12)시간후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본 정전협정의 기타 각항의 규정이 효력을 발생하는 날자와 시간에 대하여서는 본 정전협정 제63항을 보라.)

13. 군사정전의 확고성을 보장함으로써 쌍방의 한급 높은 정치회의를 진행하여 평화적 해결을 달성하는것을 리롭게하기 위하여 적대쌍방 사령관들은

ㄱ) 본 정전협정 중에 따로 규정한것은 제외하고 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한후 칠십이(72)시간 내에 그들의 일체군사력량, 보급 및 장비를 비무장지대로부터 철거한다. 군사력량을 비무장지대로부터 철거한후 비무장지대내에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는 모든 폭발물, 지뢰원, 칠조망 및 기타 군사정전위원회 또는 그의 공동감시소조인원의 통행안전에 위험이 미치는 위험물들은 이러한 위험물이 없다고 알려져 있는 모든 통로와 함께 이러한 위험물을 설치한 군대의 사령관이 반드시 군사정전위원회에 이를 보고한다. 그 다음에 더 많은 통로를 청소하여 안전하게 만들며 결국에 가서는 칠십이(72)시간의 기간이 끝난후 사십오(45)일내에 모든 이러한 위험물은 반드시 군사정전위원회 지시에 따라 또 그 감독하에 비무장지대내로부터 이를 제거한다. 칠십이(72)시간의 기간이 끝난후 군사정전위원회의 감독하에서 사십오(45)일의 기간내에 제거작업을 완수할 권한을 가진 비무장부대와 군사정전위원회가 특히 요청하였으며 또 적대쌍방 사령관들이 동의한 경찰의 성질을 가진 부대 및 본 정전협정 제10항과 제11항에서 허가한 인원이외에는 쌍방의 어떠한 인원이던지 비무장지대에 들어가는 것을 허가하지 않는다.

ㄴ) 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한후 십(10)일 이내에 상대방의 한국에 있어서의 후방과 연해섬들 및 해면으로부터 그들의 모든 군사력량, 보급물자 및 장비를 철거한다. 만일 철거를 연기할 쌍방이 동의한 리유 없이 또 철거를 연기할 유효한 리유 없이 기한이 넘어도 군사력량을 철

시845도(의)
반적 지리

거하지 않을 때에는 상대방은 치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어떠한 행동이라도 취할 권리를 가진다. 상기한 “연해섬”이라는 용어는 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할때에 비록 일방이 점령하고 있더라도 1950년 6월 24일에 상대방이 통제하고 있던 섬들을 말하는 것이다. 단 황해도와 경기도의 도계선 북쪽과 서쪽에 있는 모든 섬 중에서 백령도(북위 37도58분, 동경 124도40분), 대청도(북위 37도50분, 동경 124도42분), 소청도(북위 37도46분, 동경 124도46분), 연평도(북위 37도38분, 동경 125도40분) 및 우도(북위 37도36분, 동경 125도58분)의 도서군들을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의 군사통제하에 남겨 두는것을 제외한 기타 모든 섬들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 사령원의 군사통제하에 둔다. 한국 해안에 있어서 상기 경계선 이남에 있는 모든 섬들은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의 군사통제하에 남겨 둔다. (첨부한 지도 제3도를 보라.)

ㄷ) 한국경외로부터 증원하는 군사인원을 들여오는 것을 정지한다. 단 아래에 규정한 범위내에 부대와 인원의 료환 임시입부를 담당할 인원의 한국에의 도착 및 한국경외에서 단기 휴가를 하였거나 혹은 임시입부를 담당하였던 인원의 한국에의 귀환은 이를 허가한다. “료환”의 정의는 부대 혹은 인원이 한국에서 복무를 개시하는 다른 부대 혹은 인원과 교체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료환인원은 오직 본 정전협정 제43항에 열거한 출입항을 경유하여서만 한국에 들여오며 또 한국으로부터 내어갈수 있다. 료환은 일(1)인 대 일(1)인의 교환 기초위에서 진행한다. 단 어느 일방이던지 어느 일(1)력월 내에 료환 정책하에서 한국경외로부터 삼만 오천(35,000)명 이상의 군사원을 드려오지는 못한다. 만일 일방의 군사인원을 드려오는것이 해당측이 본 정전협정 효력 발생일로부터 한국으로 드려온 군사인원의 총수로 하여금 같은 날자로부터 한국을 떠난 해당측

의 군사인원의 누계 총수를 초과하게 할때는 해당측의 어떠한 군사인원도 한국에 드려올수 없다. 군사인원의 한국에의 도착 및 한국으로부터의 리기에 관하여 매일 군사정전위원회와 중립국감독위원회에 보고한다. 이 보고는 입경과 출경의 지점 및 매개 지점에서 입경하는 인원과 출경하는 인원의 수자를 포함한다. 중립국감독위원회는 그의 중립국시찰소조를 통하여 본 정전협정 제43항에 열거한 출입항에서 상기의 허가된 부대 및 인원의 료환을 감독하며 시찰한다.

ㄹ) 한국 경외로부터 증원하는 작전비행기, 장갑차량, 무기 및 탄약을 드려오는 것을 정지한다. 단 정전기간에 파괴, 파손, 손모 또는 소모된 작전비행기, 장갑차량, 무기 및 탄약은 같은 성능과 같은 류형의 물건을 일(1) 대 일(1)로 교환하는 기초위에서 교체할 수 있다. 이러한 작전비행기, 장갑차량, 무기 및 탄약은 오직 본 정전협정 제43항에 열거한 출입항을 경유하여서만 한국으로 들여올수 있다. 교체의 목적으로 작전비행기, 장갑차량, 무기 및 탄약을 한국으로 반입할 필요를 확증하기 위하여 이러한 물건의 매차 반입에 관하여 군사정전위원회와 중립국감독위원회에 보고한다. 이 보고 중에서 교체되는 물건의 처리정형을 설명한다. 교체되어 한국으로부터 내어가는 물건은 오직 본 정전협정 제43항에 열거한 출입항을 경유하여서만 내어갈수 있다. 중립국감독위원회는 그의 중립국시찰소조를 통하여 본 정전협정 제43항에 열거한 출입항에서 상기의 허가된 작전비행기, 장갑차량, 무기 및 탄약의 교체를 감독하며 시찰한다.

ㅁ) 본 정전협정 중의 어떠한 규정이던지 위반하는 각자의 지휘하에 있는 인원을 적당히 처벌할것을 보장한다.

ㅂ) 매장지점이 기록에 있고 분묘가 확실히 존재하고 있다는것이 판명된 경우에는 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한후 일정한 기한 내에 그의

군사 통제하에 있는 한국지역에 상대방의 분묘등록 인원이 들어오는 것을 허가하여 이러한 분묘 소재지에게서 해당측의 이미 죽은 전쟁포로를 포함한 죽은 군사인원의 시체를 발굴하고 또 반출하여 가도록한다. 상기 사업을 진행하는 구체적 방법과 기한은 군사정전위원회가 이를 결정한다. 적대쌍방 사령관들은 상대방의 죽은 군사인원의 매장 지점에 관계되는 얻을수있는 일체 재료를 상대방에 제공한다.

ㄱ) 군사정전위원회와 그의 공동감시소조 및 중립국감독위원회와 그의 중립국시찰소조가 하기와 같이 지정한 그들의 직책과 임무를 집행할 때에 충분한 보호 및 일체의 가능한 방조와 협력을 한다. 중립국감독위원회 및 그의 중립국시찰소조가 쌍방이 합의한 주요 교통선을 경유하여 (첨부한지도 제4도를 보라.) 중립국감독위원회 본부와 본 정전협정 제43항에 열거한 출입항 간을 왕래할 때와 또 중립국감독위원회 본부와 본 정전협정 위반사건이 발생하였다고 보고된 지점간을 왕래할 때에 충분한 통행상의 편의를 준다. 불필요한 지인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요교통선이 막히든지 통행할수없는 경우에는 다른 통로와 수송기재를 사용할것을 허가한다.

ㄴ) 군사정전위원회 및 중립국감독위원회와 그 각자에 속하는 소조에 요구되는 통신 및 운수상 편의를 포함한 보급상의 원조를 제공한다.

ㄷ) 군사정전위원회 본부 부근 비무장지대내의 자기측 지역에 각각 한개의 적당한 비행장을 건설, 관리 및 유지한다. 그 용도는 군사정전위원회가 결정한다.

ㄹ) 중립국감독위원회와 하기와 같이 설립한 중립국송환위원회의 전체 위원 및 기타 인원이 모두 자기의 직책을 적당히 집행함에 필요한 자유와 편의를 가지도록 보장한다. 이에는 인가된 외교인원이 국제 관례에 따라 통상적으로 향유하는 바와 동등한 특권, 내우 및 면제권을 포함한다.

14. 본 정전협정은 쌍방의 군사통제하에 있는 적대 중의 일체 지상 군사력량에 적용되며 이러한 지상 군사력량은 비무장지대와 상대방의 군사통제하에 있는 한국 지역을 존중한다.

⑮ 본 정전협정은 적대 중의 일체 해상 군사력량에 적용되며 이러한 해상 군사력량은 비무장지대와 상대방의 군사통제하에 있는 한국 육지에 린접한 해면을 존중하며 한국에 대하여 어떠한 종류의 봉쇄도 하지 못한다. *NLL의 근거*

16. 본 정전협정은 적대 중의 일체 공중 군사력량에 적용되며 이러한 공중 군사력량은 비무장지대와 상대방의 군사통제하에 있는 한국 지역 및 이 량 지역에 린접한 해면의 상공을 존중한다.

17. 본 정전협정의 조항과 규정을 준수하며 집행하는 책임은 본 정전협정에 조인한 자와 그의 후임 사령관에게 속한다. 적대쌍방 사령관들은 각각 그들의 지휘하에 있는 군대 내에서 일체의 필요한 조치와 방법을 취함으로써 그 모든 소속 부대 및 인원이 본 정전협정의 전체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는것을 보장한다. 적대쌍방 사령관들은 호상 적극 협력하며 군사정전위원회 및 중립국감독위원회와 적극 협력함으로써 본 정전협정 전체 규정의 문구와 정신을 준수하도록 한다.

18. 군사정전위원회와 중립국감독위원회 및 그 각자에 속하는 소조의 사업 비용은 적대 쌍방이 균등하게 부담한다.

나. 군사정전위원회

1. 구 성

19. 군사정전위원회를 설립한다.

20. 군사정전위원회는 십(10)명의 고급 장교로 구성하되 그중의 오(5)명은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이 이를 임명하며 그중의 오(5)명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 사령원이 공동으로 이를 임명한다. 위원 십(10)명 중에서 각방의 삼(3)명은 장급에 속하여야 하며 각방의 나머지 이(2)명은 소장, 준장, 대령 혹은 그와 동급인 자로 할수있다.

21. 군사정전위원회의 위원은 그 필요에따라 참모 보조인원을 사용할수있다.

22. 군사정전위원회는 필요한 행정인원을 배치하여 비서처를 설치하되 그 임무는 동 위원회의 기록, 서기, 통역 및 동 위원회가 지정하는 기타의 직책의 집행을 협조하는것이다. 쌍방은 각기 비서처에 비서장 일(1)명 보조 비서장 일(1)명 및 비서처에 필요한 서기 및 전문 기술인원을 임명한다. 기록은 영문, 한국문 및 중국문으로 작성하되 세가지 글은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23. ㄱ) 군사정전위원회는 처음에는 십(10)개의 공동감시소조를 두어 그 협조를 받는다. 소조의 수는 군사정전위원의 쌍방 수석위원회의 합의 를 거쳐 감소할수있다.

ㄴ) 매개의 공동감시소조는 사(4)명 내지 육(6)명의 령급 장교로 구성하되 그 중의 반수는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이 이를 임명하며 그 중의 반수는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 사령원이 공동으로 이를 임명한다. 공동감시소조의 사업상 필요한 운전수, 서기, 통역등의 부속인원은 쌍방이 이를 제공한다.

2. 직책과 권한

24. 군사정전위원회의 전반적 임무는 본 정전협정의 실시를 감독하며

본 정전협정의 어떠한 위반사건이든지 협의하여 처리하는 것이다.

25. 군사정전위원회는

ㄱ) 본부를 판문점(북위 37도57분29초, 동경 126도 40분00초)부근에 설치한다. 군사정전위원회는 동 위원회의 쌍방 수석위원의 합의를 거쳐 그 본부를 비무장지대 내의 다른 한 지점에 이설할 수 있다.

ㄴ) 공동기구로서 사업을 진행하며 의장을 두지 않는다.

ㄷ) 그가 수시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절차 규정을 채택한다.

ㄹ) 본 정전협정 중 비무장지대와 한강 하구에 관한 각 규정의 집행을 감독한다.

ㅁ) 공동감시소조의 사업을 지도한다.

ㅂ) 본 정전협정의 어떠한 위반사건이든지 협의하여 처리한다.

ㅅ) 중립국감독위원회로부터 받은 본 정전협정 위반사건에 관한 일체 조사 보고 및 일체 기타 보고와 회의기록은 즉시로 적대쌍방 사령관들에게 이를 전달한다.

ㅇ) 하기한바와 같이 설립한 전쟁포로송환위원회와 실항사민 귀향협조위원회의 사업을 전반적으로 감독하며 지도한다.

ㅈ) 적대쌍방 사령관 간에 통신을 전달하는 중개 역할을 담당한다. 단 상기의 규정은 쌍방 사령관들이 사용하고저하는 어떠한 다른 방법을 사용하여 호상 통신을 전달하는것을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할수 없다.

ㅊ) 그의 공작인원과 그의 공동감시소조의 증명 문건 및 휘장 또 그 임무 집행 시에 사용하는 일체의 차량, 비행기 및 선박의 식별 표식을 발급한다.

26. 공동감시소조의 임무는 군사정전위원회가 본 정전협정중의 비무장지대 및 한강 하구에 관한 각 규정의 집행을 감독함을 협조하는것이다.

27. 군사정전위원회 또는 그 중의 어느 일방의 수석위원은 공동감시소

조를 파견하여 비무장지대나 한강 하구에 발생하였다고 보고된 본 정전협정 위반사건을 조사할 권한을 가진다. 단 동 위원회 중의 어느 일방의 수석위원이던지 인제나 군사정전위원회가 아직 파견하지 않은 공동감시소조의 반수 이상을 파견할 수 없다.

28. 군사정전위원회 또는 동 위원회의 어느 일방의 수석위원은 중립국 감독위원회에 요청하여 본 정전협정 위반사건이 발생하였다고 보고된 비무장지대 이외의 지점에 가서 특별한 감시와 시찰을 행할 권한을 가진다.

29. 군사정전위원회가 본 정전협정 위반사건이 발생하였다고 확정할 때에는 즉시로 그 위반사건을 적대쌍방 사령관들에게 보고한다.

30. 군사정전위원회가 본 정전협정의 어떠한 위반사건이 만족하게 시정되었다고 확정할 때에는 이를 적대쌍방 사령관들에게 보고한다.

3. 총 칙

31. 군사정전위원회는 매일 회의를 연다. 쌍방의 수석위원은 합의하여 칠(7)일을 넘지않는 휴회를 할수있다. 단 이는 일방의 수석 위원이던지 이십사(24)시간 전의 통고로써 이 휴회를 끝낼수있다.

32. 군사정전위원회의 일체 회의기록의 부분은 매번 회의 후 될수있는 대로 속히 적대쌍방 사령관들에게 송부한다.

33. 공동감시소조는 군사정전위원회에 동 위원회가 요구하는 정기보고를 제출하며 또 이 소도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또는 동 위원회가 요구하는 특별보고를 제출한다.

34. 군사정전위원회는 본 정전협정에 규정한 보고 및 회의기록의 문건철 두 벌을 보관한다. 동 위원회는 그 사업 진행에 필요한 기타의 보고

기록등의 문건철 두 벌을 보관할 권한을 가진다. 동 위원회의 최후 해산 시에는 상기 문건철을 쌍방에 각 한번씩 나누어준다.

35. 군사정전위원회는 적대쌍방 사령관들에게 본 정전협정의 수정 또는 증보에 대한 건의를 제출할수있다. 이러한 개정건의는 일반적으로 더 유효한 정전을 보장할것을 목적으로 하는것이여야 한다.

다. 중립국감독위원회

1. 구 성

36. 중립국감독위원회를 설립한다.

37. 중립국감독위원회는 사(4)명의 고급장교로 구성하되 그 중의 이(2)명은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이 지명한 중립국 측 서전 및 서서가 이를 임명하며 그 중의 이(2)명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 사령원이 공동으로 지명한 중립국 측 파란 및 체코슬로바키아가 이를 임명한다. 본 정전협정에서 쓴 “중립국”이라는 용어의 정의는 그 전투부대가 한국에서의 적대행위에 참가하지 않은 국가를 말하는 것이다. 동 위원회에 임명되는 위원은 임명하는 국가의 무장부대로부터 파견될수있다. 매개위원은 후보위원 일(1)명을 지정하여 그 정 위원이 어떤 리유로 출석할수 없게되는 회의에 출석하게한다. 이러한 후보위원은 그 정 위원과 동일한 국적에 속한다. 일방이 지명한 중립국위원의 출석자수와 다른 일방이 지명한 중립국위원의 출석자수가 같을때에는 중립국감독위원회는 곧 행동을 취할수있다.

38. 중립국감독위원회의 위원은 그 필요에따라 각기 해당 중립국가가 제공한 참모 보조인원을 사용할수있다. 이러한 참모보조인원은 본 위원

회의 후보위원으로 임명될수있다.

39. 중립국감독위원회에 필요한 행정인원을 제공하도록 중립국에 요청하여 비서처를 설치하되 그 임무는 동 위원회에 필요한 기록, 서기, 통역 및 동 위원회가 지정하는 기타의 직책의 집행을 협조하는것이다.

40. ㄱ) 중립국감독위원회는 처음에는 이십(20)개의 중립국시찰소조를 두어 그 협조를 받는다. 소조의 수는 군사정전위원회의 쌍방 수석위원의 합의를 거쳐 감소할수있다. 중립국시찰소조는 오직 중립국감독위원회에 대하여서만 책임을지며 그에 보고하며 또 그 지도를 받는다.

ㄴ) 매개 중립국시찰소조는 최소 사(4)명의 장교로 구성하되 이 장교는 평급으로하는것이 적당하며 그 중의 반수는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이 지명한 중립국에서 내고 그 중의 반수는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 사령원이 공동으로 지명한 중립국에서 낸다. 중립국시찰소조에 임명되는 조원은 임명하는 국가의 무장부대에서 이를 낼수있다. 각 소조의 직책집행을 편리하게 하기 위하여 정황의 요구에따라 최소 이(2)명의 조원으로 구성하는 분조를 설치 할수있다. 그 두 조원 중의 일(1)명은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이 지명한 중립국에서 내며 일(1)명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 사령원이 공동으로 지명한 중립국에서 낸다. 운전수, 서기, 통역, 통신원과 같은 부속인원 및 각 소조의 임무 집행에 필요한 비품은 각방 사령관이 비무장지대내 및 자기측 군사통제 지역내에서 수요에따라 이를 공급한다. 중립국감독위원회는 동 위원회 자체와 중립국시찰소조들에 그가 요망하는 상기의 인원 및 비품을 제공할수있다. 단 이러한 인원은 중립국감독위원회를 구성한 그 중립국의 인원 이어야한다.

2. 직책과 권한

41. 중립국감독위원의 임무는 본 정전협정 제13항 ㄷ목, 제13항 ㄹ목 및 제28항에 규정한 감독, 감시, 시찰 및 조사의 직책을 집행하며 이러한 감독, 시찰 및 조사의 결과를 군사정전위원회에 보고하는것이다.

42. 중립국감독위원회는

ㄱ) 본부를 군사정전위원회의 본부의 부근에 설치한다.

ㄴ) 그가 수시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절차 규정을 채택한다.

ㄷ) 그 위원 및 그 중립국시찰소조를 통하여 본 정전협정 제43항에 열거한 출입항에서 본 정전협정 제13항 ㄷ목, 제13항 ㄹ목에 규정한 감독과 시찰을 진행하며 또 본 정전협정 위반사건이 발생하였다고 보고된 지점에서 본 정전협정 제28항에 규정한 특별 감시와 시찰을 진행한다. 작전비행기, 장갑차량, 무기 및 탄약에 대한 중립국시찰소조의 시찰은 소조로하여금 증원하는 작전비행기, 장갑차량, 무기 및 탄약을 한국으로 드려오지 않도록 확실히 보장할수있게한다. 단 이 규정은 어떠한 작전비행기, 장갑차량, 무기 또는 탄약의 어떠한 비밀 설계 또는 특점을 시찰 또는 검사할 권한을 주는것으로 해석할수없다.

ㄹ) 중립국시찰소조의 사업을 지도하며 감독한다.

ㄱ)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의 군사통제 지역 내에 있는 본 정전협정 제43항에 열거한 출입항에 오(5)개의 중립국시찰소조를 주재시키며 조선 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의 군사통제 지역 내에 있는 본 정전협정 제43항에 열거한 출입항에 오(5)개의 중립국시찰소조를 주재시킨다. 처음에는 따로 십(10)개의 중립국이동시찰소조를 후비로 설치 하되 중립국감독위원회 본부 부근에 주재시킨다. 그 수는 군사정전위원회의 쌍방수석위원의 합의를 거쳐 감소 할수있다. 중립국이동시찰소조

중 군사정진위원회의 어느 일방 수석위원의 요청에 의하여 파견하는 소조는 언제나 그 반수를 초과할수없다.

ㄹ) 보고된 본 정전협정 위반사건을 전목 규정의 범위내에서 지체없이 조사한다. 이에는 군사정진위원회 또는 동 위원회 중의 어느 일방 수석위원이 요청하는 보고된 본 정전협정위반사건에 대한 조사를 포함한다.

ㅅ) 그의 공작인원과 그의 중립국시찰소조의 증명문건 및 휘장 또 그 임무 집행 시에 사용하는 일체 차량, 비행기 및 선박의 식별 표식을 발급한다.

43. 중립국시찰소조는 하기한 각 출입항에 주재한다.

국제연합군의 군사통제 지역	조선인민군과 중국인민지원군의 군사통제 지역
인 천 (북위 37도 28분, 동경 126도 38분)	신의주 (북위 40도 06분, 동경 124도 24분)
대 구 (북위 35도 52분, 동경 128도 36분)	청 진 (북위 41도 46분, 동경 129도 49분)
부 산 (북위 35도 06분, 동경 129도 02분)	홍 남 (북위 39도 50분, 동경 127도 37분)
강 룡 (북위 37도 45분, 동경 128도 54분)	만 포 (북위 41도 09분, 동경 126도 18분)
군 산 (북위 35도 59분, 동경 126도 43분)	신 안 주 (북위 39도 36분, 동경 125도 36분)

이 중립국시찰소조들은 첨부한 지도에 표시한 지역 내와 교통선에서 통행상 충분한 편리를 받는다. (첨부한 지도 제5도를 보라.)

3. 총 칙

44. 중립국감독위원회는 매일 회의를 연다. 중립국감독위원회위원은 합의하여 칠(7)일을 넘지 않는 휴회를 할 수 있다. 단 어느 위원이던지 이십사(24)시간 전의 통고로써 이 휴회를 끝낼 수 있다.

45. 중립국감독위원회의 일체 회의기록의 부분은 매번 회의 후 될수있 는대로 속히 군사정전위원회에 송부한다. 기록은 영문, 한국문 및 중국 문으로 작성한다.

46. 중립국시찰소조는 그의 감독, 감시, 시찰 및 조사의 결과에 관하여 중립국감독위원회가 요구하는 정기보고를 동 위원회에 제출하며 또 이 소조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동 위원회가 요구하는 특별보고를 제출 한다. 보고는 소조 총체가 이를 제출한다. 단 그 소조의 개별적 조원 일 (1)명 또는 수명이 이를 제출할수도 있다. 개별적 조원 일(1)명 또는 수 명이 제출한 보고는 다만 참고적 보고로 간주한다.

47. 중립국감독위원회는 중립국감독소조가 제출한 보고의 부분을 그가 접수한 보고에 사용된 글로써 지체 없이 군사정전위원회에 송부한다. 이러한 보고는 번역 또는 심의 결정수속 때문에 지체시킬수없다. 중립국감독위원회는 실제 가능한한 속히 이러한 보고를 심의 결정하며 그의 판정서를 우선 군사정전위원회에 송부한다. 중립국감독위원회의 해당 심의 결정을 접수하기 전에는 군사정전위원회는 이런 어떠한 보고에 대하여서도 최후 적 행동을 취하지 못한다. 군사정전위원회의 어느 일방 수석위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중립국감독위원회의 위원과 그 소조의 조원은 곧 군사정전위

위원회에 참석하여 제출된 어떠한 보고에 대하여서든지 설명한다.

48. 중립국감독위원회는 본 정전협정이 규정하는 보고 및 회의기록의 분전철 두 벌을 보관한다. 동 위원회는 그 사업진행에 필요한 기타의 보고 기록등의 분전철 두 벌을 보관할 권한을 가진다. 동 위원회의 최후 계산 시에는 상기 분전철을 쌍방에 각 한 벌씩 나누어준다.

49. 중립국감독위원회는 군사정전위원회에 본 정전협정의 수정 또는 증보에 대한 건의를 제출할수있다. 이러한 개정 건의는 일반적으로 더 유효한 정전을 보장할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50. 중립국감독위원회 또는 동 위원회의 매개 위원은 군사정전위원회의 임의의 위원과 통신 연락을 취할 권한을 가진다.

제 3조 전쟁포로에 관한 조치

51. 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하는 당시에 각방이 수용하고 있는 전체 전쟁포로의 석방과 송환은 본 정전협정 조인 전에 쌍방이 합의한 하기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ㄱ) 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한후 육십(60)일 이내에 각방은 그 수용하에 있는 송환을 건지하는 전체 전쟁포로를 포로된 당시에 그들이 속한 일방에 집단적으로 나누어 직접 송환인도하며 어떠한 저에도 가하지 못한다. 송환은 본 조의 각항관계 규정에 의하여 완수한다. 이러한 인원의 송환 수속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각방은 정전협정 조인전에 직접 송환될 인원의 국적별로 분류한 총수를 교환한다. 상대방에 인도되는 전쟁포로의 각 집단은 국적별로 작성한 명부를 휴대하되 이에는 성명, 계급(계급이 있으면) 및 수용번호 또는 군번호를 포함한다.

ㄴ) 각방은 직접 송환하지 않은 나머지 전쟁포로를 그 군사통제와

수용하로부터 석방하여 모두 중립국송환위원회에 넘겨 본 정전협정 부록 “중립국송환위원회의 직권의 범위”의 각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케한다.

ㄷ) 세가지 글을 병용함으로 인하여 발생할수있는 오해를 피하기 위하여 본 정전협정의 용어로서 일방이 전쟁포로를 상대방에 인도하는 행동을 그 전쟁포로의 국적과 거주지의 여하를 불문하고 영문중에서는 “REPATRIATION” 한국문중에서는 “송환” 중국문중에서는 “遣返”이라고 규정한다.

52. 각방은 본 정전협정의 효력 발생에 의하여 석방되며 송환되는 어떠한 전쟁포로든지 한국 충돌중의 전쟁행동에 사용하지 않을것을 보장한다.

53. 송환을 견지하는 전체 병상전쟁포로는 우선적으로 송환한다. 가능한 범위내에서 포로된 의무인원을 병상전쟁포로와 동시에 송환하여 도중에서 의료와 간호를 제공하도록 한다.

54. 본 정전협정 제51항 ㄱ목에 규정한 전체 전쟁포로의 송환은 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한후 룩십(60)일의 기한 내에 완료한다. 이 기한 내에 각방은 책임지고 그가 수용하고 있는 상기 전쟁포로의 송환을 실제 가능한한 속히 완료한다.

55. 판문점을 쌍방의 전쟁포로 인도 인수 지점으로 정한다. 필요할 때에는 전쟁포로송환위원회는 기타의 전쟁포로 인도 인수지점(들)을 비무장지대 내에 증설할 수 있다.

56. ㄱ) 전쟁포로송환위원회를 설립한다. 동 위원회는 령급장교 룩(6)명으로 구성하되 그 중 삼(3)명은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이 이를 임명하며 그 중 삼(3)명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 사령원이 공동으로 이를 임명한다. 동 위원회는 군사정전위원회의 전반적 감독과 지도하에서 책임지고 쌍방의 전쟁포로 송환에 관계되는 구체적 계획을 조

절하며 쌍방이 본정전협정 중의 전쟁포로 송환에 관계되는 일체 규정을 실시하는것을 감독한다. 동 위원회 임부는 전쟁포로들이 쌍방 전쟁포로 수용소로부터 인도 인수 지점(들)에 도달하는 시간을 조절하며 필요할 때에는 병상전쟁포로의 수송 및 복리에 욕구되는 특별한 조치를 취하며 본 정전협정 제57항에서 설립된 공동적십자소조의 전쟁포로 송환 협조사업을 조절하며 본 정전협정 제53항과 제54항에 규정한 전쟁포로 실제 송환 조치의 실시를 감독하며 필요할 때에는 추가적 전쟁포로 인도 인수 지점(들)을 선정하며 전쟁포로의 인도 인수 지점(들)의 안전 조치를 취하며 전쟁포로 송환에 필요한 기타 관계 임무를 집행하는 것이다.

ㄴ) 전쟁포로송환위원회는 그 임부에 관계되는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때에는 이러한 사항을 즉시로 군사정전위원회에 제기하여 결정하도록한다. 전쟁포로송환위원회는 군사정전위원회 본부 부근에 그 본부를 설치한다.

ㄷ) 전쟁포로송환위원회가 전쟁포로 송환 계획을 완수한 때에는 군사정전위원회가 즉시로 이를 해산시킨다.

57. ㄱ) 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한후 즉시로 국제연합군에 군대를 제공하고있는 각국의 적십자사 대표를 일방으로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사 대표와 중화인민공화국 적십자사 대표를 다른 일방으로하여 조직되는 공동적십자소조를 설립한다. 공동적십자소조는 전쟁포로의 복리에 요망되는 인도주의적 복무로써 쌍방이 본 정전협정 제51항 ㄱ목에 규정한 송환을 견지하는 전체 전쟁포로의 송환에 관계되는 규정을 집행하는 것을 협조한다. 이 임무를 완수하기 위하여 공동적십자소조는 전쟁포로 인도 인수 지점(들)에서 쌍방의 전쟁포로 인도 인수 사업을 협조하며 쌍방의 전쟁포로 수용소를 방문하여 위문하며 전쟁포로의 위문과 전쟁포로의 복리를 위한 선물을 가지고가서 분배한다. 공동적십자소조는

전쟁포로 수용소에서 전쟁포로 인도 인수 지점(들)으로 가는 도중에 있는 전쟁포로에게 복무를 제공할 수 있다.

ㄴ) 공동적십자소조는 다음과 같은 규정에 의하여 조직한다.

(1) 한 소조는 각방의 본국 적십자사로부터 각기 대표 십(10)명씩을 내어 쌍방 합하여 이십(20)명으로 구성하며 전쟁포로 인도 인수 지점(들)에서 쌍방의 전쟁포로의 인도 인수를 협조한다. 동 소조의 의장은 쌍방 적십자사 대표가 매일 료번으로 담당한다. 동 소조의 사업과 복무는 전쟁포로송환위원회가 이를 조절한다.

(2) 한 소조는 각방의 본국 적십자사로부터 각기 대표 삼십(30)명씩을 내어 쌍방 합하여 륵십(60)명으로 구성하며 조선인민군 및 중국 인민지원군 관리하의 전쟁포로 수용소를 방문하며 또 전쟁포로 수용소에서 전쟁포로 인도 인수 지점(들)으로 가는 도중에 있는 전쟁포로에게 복무를 제공할수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사 또는 중화인민공화국 적십자사의 대표가 동 소조의 의장을 담당한다.

(3) 한 소조는 각방의 본국 적십자사로부터 각기 대표 삼십(30)명씩을 내어 쌍방 합하여 륵십(60)명으로 구성하며 국제연합군 관리하의 전쟁포로 수용소를 방문하며 또 전쟁포로 수용소에서 전쟁포로 인도 인수 지점(들)으로 가는 도중에 있는 전쟁포로에게 복무를 제공할수있다. 국제연합군에 군대를 제공하고 있는 한 나라의 적십자사 대표가 동 소조의 의장을 담당한다.

(4) 각 공동적십자소조의 임무 집행의 편의를 위하여 정황이 필요할 때에는 최소 이(2)명의 소조원으로 구성하는 본조를 설립할수있다. 본조 내에서 각방은 동등한 수의 대표를 가진다.

(5) 각방 사령관은 그의 군사통제 지역 내에서 사업하는 공동적십자소조에 운전수, 서기 및 통역과 같은 부속인원 및 각 소조가 그 임무

집행상 필요로 하는 장비를 공급한다.

(6) 어떠한 공동적십자소조년지 동 소조의 쌍방 대표가 동의하는 때에는 그 인원수를 증감할수 있다. 단 이는 전쟁포로 송환위원회의 인가를 거쳐야 한다.

ㄷ) 각방 사령관은 공동적십자소조가 그의 임무를 집행하는 데 충분한 협조를 주며 또 그의 군사통제 지역 내에서 책임지고 공동적십자소조 인원들의 안전을 보장한다. 각방 사령관은 그의 군사통제 지역 내에서 사업하는 이러한 소조에 요구되는 보급, 행정 및 통신상의 편의를 준다.

ㄹ) 공동적십자소조는 본 정전협정 제51항 ㄱ목에 규정한 송환을 견지하는 전체 전쟁포로의 송환 계획이 완수되었을 때에는 즉시로 해산한다.

58. ㄱ) 각방 사령관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속히 그러나 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한 후 십(10)일 이내에 상대방 사령관에게 다음과 같은 전쟁포로에 관한 자료를 제공한다.

(1) 제일 마지막 번에 교환한 자료의 마감한 날자 이후에 도망한 전쟁포로에 관한 완전한 자료.

(2) 실제로 실행할수 있는 범위 내에서 수용기간 중에 사망한 전쟁포로의 성명, 국적, 계급별 및 기타의 식별자료 또한 사망날자, 사망원인 및 매장 지점에 관한 자료.

ㄴ) 만일 우에 규정한 보충 자료의 마감한 날자 이후에 도망하였거나 또는 사망한 어떠한 전쟁포로가 있으면 수용한 일방은 본 조 제58항 ㄱ목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자료를 전쟁포로 송환위원회를 거쳐 상대방에 제공한다. 이러한 자료는 전쟁포로 인도 인수 계획을 완수할때까지 십(10)일에 일차씩 제공한다.

ㄷ) 전쟁포로 인도 인수 계획을 완수한 후에 본래 수용하고있던 일

방에 다시 돌아온 도망하였던 어떠한 전쟁포로도 이를 군사정전위원회에 넘기어 처리한다.

59. ㄱ) 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하는 당시에 국제연합군총사령관의 군사통제 지역에 있는 자로서 1950년 6월 24일에 본 정전협정에 확정된 군사분계선 이북에 거주한 전체 사민에 대하여서는 그들이 귀향하기를 원한다면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은 그들이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에 돌아가는것을 허용하며 협조한다. 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하는 당시에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 사령원의 군사통제 지역에 있는 자로서 1950년 6월 24일에 본 정전협정에 확정된 군사분계선 이남에 거주한 전체 사민에 대하여서는 그들이 귀향하기를 원한다면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 사령원은 그들이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에 돌아가는것을 허용하며 협조한다. 각방 사령관은 책임지고 본 목 규정의 내용을 그의 군사통제 지역에 광범히 선포하며 또 적당한 민정 당국을 시켜 귀향하기를 원하는 이러한 전체 사민에게 필요한 지도와 협조를 주도록한다.

ㄴ) 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하는 당시에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 사령원의 군사통제 지역에 있는 전체 외국적의 사민중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의 군사통제 지역으로 가기를 원하는 자에게는 그가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의 군사통제 지역으로 가는것을 허용하며 협조한다. 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하는 당시에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의 군사통제 지역에 있는 전체 외국적의 사민중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 사령원의 군사통제 지역으로 가기를 원하는 자에게는 그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 사령원의 군사통제 지역으로 가는 것을 허용하며 협조한다. 각방 사령관은 책임지고 본 목 규정의 내용을 그의 군사통제 지역에 광범히 선포하며 또 적당한 민정 당국을 시

켜 상대방 사령관의 군사통제 지역으로 가기를 원하는 이러한 전체 외국적의 사민에게 필요한 지도와 협조를 주도록한다.

ㄷ) 쌍방이 본 조 제59항 ㄱ목에 규정한 사민의 귀향과 본 조 제59항 ㄴ목에 규정한 사민의 이동을 협조하는 조치는 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한 후 될수있는 한 속히 개시한다.

ㄹ) (1) 실향사민귀향협조위원회를 설립한다. 동 위원회는 령급 장교 사(4)명으로 구성하되 그중 이(2)명은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이 이를 임명하며 그중 이(2)명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이 공동으로 이를 임명한다. 동 위원회는 군사정전위원회의 전반적 감독과 지도 밑에 책임지고 상기 사민의 귀향을 협조하는데 관계되는 쌍방의 구체적 계획을 조절하며 또 상기 사민의 귀향에 관계되는 본 정전협정 중의 일체 규정을 쌍방이 집행하는것을 감독한다. 동 위원회의 임무는 운수 조치를 포함한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상기 사민의 이동을 촉진 및 조절하며 상기 사민이 군사분계선을 통과하는 월경지점(들)을 선정하며 월경 지점(들)의 안전조치를 취하며 또 상기 사민 귀향을 완료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타 임무를 집행하는 것이다.

(2) 실향사민귀향협조위원회는 그의 임부에 관계되는 어떠한 사항이든지 합의에 도달할수없는 때에는 이를 곧 군사정전위원회에 제출하여 결정하게 한다. 실향사민귀향협조위원회는 그의 본부를 군사정전위원회의 본부 부근에 설치한다.

(3) 실향사민귀향협조위원회가 그의 임무를 완수한 때에는 군사정전위원회가 즉시로 이를 해산시킨다.

제 4 조 쌍방 관계정부들에의 건의

60. 한국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보장하기 위하여 쌍방 군사사령관은 쌍방의 관계 각국 정부에 정전협정이 조인되고 효력을 발생한후 삼(3)개월 내에 각기 대표를 파견하여 쌍방의 한급 높은 정치회의를 소집하고 한국으로부터의 모든 외국군대의 철거 및 한국 문제의 평화적 해결등 문제들을 협의할것을 이에 건의 한다.

제 5 조 부 칙

61. 본 정전협정에 대한 수정과 증보는 반드시 적대쌍방사령관들의 호상 합의를 거쳐야한다.

62. 본 정전협정의 각 조항을 쌍방이 공동으로 접수하는 수정 및 증보 또는 쌍방의 정치적 수준에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적당한 협정 중의 규정에 의하여 명확히 교체될 때 까지는 계속 효력을 가진다.

63. 제12항을 제외한 본 정전협정의 일체 규정은 1953년 7월 27일 2200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53년 7월 27일 1000시에 한국 판문점에서 영문, 한국문 및 중국문으로 써 작성한다. 이 세가지 글의 각 협정 문본은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중국인민지원군	국제연합군 총사령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원수	사령원	미국 육군 대장
김 일 성	팽 덕 회	마크 더블유. 클라크

참 식 자

조선인민군 및

중국인민지원군 대표단

수석 대표

조선인민군 대장

남 일

국제연합군 대표단

수석 대표

미국 육군 중장

윌리엄 케이. 헤리슨

부 록

중립국송환위원회 직권의 범위

(제51항 L목을 보라)

제1조 총 칙

1. 전체 전쟁포로로 하여금 정전후 피송환권 행사의 기회를 가지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쌍방은 서진, 서서, 파란, 체코슬로바키야 및 인도에 각각 일(1)명씩의 위원을 임명하도록 요청하여 중립국송환위원회를 설립하고 동 위원회는 억류측의 관리하에 있는동안 피송환권을 행사하지 않은 전쟁포로를 한국에서 수용한다. 중립국송환위원회는 그 본부를 비무장지대내의 관문점 부근에 두며 중립국송환위원회와 동일한 구성을 가진 종속기관을 동 위원회가 전쟁포로를 책임지고 관리하는 각지점에 주재시킨다. 중립국송환위원회와 그의 종속기관의 사업을 참관하는것을 쌍방 대표들에게 허락한다. 이에는 해설과 면회를 포함한다.

2. 중립국송환위원회의 직무와 책임의 수행을 협조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무장력량과 기타 일체 공작인원은 인도가 전적으로 제공하며 제네바 협약 제1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도 대표는 공정인이 되며 동 대표는 중립국송환위원회의 의장과 집행자로 된다. 기타 4개국의 대표는 각각 오십(50)명을 넘지않는 동수의 참모 보조인원을 가지는것을 허락한다. 각 중립국의 대표가 사고로 인하여 결석할때에는 동 대표는 자기와 동일한 국적을 가진 자를 후보 대표로 지정하여 그의 직권을 대행케한다. 본 항에 일체 인원의 무기는 경무원용 소형 무기에 한한다.

3. 상기 제1항에 규정한 전쟁포로의 송환을 방해 또는 수행하기 위하여 무력을 사용하거나 또는 무력으로써 위협하지 못하여 또한 어떠한 방

식으로든지 또는 여하한 목적을 위하여서도 전쟁포로의 인식에 대하여 폭력을 사용하거나 또는 그들의 존엄이나 자존심을 훼손하는 언행은 허락하지 않는다. (단 하기 제7항을 보라) 이 임무를 중립국송환위원회에 지시하며 위임한다. 동 위원회는 언제나 제네바협약중의 구체적 규정과 동 협약의 전반적 정신에 의하여 전쟁포로를 인도적으로 대우할것을 보장한다.

제 2조 전쟁포로의 관리

4. 정전협정 발효일 이후 피송환권을 행사하지 않은 전체 전쟁포로는 정전협정 발효일 이후 가능한한 속히 최대한 룩십(60)일 이내에 억류측의 군사통제와 수용하로부터 석방되어 억류측이 지정하는 한국내의 지구에서 중립국송환위원회에 넘어간다.

5. 중립국송환위원회가 전쟁포로 수용시설을 관리하는 책임을 맡을때에 억류측의 무장부대는 그곳에서 철수함으로써 전항에 규정한 지구를 인도의 부장력량으로 하여금 전적으로 접수 관리케한다.

6. 상기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억류측은 전쟁포로 관리지구 주변지역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 보장하며 억류측 관리 지역내의 어떠한 무장력량이든지(비정규적 무장력량도 포함) 전쟁포로관리 지구에 대하여 여하한 교란과 침범행동도 감행하지 못하도록 방지하며 단속할 책임을 진다.

7. 상기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 협정의 여하한 항목도 중립국송환위원회의 임시 관할하에 있는 전쟁포로를 통제하는 동 위원회의 합법적 직무와 책임을 집행하는 권한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해설할수 없다.

제3조 해 설

8. 중립국송환위원회는 피송환권을 행사하지 않은 전체 전쟁포로를 접수 관리하게된후 즉시로 조치를 취하여 전쟁포로의 소속국가들로 하여금 자유와 편리를 가지고 중립국송환위원회가 접수관리하게 된날부터 구십(90)일 이내에 하기 규정에 따라 이러한 전쟁포로의 관리 지구에 대표를 파견하여 동 소속국에 의탁하는 전체 전쟁포로에게 그들의 권리를 해설 하며 그들이 고향에 도라가는데 관련되는 모든 사항, 특히 그들이 집에 도라가 평화적 생활을 할수있는 완전한 자유를 가지고 있다는것을 알리게 한다.

ㄱ. 해설에 종사하는 이러한 대표의 수효는 중립국송환위원회의 관리하에 있는 전쟁포로 매 천(1000)명에 대하여 칠(7)명을 넘지 못하되 허락될 최저 총수는 오(5)명 이하가 되어서는 안된다.

ㄴ. 해설에 종사하는 대표가 전쟁포로에게 접근하는 시간은 중립국 송환위원회가 결정하며 대체로 전쟁포로의 대우에 관한 제네바협약 제53 조에 의거한다.

ㄷ. 일체의 해설 사업과 면회는 중립국송환위원회의 각 성원국가의 대표 일(1)명씩과 억류측 대표 일(1)명의 립회하에 진행한다.

ㄹ. 해설 사업에 관한 추가적 규정은 중립국송환위원회가 제정하며 상기 제3항과 본항에 열거한 원칙을 적용하는것을 목적으로 한다.

ㅁ. 해설에 종사하는 대표에게 그가 사업을 진행할때에 필요한 무선 통신 설비를 휴대하며 무선 통신 인원을 대동하는 것을 허용한다. 통신 인원의 수효는 해설에 종사하는 인원이 거주하는 매 지구에 일(1)조씩으로 제한하되 전체 전쟁포로를 한 지구에 집결하는 경우에는 이(2)조를 허락한다. 각 조는 륙(6)명을 넘지 않는 통신인원으로 구성한다.

9. 중립국송환위원회의 관리하에 있는 전쟁포로는 동 위원회와 동 위원회의 대표 및 그 종속 기관에 의견을 제출하며 통신을 보내며 또 전쟁포로 자신의 여하한 사항에 관한 요망 이든지 알릴수있는 자유와 편리를 가지되 이 목적을 위하여 위원회가 취한 조치에 의거하여 이를 실행한다.

제 4 조 전쟁포로의 처리

10. 중립국송환위원회의 관리하에 있는 전쟁포로는 누구나 피송환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하면 중립국송환위원회의 각 성원국가 대표 일(1)명씩으로써 구성된 기관에 송환을 요구하는 청원을 제출한다. 일단 이러한 청원이 제출되면 중립국송환위원회나 또는 그 종속기관의 하나는 즉시 이를 고려하여 이러한 청원이 유효함을 즉시 다수결로 결정한다. 이러한 청원이 일단 제출되어 중립국송환위원회나 또는 그 종속기관의 하나가 그 효력을 발생케하는 즉시로 동 전쟁포로를 송환 준비가된 전쟁포로를 위하여 설치한 천막에 보내어 거주시키며 그 다음에 동 전쟁포로를 중립국송환위원회의 관리하에 둔체로 즉시 판문점 전쟁포로 교환 지점에 보내되 정전협정에 규정한 절차에 따라 송환한다.

11. 전쟁포로의 관리를 중립국송환위원회에 넘겨 구십(90)일이 만기된 후 상기 제8항에 규정한 대표들의 전쟁포로와의 접근은 즉시 끝나며 피송환권을 행사하지 않은 전쟁포로의 처리분제는 정전협정 초안 제60항에서 소집할것을 제의한 정치회의에 넘겨 삼십(30)일 이내에 해결하도록 노력하게하며 이 기간중에 중립국송환위원회는 이러한 전쟁포로를 계속 관리한다. 어떠한 전쟁포로든지 중립국송환위원회가 그들의 관리를 책임지고 관리하게된후 백이십(120)일 이내에 피송환권을 아직 행사하지 않

있고 또 정치회의에서도 그들에 대한 어떤 기타의 처리 방법에 합의를 보지 못한 자는 중립국송환위원회가 그들의 전쟁포로 신분을 해제하여 사민으로 하는것을 선포하며 그 다음 각자의 청원에 따라 그중 중립국에 갈것을 선택한자가 있으면 중립국송환위원회와 인도 적십자사가 이를 협조한다. 이사업은 삼십(30)일 이내에 완수하며 완수한후 중립국송환위원회는 즉시로 직무를 정지하고 해산을 선포한다. 중립국송환위원회가 해산한후 어느때나 어느곳을 막론하고 상기한 전쟁포로의 신분으로부터 해제된 사민으로서 그들의 조국에 돌아가기를 희망하는 자가 있으면 그들이 있는곳의 당국은 그들의 조국에 돌아가는 것을 책임지고 협조한다.

제 5조 적십자사의 방문

12. 중립국송환위원회의 관리하에 있는 전쟁포로에게 필요한 적십자사의 복구는 중립국송환위원회가 발표한 규칙에 의하여 인도가 제공한다.

제6조 신문 보도

13. 중립국송환위원회는 중립국송환위원회가 제정한 절차에 의하여 신문계 및 기타 보도기관이 본 협정의 련거한 전체 사업을 참관하는 자유를 가지도록 보장한다.

제 7조 전쟁포로를 위한 보급

14. 각방은 자기 군사통제 지역내에 있는 전쟁포로들에게 보급을 제공하되 각 전쟁포로 수용시설 부근에 있는 합의된 인도지점에서 필요한 공

급물자를 중립국송환위원회에 인도한다.

15. 제네바협약 제118조에 의하여 판문점 교환지점까지 송환하는 경비는 억류측이 부담하며 교환지점으로부터의 경비는 전쟁포로가 의탁하는 측이 부담한다.

16. 중립국송환위원회가 전쟁포로 수용시설에서 필요로 하는 일반 근무 인원은 인도 적십자사가 제공할 책임을 진다.

17. 중립국송환위원회는 전쟁포로에게 가능한 범위내에서 의료를 제공한다. 억류측은 중립국송환위원회의 요청이 있을때 가능한 범위내에서 의료를 제공하되 특히 장기 치료 또는 입원을 필요로 하는 환자에 대하여 그렇게 한다. 입원기간중 중립국송환위원회는 전쟁포로를 계속 관리한다. 억류측은 이러한 관리를 협조한다. 치료를 완료한후 전쟁포로는 상기 제4항에 규정한 전쟁포로 수용시설로 돌려보낸다.

18. 중립국송환위원회는 그 임무와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 쌍방으로부터 필요한 합법적인 협조를 받을 권한을 가진다. 단 쌍방은 어떠한 명목이나 어떠한 형식으로서 던지 간섭 또는 영향을 줄 수 없다.

제 8 조 중립국송환위원회를 위한 보급

19. 각방은 자기측 군사 통제 지역내에 주재하는 중립국송환위원회 인원에게 보급을 제공할 책임을 지며 쌍방은 비무장지대 내에서 이러한 보급을 동등한 기초우에서 제공한다. 세밀한 조치는 중립국송환위원회와 억류측이 미번 결정한다.

20. 각 억류측은 중립국 송환위원회를 위하여 제23항에서 규정한 자기측 지역내의 교통로를 경유하여 거주지로 가는동안 및 각 전쟁포로 관리 지구 이내가 아니라 그 지구 부근에 거주하는 동안에 해설에 종사하는

상대방의 대표를 보호하는 책임을 진다. 전쟁포로 관리 지구의 실제 계선 내에서의 이러한 대표의 안전은 중립국송환위원회가 책임진다.

21. 각 억류측은 해설에 종사하는 상대방 대표가 자기 군사통제 지역 내에 있을때 그에게 수송, 숙소, 교통 및 기타 합의된 보급을 제공한다. 이러한 복무는 상환의 기초위에서 제공한다.

제 9 조 발 표

22. 본 협정 각조항을 정전협정 효력발생후 억류측 관리하에서 피송환권을 행사하지 않은 전체 전쟁포로에게 주지시킨다.

제 10 조 이 동

23. 중립국송환위원회에 속하는 인원 및 송환될 전쟁포로는 상대방의 사령부 (또는 사령부들)와 중립국송환위원회가 결정한 교통로를 따라 이동한다. 이 교통로를 표시하는 지도를 상대방의 사령부와 중립국송환위원회에 제출한다. 상기 제4항에 지정한 지구내를 제외하고는 이러한 인원의 이동은 통행하는 지역이 속하는 측의 인원이 이를 통제하며 호송한다. 단 이러한 이동은 어떠한 저애나 협박도 받지 않는다.

제 11 조 절차에관한 사항

24. 본 협정의 해석은 중립국송환위원회가 한다. 중립국송환위원회 및 (또는) 그 임무를 대리하게 되거나 또는 담당하게된 종속기관은 다수결의 기초위에서 운영한다.

25. 중립국송환위원회는 매주에 일차씩 적대 쌍방의 사령관에게 동 위원회가 관리하고 있는 전쟁포로의 정황에 관한 보고를 제출하되 매주 말에 송환된자 및 남아 있는 자의 수효를 표시한다.

26. 본 협정은 쌍방 및 본 협정에서 지명한 5개국어 동의하면 정전이 효력을 발생하는 날에 효력을 발생한다.

1953년 6월 8일 1400시에 한국 판문점에서 영문, 한국문 및 중국문의 세가지 글로 작성한다. 각 문본은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조선인민군및중국인민지원군 대표단

수석대표

조선인민군 대장

남 일

국제연합군 대표단

수석대표

미국 육군 중장

윌리엄 케이. 해리슨

3. 한국정전협정 체결이후 군정위 쌍방간 추가 합의사항

- (1) 한강 하구에서의 민용선박 항행에 관한 규칙 및 관계사항 183
- (2) 작전 비행기의 정의 187
- (3) 쌍방 군사인원 시체 인도 인수에 관한 행정상 세목의 양해 188
- (4) 군사정전위원회 본부구역, 본부구역의 안전 및 본부구역의 수축에 관한 합의 193
- (5) 본부구역내에서의 확성기 사용 196
- (6) 실항사민의 귀향과 외국적인 사민이 상대방 통제 지역으로 가는 것을 협조함에 관한 행정상 세목의 양해 197
- (7) 사민의 비무장지대 출입에 관한 합의 203
- (8) 군사정전위원회 및 그 종속 기관과 각 해당 기관 인원의 증명서, 휘장 및 식별 표식에 관한 합의 205
- (9) 공동감시소조의 관리, 조직, 사업 및 보급에 관한 수정 총칙 ... 212
- (10) 공동감시소조 수의 축소 및 수정 총칙을 위한 협의 연대표 215
- (11) 공동감시소조를 6개 소조로부터 5개 소조로 축소하는 데 관한 계획 217
- (12) 군사분계선이 임진강, 북한강 및 금성강 등의 중양을 통과하는 강 양 연안에 있는 군사분계선 표식물의 보수 및 유지에 관한 양해 219
- (13) 군사분계선 감구와 을구의 지정과 표식물들의 번호 배당 방법 및 표식물들의 규격 221
- (14) 중국어 언어 인원의 공동감시소조 회의 참가 여부에 관한 합의 ... 222
- (15) 군사정전위원회, 중립국감독위원회, 중립국송환위원회 및 그의 각 종속 기관과 기타 인원에게 대한 보급과 비용에 관한 합의 223

(16) 비무장 지대 내에서의 보도 기관 대표 참석에 관한 규정	226
(17) 군사 인원의 한국에의 도착과 한국으로부터의 이거와 물건의 교체 를 감독하며 보고하는데 관한 절차	229
(18) 공동일직장교 사무실의 운영 절차	230
(19) 군사정전위원회의 잠정적 절차 규정	240
(20) 군사정전위원회의 잠정적 절차 규정에 대한 증보	242
(21) 중립국 시찰소조의 축소와 재임명에 관한 협의 연대표	243
(22) 비서장 회의에 있어서의 중국어 언어 인원의 사용에 관한 합의	247
(23) 비무장 지대 내에서 군사 경찰을 민사 경찰로서 사용하는 데 관한 합의 및 민사 경찰이 휴대할 수 있는 부기의 종류에 관한 합의	247
(24) 쌍방 수석위원간에 왕래되는 통신문 사본 수에 관한 합의	248
(25) 군사분계선이 표시된 데 관한 합의	249
(26) 비서장 회의 소집에 관한 합의	249
(27) <군사정전위원회 본부구역, 본부구역의 안전 및 본부구역 수축에 관한 합의>에 대한 보충을 위한 합의서	250

(1) 한강 하구에서의 민용 선박 항행에 관한 규칙 및 관계사항

(’53. 10. 3. 군정위 제22차 회의 비준)

1. 정전협정 제 1 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강 하구에서의 민용 선박항행에 대한 본 규칙을 제정한다.
2. 쌍방은 정전협정에 첨부한 지도 제 2 도에 표시한 한강 하구 수역의 비무장화를 승인한다. 한강 하구 수역과 각방 군사 통제지역과의 경계선은 만조시의 수륙 접촉선으로 한다.
3. 적대 쌍방 사령관은 각기 자기 통제하의 지역이 한강 하구 수역과 인접하는데 있는 하구 및 항구에 적당한 표식물을 설치한다.
4. 정전협정 중 군사 분계선을 확정함에 관한 규정과 제 9 항, 제 10 항 및 제 13 항 1 목에서 사민이 비무장지대에 들어가는 것을 제한하는 각항 규정을 제외하고 비무장지대에 적용되는 모든 규정은 모두 한강 하구 수역에도 적용된다.
5. 각방 사령관은 자기측 인원의 민사 행정과 구제 사업을 책임지고 취급한다. 질서 유지와 본 규칙의 각항 규정을 집행하기 위하여 각방은 그 수요에 따라 한강 하구 수역 내에 네(4)척을 넘지 않는 민사 행정 경찰용 순찰 선박과 이십사(24)명을 넘지 않는 민사 행정 경찰을 제공한다. 민사 행정 경찰의 무기는 권총과 보총에 한한다. 민사 행정 경찰은 자기측의 일체 위반자를 체포하며 자기측의 파손된 선박이 자기측 강안에 도달하도록 협조한다.
6. 민간에서 오랫동안 관습적으로 사용하여 온 한강 하구 수역 내에 성문화되지 않은 항행 규칙과 습관은 정전협정중의 각항 규정과 본 규칙에 저촉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쌍방 선박이 이를 존중한다.
7. 군사정전위원회의 특정한 허가 없이는 모든 군용 선박과 군사 인원

- 및 무기, 탄약을 실은 민용 선박과 중립국 선박은 모두 한강 하구 수역에 들어가지 못한다.
8. 군사정전위원회의 기준이 없이는 어느 일방이든지 한강 하구 수역내에 부표, 부유불, 등광, 표관, 깃발 기타 항행보조물 또는 표식물을 설치하지 못한다.
9. 적대 쌍방 사령관은 자기측의 선박 등록에 적용할 규칙을 규정한다. 이미 등록된 모든 선박에 관한 보고는 군사정전위원회에 제출하여 비치케 한다.
10. 한강 하구 수역내에 매개 선박과 수상에서 항행하는 교통기재는 하기 규정을 준수하며 복종한다.
- ㄱ. 매개 선박은 선박의 형, 길이와 톤수, 선박의 국적, 선주의 성명 및 국적과 선박 등록 항구를 명기한 등록증을 휴대한다.
- ㄴ. 매개 선박은 군사정전위원회 및 공동감시소조 인원과 자기측 민사 행정 경찰의 조사와 수색과 분의에 복종한다.
- ㄷ. 매개 선박은 조사 받을때 하기의 재료를 제공한다.
- (1) 선박 및 선주의 국적
 - (2) 선주의 성명
 - (3) 선박 등록 항구
 - (4) 출발항
 - (5) 목적항
 - (6) 선장과 선원의 성명
 - (7) 승객의 성명
 - (8) 적재 화물의 종류와 수량
- ㄹ. 매개 선박은 언제나 자기 국기 또는 국적을 표시하는 깃발을 뚜렷하게 단다.

- ㄱ. 어떠한 민용 선박이든지 군사정전위원회의 허가 없이는 어떠한 군사 장비도 설치하지 못한다.
 - ㄴ. 일방의 선박은 타당의 통제 구역과 강안에 들어가지 못하며 한강 하구수역의 타방의 경계선으로부터 백(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못한다.
 - ㄷ. 일방의 선박은 충돌을 피하기 위한 항행 신호를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상대방의 선박과 연락이나 통신을 하지 못한다.
 - ㄹ. 일방의 선박은 상대방의 선박이나 인원과 화물, 장비 또는 승객을 양도하거나 교환하지 못한다.
 - ㅁ. 어떠한 선박이든지 야간에는 항행이나 활동을 하지 못하며 일몰 반시간 후부터 일출 반시간 전까지의 기간에는 자기측 강안 부근에 정박한다.
11. 일방의 인원은 타방의 통제 구역이나 강안에 들어가지 못한다.
 12. 일방의 인원은 군사정전위원회의 비준이 없이는 타방의 인원 및 선박과 연락이나 통신을 하지 못한다.
 13. 한강 하구 수역 내에서 항행하는 선박이 폭풍이나 조류의 영향을 받거나 또는 기타 재해로 인하여 재난을 당하였을때 그 선박과 인원이 어느측에 속하였는지를 막론하고 쌍방은 모두 이를 구제할 책임이 지되 구제한 후의 처리는 공동감시소조가 이를 책임진다.
 14. 한강 하구 수역 내에서 발생한 선박의 충돌 사건이 오직 일방의 선박과 인원에만 관계되는 경우에는 해당측 법률에 의하여 해결한다. 상대방의 선박과 민원에게 위협이나 파손을 입게 한 경우에는 공동 감시소조가 조사하여 조사 결과를 군사정전위원회에 보고하며 동 기관은 합의된 행동을 한다.
 15. 군사정전위원회 쌍방 수석위원간 협의로서 본 규칙을 수정하며 보충

할 수 있다.

16. 군사정전위원회가 본 규칙을 비준한 후 적대 쌍방 사령관은 이를 광범히 선포하며 1953년 10월 10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 작전 비행기의 정의

(’53. 11. 28. 군정위 제30차 회의 기준)

1. 괴멸적 성질을 가진 병기 및 탄약을 발사할 목적으로 설계된 것으로서 설사 어떠한 특정한 시에는 무기를 장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수시로 무기를 장치할 수 있는 비행기와
2. 기후, 촬영 및 육안 정찰을 진행하며 또는 전술적 공중협동을 진행할 목적으로 설계된 비행기를 말한다.

(3) 쌍방 군사인원 시체 인도인수에 관한 행정상 세목의 양해
(’54. 8. 17. 군정위 제47차 회의 비준)

1. 각방은 감사하기에 노력한 후 자기측 군사통제 지역내의 보고된 자
 점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상대방 전쟁포로의 시체를 포함한 군사
 인원의 시체를 발굴하며 쌍방이 합의를 본 지정된 구역에 수송하여
 죽은 군사인원의 소속측에 인도하는 것을 책임진다.
2. 분묘등록위원회를 설치하여 상기 시체를 쌍방이 인도인수 하는 사업
 을 계획하고 감독하며 기타 관계 사항을 취급한다.
 - ㄱ. 동위원회는 사(4)명의 령관장교로 구성하되 그중 이(2)명은 국제연
 합군 총사령관이 임명하며 이(2)명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
 국인민지원군 사령원이 공동으로 임명한다. 필요한 경우에 각방은
 참모보조인원을 임명하여 동위원회의 사업에 참가시킬 수 있다.
 - ㄴ. 동위원회는 어떠한 관계 사항에 대하여 합의를 보지 못하는 경우
 에 그 사항을 군사정전위원회에 제출하여 결정할 수 있다.
 - ㄷ. 동위원회가 자기 임무를 완수하였을 때에는 군사정전위원회가 즉
 시로 이를 해산 시킨다.
3. 시체 인도인수 사업을 1954년 9월 1일에 시작하여 1954년 10월 30일
 이전에 완수하며 이 기간내에 각방은 인도인수 사업을 될수록 속히
 완수한다.
4. 각방은 자기측이 상대방에 인도하려고 하는 군사인원 시체의 개략적
 수자에 관한 최후적인 재료를 인도인수 사업이 시작되기 늦어도 십
 (10)일 이전에 상대방에 제출한다.
5. 쌍방의 시체 인도인수 사업은 비무장지대내 동장리 부근에서 진행한
 다.

- ㄱ. 각방은 동장리 부근의 비무장지대 자기측 부분내에 자기측 인수구역의 설정한다. 각방 인수구역의 한계 및 쌍방 인수구역 간의 통로의 위치는 쌍방간에 호상 합의되어야 한다. 각방은 자기측 인수구역의 한계를 명확히 표시할 책임을 진다.
 - ㄴ. 각방은 자기측 인수구역의 수축, 유지 및 내부 관리를 책임진다.
 - ㄷ. 각방은 자기측 인수구역에 통하는 필요한 도로를 자기측 지역내에 수축하며 유지할 책임을 진다.
 - ㄹ. 자기측 인수구역의 시설 및 도로를 수축하며 유지하는데 필요한 각방의 비무장 공작인원과 장비는 동장리 부근의 비무장지대 자기측 부분에 드러갈수 있으며 상기 공작인원은 자기 임무를 완수한 후 즉시 비무장지대에서 철거한다.
6. 각방은 다음과 같은 장교들을 임명한다.
- ㄱ. 지휘장교 일(1)명. 자기측 인도인수사업을 감독한다.
 - ㄴ. 부지휘장교 일(1)명.
 - ㄷ. 약간명의 일직장교. 지휘장교의 일상사업을 협조한다.
 - ㄹ. 약간명의 인도인수장교. 본 랑해 제13항에 규정된 명세서에 의하여 시체를 인도하거나 인수하여 시체 명세서에 서명한다. 인도인수장교의 성명과 서명 견본을 시체의 인도인수 사업이 시작되기 삼(3)일 이전에 상대방에 제출한다.
7. 각방은 자기 인수구역에서 사업하는 행정정보조인원과 위생인원을 임명한다. 그 인원수는 각방이 각기 결정한다.
8. 분묘등록위원회가 따로 합의를 보지 않은 한 각방의 시체 인도인수 사업은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진행한다. 매일 시체 인도인수 사업은 국제연합군측 시간으로 9시 30분에 시작하여 15시 30분에 끝마친다. 즉 조선인민군 및 중국인민지원군측 시간으로 10시에

시작하여 16시에 끝마친다. 필요한 경우에는 쌍방 지휘장교가 협의하여 상기 시간을 임시로 변경할 수 있다.

9. 각방은 다음날 상대방에 인도하려고 하는 시체의 총수 및 국적별 분류수자, 매개차량의 시체수, 매개차량대의 상대방 인수구역 도착 시간등 행정조치에 필요한 자료를 매일 국제연합군측 시간으로 11시 30분 이전에 즉 조선인민군 및 중국인민지원군측 시간으로 12시이전에 상대방에 통지한다.
10. 인도인수 하기전에 있어서 군사인원 시체의 발굴 및 수송등에 관련된 모든 사항은 인도측이 책임진다. 인도인수 이후에 있어서 시체에 관련된 모든 수송과 처리는 인수측이 책임진다. 인도측은 책임지고 상대방 군사인원 시체를 잘 포장하여 인도인수시에 시체를 시체의 포장 또는 시체 주머니와 함께 상대방에 인도한다.
11. 인도측은 상대방 군사인원 시체를 상대방의 인수구역에 수송한다. 인수측은 인수구역내의 질서와 안전을 유지하며 하차를 책임지며 그 다음 인수한 시체를 즉시 비무장지대로부터 반출한다.
매개 인도 차량은 백(100)개 이상의 시체를 실지 못한다. 어느 하루 동안에 일방에 다른 일방의 인도하는 시체는 륵백(600)개의 한도를 초과하지 못한다.
12. 시체를 발굴하여 수송하며 인도하는 측은 매개 시체에 속한 어떠한 식별표와 모든 유물 및 부딪속에서 발견한 어떠한 기타 식별재료 든지 시체와 함께 보존하며 그것들을 비무장지대내 상대방 인수 구역에 잘 수송하여 시체 인도인수시에 상대방에 준다.
13. 각방은 죽은 군사인원 시체에 순번호를 매기며 명세서 륵(6)부를 준비한다. 인수측의 인도인수장교는 명세서에 있는 순번호에 의하여 시체의 점검을 끝마친 다음 명세서 륵(6)부중 제 1부와 제 2부에 서

명한다. 인도측의 인도인수장교는 상기 명세서 이(2)부에 부서한다. 서명된 명세서 제 1 부를 인도측이 인수증으로서 가지고 돌아가며 명세서 제 2 부와 그 나머지의 서명되지 않은 명세서 사(4)부를 인수측에 제출한다. 각 방은 명세서 양식을 인도인수 사업이 시작되기 십(10)일 이전에 상대방에 제출한다. 양식에 순번호, 성명, 매장지점, 식별재료등 얻을 수 있는 관계 재료등을 포함 시킨다. 각방이 제출하는 군사인원 시체의 명세서중 한국적에 속하는 군사인원 시체의 명세서는 한국문으로 쓰고 중국적에 속하는 군사인원 시체의 명세서는 중국문으로 쓰며 기타 국적에 속하는 군사인원 시체의 명세서는 영문으로 쓴다.

14. 일방의 오직 하기 인원만이 상대방 인수구역에 드러갈 수 있다.
 - ㄱ. 군사정전위원회의 인원 및 자기의 지정된 지역내에 인수권한을 가지고 있는 군사정전위원회 공동감시소조의 인원.
 - ㄴ. 분묘등록위원회 위원들 및 그들과 동행할 필요한 참모장교, 번역원 및 기록인원.
 - ㄷ. 지휘장교, 부지휘장교 및 그들과 동행할 필요한 번역원 및 기록인원.
 - ㄹ. 일직장교들 및 그들과 동행할 필요한 번역원 및 기록인원.
 - ㅁ. 인도인수장교들 및 그들과 동행할 필요한 번역원 및 기록인원.
 - ㅂ. 시체를 수송하는 비무장 호송인원.
 - ㅅ. 상기 인원이 승용하는 차량의 운전수 및 시체 수송차량의 운전수.
15. 일방의 어떠한 인원이든지 상대방 인수구역에 사진기와 영화 촬영기를 가지고 드러가지 못한다.
16. 각방은 자기측 인수구역을 경비하기 위하여 실제 필요에 따라 삼십(30)명을 초과하지 않는 민사행정경찰을 파견하여 자기측 인수구역

의 질서를 유지할 수 있다.

17. 본 양해에 의하여 비무장지대에 드러가 본 량해를 집행하는 것을 허락받은 공작인원 및 차량에 대하여 장기증명서 완장 또는 표식을 발급하지 않는다. 단 각방은 임시 휘장과 임시 표식을 각기 발급하되 그 양식은 각기 결정하고 시체 인도인수 사업을 시작하기전에 이를 상대방에 통지한다.
18. 본 량해는 군사정전위원회가 비준한 후 즉시로 효력을 발생한다. 본 표등록위원회는 쌍방의 시체 인도인수 사업과정에서 본 량해에 필요한 수정 또는 증보를 가할수 있다.
19. 본 량해에 규정된 사업이 완수 되었을때 즉 발견할 수 있는 상대방의 죽은 군사인원의 모든 시체가 본 량해의 규정에 의하여 상대방에 인도 되었다고 각방이 분묘등록위원회를 통하여 군사정전위원회에 보고하였을 때에 본 량해는 군사정전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폐지된다.
20. 본 량해가 폐지된 후 어느 일방이 자기측 지역내에서 상대방에 속하는 군사인원의 시체를 발견하는 경우에 군사정전위원회 쌍방 비서장을 통하여 어떠한 시체의 인도인수에 대한 조치를 취한다.

(4) 군사정전위원회 본부구역, 본부구역의 안전 및 본부구역 수축에 관한 합의 ('53. 10. 19. 군정위 제25차 회의 비준)

1. 본부구역

- ㄱ. 군사 정전 위원회의 본부 구역의 범위는 첨부한 지도에 표시한 바와 같다.
- ㄴ. 군사 정전 위원회 본부 및 그 종속 기관의 사무 장소, 중립국감독위원회 본부 및 그 종속기관의 사무 장소, 중립국 송환 위원회 본부 및 그 종속기관의 사무 장소와 각 본부 및 그 종속 기관의 인원이 필요로 하는 숙소는 본부구역 내에 건축한다. 상기한 군사정전위원회본부와 중립국감독위원회 본부와 중립국송환위원회 본부사무소는 본부구역의 공동경비구역내에 수축한다.

2. 본부구역의 안전

- ㄱ. 본부구역 내의 안전은 쌍방이 각각 십(10)명을 넘지 않는 장교와 구십(90)명을 넘지 않는 사병을 파견하여 이를 책임지고 경비케한다.
- ㄴ. 군사 분계선 양측 본부 구역을 각각 “갑”“을” 2구로 구분한다.(첨부한 지도를 보라) 어느 일방이든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자기측의 민사 행정 경찰로 “을”구의 경비를 책임지게 할 수 있다.
- ㄷ. 본부구역의 2개 “갑”구 내에 하나의 원형에 가까운 구역을 설치하여 쌍방의 공동경비구역으로 한다.(첨부한 지도에 표시한 것을 보라) 이 구역의 경계선은 조선인민군 및 중국 인민지원군 대표와 국제연합군 대표간에 1953년 9월 3일과 5일에 도달한 합의에 의하여 지상에 나무 말뚝을 꽂아 이를 표시한다. 공동경비구역의 경비는 쌍방이 각각 파견한 상기의 십(10)명의 장교와 구십(90)명의

사병 중 그 일부가 이를 공동으로 담당한다.

단 인제나 각각 장교 오(5)명 사병 삼십(30)명을 초과하지 못한다.

- ㄹ. 공동경비구역의 경비 인원은 공동경비구역을 넘어 본부구역의 다른 일방의 구역에 가지 못한다.
- ㅁ. 본부구역 경비 인원이 휴대하는 무기는 개인 보총 일(1)정 또는 권총 일(1)정에 한한다.
- ㅂ. 공동감시소조는 본부구역 내에서 비부장지대의 기타 지역에서와 마찬가지로 자기의 정상적인 직무를 자유로 집행할 수 있다.
- ㅅ. 본부구역 내에 거주하는 사민은 원래 동 구역에 거주하거나 농작을 하던 사민이라야 한다. 단 본부구역의 공동경비구역 내에서 사민이 거주하거나 또는 농작을 하지 못한다.
- ㅇ. 본부구역 및 공동경비구역의 주위에는 모두 적당한 표식을 설치한다. 이러한 표식을 수렴함에 군사분계선 이북에 있는 것을 조선인 민군 및 중국 인민지원군측이 책임지고, 군사분계선 이남에 있는 것은 국제연합군측이 책임진다. 표식 양식은 각방이 각기 결정한다.

3. 본부구역의 수축

- ㄱ. 군사정전위원회 및 그 종속 기관의 쌍방 인원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시설, 중립국감독위원회, 중립국송환위원회 및 그 종속 기관이 사용하는 건물과 시설은 쌍방이 균등하게 분담하는 기초위에서 이를 건축하며 유지한다.
- ㄴ. 각방은 군사정전위원회 및 그 종속 기관 중 자기측 인원만이 필요로 하는 건물과 시설을 건축하며 유지한다. 일방의 군사정전위원회 위원과 공작 인원이 사용할 사무소, 숙소 및 휴게 친막을 군사

분계선의 자기측 본부 구역의 공동경비구역내에 두는가 또는 공동
경비구역외에 두는가 하는 것은 각방이 각기 결정한다.

- ㄷ. 각방은 자기측에서 지명한 중립국감독위원회의 각국 인원이 필요
로 하는 건물과 시설을 건축하며 유지한다.
- ㄹ. 조선인민군 및 중국인민지원군측은 중립국감독위원회의 파란 및
체코슬로바키야 인원만이 필요로 하는 건물과 시설을 건축하며 유
지한다. 국제연합군측은 중립국감독위원회의 서서 및 서전 인원만
이 필요로 하는 건물과 시설을 건축하며 유지한다. 중립국송환위
원회 본부의 인도 인원이 필요로 하는 건물과 시설은 쌍방이 군사
분계선의 자기측 지역의 공동경비구역 내에 각가 반 씩 건축하며
유지한다.
- ㅁ. 현재의 수요에 의하여 쌍방은 본부 소재지에 각각 3채의 건물을
유지하되 그 중 3채는 군사정전위원회 및 그 종속 기관의 공동사
용에 제공한다. 상기의 용도에 제공한 건물의 수효와 그 사용은
필요에 따라 쌍방 비서장들이 본 합의 관계규정에 의하여 협의 조
종한다.(본 수정은 1954년 11월 8일 공동일직장교 회의에서 1954
년 11월 8일부터 발효할 것으로 국제연합군측 및 조중측에 의하여
합의되었음.)
- ㅂ. 군사정전위원회가 해산한 후 상기의 건물과 시설을 제공한 일방은
자기측이 제공한 건물과 시설을 자기가 처리할 수 있다.
- ㅅ. 본부구역에 있는 건물의 배당
건물 배열 중 최동단에 있는 것부터 시작하여 첫번째 건물은 중립
국송환위원회에, 둘째번 및 세째번 것은 군사정전위원회에, 네째번
및 다섯번째 것은 중립국감독위원회에, 그리고 여섯번째 것은 군
사정전위원회에 각각 배당한다.(제69차 비서장회의)

(5) 본부구역 내에서의 확성기 사용

1. 군사정전위원회 국제연합군측은 조선인민군 및 중국 인민지원군측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회의실 내에 확성기를 장치하였다. 제191차(1959년 3월 4일) 비서장 회의에서 국제연합군측 비서장은 “이 확성 장치는 군사정전위원회와 그의 종속 기관의 회의에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다.”고 발언하였다.
2. 조선 인민군 및 중국 인민지원군측은 역시 전기와 같은 장치를 설치하고 1959년 4월 15일, 하나의 통지문에 대한 회신으로서 공동일직장교 사무실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통지하였다.
“우리측 수석 위원은 우리측이 설치하는 확성장치가 당신측이 설치한 확성장치를 방해하지 않을 것이며 군사정전위원회가 비서장 회의들의 편의를 위하여 그를 설치한다는 것을 당신측에 통지하도록 나에게 지시하였습니다.”
3. 확성 장치는 군사정전위원회 및 비서장 회의에서만 사용하도록 합의된 것으로 간주된다.

(6) 실향 사민의 귀향과 외국적의 사민이 상대방 통제 지역으로 가는 것을 협조함에 관한 행정상 세목의 양해
(’53. 12. 29. 제2차 실향사민위원회회의의 기준)

본 위원회는 한국정전협정 제59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향 사민이 귀향하는 것과 외국적의 사민이 상대방 통제 지역으로 가는 것을 협조하는 사업에 대하여 하기와 같은 양해에 도달하였다.

1. 실향 사민과 외국적의 사민이 상대방 통제 지역으로 가기 위하여 군사분계선을 통과하는 것은 1954년 3월 1일에 시작하여 군사 정전위원회가 결정하는 기일 전에 완료한다. 각방은 가능한한 신속히 이 사업을 완수한다. 상기 기일의 10일 이전에 각방은 각기 상대방 지역으로 넘어가는 것을 협조하기로 준비된 실향 사민과 외국적 사민의 개략적 숫자에 관하여 자료를 교환한다.
2. 귀향하는 실향 사민과 상대방 통제 지역으로 가는 외국적의 사민이 군사분계선을 통과하는 월경 지점은 시초에는 군사분계선과 판문교의 교차 지점에 설정한다.
 - ㄱ. 각방은 월경하는 실향 사민과 외국적의 사민을 인수하는 자기측 인수 구역을 판문점 월경 지점과 통하는 비무장지대내 자기측 지역에 설치한다. 각방 인수 구역의 한계는 쌍방간에 호상 합의되어야 한다. 각방은 자기측 인수 구역의 한계를 책임지고 명백히 표시한다. 각방 인수 구역은 공동경비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적어도 오백(500)미터 밖에 설치한다.
 - ㄴ. 각방은 자기측 인수 구역의 건설, 유지 및 내부 관리를 책임진다.
 - ㄷ. 각방은 자기측 지역 내에서 자기측 인수 구역으로 들어가는 데 필요한 도로를 책임지고 수축하며 유지한다.

- ㄹ. 인수 구역의 시설 및 도로를 수축 유지하는 데 필요한 각방의 기계 및 비무장 공작 인원은 판분점 부근의 자기측 비무장지대에 들어갈 수 있으며 그들은 임무를 끝마친 후 즉시로 철수하여야 한다.
 - ㄷ. 각방은 귀향하는 실향 사민과 상대방 통제 지역으로 가는 외국적의 사민을 상대방 인수 구역으로 수송한다.
 - ㄹ. 인수측은 인수 구역 내의 질서와 안전을 유지하며 하차를 책임진다. 인수측은 매일 인수 수속을 끝마친 후 두(2)시간 내에 자기측이 인수한 실향 사민과 외국적의 사민을 비무장지대로부터 철거시킨다.
 - ㅅ. 어느 하루동안의 사민의 인도 인수는 한 방향으로만 진행한다. 본 위원회가 따로 합의를 보지 않은 한 계속되는 사업일마다 월경하는 사민을 쌍방이 교체하여 인도 인수한다.
3. 본 위원회의 합의를 거치고 군사정전위원회의 기준을 받아 군사 분계선상에 다른 월경 지점을 증설할 수 있으며 비무장지대내에 상용한 인수 구역을 증설할 수 있다.
4. ㄱ. 각방은 월경 지점과 인수 구역에서 사업을 감독하는 실향사민귀향협조위원회의 자기측 대표로 지휘 감독 장교와 부지휘 감독 장교를 임명한다.
- ㄴ. 지휘 감독 장교와 부지휘 감독 장교는 상대방의 해당하는 장교와 즉시 진행하여야 할 성질의 사항을 해결할 권한이 있다. 합의에 도달할 수 없는 사항은 본 위원회에 제출한다.
5. 각방은 월경 지점 및 자기측 인수 구역에서 사업할 일(1)명의 지휘 장교 및 일(1)명의 부지휘 장교와 적당한 공작 및 행정보조 인원을 임명하되 이 수효는 본위원회 각방 위원이 이를 각기 결정한다.

6. 각방은 장교들을 임명하여 귀향하는 사민을 상대방의 인수 구역으로 수송 인도케 한다.
7. 실향사민귀향협조위원회 위원, 동 위원회 본부에서 사업하는 참모장교, 월경 지점 및 인수 구역에 있는 지휘 감독 장교, 부지휘 감독 장교, 지휘장교, 부지휘 장교 및 기타 적당한 보조 인원은 실향 사민이 귀향하는 것과 외국적의 사민이 다른 일방의 통제 지역으로 가는데 관계되는 일체 통신은 상대방으로부터 접수할 권한을 가진다.
8. 월경과 인도 인수 사업은 합의를 본 사업일에 십(10)시부터 십육(16)시까지 진행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쌍방 지휘 감독 장교는 협의하여 상기 시간을 임시로 변경할 수 있다.
9. 각방은 실향 사민과 외국적 사민을 인도할 때 매개 집단의 사민의 명부 두(2)벌을 인도하기 삼(3)일 전에 인수측에 제출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예측하지 못한 정정을 포함한 매개 집단의 명부 두(2)벌을 인수측의 인수 구역에서 실향 사민 및 외국적 사민의 인도 인수시에 인수측 장교에게 더 제출한다. 인도와 인수는 인수 구역에서 인도측이 제공한 명부에 의하여 진행한다. 명부에는 매개 사민의 성명, 연령 및 성별을 포함하며 외국의 사민인 경우에는 국적을 포함한다. 실향 사민의 명부에는 매개 실향 사민의 본래의 주소를 포함한다.
10. 각방은 상대방에 인도되는 것을 협조 받을 병자, 불구자, 노약자인 사민에게 필요한 의료 복무와 적당한 수송 기재를 제공하여 그들이 가능한 한 우선적으로 군사분계선을 월경하며 자기 가족과 동행하도록 한다.
11. 실향 사민의 귀향 또는 외국적의 사민이 상대방 통제 지역으로 가는 것을 협조 함에 있어서 한 가정에 속하는 사민은 전 가족이 동행하도록 한다.

12. 각방은 정전협정 제59항의 규정에 따라 자기측 통제 지역에 들어오거나 또는 상대방 통제 지역으로 나갈 자격을 가진 사민이 다른 일방의 통제 지역에 거주하는 동안에 결혼한 배우자와 동행하도록 협조한다. 각방은 미성년자를 그 가족과 동행하도록 협조한다.
13. 각방은 월경하는 것을 허가 받은 사민이 봄소 휴대할 수 있는 개인 소지품을 가지고 월경하는 것을 허락하며 협조한다.
14. 인도측은 월경하는 사민을 상대방 인수 구역에 집단적으로 나누어 수송하되 매개 집단은 이십(20)명을 넘지 못한다. 어느 하루 동안에 월경할 허가와 협조를 받은 사민의 수는 최고 백(100)명을 초과하지 못한다. 실향 사민과 외국적인 사민은 별개 집단으로 하여 인도 인수한다.
15. 각방은 상기 제9항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명부에 추가하여 매일 십이(12)시 전에 다음날 상대방에 인도 되는 것을 협조 받을 실향사민과 외국적인 사민에 관하여 예정된 매개 집단의 확실한 인원수, 국적별 분류 수자, 상대방 인수 구역에 도착할 시간 및 병자 또는 불구자의 유부, 의료 또는 특수 수송 혹은 기타 설비의 필요 유부와 같은 최종적 자료를 상대방에 제공한다.
16. 임시로 허락을 받고 비부장지대 내에 들어가 본 양해를 집행하는 공작 인원에게는 장기적 증명서 혹은 완장을 발급하지 않고 쌍방이 각기 임시 휘장을 발급한다. 비부장 지대 내에서 사민과 그들을 대동하는 공작 인원을 수송하는 차량에는 각방이 결정하는 크기와 색의 깃발을 단다. 제례의 적십자 표식을 갖춘 구호차에는 이 깃발이 필요하지 않다. 각방은 이러한 휘장의 양식과 깃발의 크기와 색을 다른 일방에 통지한다.
17. 각방은 자기측 인수 구역을 정비하고 그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삼

십(30)명을 넘지 않는 민사 행정 경찰을 제공한다.

18. 일방의 하기 인원만이 상대방 인수 구역에 들어 갈 수 있다.

- ㄱ. 군사정전위원회 위원과 월경지점 및 인수 구역을 자기 주재 지역 내에 가지고 있는 군사정전위원회 공동감시소조 조원.
- ㄴ. 본 위원회 위원과 그가 대동하는 참모 장교, 통역 및 기록 인원.
- ㄷ. 본 양해 제4항 및 제5항에 규정되어 있는 장교들과 그들이 대동하는 통역 및 기록 인원.
- ㄹ. 사민을 인도하는 장교와 그가 대동하는 통역 및 기록 인원.
- ㅁ. 사민을 수송하는 차량의 운전수를 포함한 운전수와 이러한 사민을 호송하는 비무장 인원

19. 1953년 9월 16일 군사정전위원회가 비준한 보도기관 대표에 관한 양해 제3조 제8항에 의하여 본 사업에 관계되는 보도 기관 대표에게 하기 규정을 적용한다.

정식으로 인가 받은 보도 기관 대표는 비무장지대 내에서 사민의 인도 인수 사업이 진행되는 시간내에 군사분계선을 통과하는 것을 허락 받는다. 각 방은 사업이 진행되는 어느 하루 동안에 상대방의 일(1)명의 장교가 대동하는 십(10)명을 넘지 않는 보도 기관 대표가 시초에 설정한 월경 지점의 지정된 구역과 자기측 인수 지점에 들어가는 것과 그 안에서 자유로이 이동하는 것을 허락한다. 보도 기관 대표가 월경 지점과 각방의 인수 구역 내에 있는 동안 그는 질서를 준수하여야 하며 사민의 인도 인수 사업을 저해하거나 지연하지 못한다. 다른 월경 지점과 인수 구역을 증설하는데 합의를 본 경우에는 상기 규정은 증설된 매개 월경 지점과 이에 상응한 인수 구역에 적용된다.

20. 어느 일방이나 상대방에서 그 책임을 적당히 이행하지 않거나 이 합

의의 취지나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난할 경우에는 비난하는
측은 삼십육(36)시간 전의 통고로써 그 비난이 본 위원회 혹은 군사
정전위원회에서 토의 해결될 때까지 본 사업을 정지할 권리를 가진
다.

21. 실항 사민의 귀향과 외국적의 사민이 상대방 통제 지역으로 가는 것
을 협조하는 사업 과정에서 본 위원회 쌍방의 동의를 거쳐 본 양해
에 필요한 수정 또는 증보를 가할 수 있다.
22. 본 양해는 군사정전위원회가 비준한 후 즉시로 효력을 발생하며 군
사정전위원회의 명령에 의하여 폐지된다.

(7) 사민의 비무장 지대 출입에 관한 합의

정전협정 제8항과 제9항의 규정과 1953년 8월 3일 군사정전위원회 제 6차 회의에서 도달한 원칙상의 합의에 의하여 정전 협정 발효일에 확실히 비무장지대에 거주하였거나 또는 비무장지대 내에서 농업에 종사한 사민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비무장지대의 북경계선 또는 남경계선을 왕복 통과할 필요가 있을때 하기 각항에 의하여 그들에게 이러한 이동의 자유를 허여한다.

1. 정전협정 발효일에 확실히 비무장지대에 거주하였거나 또는 비무장지대 내에서 농업에 종사한 사민에게만 비무장지대 북경계선 또는 남경계선을 통과함을 본 합의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한다.(1955년 6월 27일부터 배우자와 자녀들을 추가하기로 합의되었다.)
2. 이러한 허가에는 군사분계선을 통과하는 권한을 포함하지 않는다.
3. 어느 일방의 군사 통제 지역에 들어가며 다시 돌아오는 데 대한 허가는 정전협정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부여하며 각방 사령관이 개발적으로 또 그들이 자기 원하는 대로 이를 처리한다.
4. 비무장지대에 들어가며 다시 돌아오는 데 대한 허가는 정전협정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부여하며 군사정전위원회 비서처에 이를 등록한다.
5. 상기 제4항의 규정을 집행하기 위하여 상기 제1항에 해당하는 사민이 그가 거주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는 비무장지대 내의 부분에 들어가며 다시 돌아오는데 대한 특정한 허가는 군사정전위원회가 이를 부여한다. 이러한 특정한 허가는 본 합의의 관계 규정의 제한을 받는다. 이러한 특정한 허가는 군사정전위원회가 본 합의를 비준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그 후 육(6)개월간 유효한다.

6. 상기 제5항에 부여된 특정한 허가를 등록하기 위하여 각방은 비부장지대 자기측 부분에서 거주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는 자격을 가지며 비부장지대의 경계선을 통과하는 이동의 자유를 허락 받고 이를 행사하고 있는 사민의 명부 두(2)필을 늦어도 1954년 3월 15일 까지 군사정전위원회 비서처에 제출한다. 이러한 명부에는 본 합의의 발효일로부터 1954년 3월 1일까지의 사이에 최초의 신청을 제출하는 자격 있는 사민의 성명, 연령, 성별 및 주소를 포함한다. 1954년 3월 15일 이후 배월 같은 방식으로 보충 명부를 군사정전위원회 비서처에 제출하되 이에선 전번 명부 제출후에 신청서를 제출하였거나 유효 기간이 지난 허가의 갱신 신청을 한 자격 있는 사민을 기입한다.
7. 각방은 자기측이 민사 행정과 구제 사업을 책임지고 있는 비부장지대 내의 부분에서 본 합의를 적절히 실시하는 데 필요한 절차를 제정한다.

참 고

최초의 합의는 1954년 2월 22일에 공동 일직 장교를 통하여 교환된 통지문으로써 군사정전위원회에 의하여 비준되었다. 이 합의에 규정된 시간제한은 1954년 2월 22일부터 6개월간이었으며, 1954년 9월 이후 1965년 2월까지 6개월간격으로 유효기간이 연장되어졌다.

(8) 군사정전위원회 및 그 종속 기관과 각 해당 기관 인원의 증명서 휘장 및 식별 표식에 관한 합의('53. 9. 16. 군정위 제19차회의 비준)

1. 총 칙

- ㄱ. 쌍방은 하기의 규정을 군사정전위원회 및 그 종속 기관과 각 해당 기관 인원의 증명서 휘장 및 식별 표식 문제에 적용하는데 동의한다.

2. 사 용

- ㄱ. 하기의 증명서 휘장 및 식별 표식은 하기의 군사정전위원회 및 그 종속 기관과 각 해당 기관의 인원이 사용한다.

- (1) 군사정전위원회
- (2) 전쟁포로송환위원회
- (3) 공동적십자소조
- (4) 실향사민귀향협조위원회
- (5) 공동감시소조

- ㄴ. 군사정전위원회 위원은 상기 제2항 ㄱ목에 규정한 종속 기관 인원을 위하여 규정한 휘장(완장)을 착용하지 않는다.

3. 인 원

ㄱ. 완 장

- (1) 매개 인원은 어느 팔에든지 넓이 약 십(10) 센치(4인치) 길이 약 사십오(45)센치(18인치)의 황색 완장을 착용한다.

ㄴ. 증명서

- (1) 임명된 일체의 인원에게 신분증을 발급한다.(군사정전위원회비서처에서 그 격식과 용어를 선정한다.)
- (2) 각방 인원의 신분증은 각방이 서명하여 확인하며 군사정전위원

회 각방 비서장은 서명 확인하는 장교를 지정한다.

- (3) 신분증은 군사정전위원회 비서처에서 발급하며 등록한다.
- (4) 발급한 일체의 신분증은 소지자의 신분증에 기재한 직무 수행이 끝날 때에는 군사정전위원회 비서처에 반환한다.
- (5) 임시로 허락을 받고 비무장지대 내에 들어가 수축과 유지 작업에 종사하는 인원에게는 장기적 신분증과 완장을 발급하지 않는다. 단, 각방은 임시 휘장을 각각 발급하되 이러한 휘장의 양식을 다른 일방에 통지한다. 이러한 인원은 하기 각 기관의 본부를 수축하며 유지하는 일 이외의 경우에는 군사분계선을 넘지 못한다.

- (㉠) 군사정전위원회
- (㉡) 전쟁포로송환위원회
- (㉢) 공동적십자소조
- (㉣) 실향사민귀향협조위원회
- (㉤) 중립국감독위원회
- (㉥) 중립국송환위원회

4. 차 량

- ㄱ. 길이 반미터, 넓이 반미터(넓이와 길이 각 19.7인치)의 황색기 한 폭을 각 차량에 표시한다.
- ㄴ. 군사정전위원회의 허가를 받고 비무장 지대에 들어가는 수축, 유지, 보급 및 수송 차량에는 각방이 결정하는 색의 깃발을 단다. 제래의 적십자 표시를 갖춘 구호차에는 본 표시가 필요하지 않다.

5. 비 행 기

- ㄱ. 날개가 고정된 비행기는 세줄의 황색 선으로 동체와 매개 날개를 둘러서 표시한다. 그 선의 넓이는 비행기의 크기에 의하되(일반적

으로 10분지 6미터 “2피트”) 그 크기는 비행할 때 쉽게 식별할 정도로 한다.

ㄴ. 날개가 회전하는 비행기는 미부에 통상형 비행기와 동일한 표식을 한다. 그 동체에는 역시 세줄의 선을 둘러서 표식한다. 그 표식의 넓이는 해당 비행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면적에 의하되(일반적으로 10분지 3미터 “1피트”) 이를 식별하기에 편리할 정도로 한다.

6. 선 박

ㄱ. 모든 형의 선박은 선체 좌우편의 앞뒤에 각각 세줄의 누른 수직선으로 표식한다. 그 수직선의 길이와 넓이는 선박의 크기에 의하되 일반적으로 길이 10분지 6미터, 넓이 10분지 3미터(길이 2피트 넓이 1피트)로 한다.

ㄴ. 배 위에 길이 약 일(1)미터, 넓이 일(1)미터(넓이와 길이 약 3피트 3인치)의 누른 기를 단다.

7. 효력 발생 날자

ㄱ. 공작 인원의 완장 착용의 효력 발생 날자는 군사정전위원회가 이 합의를 비준한 후 제 오(5)일 이십사(24) 시부터로 확정한다.

ㄴ. 상기의 제4항과 제5항 및 제6항에 열거한 표식과 깃발은 늦어도 군사정전위원회가 이 합의를 비준한 제 오(5)일 이십사(24)시에 일체의 차량과 비행기 및 선박에 표시한다.

ㄷ. 증명서를 발급하는 유효일은 군사정전위원회 비서처에서 이를 결정한다.

ㄹ. 신분증의 양식

군사정전위원회가 그의 종속 기관 및 조선 인민군측과 국제 연합군측의 유사한 기관 인원들을 위한 신분증의 양식은 합의를 보았다. 이 신분증은 실질적으로는 같다. 조중측에 의하여 사용되는 신

분증에는 한국어가 먼저 기재되어 있다. 국제 연합군측의 양식에는 영어가 먼저 기재되어 있다.(제52차 비서장 회의)

- ㄷ. 군사정전위원회의 인원들이 사용하는 신분증은 백색이다. 보도 기관 대표들이 사용하는 신분증의 색깔은 각방이 선택하되 이는 서로 같지 않다.(제54차 비서장 회의)

<증명서, 식별할 수 있는 휘장 및 표식에 관한 일방적 조치>

국제연합군측 비무장지대 민사 경찰 :

국련측 : 왼 쪽 팔에는 진한 곤색 바탕에 “엠.피.”라는 흰 글자가 박힌 완장을 두르고 정면에다가 “엠.피.”라는 흰 글자를 쓴 연한 암록색의 헬멧을 착용할 것입니다.(군사정전위원회 제11차 회의)

국련측 : 찬 날씨가 타쳐 왔음으로 우리측 민사 경찰 일부는 받침 헬멧을 착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가지 종류의 두부 장비를 착용하게 될 것이며…… 완장은 진한 곤색 바탕에 “엠.피.”라는 흰글자를 박든가 붉은 바탕에 “엠.피.”라는 황색 문자를 박을 것입니다.(제99차 비서장 회의)

조선 인민군 및 중국 인민지원군측 비무장지대 민사 경찰 :

조중측 : 우리측 경찰이 착용할 완장에 관하여 내가 이제 당신에게 보고합니다. 해 완장은 길이32센치미터에 넓이 14센치미터이며 붉은 바탕에다가 흰 헌겍으로 조선어로 “민경”이라는 글자를 박아서 왼 쪽 팔에 착용할 것입니다.

우리측은 군사정전위원회 본부구역 및 공동정비구역 우리측 경무원들이 1953년 9월 18일에 진행된 제50차 비서장 회의에

서 당신측에 통지하였던 완장 대신, 1963년 1월 28일 부터 붉은 바탕에 흰색으로 “경무”라고 쓴 완장을 착용할 것이라는 것을 당신측에 통지합니다.(1963년 1월 2일 13시 12분, 공동 일직 장교 사무실이 조중측으로부터 상기 통지문을 받았음.)

국제연합군측 구축 및 영선 작업 인원 :

국련측 : “우리측은 우리측의 구축 및 영선 작업 인원에게 완장을 착용하게 하거나 장기용 신분증을 발급하지 않고 내가 여기 보이는 이 견본과 같은 번호를 매긴 뱃지(금속제)로서 그들을 식별하도록 할 것이라는 것을 당신측에 통고합니다.”(이는 공동 경비구역 내에서만 적용되며 비무장지대 전반에 걸쳐 적용되는 것은 아님).

(제82차 비서장 회의)

※ : 군사정전위원회 본부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비무장지대에 있어서 구축 및 영선 작업 인원은 계속 백색 완장을 착용함. 조중측에게 이에 대한 정식 통고는 하지 않았으나 이는 용인된 관례로 되어 있음.

※ 흰색 완장을 청색 완장으로 86. 2. 1부터 변경(86. 1. 28 북측에 통보)

국련측 : 우리측 인원은 공동경비구역 내에서 내가 여기 보이는 견본과 같은 식별할 수 있는 새로운 휘장으로서 식별하도록 할 것임을 당신측에 통고합니다. 해 휘장은 종전에 사용하던 이 뱃지 대신에 바른쪽 주머니 위에 착용할 것입니다. 이는 오늘부터 실시합니다.(제207차 비서장 회의)

국제연합군측 구축 및 영선 작업용 차량 :

국련측 : 우리측은 구축, 영선, 보급 지원 및 수송에 종사하는 우리측 차량들은 우리측 군사정전위원회 위원들을 수송하는 차량들이 달게되어 있는 황색 깃발과 대략 같은 크기의 백색 깃발을 달게될 것임을 당신측에 통고합니다.(제93차 비서장 회의)

주 : 이는 공동경비구역을 포함하는 비무장지대 전역에 적용됨.

※ 흰색 깃발을 청색 깃발로 86. 2. 1부터 변경(86. 1. 28 북측에 통보)

조선 인민군 및 중국 인민지원군측 영선 작업 인원 :

조중측 : 1954년 7월 19일부터 비무장지대에 출입하는 우리측의 구축 및 영선 작업 인원이 착용할 임시 휘장의 모양은 대략 기리 5센치미터에 넓이 10센치미터로 된 붉은 장방형의 것으로 변경합니다.(1954년 7월 17일 조중측은 장방형 뺏지를 어느 한 쪽 팔에 착용시킬 것을 통지하여 왔음. 해 장방형 뺏지가 공동경비구역 내에서만 목격되어 왔으며 비무장지대의 다른 부분에서 작업하는 작업대는 붉은 깃발로서 표시하며 붉은 완장을 착용할 것이라고 조중측이 여전히 통고하고 있기 때문에 해 장방형 뺏지 착용은 공동경비구역에 한해서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되어 왔음)

(1954년 7월 15일 및 17일의 공동일직장교 회의)

국제 연합군측 방문객 :

군사정전위원회 국제연합군측 성원은 국제 연합군측 방문객들이 군사정전위원회 본부구역(공동경비구역)에서 착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식별할 수 있는 금속제 휘장을 채택하였음. 이에

관한 결정은 1953년 12월 6일 공동일직장교를 통하여 전달된 통지문에 의하여 조중측에 통고되었음. 조중측은 제191차 비서장 회의 석상에서 국제연합군측 방문객들은 출입증 이외의 여하한 식별 자료도 소지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통고 받았음.

주 : 실지에 있어서 뱃지는 조중측 인원이 괴롭히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방문객들에게 발급하고 있음.

국제연합군측 보도 기관 대표 :

군사정전위원회 국제연합군측 성원은 국제연합군측 보도 기관 대표들이 군사정전위원회 본부구역(공동경비구역)내에서 착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식별할 수 있는 금속제 휘장을 채택하였음. 조중측은 1958년 12월 6일 공동일직장교를 통하여 전달된 통지문에 의하여 이에 관한 결정을 통고 받았음.

(9) 공동감시소조의 관리, 조직, 사업 및 보급에 관한 수정 총칙
(’55. 7. 18. 제135차 비서장회의 합의)

1. 관 리

- ㄱ. 군사정전위원회는 쌍방이 임명한 비서장을 통하여 공동감시소조의 사업을 관리한다.
- ㄴ. 군사정전위원회 혹은 각방 수석위원은 쌍방이 임명한 비서장을 통하여 공동감시소조를 파견한다.

2. 조 직

- ㄱ. 오(5)개의 공동감시소조를 조직하고 제 일(1)부터 제 오(5)까지의 번호를 매긴다.
- ㄴ. 각방은 이러한 매개 소조에 이(2)명 내지 삼(3)명의 영급 장교와 삼십(30)명을 초과하지 않은 필요한 참모 보조 인원 및 공작 인원을 제공한다.
- ㄷ. 폭발물 처리 인원, 탄약전문가, 측량인원, 촬영인원, 운전수 등 각 공동감시소조의 사업에 필요한 기술 인원은 상기 항목에 규정한 참모보조인원과 공작 인원 총수 내에서 각방이 각기 제공한다.

3. 분 포

- ㄱ. 한강 하구는 일(1)개 지역으로 하여 번호는 제 일(1)로 한다. 비무장지대는 사(4)개 지역으로 나누어 번호는 제 이(2)부터 제 오(5)까지로 한다. 각 공동감시소조는 그 번호에 해당하는 지역내에서 정전협정 제26항에 규정한 임무를 집행한다.
- ㄴ. 한강 하구 및 비무장지대 내의 각 번호 지역의 경계선은 출입의 편리, 지형물 및 사업상 편리에 근거한 고려에 의하여 어느 일방의 비서장이 제출한 후에 이를 협의 조정한다.

ㄷ. 공동감시소조의 쌍방 성원은 자기측의 군사통제지역 내에 각각 주재하되 그 주재 지점은 한강 하구 또는 비무장지대 내의 자기측 지역에 신속히 도달할 수 있는 곳으로 한다. 각 소조는 그가 주재하는 지역으로부터 그에게 지정된 특정한 지역 또는 한강 하구나 비무장 지대의 임의의 기타 지역에 파견될 수 있다. 지정된 지역 내에 또는 이에 인접하여 주재하는 각 소조는 파견될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4. 사업 방법과 절차

- ㄱ. 소조의 각종 직책은 소조의 쌍방 조원이 공동으로 이를 집행한다.
- ㄴ. 각 소조는 쌍방 수석 조원이 호상 동의된 시간과 지점에서 회합하거나 또는 군사정전위원회가 지시한 시간과 지점에 회합한다.
- ㄷ. 각 소조가 일상적 임무를 집행할 때에는 이를 파견된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ㄹ. 정전협정 중의 비무장지대와 한강 하구에 관한 어떠한 규정의 위반을 보고에 의하여 조사할 때 소조의 쌍방 조원은 사실을 수집하며 증인의 증언을 청취할 동등한 기회를 가진다.

5. 보 고

- ㄱ. 공동감시소조는 매번 정전 협정 제27항에 따라 파견되어 정전협정 위반 사건을 조사한 후 또는 명령에 의하여 어떠한 공동 활동에 참가한 후 또는 각 개별적 소조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보고를 제출한다. 보고는 부록 1과 부록 2에 표시된 해당 격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 ㄴ. 공동감시소조의 보고서는 하기 절차에 의하여 작성한다.
 - (1) 보고서를 작성하기 전에 소조의 쌍방 성원은 회합하여 토의를 거쳐 소조의 쌍방 성원이 합의를 본 모든 사실과 점들 및 의견

차이가 있는 모든 사실과 점들을 충분히 또 명백히 확정한다.

(2) 각방 성원은 삼(3)개 공용어 중 자기가 가장 능통한 한가지 글로 보고서를 자기 작성하되 이 보고서에는 하기 사항을 기술한다.

(가) 합의에 도달한 모든 사실과 점들

(나) 합의를 보지 못한 사실과 점들에 대한 자기측 성원의 의견

(3) 그 다음 각방 성원은 전화, 라디오, 전신 또는 기타 신속한 통신 기제로 그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군사정전위원회에 신속히 전달 한다.

(4) 각방 성원은 보고서를 네(4)벌 작성하고 매벌에 자기측 수석 조원이 서명하여 다음과 같이 배부한다.

두(2)벌은 군사정전위원회에 신속히 송부하며, 한 벌은 동 소조의 상대방 성원에게 교부하며, 한 벌은 보고서를 작성한 자기측 성원의 분견찰에 보관한다.

(5) 각방 성원은 또한 상대방 성원으로부터 받은 같은 건에 관한 보고서를 자기측 분견찰에 보관한다.

6. 보 급

ㄱ. 공동감시소조의 쌍방 조원은 그의 주제지에서 자기측으로부터 보급을 받는다.

ㄴ. 각방 사령관은 공동 감시 소조의 자기측 조원에게 숙소와 보급을 공급하는 외에 그에 필요한 운수 기재와 통신 복무를 포함한 일체 장비와 공급을 제공한다.

7. 수 정

본 총칙의 각항 규정을 잠정적으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부적당한 점을 발견할 때에는 어느 일방의 비서장이 제출한 후 쌍방 비서장이 합의 하여 이를 수정할 수 있다.

(10) 공동감시소조 수의 축소 및 수정총칙을 위한 협의 연대표

10개 소조를 규정하고 있는 공동감시소조에 관한 원래의 잠정적 총칙은 1953년 8월 28일의 제15차 군사정전위원회 회의에서 비준되었다. 공동감시소조 총칙에 대한 최초의 수정안은 1953년 11월 30일의 제93차 비서장 회의에서 비준되었으며 해 수정안은 공동감시소조 제1조 및 제2조를 한강 하구 담당 소조로 할 것을 명확히 규정하였다. 공동감시소조 총칙의 두 번째 수정안은 1953년 12월 30일의 제98차 비서장 회의에서 비준되었으며 해 수정안은 매개 공동감시소조가 주간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을 폐지시켰다.

1954년 1월 10일의 제35차 군사정전위원회 회의에서 국제연합군측은 공동감시소조를 10개 소조로부터 7개 소조로 축소할 것을 제의하였다. (조중측은 원칙적으로 이에 동의하였다) 국제연합군측은 1954년 1월 22일의 제102차 비서장 회의에서 축소 계획서를 제출하였다.

조중측은 1954년 1월 29일 제103차 비서장 회의에서 공동감시소조를 10개 소조로부터 6개 소조로 축소하자는 반대제안을 하였다. (국제연합군측은 검토하기 위하여 그 제안을 접수하였다.)

국제연합군측은 1954년 2월 6일 제104차 비서장 회의에서 공동감시소조를 10개 소조로부터 6개 소조로 축소하자는 조중측의 반대 제안에 동의하였다.

국제연합군측은 1954년 2월 19일의 제105차 비서장 회의에서 10개 소조로부터 6개 소조로 축소 통합하는 공동감시소조의 수정 총칙안을 제출하였으며 조중측은 검토하기 위하여 이를 접수하였다.

쌍방 비서장은 1954년 3월 19일 제106차 비서장 회의에서 공동감시소조를 10개 소조로부터 6개 소조로 축소 통합하는 공동감시소조의 수정

총칙을 정식으로 비준하였다.

국제연합군측은 1955년 4월 8일의 제129차 비서장 회의에서 공동감시 소조를 6개 소조로부터 4개 소조로 축소할 것을 제의하였다.(조중측은 원칙적으로 이에 동의하였다.)

조중측은 1955년 7월 9일 제134차 비서장 회의에서 공동감시소조를 6개 소조로부터 5개 소조로 축소하자는 반대 제안을 하였다. 국제연합군측은 제135차 비서장 회의에서 공동감시소조를 6개 소조로부터 5개 소조로 축소하자는 조중측 제의에 동의하였으며 6개 소조로부터 5개 소조로 축소 통합하는 수정 총칙을 제출하였다.(조중측은 동 수정 총칙을 검토하기 위하여 접수하였다.)

조중측과 국제연합군측은 1955년 7월 26일의 공동일직장교 회의에서 “공동감시소조를 6개 소조로부터 5개 소조로 축소하는 계획서”와 “공동감시소조의 수정 총칙”의 공동으로 비준된 각 해당 언어의 문본을 교환하였다.(조중측은 1955년 7월 26일의 공동일직장교를 통하여 교환된 통지문에 의하여 수정 총칙과 축소안의 비준을 확인하였다.)

(11) 공동감시소조를 6개 소조로부터 5개 소조로 축소하는데 관한 계획
(’55. 7. 18. 제135차 비서장회의 비준)

공동감시소조 제 1 조

한강 하구는 현재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음.
소조의 회의 장소-현재와 동일함.

공동감시소조 제 2 조

비무장지대 최서단 군사분계선 표식물 제0001호로부터 표식물 제0343호를 포함하는 지점까지.
이는 현재의 제 2 조 담당구역 전부 및 제 3 조 담당 구역 중 해산동으로부터 임진강으로 흐르는 개천의 서쪽과 임진간의 서쪽 부분을 포함한다.

소조의 회의 장소-현재 제 2 조의 회의 장소.

공동감시소조 제 3 조

제 2 조의 동단부터

표식물 제0710호를 포함하는 지점까지.

이는 현재의 제 3 조 담당 구역 중 해산동으로부터 임진강으로 흐르는 개천의 동쪽 부분과 임진강 동단부의 동쪽 부분 및 현재의 제 4 공동감시소조 담당 구역 중 남대천의 서쪽 부분을 포함한다.

소조의 회의 장소-소조의 필요에 따라 현재의 제 3 조와 제 4 조의 회합장소 중 어느 하나를 사용한다.

공동감시소조 제 4 조

제 3 조의 동단부터

표식물 제0982호를 포함하는 지점까지.

이는 현재의 제 4 조 담당 구역 중 남대천의 동단부 동쪽부분 및 현재

의 제 5 조 담당 구역 중 수입천의 서쪽 부분을 포함한다.

소조의 회의 장소-고리실부근에 있는 군사분계선상(북위 38도 19분 12초 동경 127도 40분 16초).

공동감시소조 제 5 조

제 4 조의 동단부터

비부장지대의 최동단 표식물 제1292호 까지.

이는 현재의 제 5 조 담당 구역 중 수입천 동단부의 동쪽부분 및 현재의 제 6 조 담당 구역 전부를 포함한다.

소조의 회의 장소-양지만 부근의 군사 분계선상(북위 38도 18분 50 초, 동경 127도 59분 24초)와 현재의 제 6 조의 회의 장소 중 동 소조의 필요에 따라 어느 하나를 사용한다.

(1955년 7월 26일 공동 일직 장교를 통하여 비준된 해당 언어 문본이 교환되었음.)

- (12) 군사분계선이 임진강, 북한강 및 금성강 등의 중앙을 통과하는 강 양 연안에 있는 군사분계선 표식물의 보수 및 유지에 관한 양해
(’58. 1. 28. 제158차 비서장회의 기준)

1958년 1월 21일에 쌍방의 참모장교는 군사 분계선이 강 중앙을 통과하고 있는 임진강, 북한강 및 금성강의 양 연안에 있는 군사 분계선 표식물의 보수 및 유지에 대한 책임을 잠정적으로 변경한데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해에 도달하였다.

- ㄱ. 조중측은 국제 연합군측을 대리하여 국제연합군측 책임하에 있는 군사분계선 “갑”구 중 임진강 조중측 강안에 소재하는 군사분계선 표식물 제0350, 0351, 0353, 0357, 0359 및 0361호 그리고 북한강 조중측 강안에 있는 표식물 제0863, 0864, 0866, 0868, 0870, 0872, 0874, 0376, 0878, 0880, 0882, 0884, 0886, 0888 및 0890호의 보수 및 유지를 담당한다.

국제연합군측은 조중측을 대리하여 조중측의 책임하에 있는 군사분계선 “을”구 중 금성강 국제연합군측 강안에 있는 군사분계선 표식물 제0818, 0820, 0822, 0824, 0826, 0828, 0830, 0832 및 0834호의 보수 및 유지를 담당한다.

- ㄴ. 상기 ㄱ항에 열거된 군사분계선 표식물의 보수 및 유지에 대한 책임에 관하여 잠정적인 변경이 성립된 후에도 각방은 “갑”구와 “을”구에 대한 자기 책임을 종전대로 진다. 각방은 필요할 때 공동감시소조로 하여금 하천을 건너 상기한 군사분계선 표식물을 조사하며 그 표식물들이 현행 규정에 따라 정상적인 상태에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 ㄷ. 상기 ㄱ항에 열거된 군사분계선 표식물의 원래의 위치, 번호 및 형

태는 변경되지 않는다. 군사분계선 표식불을 다른 곳으로 옮길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옮겨지는 장소는 공동감시소조 쌍방 성원이 공동으로 선택한다.

ㄷ. 상기 ㄱ항에 열거된 군사분계선 표식불을 보수 및 유지함에 있어서 각방은 각기 책임 구역에서 사용하는 것과 같은 자재를 사용할 수 있다.

ㄱ. 본 양해는 1958년 3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3) 군사분계선 갭구와 을구의 지정과 표식물들의 번호 배당방법 및 표식물들의 규격

1954년 8월 24일, 8월 31일 및 9월 17일에 열린 참모 장교 회의에서 “갭”구와 “을”구에 대한 군사분계선 표식물들의 건립, 보수 및 유지에 대한 책임 한계를 확립하였으며 표식물의 번호 배당 방법과 표식물 규격을 확정하였다. 참모 장교 회의들에서 이루어진 합의는 1955년 1월 21에 개최된 제124차 비서장 회의에서 고려된 다음 비준되었다. 공식적인 공동 “양해 각서”는 작성되지 않았으나 국제연합군측의 참모 장교 회의록 사본이 비서처에 첩해져 있다.

(14) 중국어 언어 인원의 공동감시소조 회의 참가 여부에 관한 합의
(’58. 11. 6.)

김준경 상좌에게,

우리측은 당신측이 회의중에 중국어 언어 인원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지적하지 않는 한 1958년 11월 8일의 공동감시소조 제5조 회의에 중국어 언어 인원을 대동하지 않을 것을 제의합니다.

우리측은 앞으로 있을 일체의 공동감시소조 회의에 어느 일방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요청하지 않는 한 중국어 언어 인원을 참가시키지 않을 것을 제의 합니다.

카 대령으로부터

카 대령에게,

우리측은 1958년 11월 8일에 개최될 공동감시소조 제5조 회의에 중국어 언어 인원을 참석시키지 않도록 하자는 당신측 제의에 동의합니다. 또한 우리측은 어느 일방이 특별히 요청하지 않는 한 앞으로 있을 일체의 공동감시소조 회의에 중국어 언어 인원을 참석시키지 말자는 당신측 제의에 동의합니다.

김준경 상좌로부터

(15) 군사정전위원회, 중립국감독위원회, 중립국송환위원회 및 그의 각 종속 기관과 기타 인원에게 대한 보급과 비용에 관한 합의
(’53. 10. 31. 군정위 제27차회의 기준)

1. 군사정전위원회가 한개의 기관으로서 직책을 집행함에 필요한 일체 보급과 비용은 조선 인민군 및 중국 인민지원군측과 국제연합군측이 이를 균등하게 분담한다.
2. 군사정전위원회 및 그의 각 종속 기관(공동감시소조를 포함함)의 조선 인민군 및 중국 인민지원군 인원에게 대한 일체 보급과 비용은 조선 인민군 및 중국 인민지원군측이 이를 부담한다.
3. 군사정전위원회 및 그의 각 종속 기관(공동감시소조를 포함함)의 국제연합군 인원에게 대한 일체 보급과 비용은 국제연합군측이 이를 부담한다.
4. 중립국감독위원회 본부가 직책을 집행함에 필요한 본부의 건물과 시설 사무실용 공급품과 같은 일체 보급과 비용은 조선 인민군 및 중국 인민지원군측과 국제연합군측이 이를 균등하게 분담한다.
5. 중립국감독위원회 중 조선 인민군 및 중국 인민지원군측이 지명한 나라의 인원 즉, 파란과 체코슬로바키아의 위원들과 보조 인원들에게 대한 일체 보급과 비용은 조선 인민군 및 중국 인민지원군측이 이를 부담한다. 본 항의 규정은 하기 제 7 항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
6. 중립국감독위원회 중 국제연합군측이 지명한 나라의 인원 즉, 서서와 서전의 위원들과 보조 인원들에게 대한 일체 보급과 비용은 국제연합군측이 이를 부담한다. 본 항의 규정은 하기 제 7 항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

7. 조선 인민군 및 중국 인민지원군측은 그 군사 통제 지역 내에서 사업하는 각 출입항 주체 중립국시찰소조와 각 중립국이동시찰소조를 포함한 중립국감독위원회의 각 종속 기관과 인원에게 대한 일체 보급과 비용을 부담한다.
국제연합군측은 그 군사 통제 지역 내에서 사업하는 각 출입항 주체 중립국 시찰 소조와 각 중립국 이동 시찰 소조를 포함한 중립국감독위원회의 각 종속 기관과 인원들에게 대한 일체 보급과 비용을 부담한다.
8. 중립국송환위원회 본부가 그 직책을 집행함에 필요한 본부건물과 시설 사무실용 공급품과 같은 일체 보급과 비용은 조선 인민군 및 중국 인민지원군측과 국제연합군측이 이를 균등하게 분담한다.
9. 중립국송환위원회의 파란 및 체코슬로바키아 대표단 인원들에게 대한 일체 보급과 비용은 조선 인민군 중국 인민지원군측이 이를 부담한다.
10. 중립국송환위원회의 서서 및 서전 대표단 인원들에게 대한 일체 보급과 비용은 국제연합군측이 이를 부담한다.
11. 중립국송환위원회의 인도 대표단 및 인도 공작 인원들에게 대한 보급은 하기와 같이 제공한다.
 - ㄱ. 사무실과 숙소 건물은 군사 분계선 양측에 각방이 책임지고 반 씩 수축한다. 조선 인민군 및 중국 인민지원군측과 국제연합군측은 군사분계선 자기측 지역에 있는 건물의 수축, 유지 및 설비(식량, 교통, 가구, 취사설비, 등광, 급수 및 난방 시설을 포함함)를 각기 책임진다.
 - ㄴ. 중립국송환위원회의 인도 대표단 및 인도 공작 인원들이 인도로 부터 한국에 오는 것과 돌아가는 여비는 조선 인민군 및 중국 인민지원군측과 국제연합군측이 이를 균등하게 분담한다.

12. 중립국송환위원회 인도 관리 부대에 대한 보급은 하기와 같이 제공한다.

ㄱ. 조선 인민군 및 중국 인민지원군측은 “정전협정에 대한 임시적 보충 협력” 제2항에 의하여 규정된 자기측 비무장지대 내의 인도 관리 부대가 필요로 하는 시설의 일체 보급을 제공한다.

ㄴ. 국제연합군측은 “정전협정에 대한 임시적 보충 협정” 제1항에 의하여 규정된 자기측 비무장지대 내의 인도 관리부대가 필요로 하는 시설의 일체 보급을 제공한다.

ㄷ. 인도 관리 부대가 인도로부터 한국에 오는 것과 돌아가는 여비는 조선 인민군 및 중국 인민지원군측과 국제연합군측이 이를 균등하게 분담한다.

13. 각방은 정전협정에 규정된 자기측 대표, 해설 대표, 통역인원 및 통신 인원에게 대하여 그들이 “중립국송환위원회 직권의 범위”에 규정된 직책을 집행하는 때에 식량, 교통, 숙소 및 통신을 포함한 일체 보급을 제공한다.

14. 보급의 제공과 비용의 분담 문제에 있어서 상술한 각항 중 어떠한 항목이라도 실제상 이를 이행할 수 없는 정형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문제를 군사정전위원회에 제출하여 처리하게 한다. 조선 인민군 및 중국 인민지원군과 국제연합군의 어느 일방이라도 그 통제지역 내에서 정전협정에 의하여 설립된 어떠한 기구의 어떠한 성원 혹은 어떠한 인원으로부터든지 보급이 필요하다는 통지를 받았으나 이 문제를 군사정전위원회에 제출하는 것이 시간상으로 허락되지 않은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측이 이러한 보급을 제공한다.

이러한 보급의 분담 문제는 사후에 군사정전위원회에 제출하여 이를 처리하게 한다.

(16) 비무장지대 내에서의 보도 기관 대표 참석에 관한 규정
(’53. 9. 16. 군정위 제19차회의 비준)

제 1 조 총 칙

1. 정식으로 인가 받은 쌍방의 보도 기관 대표에게 정전 협정의 실시를 보도할 기회를 준다.
2. 보도 기관 인원에는 정식으로 인가 받은 신문 기자, 촬영 기자, 라디오 방송원, 시사 영화 및 텔레비전 촬영사를 포함한다.
3. 비무장지대에 들어가는 보도 기관 대표는 누구나 반드시 군사정전위원회 비서처에서 발급한 표준 보도 허가증을 휴대하여야 한다.
4. 보도 기관 대표의 활동은 정전 협정 실시 사업을 저해하거나 지연시키지 못한다.
5. 매일 비무장지대에 들어가는 쌍방 보도 기관 대표는 이백(200)명을 초과하지 못하되 그 중 백(100)명은 조선 인민군 및 중국 인민지원군측이 정식으로 인가한 기자로 하며 다른 백(100)명은 국제연합군측이 정식으로 인가한 기자로 한다. 쌍방 보도 기관 대표의 인선은 매일 변경할 수 있다.
6. 각방은 위험불의 제거, 민사 행정 구제 사업 및 군사분계선 표식과 같은 각종 활동을 참관시키기 위하여 상기의 배당 수 이내에서 자기측 보도 기관 대표가 비무장지대내 자기측 지역에 들어가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 이러한 대표는 반드시 그들의 참관지역이 속하는 측의 장교 일(1)명이 이를 대동하여야 한다. 각방은 비무장지대에 들어가는 어느 집단이든지 그 인원수와 그 집단이 방문할 대체의 지역을 군사정전위원회 비서처에 통지한다.

제 2조 전쟁 포로의 송환

7. 본 사업에 대한 합의는 따로 발표하였다. 입경 배당 수는 상기 제5항에 규정된 배당 수 내에 포함한다.

제 3조 실향 사민의 귀향

8. 본 사업에 대한 합의는 따로 발표한다. 입경 배당 수는 상기 제5항에 규정한 배당 수 내에 포함한다.

제 4조 군사정전위원회 및 그 종속 기관의 회의

9. 호상 합의된 군사정전위원회 및 그 종속 기관의 중요한 회의를 제외하고는 보도 기관 대표는 회의실 내에 들어가지 못한다.

제 5조 군사정전위원회 본부

10. 정식으로 인가받은 각방의 보도 기관 대표는 군사정전위원회 본부지역의 공동경비구역 내에서 자유로이 이동하되 조선 인민군 및 중국 인민지원군의 장교와 국제연합군의 각기 자기측이 정식으로 인가한 보도 기관대표의 행동에 대하여 책임진다.

제 6조 군사 분계선 통과의 허가

11. 일 명의 장교가 대동하는 정식으로 인가 받은 보도 기관 대표들은 공동감시소조와 함께 해 소조의 활동을 참관하기 위해서 군사분계선을 넘을 수 있다. 군사분계선을 통과하여 한 개 소조의 활동을 참관하는 것을 허가 받은 일방의 보도 기관 대표는 하루에 십(10)명을 넘지 못한다. 상기 보도 기관 대표와 이를 대동하는 장교는 종일 소

조와 동행한다. 군사분계선을 통과하려고 하는 보도 기관 대표가 속하는 측은 그 대표들의 인원수 및 그들이 방문하려고 하는 소조를 군사정전위원회 비서처에 통지한다. 구체적인 조치는 방문 받은 공동감시소조 쌍방 수석 조위를 통하여 상의 결정하되 군사정전위원회 또는 어느 일방도 그 이상 비준할 필요는 없다.

(17) 군사 인원의 한국에의 도착과 한국으로부터의 이거와 물건의 교체를 감독하며 보고하는 데 관한 절차를

(‘53. 9. 28. 군정위 21차회의 비준)

1. 각방의 윤회 인원의 한국에의 도착과 한국으로부터의 이거는 도착과 이거 칠십이(72)시간 내에 매일 군사정전위원회 및 중립국감독위원회에 서면 보고를 제출한다. 이 보고는 입경과 출경의 지점 및 매개 지점에서 입경하는 인원과 출경하는 인원의 숫자를 포함한다. 검사 대조와 계산에 편리하게 하기 위하여 매일 한국에 도착하며 한국으로부터 이거하는 윤회 인원의 누계 총수를 보고한다. 중립국감독위원회는 중립국시찰소조를 통하여 특정한 출입항에서 윤회 인원을 감독하며 시찰한다.
2. 임시 임무를 담당하거나 혹은 한국 경외에서 단기 휴가를 하는 각방의 인원은 도착과 이거 칠십이(72)시간 내에 매일 군사정전위원회 및 중립국감독위원회에 서면 보고를 제출한다. 이 보고는 입경과 출경의 지점 및 매개 지점에서 입경하는 인원과 출경하는 인원의 숫자를 포함한다. 검사 대조와 계산에 편리하게 하기 위하여 매일 한국에 도착하며 한국으로부터 이거하는 임시 임무를 담당하는 이러한 인원 혹은 한국 경외에서 단기 휴가를 하는 이러한 인원의 누계 총수를 보고한다.
3. 각방이 교체하는 작전 비행기, 장갑차량, 무기 및 탄약의 한국에의 반입과 한국으로부터의 반출은 매차 반입과 반출 후 늦어도 십(10)일 내에 매일 이를 군사정전위원회 및 중립국감독위원회에 보고한다. 이 보고 중에서 교체되는 물건의 처리 정형을 설명한다. 당기 출입항 당국은 중립국시찰소조에 매차의 재료를 사전에 제공하여 동 소조로 하여금 시찰하며 감독하는 적당한 기회를 가지게 한다.

(18) 공동일직장교사무실의 운영절차

(1953년 8월 26일에 진행된 제30차 비서장 회의 발췌문)

가. 군사정전위원회 비서처의 공동사무실에 관한 잠정적 운영 절차(초안)

비서처의 공동사무실은 일명 이상의 각방의 장교와 필요한 번역 및 행정 인원들로서 구성한다. 공동사무실은 비서처의 통지문 및 통신의 접수 발송 사부와 쌍방 비서장간 및 비서처와 외부간의 연락 사무를 공동으로 취급함으로써 군사정전위원회 비서처를 보좌하는 책임을 진다. 본 운영 절차는 쌍방 비서장이 비준하는대로 공동사무실의 선임 장교간의 합의에 의하여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다.

1. 위 치

비서처가 새로운 군사정전위원회 본부 구역으로 이동할 때 까지, 판문점에 있는 건물 또는 천막 하나를 공동사무실로 사용한다. 현재 경비 장교가 사용하고 있는 천막은 공동사무실로 지정함이 마땅하며, 공동사무실이 설치되는 대로 이전에 경비 장교가 집행하던 비서처 직무는 공동 사무실이 맡는다.

2. 운영 시간

공동사무실은 매일 9시부터 17시 까지의 근무 시간에 쌍방 비서장의 대표들에 의하여 인원들이 배치된다. 17시부터 익일 9시 까지의 비근무 시간에는 각방은 경비 장교를 통한 통지문 취급을 계속한다. 공동사무실은 경비 장교에게 통지문 및 통신 일지를 제공하되 경비 장교는 공동 사무실이 동 일지에 기입한 것과 같이 기입하여 매일 9시에 공동 사무실에 이를 인계한다.

3. 통제석

통제석은 각방의 장교 각각1명이 공동으로 담당하되 그들은 하기 사항에 대한 책임을 진다.

ㄱ. 다음 사항을 보장하기 위하여 비서처 또는 군사정전위원회에 보내는 접수될 모든 통지문과 통신들을 철저히 조사한다.

- (1) 이들 통지문의 접수 발송에 관한 2별의 일지의 보관
- (2) 각 사본의 접수 또는 발신 일시에 대한 주의
- (3) 참조 번호의 지정.
- (4) 3개 언어의 형식으로 된 사본1통을 각방 비서장에게 그리고 또 수석 위원이 필요로하는 여러 언어로된 사본 1통씩을 비서장들을 통하여 군사정전위원회 각방 수석위원에게 각각 제출하기에 충분한 부수의 접수 또는 작성.
- (5) 통지문이 적절한 개개인에게 전달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들어오는 모든 통지문 또는 통신의 적절한 경로에 대한 결정.
- (6) 비서처의 회답을 필요로하는 통지문에 관한 미결처의 보관 및 그러한 회답을 하였는가에 관한 추후의 확인.

ㄴ. 나가는 통지문 및 통신은 하기 사항을 조사한다.

- (1) 각방 비서장의 허가된 대리자에 의하여 발송되었는가.
- (2) 서명이 적절한가.
- (3) 일자.
- (4) 유첨물.
- (5) 문서철용 사본.
- (6) 번역문은 필요한 적절한 수의 언어로 번역되었는가.
- (7) 뚜렷한 누락 또는 오류.

ㄷ. 한 적십자사 수석대표로부터 또 다른 한 적십자 수석대표에게 보내는 것과 같은 외부 기관으로부터 다른 기관에 전달하는 봉투 또는 통지문을 접수하였을 경우 통재석은 통지문 봉투에 비서처 일시 번호를 지정하며, 미래의 참고로 봉투 혹은 통지문의 특징을 일지에 기록한다.

4. 인장

통지문과 통신의 취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고무 인장을 공동 사부실 책임 장교의 합의에 따라 각방이 공급한다.

5. 기구

필요로 하는 기구 및 가구등은 쌍방이 공급한다.

6. 연락원

필요로 하는 연락원은 각방이 제공한다.

7. 안 전

통지문 및 통신의 안전을 위한 금고나 장은 각방이 공급한다.

8. 서식

일지 서식 및 언어와 혹은 비서처 내의 다른 부서로 발송하는 데 사용하는 서식은 공동사무실 두 장교간의 합의에 의하여 작성한다.

나. 1953년 8월 31일에 진행된 제34차 비서장 회의

〈주 상좌〉

우리측은 8월 27일에 진행된 제31차 비서장 회의에서 당신측이 제출한 공동 사무실 잠정적 운영 절차 초안에 대하여 예비적 검토를 하였습니다.

우리는 당신측이 제의한 제안에 원칙적으로 동의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보아, 그의 구체적 실현은 점차적으로 실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서처가 일정하고 적절한 장소를 얻게될 때 까지, 쌍방의 일직 장교들은 현재의 필요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그들 각자의 천막속에서 여전히 집무할 것입니다.

쌍방은 각각 전화 시설을 가설함으로써 매일 10시와 17시 사이에 일직 장교들이 직접접촉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쌍방 일직 장교회의는 언제든지 가질 수 있습니다.

문서의 접수 발송에 관해서는 우리측은 현실적으로 보아, 쌍방이 당분간 각기 문서의 접수 발송 및 등기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접수 발송의 과정에 있어서 쌍방은 정확하게 실수 없도록 최대의 노력을 하여 적시에 관계 인원에게 문서를 전달하여야 할 것입니다.

〈콜맨 대령〉

당신은 공동 사무실의 당신측 부분은 현 판문점 본부 구역의 당신측에 있는 일개의 천막에 설치하고 공동 사무실의 우리측 부분은 현 판문점 본부 구역의 우리측에 있는 천막에 설치하자고 제의하는 것으로 나는 이해합니다. 나는 또한 당신의 제의는 각기 떨어져 있는 일직 장교는 자기측 수석 대표의 본부와 연결된 직통 전화 시설을 가질 것을 의도한다는 것도 이해합니다.

당신의 제안은 또한 쌍방의 공동사무실간에 직통 전화시설을 가지자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또는 현재 판문점에서 경비 장교간에 하고 있는 것과 같이 각기 떨어져 있는 두 일직 장교가 서로 통신하자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주 상좌〉

우리측은 방금 말한 것을 반복한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건물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현 조건하에서는 이곳에 공동사무실이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공동으로 일해야 하지만 각방은 각방의 비서처 인원을 10시부터 17시까지 자기측이 준비한 천막 또는 건물로 파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쌍방 비서장간의 연락은 경비 장교를 통하여야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쌍방 사무실간에 전화를 설치하여 전화로 직접 연락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쌍방 일직 장교는 연락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전화를 통하여 회의 시간 및 장소를 정하고 회합할 수 있습니다.

〈콜맨 대령〉

쌍방은 현재의 임시적 합의에 의거하여 판문점에 사무실을 설치하는데

관하여 토의한 전반적인 조항에 합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사한 사무실 시설을 점차적으로 설치하는데 필요한 준비를 곧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측은 내일 우리측이 이곳에 이미 설치한 천막중의 하나를 여사한 우리측 사무실을 설치할 천막으로 지정할 준비에 착수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즉시 언급된 시간에 동 천막에 일직장교와 더불어 그의 보좌인원들을 배치할 것입니다.

<주 상좌>

우리측도 역시 당신측과 같은 준비에 착수 하겠습니까.

다. 1953년 9월 5일에 진행된 제39차 비서장 회의 발췌문.

<주 상좌>

우리측은 쌍방이 이미 합의한 바 있는 비서처 사무실을 설치하고 내일을 기하여 일직 인원들이 일을 시작할 것을 제의합니다.

일직 인원의 근무 시간에 관해 말하면, 나는 먼저 번에 우리측이 제의한 10시와 17시 사이를 24시간으로 변경할 것을 제의합니다.

우리는 우리측 경비 인원들이 이전에 사용하여 온 저기있는 건물을 비서처의 우리측 인원들의 임시 근무 장소로 사용할 의도입니다.

전화 시설에 관해서는 우리측은 직통 전화를 준비하고 전화를 우리측이 일하는 방으로부터 당신측이 선정한 장소에 연결하고 전화선 끝에는 우리측의 전화기를 설치할 것을 제의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당신측은 우리측 사무실에 도달하는 전화선을 준비하고 거기에 당신측 전화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각방의 각 사무실 내에는 각방에 의하여 제공되는 전화기 두 대가 설치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다면, 한 대의

전화기가 고장이 났을 때 우리는 다른 한 대의 전화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라. 1953년 9월 7일에 제40차 비서장 회의

〈주 상좌〉

나는 중립국감독위원회로부터 군사정전위원회 앞으로 가는 문건은 비서처에 있는 쌍방 일직 인원들이 동시에 가져 갈 것을 제의합니다.

〈콜맨 대령〉

중립국감독위원회 비서처는 군사정전위원회에 전달할 문건은 봉투에 넣을 준비가 되어 있으며, 이들 봉투는 매일 아침 군사정전위원회 비서처의 적절한 대리인들이 받을 수 있으리라고 나는 이해합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쌍방 비서장 회의를 소집하기 조금 전에 우리의 두 일직 장교가 같이 가서 중립국감독위원회 비서처로부터 그 봉투를 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쌍방 비서장 회의에 그 문건들을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가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절차입니까?

〈주 상좌〉

내가 말한 것은 만일 비서처 쌍방의 어느 한 일직 장교가 군사정전위원회로 가는 문건이 중립국감독위원회에 있다는 것을 알면, 쌍방 일직 장교는 서로 통지하여 그곳에 같이 가서 중립국감독위원회 비서처로부터의 문건을 동시에 가져 온다는 것입니다.

〈콜맨 대령〉

나는 당신이 제의하는 절차를 요해한다고 생각하며 우리측 일직 장교에게 그 절차를 따르도록 지시하겠습니다.

〈주 상좌〉

나는 쌍방 비서장 회의 진행 도중에는 비서처 일직 장교들은 그들의 근무를 중지하고 비서장 회의가 끝나는 대로, 곧 그들의 근무를 다시 시작할 것을 제의합니다.

〈콜맨 대령〉

동의합니다.

마. 1953년 9월 16일 제48차 비서장 회의

〈콜맨 대령〉

비서처의 우리측은 공동일직장교를 통하여 국제연합군측이 제출한 것과 같은 작전 물자 반출에 관한 일보 각2부를 당신측에 전달할 것이며, 이는 1953년 7월 28일부터 1953년 9월 9일까지의 기간에 관한 것입니다. 이 보고서의 사본들은 중립국감독위원회에도 제출된 바 있습니다. 국제연합군은 영문으로된 작전 물자 반출에 관한 보고서를 오늘 아침에 전달하였습니다.

비서처의 우리측은 지금 우리의 관례에 따라 동 보고서의 중국어 및 한국어 문본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비서처의 우리측은 어제 이들 보고서를 받자 마자, 비서처의 우리측이 한국어 및 중국어 사본 작성에 종사하

고 있는 동안, 당신측이 그들을 이용하고자 할지 모름으로 영문으로 된 사본들을 즉시 당신측에 전달하였던 것입니다.

〈주 상좌〉

우리측은 당신측이 비서처 공동일직장교를 통하여 제출한 1953년 7월 28일부터 1953년 9월 9일까지의 기간에 반출한 작전 불자에 관한 일보들을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콜맨 대령〉

우리측은 현재의 임시 공동일직장교 사무실을 새로운 본부구역으로 이동하는 것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현재 우리의 공동일직사무실간의 두 개의 전화선 중의 하나를 제공하는 우리측이 가설한 야전용 전화선을 끊을 계획입니다. 우리측 전화선을 연장하고 새 위치에 우리 사무실을 건립할 동안 우리는 당신측이 가설한 야전용 전화선을 사용할 것이며 인원들은 현재의 우리 천막에 잔류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측 전화선을 우리측의 새 위치로 연장하고 이 선으로 당신측 공동일직사무실과 통신을 개시한 후에, 우리는 우리 인원을 새로운 위치로 이동시킬 것입니다. 이 이동에 대해서는 당신측이 설치한 선을 적절한 시기에 당신측이 연장한 준비를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하여 사전에 당신측에 통지할 것입니다. 이 이동과 관련하여, 우리측은 가급적 조속한 시기에 군사분계선을 가로질러 세운 3개 위원회의 건물의 위치에 관해서 이해와 합의에 도달하고자 합니다.

바. 1953년 9월 18일 진행된 제50차 비서장 회의

〈콜맨 대령〉

우리측은 비서처 일직 사무실을 새 본부구역으로 이전하였습니다. 동 일직 사무실은 현재 우리측에 의하여 가설된 야전선을 통하여 두 일직 사무실간의 통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측의 야전용 전화선을 판 문점에 있던 사무실로 부터 새 본부구역으로 연장함으로써 성취되었습니다. 만일, 당신측도 그와 같이 하기를 희망한다면, 당신측이 설치한 선을 새 장소까지 연장하고 전화기를 우리측 전 사무실 위치로부터 새 장소로 이동해도 좋습니다.

〈주 상좌〉

나는 당신의 발언에 주의하였습니다.

(19) 군사정전위원회의 잠정적 절차 규정

(’53.8.8 군정위 제9차회의 기준)

정전 협정 제25차 ㄷ목의 규정에 의하여 군사정전위원회는 수시로 그 자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절차 규정을 채택할 수 있다. 본 잠정적 절차 규정은 군사정전위원회의 쌍방 수석위원의 합의를 거쳐 수시로 보충하며 수정할 수 있다.

가. 군사정전위원회의 회의 :

1. 군사정전위원회의 회의는 정전협정의 규정에 의하여 진행된다.
2. 회의에는 오직 참모 보조 인원과 기록, 비서, 통역 및 기타 직책을 집행함에 필요한 행정 인원만 출석할 수 있다.
3. 군사정전위원회 각방은 최소 일(1)명 최고 오(5)명의 적당하게 임명된 위원을 회의에 참석시킨다. 각방으로부터 일(1)명의 위원이 출석한 때는 군사정전위원회의 어떠한 이(2)명의 위원이든지 어떠한 정례 회의에서나 사업 진행의 법적 인수를 구성한다.
4. 각방의 수석위원은 자기측 위원의 신임장을 제출한다.
5. 군사정전위원회가 초청하여 열석시키는 인원에 대하여는 쌍방에 만족하도록 적당히 그 신분을 밝힌다.
6. 군사정전위원회 회의는 영어, 한국어 및 중국어로써 진행된다. 일체의 기록은 이 세가지 글로 각각 두 벌씩하여 보관한다. 이 세가지 글은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나. 비서처 :

7. 비서처는 군사정전위원회의 사무 기관으로서 동 위원회의 일상적 사무를 처리한다.

다. 참모 보조 인원

8. 쌍방 수석위원은 참모 보조 인원을 지정하여 참모 회의를 열고 군사정전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토의하게 할 수 있다.

라. 토의 사항 :

9. 군사정전위원회의 매차 회의가 폐회한 후 각방의 수석위원은 그가 제의하는 다음 회의에서는 토의 사항을 비서처에 회부할 수 있다. 비서처는 그 토의사항을 다른 일방의 수석위원에게 신속히 통지한다.

마. 회의 기록 :

10. 통상적으로 매차 회의의 다음날에 군사정전위원회 회의 기록의 사본 한 부를 각방 수석위원에게 제공한다.
11. 군사정전위원회 회의록 사본 매부에 대한 수정은 각방의 수석위원의 협상을 거쳐야 한다.

바. 보고된 정전협정 위반 사건의 조사 :

12. 군사정전위원회 또는 어느 일방의 수석위원이 중립국감독위원회에 하는 비무장지대 이외에서의 조사 진행에 대한 요청은 서면으로 한다.
13. 군사정전위원회 또는 어느 일방의 수석위원이 공동감시소조를 파견하여 비무장지대 내나 한강 하구에서 발생하였다고 보고된 정전협정 위반 사건을 조사하는 것은 비서처를 통하여 이를 통지한다.

(20) 군사정전위원회의 잠정적 절차 규정에 대한 증보 ('60.8.15)

1. 색인표 “N”제4항 참조

- ㄱ. 군사정전위원회의 수석위원, 위원, 비서장 및 보조 비서장의 신입장은 관계 인원이 해당 자격으로 직책을 수행하기 전에 공동일직 장교를 통하여 상대방에 미리 전달하는 것을 관례로 한다.
- ㄴ. 공동감시소조 수석조원과 보조조원의 신입장은 군사정전위원회의 신입 수석위원이 취임할 때마다 신규로 발부한다. 이 신입장은 공동감시소조 회의가 실제로 열릴 때 까지 공동감시소조 행정과에 보관한다. 공동감시소조원으로서 실제 회의에 참가할 또는 하게 될지도 모르는 장교들의 신입장은 회의 장소까지 가지고 간다. 공동감시소조 회의는 회의 진행의 첫 절차로서 신입장을 교환하되 상대방은 이에 주의한 다음 기록하고 축석에서 반환한다.
- ㄷ. 전술한 절차는 하나의 관례로서 이행되어 온 것임으로 따라서 수석위원이 원한다면 신입장을 군사정전위원회 회의 식상에서 제시할 수 없다는 이유가 하나도 없다.

2. 색인표 “N”제10 및 11항 참조

- ㄱ. 대체적으로 회의 기록의 사본을 회의가 있는 다음날에 제공해 달라는 구체적 지시가 없는 한 군사정전위원회 회의록의 작성은 회의의 계속 시간 및 기타 관계되는 고려 사항 여하에 따라 2일내지 6일간의 사업일이 필요하다. 교정을 거쳐 완전히 동사된 회의록이 종합 정리되기 전에 사본을 제공하려고 할 필요는 조금도 없다. 공동감시소조 회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록 사본1부를 공산측에 제공하지 않을 뿐더러 이와 관련한 논의도 하지 않는다.

(21) 중립국시찰소조의 축소와 재임명에 관한 협의 연대표

- 1955년 4월 13일의 중립국감독위원회 제189차 본회의에서 서전 대표는 각 출입항으로부터 모든 중립국시찰소조를 철수시키자는 제의를 제출하였다.
- 1955년 4월 15일의 중립국감독위원회 제190차 본회의에서 체코슬로바키아 대표는 이 제의의 토의를 다음 회의 까지 연기할 것을 제의하였다.
- 1955년 4월 20일의 중립국감독위원회 제191차 본회의에서 체코슬로바키아와 파란 대표들은 모든 출입항의 중립국시찰소조를 4개국 대신에 2개국으로 구성함으로써 필요한 인원을 50% 감소하자는 수정 제안을 제출하였다.
- 1955년 5월 3일의 중립국감독위원회 제193차 본회의에서 만장일치의 합의를 보았다.

(가) 중감위가 군정위에 보낸 서한① (55. 5. 3)

중립국감독위원회는 제193차 본회의에서 서진과 서서의 제의에 따라 중립국시찰소조에 대한 다음과 같은 변경에 동의하도록 군사정전위원회에 건의할 것을 만장 일치로 결정하였다.

1. 제2(칭진) 제3(홍남) 제9(강능) 제10(군산) 중립국시찰소조들이 당분간 철수할 것이며 이 조치는 정전 협정에 의한 상기 출입항들의 자격을 변경하지 않은 것으로 이해될 것이다.
2. 나머지 중립국 시찰 소조들은 분조들로 즉, 최소2명의 조원들로 구성되며 그 중 1명은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이 지명한 1개의 중립국으로부터 나오며, 다른 1명은 조선 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 인민지원군 사령원이 공동으로 지명한 1개 중립국으로부터 나온다.
3. 상기 변경은 중립국감독위원회가 군사정전위원회의 동의에 대하여 통지를 받은 1주일 후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4. 상기 문제에 관한 상세한 토론은 각각 4월 13일, 20일 및 5월 3일부 제189차, 191차 및 제193차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록들을 보라.

서 명 : 다블유. 제물라 대령

체코슬로바키아 위원 대리

서 명 : 띠 꼬린스키

파란 위원

서 명 : 티. 그렌발

서진 위원

서 명 : 케이. 스투키

서서 위원

(나) 중감위가 군정위에 보낸 서한② (55. 8. 3)

1955년 7월 27일의 제206차 본회의에서 중립국감독위원회는 대구 출입항의 사용 중지와 군산 출입항 시설의 재사용에 관한 군사정전위원회 국제연합군측 수석 위원 에이치.씨.파크스 소장으로부터의 1955년 7월 23일부 서한에 주의하였다.

1955년 5월 3일 군사정전위원회에 발송된 중립국시찰소조에 관계되는 변경에 관한 서한에 관하여 중립국감독위원회는 제206차 및 제207차 본회의에서 첫 구절 중 제10출입항(군산)을 제7출입항(대구)로 대치한다는 취지로 이 서한 내용을 수정하는 데 동의하였다.

서 명 : 에이. 므스키

서 명 : 씨. 스투키

파란 위원

서서 위원

서 명 : 젠스 말링

서 명 : 타우스

서전 위원

체코슬로바키아 위원

(다) 군정위가 중감위에 보낸서한(55.8.29)

1. 군사정전위원회는 중립국감독위원회가 1955년 8월 3일부 중립국감독위원회 서한에 의하여 수정된 바와 같이 1955년 5월 3일부 동 위원회 서한에 표명된 건의안을 즉시 실행하는 데 대하여 아무런 이의가 없다는 것을 통고하는 바이다.
2. 상기 변경이 완료되는 대로 즉시 군사정전위원회에 통고해 줄 것을 요망한다.

서 명 : 정 국 록

조선 인민군 소장

조선 인민군 및 중국 인민지원군측

수석위원

정국록

할란 씨.파크스

서 명 : 할란 씨. 파크스

미 합중국 공군 소장

국제연합군측

수석위원

(라) 중립국시찰소조 활동중지 경과

- 1956년 5월 31일에 진행된 군사정전위원회 제70차 회의에서 국제연합군측 발언 :
 - 조선 인민군 및 중국 인민 지원군측이 작전 물자의 반입을 보고함에 있어서 비타협적이며 체코슬로바키아와 파란 대표들이 북한에서 중립국 시찰 소조의 활동을 봉쇄하기 위하여 결탁하고 있는 니만큼 국제연합군은 정전 협정중에서 중립국감독위원회와 중립국시찰소조의 활동을 규정하는 부분의 조항을 국제연합군측 통제 지역 내에서 실시 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바이다.
- 중립국감독위원회는 군사정전위원회에 보낸 1956년 6월 5일부의 서한을 통하여 중립국 감독 위원회는 그의 시찰 소조들을 철수시키는데 동의 시찰 소조를 파견할 수 있는 권리를 보류한다고 건의.
- 국제연합군측 수석위원은 중립국감독위원회에 보낸 1956년 6월 8일부의 서한을 통해 중립국시찰소조들이 1956년 6월 9일까지 비무장 지대로 철수할 것을 통보
- 중립국감독위원회가 군사정전위원회에 보낸 1956년 6월 9일부의 서한은 쌍방으로부터 서한을 접수 하였음을 확인하면서 동 감독 위원회는 중립국시찰소조들에게 활동을 중지하고 1956년 6월 9일 01시까지 판문점에 돌아 올 것을 통고하였다고 지적.

(22) 비서장 회의에 있어서의 중국어 언어 인원 사용에 관한 합의

(’58. 6. 4.)

1958년 6월 2일 및 3일의 양일 쌍방 비서장들 사이에 교환된 통지문에 의하여 중국어 언어 인원은 국제연합군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또는 조선 인민군 및 중국 인민지원군측이 특별히 요구하지 않는한 비서장 회의에 참가할 필요가 없다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23) 비무장지대 내에서 군사 경찰을 민사 경찰로서 사용하는데 관한 합의 및 민사경찰이 휴대할 수 있는 무기의 종류에 관한 합의
(’53.7.30 군정위 제3차, 제4차회의 합의)

우리는 당신측 비무장지대 내에서 당신측이 행정 및 국제 인원을 포함한 총수 1,000명의 경찰을 사용하는 데 반대하지 않습니다.

군사 경찰을 사용하여 민사 행정 경찰의 직무를 수행케 하는데 반대 의견이 없습니다.

비무장 지대 내에서 사용될 일체 경찰 인원은 면태서 경찰이라고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반드시 식별하기 쉬운 제복이나 휘장을 착용하여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국제연합군 사령관은 625명 이상의 민사 행정경찰을 사용할 의사는 없습니다. 후일에 사령관이 인원수를 증가할 것을 원하면, 우리는 당신에게 통지하겠습니다.

1953년 7월 31일에 개최된 군사정전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군사정전위원회 쌍방 성원은 민사 경찰을 보충과 권총만으로서 무장시키자는 데 합의하였다. 보충이라 함은 방아쇠를 잡아당길 때마다 총탄 일(1)발 이상 발사할 수 있는 무기라고 정의된 바 있는 자동식무기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하여서도 합의를 보았다.

(24) 쌍방 수석 위원간에 왕래되는 통신문 사본 수에 관한 합의(1954년 1월 2일 제103차 비서장 회의)

국력측 : 1953년 8월 28일 군사정전위원회 비서처는 중립국감독위원회에 한통의 서한을 전달하고 거기서 동 위원회가 문건들의 사본 네(4)부를 군사 정전 위원회에 제공하여 본 비서처 각방에 여사한 사본 두(2)부 씩을 배부함으로써 그 행정상의 필요를 충당하게 할 것을 요구하였었습니다. 본 비서처나 군사 정전 위원회의 어느 일방의 상대방에 전달하는 통신문에 관하여도 이와 동일한 절차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일방의 수석위원이 상대방 수석위원에게 한통의 통신문 원본을 보내는 때에 해 통신문의 사본 일(1)부를 그에 첨부하며 다른 일방에 전달하는 그 외의 어떤 통신문이든지 이를 정 부 두(2)부로 작성 제공하게 할 것을 제의합니다.

우리측은 이 절차를 따를 것이며 동시에 당신측도 그렇게 할 것을 요청합니다.

조중측 : 우리는 당신측 제의에 동의합니다.

(25) 군사 분계선이 표시된 데 관한 합의(53.11.3 제86차 비서장 회의)

조중측 : “우리측은 정전협정 제4항에 준거하여 군사분계선이 이미 표시되었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조치가 취해졌음을 비서처의 공식 기록에 기록해 두는 데 동의합니다.”

국련측 : “우리측 역시 정전협정에 의거하여 군사분계선이 이미 표시되었다는 데 동의합니다.”

(26) 비서장 회의 소집에 관한 합의('53.11.7 제87차 비서장 회의)

국련측 : 어느 일방의 비서장의 소집에 의하여 쌍방 비서장이 회합하는 당신의 제의에 우리측은 동의합니다.

(27) <군사정전위원회 본부구역, 본부구역의 안전 및 본부구역 수축에 관한 합의>에 대한 보충을 위한 합의서(76.9.6 제446차 비서장 회의)

조선 인민군 최고사령관 및 중국 인민지원군 사령관을 일방으로 하고 연합국군측 총사령관을 타방으로 하여 1953년 7월 27일에 체결된 협정 제2조 25항에 군사정전위원회 본부의 위치와 활동에 관한 규정이 들어 있음에 비추어,

또한 군사정전위원회에서 1953년 10월 19일 채택된 <군사정전위원회 본부구역, 본부구역의 안전 및 본부구역 수축에 관한 합의> 제2인“ㄷ”항에 공동경비구역의 경비에 관한 규정이 들어 있음에 비추어,

또한 위의 협정들을 시행한 이후 연간에 공동경비구역안에서 인명의 안전보장 특히 양쪽 군인들 간에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어떤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한 것이 명백해졌으므로 군사정전위원회 비서장들은 <군사정전위원회 본부구역, 본부구역의 안전 및 본부구역 수축에 관한 합의>를 군사정전위원회에서 아래의 보충을 추가하여 수정할 것을 건의합니다.

(1976. 9. 6 제446차 비서장회의에서 합의 1976. 9 . 쌍방 수석위원 기준)

1. 제2조 “ㄷ”항의 보충

공동측량에 기초하여 공동경비구역안의 군사분계선은 회의장건물 구역에서는 넓이 오십(50)센치 메터, 높이 오(5)센치메터의 시멘트포장만을 하고 그 외의 부분은 십(10)센치메터 승 십(10)센치메터, 높이(1) 메터의 시멘트 기둥만을 십(10)메터 간격으로 박아 표시한다. 회의장 건물 구역이란 군사분계상에 놓인 일곱(7)채의 건물과 그를 둘러싼 마당, 즉

일곱(7)개의 건물과 서쪽끝의 건물로 부터 10미터, 동쪽끝의 건물로 부터 십(10)미터까지를 포함한다.

표식을 위한 작업은 군사분계선 표식물 제0099호로 부터 서쪽 한계선까지는 조선인민군 및 중국인민 지원군측이, 동쪽 한계선까지는 연합국군측이 책임지며, 다만 공동경비구역 서남쪽 모퉁이에서 군사분계선이 강바다으로 지나가는 부분은 해당 각방의 자기측 제방에 표식한다.

표식물에 대한 유지관리는 이 표식을 한 측이 책임진다.

2. 2조 “ㄴ”항의 보충

공동경비구역의 경비인원을 포함한 모든 군사인원은 공동경비구역안의 군사분계선을 넘어 상대측 지역에 들어가지 못한다, 즉, 정전협정 제11항의 규정에 따라 군사정전위원회와 공동감시소조, 중립국감독위원회 성원들은 이에서 제외된다. 그러되 군사정전위원회 그의 보조인원들은 각방에서 상대측에 들어가는, 들어가 있는 인원이 한번에 십오(15)명을 넘지 못한다.

공동경비구역안의 군사분계선상에 놓여 있는 공동으로 이용하는 건물 안에서는 쌍방이 자유로이 이동하며, 일방이 이용하는 건물안에서는 그 건물을 이용하는 측만이 자유로이 이용한다. 공동경비구역안의 통신시설을 관리유지하기 위하여 또는 비무장 군사인원에 의한 기타 허가된 활동을 위하여 군사분계선을 넘어 대상측 지역에 넘어 가려는 군사인원은 대상측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쌍방의 모든 비군사인원은 공동경비구역안에서 군사분계선을 넘어 자유로이 다닐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을 적절한 식별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공동경비구역안의 회의장건물 구역에서만 군사분계선을 넘어갈 수 있다. 차량들은 상대방의 사전 동의를 있어야만 공동경비구역안에서 군

사분계선을 넘어갈 수 있다.

공동경비구역안에서 쌍방의 군사인원 및 비군사인원들은 서로 안전을 침해하는 접촉을 할 수 없다. 각방은 공동경비구역 자기측 부분에 합법적으로 들어온 상대측 인원들의 안전을 책임적으로 보장한다.

3. 제3장 “ㄴ”항의 보충

공동경비구역안에서 자기측이 필요로 하는 경비초소는 자기측 구역에만 설치한다.

제2조 “ㄹ”항의 안전보장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어느 일방도 그 상대방의 시계를 방해하는 시각적이거나, 기타 장애물들을 설치하지 못한다. 본 <군사정전위원회 본부구역, 본부구역의 안전 및 수축에 관한 합의>보충의 이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 본 보충은 쌍방 수석위원에 의하여 비준된 십(10)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공동측량 및 군사분계선의 표식을 위하여 각방의 동수로된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인원으로 공동측량 소조를 구성하며, 이들의 안전 및 보호에 대해서는 공동감시소조의 감시하에 쌍방이 보장해야 한다.
- 본 보충이 비준된 날부터 발효일까지의 사이에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이행되어야 한다.
 - 쌍방이 합의에 따라 이루어지는 군사분계선 표식물의 설치를 완료한다.
 - 상대측 관할하의 구역에 있는 자기경비초소와 경비인원들, 그리고 기타 시설물들을 철수한다. 즉, 각방의 공동직일관실에 설치되어 있는 전화기와 그 시설은 제외된다.

- 연합국군측 부분에 있는 조선인민군 및 중국인민지원군측 경비 초소를 철수한다.
- 쌍방의 각기 본 보충이 쌍방 수석인원에 의해 비준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하는날 까지의 기간중 상대측 인원의 안전을 저해하는 접촉 또는 본 보충의 이행과 관련한 작업을 방해하지 말데 대한 명령을 하달하고 또 실시하므로서 상대측 인원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4. 남북적십자회담 상설 연락사무소 설치 합의문 (’71. 9. 29)

● 남북적십자회담 제2차 예비회담 합의문(한적측)

1. (생략)

2. 상설 “회담연락사무소”

가. 대한적십자사는 상설 “회담연락사무소”를 “자유의 집”에, 그리고 북한적십자회는 “관분각”에 각각 설치한다.

나. 쌍방은 상설 “회담연락사무소”를 연결하는 직통 왕복 전화를 가설한다.

다. 남북적십자간에 문서 전달을 필요로 할 때는 상설 “회담연락사무소”간의 직통전화로 연락을 취한 후, 쌍방 근무자가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에서 만나 전달한다.

라. 상설 “회담연락사무소”에는 쌍방이 각기 2명의 근무원을 배치하되, 평일은 09:00부터 16:00, 토요일은 09:00부터 12:00까지 근무하고, 일요일은 휴무로 한다.

3. (이하생략)

1971년 9월 29일

(서명) 대한적십자사 예비회담 수석대표 김연주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와 남조선적십자간의 예비회담
제2차회의 합의문(북적측)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대표단과 남조선적십자사대표단간에는 예비회담의 성과적운영을 위한 절차문제를 토의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생략)

2) (생략)

3) 예비회담 다음회의 날짜는 당일회의 마감에 확정할 수도 있고 즉석에서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쌍방 상설전화연락소 연락원들사이의 전화연락을 통하여 확정한다.

4) 쌍방은 대표단사이의 연락사무를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직통전화를 <판문각>과 <자유의 집>에 각각 설치한다.
연락사무는 이 직통전화를 리용하며 쌍방적십자단체 사이의 문서전달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쌍방연락원이 직통전화로 사전연락을 취한 후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에서 만나 전달한다.

5) (이하 생략)

1971년 9월 29일

(서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대표단 단장 김태희

5. 서울—평양간 남북직통전화 가설 협의 통신 기술실무자회의 합의사항(72. 4. 28, 29)

가. 제1차 실무자회의 합의사항(72. 4. 27)

1. 회선구성은 판문점 공동감시구역내의 자유의 집과 판문각간에 남북측이 공동회선 1회선을 설치(1회선은 예비)한다.
2. 판문점내 자유의 집, 판문각간의 선로경로는 직선으로 가설하되 북측 지역내에(판문점 서측) 필요한 전주를 건립한다.(북측 담당)
3. 현용 남북적 연락사무소간의 전화선 2회선도 차제에 본작업과 함께 선로를 변경가설한다.
4. 평양 단말전화로부터 서울 단말전화기까지 최대 허용손실은 30db(3.3 Neper)로 한다.
5. 북측 구역간 손실은 15db, 남측구간의 손실도 15db(1.65 Neper) 이내로 한다.
6. 신호 주파수는 16~25Hz로 한다.
7. 통화 대역폭은 북측이 0.3~2.7KHz, 남측이 0.34KHz로 본다.
8. 공동감시구역내 전화선 가설 작업은 1972. 4. 28. 11 : 00부터 합동으로 실시한다.
9. 첫 시험통화(서울—평양)는 1972. 4. 29 오전에 하며 첫 통화시간 결정은 추후 연락관 상호간 합의에 따라 4. 29내에 하도록 결정한다.
10. 본가설작업은 쌍방 공히 남북적 연락사무소간의 직통전화통신선의 보수 및 증설작업으로 하여 군정위에 통보하고 작업에 착수한다.

11. 본 작업간 공동감시구역내에서 기자 활동 및 촬영은 금한다.
12. 본 작업 완료후 작업관계 및 첫 통화에 대한 보도는 쌍방 공히 하지 않는다.
13. 기타 통화요령 호칭 고장수리에 관해서는 추후 협의하여 절차를 정한다.

나. 제2차 실무자회의 합의사항(72. 4. 28)

1. 이 전화의 사용시간은 일자에 구애없이 24시간 사용할 수 있음을 원칙으로 한다. 단, 운용하는 결과를 봐서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시는 상호 협의하에 통화일자와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2. 호 칭

쌍방 단말의 호칭은 자극적인 것을 피하여 남쪽은 서울, 북측은 평양으로 한다. 대화자간의 호칭은 직명 또는 성을 사용하고 끝에는 선생이란 존칭을 사용한다. 예를 들면 부장 선생, 김 선생으로 호칭해서 부른다.

3. 고장 수리

고장 수리는 원칙적으로 연락사무소 근무일 및 근무시간에 한정한다. 그러나 긴급할 시는 협의하여 휴일에도 고장 수리할 수 있다. 고장 원인 및 고장 소재지가 판문점 공동 감시구역내에서 발생하였다고 확인될 시는 남북 기술자가 합동으로 고장원인을 규명하고 이를 수리한다.

6. 서울—평양간 남북직통전화가설 및 운용에 관한 합의서(72. 7. 4)

● 서울—평양간 직통전화의 가설 및 운용절차에 관한 합의서

1. 직통전화의 설치목적

조국의 평화통일을 자주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과업과 기타 남북간에 제기되는 분제 및 불의의 사태에 대비하는 분제를 직접 신속 정확히 처리하기 위하여 서울—평양간 직통전화(이하 직통전화라고 함)를 설치 운용한다.

2. 직통전화기 설치장소

직통전화기는 서울에는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의 사무실 그리고 평양에는 김영주 조직지도부장의 사무실에 각각 설치한다.

3. 운용시간

직통전화는 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9시부터 12시까지, 16시부터 20시까지의 사이에 운용하며 쌍방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상의 지정된 시간과 날짜에 구애됨이 없이 사전에 날짜와 시간을 설정하여 운용한다.

4. 통 화 자

직통전화의 통화자는 다음과 같은 사람들로 한다.

서울에는 이후락 중앙정보부장과 그가 지명한 3명으로 하며 평양에서는 김영주 조직지도부장과 그가 지명한 3명으로 한다.

5. 시험통화

직통전화의 이상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3항에 지정된 날의 10시에 시험통화를 한다.

6. 고장수리

직통전화에 이상이 있을때는 판문점 상설연락사무소를 통하여 이를 통보하고 쌍방은 각기 자기 관할지역을 책임지고 보수하며 판문점 공동경비구역내의 고장은 양측이 공동으로 수리한다.

7. 비밀보장

쌍방은 통화내용의 비밀을 엄격히 보장한다.

8. 수정 또는 보충

본 합의서의 내용을 수정 또는 보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쌍방의 합의에 의해서만 할 수 있다.

9. 유효기간

본 합의서는 서로 서명하여 교환한 때로부터 발효하며 쌍방의 합의에 따라 폐기하기 전에는 계속 유효하다.

서 울 평 양
중앙정보부장 이 후 락 조직지도부장 김 영 주

1972년 7월 4일

7. 적십자 본회담 기타 진행절차와 일시에 관한 쌍방 합의문(72. 8. 11)

● 본회담 기타 진행절차와 일시에 관한 합의문(한적측)

1972년 8월 11일 개최된 제25차 남북적십자 예비회담에서 쌍방은 남북적십자 본회담 기타 진행절차 및 본회담 개최일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쌍방은 남북공동성명 정신에 따라 각각 초청자의 입장과 원칙에서 상대측의 대표단(대표단에는 대표, 자문위원 및 수행원을 포함한다. 이하 동일함)과 기자단을 영접하고 그들의 신변안전을 보장하며 기타 모든 편의를 최대한으로 제공한다.

1. 본회담 첫회의 문제

제1차 본회담은 평양에서 개최하며, 제2차 본회담은 서울에서 개최한다.

쌍방은 서울과 평양에서 각각 개최되는 첫번 회담에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을 상호 초청하는 문제에 관하여 토의하였으나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여 보류하기로 하였다.

2. 신변보장

1) 초청측은 상대측의 대표단과 기자단의 왕래와 체제기간중 그들의 신변안전을 보장한다.

- 2) 초청측은 상대측의 대표단과 기자단의 왕래와 체재기간중 그들의 문서, 사진, 필름, 녹음테이프, 취재수첩, 보도자료 및 기타 필요한 휴대품들에 대한 불가침을 보장한다.
- 3) 쌍방은 관계당국이 본회담을 위하여 자기측 지역에 오는 상대측 대표단과 기자단의 신변과 활동상 안전을 보장하며 상대측 인원 전원을 매번 무사히 돌려보낼 것을 보장하는 내용의 성명을 상호 왕래 개시 1주일전에 발표하고 그 성명문본을 교환한다.

3. 왕래절차

- 1) 쌍방은 자기측 대표단과 기자단의 명단(성명, 성별, 직책)과 사진을 자기측 지역을 출발하기 3일전에 상대측에 넘겨주고, 그후 변동되는 사항은 직통전화로 통지하고 판문점연락사무소를 통하여 이를 문서로 넘긴다.
상대측에 넘기는 왕래인원 명단에는 적십자사 책임자가 서명한다.
추후 변동되는 명단에는 위임에 의하여 판문점 연락사무소 책임자가 서명할 수 있다.
- 2) 대표는 자기측 적십자사 책임자가 발급한 신임장과 신분증명서를 소지하며, 자문위원, 수행원 및 기자단은 신분증명서를 소지한다.
- 3) 쌍방의 대표단과 기자단은 판문점을 통과지점으로 하며, 그 통과 및 접수시간은 쌍방이 협의 확정한다.
- 4) 판문점을 통과할 때의 절차
 - (1) 쌍방은 쌍방인원들의 판문점 통과와 관련한 업무를 판문점 상설연락사무소 책임자와 실무자들이 담당수행하게 하며, 이들의 명단을 상호 상대측에 통지한다.

- (2) 판문점을 통과할 때의 일체의 업무는 쌍방 적십자사가 전담 수행한다.
- (3) 쌍방의 모든 차단소들은 왕래하는 인원들과 차량들을 단속하지 않고 통과시킨다.
- (4) 상대측 인원을 접수할 때에는, 판문점 상설연락사무소가 있는 구역의 지정된 장소에서 초청측이 상대측으로부터 3일전에 넘겨받은 명단에 의거하여 상대측 인원들의 신분증명서를 대조 확인한 후 상대측 인원들을 접수한다.
초청측은 판문점 상설연락사무소 책임자가 서명한 접수된 인원명단을 상대측에 넘겨준다.
돌아갈 때에는 접수된 인원명단에 의거하여 상호 대조확인한다.

4. 체류기간과 회담일정

- 1) 체류 기간은 4~6일로 하고, 구체적인 체류일정 및 회담일정은 쌍방이 합의하여 결정한다.
- 2) 상대측 지역에 체류하는 대표단과 기자단은 각각 상대측의 질서와 안내에 따르도록 한다.

5. 표 지

- 1) 쌍방의 대표단은 자기 자기측 적십자사의 휘장을 착용한다.
- 2) 쌍방의 기자단은 자기측 적십자사의 휘장과 자기측이 편리하다고 생각하는 단일색 바탕에 “기자”라는 글자를 박은 완장을 착용한다.
- 3) 쌍방의 교통수단에는 적십자기만 달도록 한다.

6. 장비 및 소지품

- 1) 쌍방은 무선송수신기를 제외한 통신연락, 회의기록, 문건작성 및 취재활동에 필요한 휴대용 기술 기재와 구급약품, 간단한 휴대용 의료기구, 사무용품 및 기타 회담과 보도에 필요한 물품들을 가지고 다닐 수 있게 한다.
- 2) 쌍방인원들은 상대측 지역에 체재중의 생활에 필요한 개인 소지품, 출판물 및 기타 물품들을 가지고 다닐 수 있다.
- 3) 쌍방인원들은 무기, 폭발물등 유해위험물질을 휴대하지 않는다.

7. 교 통

쌍방은 각기 자기측 지역에 들어오는 상대측 대표단과 기자단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통로와 교통수단을 보장한다.

8. 통 신

- 1) 쌍방은 대표단 및 기자단을 위하여 남북사이에 총 20회선의 유선 전신 전화선을 보장한다.
- 2) 쌍방은 본회담의 진행과 관련한 통신의 편의를 보장하기 위하여 남북적십자 단체 중앙기관 사이에 직통전화 2회선을 상시 개설하며, 매차의 회담기간에는 상대측 지역에 가있는 대표단과 자기측 적십자 중앙기관을 연결하는 직통전화 2회선(1회선은 회담장, 1회선은 숙소)을 보장한다.
- 3) 쌍방은 남북간을 연결하는 전신전화선들을 판문점의 편리한 지점에서 연결한다.

- 4) 남북사이에 연결되는 전신전화들의 용도별 분배 및 그 운영절차는 통신기술 실무자간에 협의한다.
- 5) 반문점 상실연락사무소는 계속 운영한다.

9. 회담장외의 활농

쌍방은 체제기간중 상대측 인원들을 각종 참관에 안내할 수 있다.

10. 회담장 시설

- 1) 회담장 시설은 초청측에서 회담운영에 필요한 시설을 준비하며, 회담장에서 대표단과 기자단이 자기측에 즉시 연락할 수 있는 통신시설을 설치한다.
- 2) 초청측은 매 회담이 진행될 때마다 회의탁자 양끝 중심에 직십자기를 놓는다.

11. 회의기록

- 1) 쌍방은 회의기록을 각기 녹음기와 속기로 한다.
- 2) 쌍방은 상대측 지역에 가있는 대표단이 회담장에서 직접 자기측 적십자 기관에 중계할 수 있도록 녹음중계선 2회선을 보장한다.

12. 회의공개 여부

- 1) 회의는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하며, 쌍방 합의시 공개로 한다.
- 2) 제1차 및 제2차 본회담의 첫날 회의는 공개로 한다.

13. 보도진 문제

- 1) 쌍방은 회담 취재에 필요한 내신 보도진의 수를 20명으로 한다.

- 2) 쌍방은 매차 회담시 외신기자들을 초청측이 초청하며, 외신기자들에게 최대한의 회담취재 편의를 제공한다.
- 3) 쌍방은 보도에서 남북공동성명 정신에 따라 상호 비방하지 않으며 남북간의 신뢰와 이해를 증진시키는데 이바지하도록 하며 정확성의 원칙을 준수하도록 한다.

14. 회담 운영 형식

- 1) 회담장의 참석인원은 대표, 자문위원, 수행원으로 한다.
- 2) 회의발언은 수석대표가 하되, 필요시에는 여타 대표도 발언할 수 있다.
- 3) 쌍방은 자문위원의 발언문제에 관하여 토의를 진행하였으나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여 보류기로 하였다.

15. 합의문건 작성 및 발표

쌍방은 합의문건을 공동으로 작성 서명하여 동시에 발표한다.

16. 편의제공

초청측은 상대측의 대표단과 기자단의 체재기간중 숙식, 교통, 통신, 의료, 보도 및 기타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그 비용을 부담한다.

17. 쌍방은 회담을 위하여 남북을 왕래하는 인원수를 각각 대표 7명, 자문위원 7명, 수행원 20명, 내신보도진 20명으로 한다.

18. 본회담 일시

제1차 본회담은 1972년 8월 30일 오전 10시 평양에서 개최하며,
제2차 본회담은 1972년 9월 13일 오전 10시 서울에서 개최한다.

1972년 8월 11일

남북적십자 예비회담 대한적십자사 대표단

수석대표 김 언 주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와 남조선적십자사사이의 예비회담 제25차회의 합의문(북적측)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와 남조선적십자사사이의 예비회담 제25차회의에서는 남북적십자단체들사이의 본회담의 기타 절차문제와 본회담의 시일문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쌍방은 남북공동성명정신에 기초하여 각각 초청자의 립장과 원칙에서 상대측의 대표단(대표단에는 대표 7명과 그 동행인원인 자문위원, 수원이 포함된다. 이하 동일함)과 기자단을 영접하고 그들의 신변안전을 책임적으로 보장하며 활동상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한다.

1. 본회담 첫회의 문제

남북적십자단체들사이의 본회담 제1차회의는 평양에서 진행하며 제2차회의는 서울에서 진행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대표단은 평양과 서울에서 각각 처음으로 진행하는 본회담에 남북 제정당, 사회단체 책임자 또는 부책임자급으로 되는 대표들을 초청할 것을 제의하였으나 쌍방은 이 문제에 대하여 합의를 이룩하지 못하여 보류하기로 하였다.

2. 남조선적십자단체들사이의 본회담에 참가하는 인원들(대표단, 자문위원, 수원, 기자들)의(이는 이하조항제목들에서 생략함) 신변 안전보장문제

- 1) 쌍방은 래왕체류하는동안 상대측 인원들의 신변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과 의무를 지닌다.

- 2) 쌍방은 상대측 인원들이 가지고 다니는 모든 문서, 사진, 필립, 녹음테이프, 보도자료 및 기타 필요한 일체 휴대품들에 대한 불가침을 보장한다.
- 3) 쌍방은 해당 관계당국이 남북적십자단체들사이의 본회담을 위하여 자기측 지역을 레왕채류하는 상대측 인원들의 신분과 활동상 안전을 보장하며 상대측 인원들을 배변 무시히 돌려보낼 것을 담보하는 내용의 성명을 본회담 제1차회의 개막 1주일전에 발표하도록 하고 그 성명분본을 교환한다.

3. 레왕절차문제

- 1) 쌍방은 쌍방인원들의 판문점통과와 관련한 업무를 담당수행하기 위하여 판문점에 <<적십자 판문점전략대표부>>를 둔다.
적십자 판문점전략대표부에는 쌍방의 각각 자기측 적십자 단체를 대표하는 책임전략대표 1명과 필요한 수의 전략대표를 둔다.
쌍방은 이 책임전략대표와 전략대표의 명단을 각각 상대측에 통보한다.
- 2) 쌍방은 각각 본회담을 위하여 남북으로 레왕하는 인원들의 성명, 성별과 대표단 및 기자단에서 차지하는 지위를 밝힌 명단과 사진을 매차 자기측 지역을 출발하기 3일전에 상대측에 넘겨주도록 하며 그후 변동되는 사항은 직통전화로 우선 알리고 이어 적십자 판문점전략대표부를 통하여 그를 문서로 넘긴다.
상대측에 넘기는 레왕인원명단에는 해당 적십자단체 중앙기관 책임자가 수표한다.
추후 변동되는 명단에는 위임에 의하여 적십자 판문점전략대

표부의 책임연락대표가 수표할 수 있다.

- 3) 쌍방인원들은 각각 자기측 적십자중앙기관이 발행한 신임장 또는 신분증명서를 가지고 다니도록 한다.(대표와 자문위원은 신임장과 신분증명서를, 수원과 기자들은 신분증명서를 가지고 다닌다.)
- 4) 쌍방래왕인원들의 통과지점은 판문점(판문점이라함은 쌍방 적십자 판문점연락대표부들이 있는 구역을 의미한다. 이하 동일함)으로 정한다.
- 5) 판문점에서의 통과인원들의 통과 및 접수 시간은 쌍방이 매번 합의확정한다.
- 6) 쌍방의 래왕인원들은 판문점통과지점을 통과한 후부터 판문점의 자기측 지역에 돌아올 때까지 상대측의 질서와 안내에 따르도록 한다.
- 7) 판문점을 통과할 때의 절차는 다음과 같이 한다.
 - (1) 판문점을 통과할 때 쌍방군사인원들은 일체 개입하지 않도록 한다.
 - (2) 쌍방의 모든 차단소들은 래왕하는 인원들과 차량들을 단속하지 않으며 그냥 통과시킨다.
 - (3) 래왕인원들에 대한 접수는 쌍방적십자단체 연락대표들이 판문점의 지정된 장소에서 한다.
접수측 적십자단체 연락대표는 상대측으로부터 이미 넘겨 받은 명단에 근거하여 신분증명서를 대조확인하면서 상대측 인원들을 접수한다.
접수측은 파견측 인원들의 접수 즉시 책임연락대표가 수표한 접수확인명단을 파견측에 넘긴다.
접수측은 파견측 인원들의 접수 즉시 책임연락대표가 수

표한 접수확인명단을 파견측에 넘긴다.

파견측 인원들이 자기측 지역으로 돌아갈 때에는 접수측이 이미 넘겨준 접수확인명단을 파견측으로부터 도로 넘겨받아 그에 근거하여 파견측 인원들을 대조확인한 후 돌려보낸다.

(4) 쌍방은 자기측 래왕인원들에 대한 공인된 예방접종을 책임직으로 미리 실시한다.

4. 체류기간과 회담일정 분제

- 1) 쌍방은 상대측 지역에 매번 체류하는 기간을 4~6일 정도로 하며 그 구체적인 체류날자는 매번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정한다.
- 2) 쌍방은 매차례 회담일정 및 기타 체류와 관련한 의견들을 미리 서로 통보할 수 있다.
- 3) 쌍방은 체류 및 회담 일정에 대하여 적십자 편분점련락대표부를 통하여 협의할 수 있다.

5. 표식분제

- 1) 쌍방의 대표단성원, 자분위원, 수원들은 각기 자기측 적십자 단체의 휘장을 단다.
- 2) 쌍방의 수행기자단성원들은 자기측의 적십자휘장과 자기측이 정한 단일색바탕에 <<기자>>라고 쓴 원장을 끼도록 한다.
- 3) 쌍방의 운수수단에는 적십자기발만 달도록 한다.

6. 가지고 다닐 기술기재 및 소지품 문제

- 1) 쌍방은 무전송수신기를 제외한 통신연락, 회의기록, 문건작성 및 취재보도활동에 필요한 휴대용 기술기재들, 사무용품과 기타 회담 및 보도사업에 필요한 물품들을 가지고 다닐 수 있게 한다.
- 2) 쌍방인원들은 상대측 지역에 머무는 동안 생활에 필요한 소지품, 출판물 및 기타 물품들을 가지고 다닐 수 있다.
- 3) 쌍방인원들은 무기, 폭발물과 기타 일체 유해위험물질들을 휴대하지 않는다.

7. 교통보장문제

쌍방은 자기측에 들어오는 상대측 인원들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통로와 일체 교통 및 수송 수단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보장하며 회담과 관련된 그들의 활동에 그 어떤 사소한 불편과 지장이 없이 교통을 원만히 보장해준다.

8. 남북간 통신연락보장문제

- 1) 쌍방은 대표단, 자문위원, 수원 및 기자들을 위하여 남북사이에 총 20회선의 유선전신전화선을 공인된 기술기준치대로 연결하여 통신을 신속정확히 편리하고 안전하게 보장하도록 한다.
- 2) 쌍방은 본회담진행과 관련한 통신연락을 일상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남북적십자단체 중앙기관사이에(평양과 서울) 직통전화 2회선을 상시적으로 개설하며 매차의 회담기간에는 상대측

지역에 가있는 대표단과 자기측 적십자중앙기관을 연결하는 직통전화 2회선(1회선은 회의장, 1회선은 숙소)을 보장하여 준다. 이외 상대측 인원들의 사업과 활동에 필요한 전신전화를 원만히 보장한다.

- 3) 남북간을 연결하는 전신전화선들은 판문점의 편리한 지점에서 연결한다.
- 4) 남북사이에 연결되는 전신전화들의 용도별 분배 및 그 운영절차는 따로 협의한다.
- 5) 쌍방의 현존 판문점상설전화연락소들은 계속 운영하되 그를 적십자 판문점연락대표부에 편입한다.

9. 회의장 이외 지역에서의 활동문제

체류기간 상대측 인원들은 초청자측의 안내에 따른다.

10. 회담장 시설 및 장치 문제

- 1) 회담장 시설과 장치는 본회담의 절차에 대한 합의사항에 적용하게 회의장관리측에서 책임지고 쌍방의 회담 및 회담보도 활동에 편리하게 보장하며 회담장에서 상대측 인원들이 자기측에 즉시 연락할 수 있는 통신시설들을 원만히 갖추어 놓는다.
- 2) 회의장관리측은 매 회담이 진행될 때마다 회의탁자 량끝 중심에 적십자기발을 놓는다.

11. 회의기록문제

쌍방은 회의기록을 각기 녹음기와 속기로 한다.

쌍방은 상대측 지역에 가있는 대표단이 회의장에서 직접 자기측 적십자기관에 중계녹음으로 기록할 수 있도록 녹음중계선 2회선을 보장한다.

12. 회의공개여부문제

쌍방은 본회담을 비공개회의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 쌍방의 합의 밑에 공개회의를 할 수 있다.

우선 평양과 서울에서 각각 처음으로 하는 회의는 공개로 한다.

13. 보도문제

1) 쌍방은 보도에서 1972년 7월 4일 남북공동성명정신에 따라 서로 상대방을 비방중상하지 않으며 회담의 성과적 진행을 보장하며 남북간의 신뢰와 리해를 심화시키는데 이바지하도록 하며 진실성과 정확성, 신의의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한다.

2) 쌍방은 보도형식을 각기 편리한대로 하도록 한다.

3) 쌍방은 각각 보도인원수를 적십자회담보도를 성과적으로 보장하는데 필요한 수인 20명으로 한다.

4) 쌍방은 상대측 지역에 갈 때 외국기자를 동행하지 않으며 회의가 진행될 때 그 회의장 관리측이 자기측 지역에 있는 외국기자들과 그외의 외국기자들을 초청할 수 있다.

14. 회담운영형식분제

- 1) 쌍방은 본회담참석인원을 대표, 자문위원, 수원으로 한다.
- 2) 쌍방은 회의에서의 발언을 원칙적으로 대표단 단장이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면서 필요에 따라 기타 대표단 성원들도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대표단은 자문위원들이 회의에서 특정한 분제들에 대하여 발언할 것을 제의하였으나 쌍방은 이 문제에 대하여 합의를 이룩하지 못하여 보류하기로 하였다.
- 3) 이외의 회의운영형식은 쌍방이 따로 협의할 수 있다.

15. 합의문건 작성 및 발표분제

쌍방은 합의문건을 공동으로 작성서명하여 동시에 발표한다.

16. 편의보장과 그 비용 문제

- 1) 쌍방은 자기측 지역에 레왕체류하는 상대측 인원들에 대한 숙식조건, 교통수송, 통신연락과 의료상방조 및 회담과 관련한 보도의 편의를 원만히 보장하며 기타 편의상 문제들도 최대한으로 해결보장하여 준다.
- 2) 쌍방은 각각 자기측 지역에서의 회담운영비용, 상대측 인원들의 숙식, 교통, 전신, 전화, 통신, 보도, 의료, 편의봉사, 출판물 등의 비용을 무상으로 한다.

17. 기타문제

쌍방은 초청자의 입장에서 상대측 인원들에 대한 모든 편의를 제공하기로 합의를 본 조건에서 수원수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서 쌍방의 수원수를 각각 20명 이내로 하며 쌍방의 남북 래왕 총 인원수를 각각 54명 이내로 한다.

18. 본회담시일문제

쌍방은 남북적십자단체들사이의 본회담 제1차회의를 평양에서 1972년 8월 30일 오전 10시에 개막하며 제2차회의는 1972년 9월 13일 오전 10시에 서울에서 진행하고 그 다음 회의날자들은 본회담쌍방대표단들이 협의확정한다.

쌍방은 위에서 합의한 기타 절차문제에 대한 기본원칙과 각 항목들이 평양과 서울에서 번갈아하는 남북적십자단체들사이의 본회담을 성과적으로 보장하며 1972년 7월 4일 남북공동성명정신에 따라 민족적 화목과 대단결을 도모하며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리라고 확신한다.

1972년 8월 11일

판 문 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대표단

단 장 김 태 희

8. 남북적십자회담 본회담을 위한 통신기술 실무자회의 합의문 (72. 8.16)

- 남북적십자회담 본회담을 위한 통신기술 실무자회의 합의문
(한적측)

서울과 평양에서 개최되는 남북적십자 본회담에 대비하기 위한 남북간 전신 전화 가설 및 운용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1972년 8월 16일 판문점에서 개최된 통신기술 실무자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북간 회선의 용도별 분배

가. 대표단용

- (1) 쌍방 적십자사 중앙기관간의 직통전화 회선 2회선
- (2) 상대방 지역에 위치한 대표단의 회담 장소 및 숙소와 자기측 적십자사 중앙기관간의 직통전화 각각 1회선 및 인쇄전신 회선 각각 1회선
- (3) 상대측 지역에 가있는 대표단이 회담장에서 직접 자기측 적십자기관에 중계할 수 있는 녹음회선 2회선
- (4) 자문위원 및 수행원이 상대측에 위치한 자기측 대표단 숙소와 기타 장소에서 자기측 지역간에 통화할 수 있는 전화회선 1회선

나. 기자단용

상대측 지역에 위치한 기자단 숙소 또는 회담장 기자실에서 자

기측 지역간의 통신수단별 회선수는 아래와 같이 한다.

(1) 전화회선 : 3회선

※ 숙소, 회담장 또는 초청자측 지역내의 활동 또는 체재하는 장소에서 자기측(서울 또는 평양)과 통화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2) 인쇄전신회선 : 2회선(회담장 1회선, 숙소 1회선)

(3) 사진전송회선 : 1회선(회담장 및 숙소)

(4) 모사전송회선 : 1회선(회담장 및 숙소)

(5) 방 송 회 선 : 2회선(회담장 및 숙소)

다. 보수용

상대방 지역에 위치한 대표단 숙소와 자기측 반송기계실간의 연락전화회선 1회선과 인쇄전신 1회선

2. 남북회선 통신방식

남북회선 구성을 위해 판문점에서 상호 접속하되 2선식 음성급 회선으로 하며 회선의 기술 기준치는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신호방식 : 16~25「헬즈」 75「볼트」

나. 음성 전화회선의 잡음 : -50「디비」 이하

다. 유효 음성 주파수 대역 : 0.3~3.4「킬로헬즈」

라. 잔류손실 주파수 편차 : 「시. 시. 아이. 티. 티.」 2/5곡선에 적합토록 함.

마. 잔류손실(800「헬즈」에서)

(1) 서울-평양 반송단국간 : 8.7-12.8「디비」 이내

(2) 서울-평양 가입자간 : 20「디비」 이내로 할 것을 원칙으로 하
 되 단국에서 가입자까지의 손실을 상호 국제기준치 이내로
 보장한다.

바. 음성회선의 동기 주파수 편차 : ± 2 「헬츠」 이내

사. 케이블 절연저항 : 「킬로미터」당 10,000「메그 옴」 이상

3. 남북회선 접속

서울-평양간 보장된 전신전화 20회선의 회선번호는 아래와 같이
 하며 자유의 집과 판문각 간의 사용 「케블」 芯線과 奇數회선은 북
 한적십자회측이 포설한 것을 사용하며 偶數번호는 대한적십자측이
 포설한 것을 사용한다.

회선번호	용도	
남북 1번선	쌍방 중앙기관 직통전화 회선	(1)
남북 2번선	쌍방 중앙기관 직통전화 회선	(2)
남북 3번선	대표단과 자기측 중앙기관간 직통전화 회선(회담용)	
남북 4번선	대표단과 자기측 중앙기관간 직통전화 회선(숙소)	
남북 5번선	자문위원 및 수행원이 사용할 전화 회선	
남북 6번선	대표단용 인쇄전신 회선	(1)
남북 7번선	기자단용 전화회선	(1)
남북 8번선	기자단용 전화회선	(2)
남북 9번선	기자단용 전화회선	(3)
남북 10번선	통신운용을 위한 보수용 전화연락 회선	
남북 11번선	회담용 녹음회선	(1)
남북 12번선	회담용 녹음회선	(2)

남북13번선	방송중계용 회선	
남북14번선	방송중계용 회선	
남북15번선	모사전신 회선	
남북16번선	기자용 인쇄전신 회선	(1)
남북17번선	사진 전송회선	
남북18번선	대표단용 인쇄전신 회선	(2)
남북19번선	기자용 인쇄전신 회선	(2)
남북20번선	통신운용을 위한 전신연락회선	

4. 전신전화기 단말기기

가. 초청자측에서 전화기와 사진전송기를 제공한다.

나. 필요한 단말기기중 규격이 합치되지 않는 아래 단말기기는 상호 휴대할 수 있다.

- (1) 반송전신 단국 장치
- (2) 인쇄전신기
- (3) 모사전신기
- (4) 기타 필요한 통신장비

다. 단말기기에 사용되는 전원은 피초청자측의 요구에 따라 초청자측에서 필요한 전원을 공급하며 평양회담시는 교류 100 「볼트」 ± 10% 60 「헬즈」를 제공하며 서울 회담시는 대표단실과 기자실에는 별도로 교류 220 「볼트」 60 「헬즈」로 제공한다.

5. 남북간을 연락하는 유선 전신 전화선로들의 연결

- 가. 판문점에서 서로 연결되는 통신 선로는 시외 「케블」로 하며 쌍방이 각각 20회선 이상 포설한다.
- 나. 통신 「케블」의 포설 경로는 쌍방이 현지에서 합의 결정한다.
- 다. 통신 「케블」의 포설공사는 공동으로 실시한다.
- 라. 통신 「케블」의 포설공사가 끝나면 심선번호를 대조하고 절연지향을 측정한다.

6. 남북간을 연결하는 유선 전신·전화 회선의 기술운영

- 가. 1972년 8월 18일 아침 10시부터 통신운영을 위한 연락선을 통하여 서울-평양간의 회선번호 가입자명을 대조확인하고 잔류손실 측정, 신호 시험, 잡음 측정 및 잔류손실, 주파수 측정을 하며 그 후 3일간 회선의 정상 여부를 확인하고 운영한다.
- 나. 남북적십자단체 중앙기관 사이의 직통전화 회선과 통신운영을 위한 연락선의 시험은 회담기간중은 매일 아침 07:00~08:00 사이에 잔류손실 측정과 신호시험을 하며 평상시는 09:00에 시행한다.
- 다. 대표단 및 보도용 통신회선들은 메차의 회담기간만 사용하며 그의 측정시험은 매일 아침 04:00~06:00 사이에 한다. 이회선들은 회담 시작 2일전 10시에 지정된 지점에 연장하고 서울과 평양간 전화회선의 신호시험과 잔류손실 측정 시험을 한다.
- 라. 초청측이 보장하는 통신시설들은 초청측이 시험을 하고 상대방에 넘겨주며 쌍방이 휴대하는 시설과 초청측으로부터 넘겨받은

시설들은 회담시작 1시간전까지 시험을 끝낸다.

마. 쌍방이 각기 자기 관할지역의 전신전화 회선의 정상특성을 유지토록 보장한다. 만약 자기 관할지역의 통신시설에 대한 보수 정비작업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상대측에 통보한 후 작업을 수행하며, 이 경우에도 남북적십자단체 중앙기관 사이의 직통전화와 통신운영을 위한 연락선을 두절되지 않도록 한다.

바. 판문점에서 전신전화 회선이 고장일 경우에는 우선 통신운영을 위한 연락선 혹은 적십자 판문점 연락사무소를 통하여 상대측에 통보하고 쌍방 기술 실무자들의 합의하에 예비선으로 바꾸어 고장수리 작업을 한다.

7. 남북간을 연락하는 전신전화 회선을 가설하기 위한 공동 작업 시일은 1972년 8월 17일 오전 10시에 시작한다.

8. 쌍방 통신기술 실무자간이 합의하에서만 이상의 제반조항 내용을 수정 또는 보완할 수 있다.

쌍방 통신 기술자는 이상에서 합의한 8개항이 남북적십자사간의 본회담 진행을 위한 통신을 효과적으로 보장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

1972년 8월 16일

남북적십자 본회담을 위한 통신기술 실무자회의

대한적십자 통신기술 실무자

대표 박 호 립

● 남북적십자 단체들 사이의 본회담 진행과 관련하여 남북간
통신보장을 위한 기술 실무자회의 합의문(북적측)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적십자회와 남조선 적십자사 사이의 남북간 통신보장을 위한 기술 실무자회의에서는 본회담 진행과 관련한 통신을 일상적으로 신속 정확히 안전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북간(평양과 서울)을 연결하는 유선 전신전화선(20회선)의 용도별 분배와 구성방식

1) 유선 전신전화 회선들의 용도별 분배

(1) 남북적십자단체 중앙기관 사이의 직통전화2회선

(2) 회담기간 상대측 지역에 가있는 대표단과 자기측적십자 중앙기관을 연결하는 직통전화(1회선은 회담장, 1회선은 숙소)
.....2회선

(3) 회의 기록을 위한 녹음 중계선2회선

(4) 대표단과 자문위원용3회선

그 중

- 대표단과 자문위원들이 사용할 남북간 교환 직통전화 회선
.....1회선

- 대표단용 인쇄전신선2회선

(5) 보도 및 기자용9회선

그 중

- 방송원선.....1회선

- 방송지회선.....1회선
- 사전전신선.....1회선
- 모사전신선.....2회선
- 인쇄전신선.....1회선
- 남북간 교환 직통선.....3회선
- (6) 통신운영을 위한 연락선2회선

그 중

- 전화연락선.....1회선
- 전신연락선.....1회선

2) 유선 전신전화 회선의 구성방법

쌍방은 유선 전신전화 회선들을 적십자 판문점 연락대표부들이 있는 구역(이하 판문점이라고 한다)에서 2선식으로 구성하며 이 모든 회선들에 저주파 신호세력을 전송한다.

- 3) 쌍방은 판문점에서 연결하는 통신 「케블」의 심선번호, 그 번호에 따르는 유선 전신전화 회선명과 회선번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회선 번호	회 선 명	우리측 「케블」 상대측 「케블」 심선번호	심선번호
1.	남북적십자단체 중앙기관 사이의 직통전화1	
2.	남북적십자단체 중앙기관 직통전화1	
3.	대표단과 자기측 적십자 중앙기관 사이의 직통전화(회의장)2		
4.	대표단과 자기측 적십자 중앙기관 사이의 직통전화(숙소)2	
5.	대표단과 자문위원들이 사용할 남북간 교환 직통회선3		

6. 대표단용 인쇄전신선	3
7. 기자용 남북교환 직통회선	3
8. 기자용 남북교환 직통회선	4
9. 기자용 남북교환 직통회선	5
10. 통신운용을 위한 전화연락선	5
11. 회의기록을 위한 녹음중계선	6
12. 회의기록을 위한 녹음중계선	6
13. 방송원선	7
14. 방송 지휘선	7
15. 모사전신선	8
16. 모사전신선	8
17. 사진전신선	9
18. 대표단용 인쇄전신선	9
19. 기자용 인쇄전신선	10
20. 통신운용을 위한 전신연락선	10

2. 남북간을 연결하는 유선 전신전화의 통신설비와 시설들의 전기적 특성

쌍방은 각기 자기측 관할지역의 통신설비와 시설들의 전기적 특성을 공인된 기술기준치로 보장한다.

- 1) 남북간을 연결하는 전화회선들은 판문점에서 다음과 같은 기준치를 보장한다.

유효 전송주파수 대역	0.3~3.4KHz
동기 주파수의 편차	±2Hz
전송준위	800Hz에서 -5db~-10db

잡음준위	-50db 이하
호출신호 세력	16~25Hz /75V
전화회선의 잔류감쇄(평양-서울간)	-8.7db~-12.8db
「케블」 회선의 절연저항	10,000 「메그옴」/km 이상

2) 쌍방은 통신설비들의 기술적 특성을 다음과 같이 보장한다.

- 사진전신기

원통 회전속도 : 60, 90, 120회/분

동기주파수 : 1,020Hz

협동계수 : 352,264

원통 회전방향 : 오른쪽 회전

변조형식 : 진폭, 변조, 주파수 변조

3. 남북간을 연결하는 유선 전신전화, 선로들의 연결

1) 판문점에서 서로 연결하는 통신선로는 시외 「케블」로 하며 각각 20회선 이상 넘겨준다.

2) 통신 「케블」의 공사로정은 쌍방이 현지에서 합의 확정한다.

3) 통신 「케블」을 늘이는 공사는 공동으로 한다.

4) 통신 「케블」을 늘이는 작업이 끝나면 심선번호를 대조하고 절연저항을 측정한다.

4. 남북간을 연결하는 유선 전신전화 선로들의 연결

1) 1972년 8월 18일 아침 10시부터 통신운영을 위한 연락선을 통하여 평양~서울간 회선번호 가입자명을 대조확인하고 잔류감쇄, 주파수, 특성, 잡음준위의 측정과 신호시험을 하며 그후 3일간 회선의

정상성 여부를 확인하고 운영한다.

- 2) 남북 적십자단체 중앙기관 사이의 직통전화 회선과 통신운업을 위한 연락선은 매일 아침 9시(본회담 기간에는 7시~8시)에 잔류감쇄 측정과 신호시험을 한다.
 - 3) 대표단 및 보도용 통신회선들은 배차의 회답시기만 사용하며 그 기간 측정시험은 매일 아침 4시~6시 사이에 한다. 이 회선들은 회답 시작 2일전 10시에 제정된 지점에 연장하고 평양~서울간 유선 전신전화회선들의 잔류감쇄 측정과 신호시험을 한다.
 - 4) 초청측이 보장하는 통신설비들은 초청측이 시험을 하고 상대측에 넘겨주며 쌍방이 휴대하는 설비들과 초청측으로부터 넘겨받은 설비들은 회의시작 1시간 전까지 자기측과의 시험을 끝낸다.
 - 5) 쌍방은 각기 자기 관할지역의 유선 전신전화 회선들의 정상성을 보장한다. 만약 자기 관할지역의 통신설비와 시설들에 대한 보수정비를 진행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상대측에 통보한 후 작업을 진행하며, 이 경우에도 남북 적십자단체 중앙기관 사이의 직통전화와 통신 운영을 위한 연락선은 두절되지 않도록 한다.
 - 6) 관분점에서 유선 전신전화 회선들이 고장일 경우에는 우선 통신운업을 위한 연락선 혹은 적십자 관분점 연락대표부를 통하여 상대측에 통보하고 쌍방 기술실부 일꾼들의 합의하에 예비선으로 바꾸어, 고장되지 작업을 공동으로 진행한다.
5. 남북간을 연결하는 유선 전신전화선을 가설하기 위한 공동작업 시일

은 1972년 8월 17일 오전 10시로 한다.

6. 이상의 제반 조항들은 쌍방 통신기술 실무자들 사이의 합의하에서만 수정 또는 보충할 수 있다. 쌍방 통신기술 일꾼들은 위에서 합의한 문제들이 남북 적십자 단체들 사이의 본회담 진행을 위한 통신을 성과적으로 보장하며 남북간의 연계와 민족적 단합을 이룩하는데 기여 하리라고 확신한다

1972년 8월 16일 판문점

남북적십자 단체들 사이의 본회담 진행과 관련한 통신기술
실무자회의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적십자회

대 표 김 례 현

9. 남북적십자 중앙기관 사이의 직통전화 운용절차 합의서(72. 8. 25)

- 남북적십자사 중앙기관 사이의 직통전화 운용절차 합의서
(한적측)

남북적십자 예비회담의 합의에 따라 설치된 남북적십자 중앙기관사이의 직통전화 운용절차에 관하여 1972년 8월 25일 남북적십자연락관 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설치 목적

역사적인 남북적십자회담과 이에 따르는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남북적십자사 중앙기관 사이에 직통전화 2회선을 설치 운용한다.

2. 설치 장소 및 통화자

본 전화는 쌍방적십자사 중앙기관 사무실에 각각 설치하며, 통화자는 쌍방적십자사 책임자 및 회담대표와 적십자사 책임자가 임명한 3명으로 한다.

3. 운용 기간

본 전화는 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10시부터 12시까지, 16시부터 18시까지 운용하며 쌍방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상에 지정된 시간 날짜에 구애됨이 없이 사전에 날짜와 시간을 설정하여 운용한다.

4. 첫 통화

본 전화의 첫 통화는 1972년 8월 26일 10시에 한다.

5. 기술적 보장 및 고장 수리

본 전화선을 원활하게 운용하기 위한 기술적 보장 및 고장 수리는 1972년 8월 16일의 남북적십자 본회담을 위한 통신 기술실무자회의 합의에 따른다.

6. 유효

본 합의서는 서로 서명하여 교환한 때로부터 발효하며 쌍방의 합의에 따라 폐기 수정 또는 보완 할 수 있다.

1972년 8월 25일

대한적십자사 총재의 위임에 의하여

관문점연락사무소 책임자 최 동 일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와 남조선적십자사 중앙기관사이
의 직통전화 리용절차에 관한 합의서(북적측)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와 남조선적십자사는 예비회담 제25차 회의의 합의에 따라 쌍방적십자단체 중앙기관사이에 설치하는 직통전화 리용절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와 남조선적십자사 사이의 본회담을 성과적으로 보장하며 쌍방 중앙기관사이에서와 대표단 사이에 일상적으로 련계를 가지기 위하여 쌍방 적십자단체 중앙기관사이에 직통전화(이하 직통전화라고 한다)를 설치 리용한다.
2. 직통전화기는 쌍방적십자단체 중앙기관 사무실에 각각 설치한다. 직통전화는 쌍방적십자단체 책임자 또는 대표단들이 각각 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그들이 임명하는 3명의 전화근부자들이 리용통화한다.
위에 지적인 통화자들의 명단을 호상 통보한다.
3. 직통전화는 매일(일요일과 공휴일 제외) 10시부터 12시까지 16시부터 18시까지 사이에 리용하며 필요에 따라 쌍방이 합의하여 위에 지적인 기간과 시간을 련장할 수 있다.
남북적십자단체들 사이의 본회담을 위하여 자기측 대표단이 상대측 지역에 체류하는 기간에는 24시간 계속 리용한다.
4. 직통전화는 1972년 8월 26일 오전 10시부터 통화를 개시한다.
5. 직통전화의 기술적 시험과 고장수리대체는 <남북적십자단체들 사이의 본회담과 관련하여 남북간 통신보장을 위한 기술실부자들의 합의문>에 준한다.
6. 본 회담분은 쌍방이 서명하여 교환한 날부터 발표하며 쌍방의 합

의가 없이는 상기조항을 수정보충 또는 폐기할 수 없다.

1972년 8월 25일

판 문 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임에 의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판문점련락대표부 책임련락대표 최 봉 춘

10. 남북적십자간 직통전화 운영 재개합의 관련 전화통지문

- 한적총재, 남북직통전화 운영에 관한 1차 대북전통문(84. 10. 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위원장 손성필 귀하,

나는 지난 9월 28일부터 재개 운영하고 있는 남북적십자간 직통전화의 운영문제를 다음과 같이 통지합니다.

1. 남북적십자간의 직통전화는 앞으로 계속 운영한다.
2. 남북적십자간의 직통전화는 1984년 10월 5일 직통전화 통신 실무자간에 합의한대로, 매일(일요일 및 남북한 공휴일 제외) 오전 9시와 오후 4시에 각각 시험통화를 실시하며 홀수날에는 우리측이, 짝수날에는 귀측이 각기 상대방을 호출토록 한다.
3. 공휴일은 24시간 전에 서로 상대방에게 알려준다.

1984년 10월 6일

대한적십자사 총재 유 창 순

- 북적 위원장, 남북직통전화 운영에 관한 대남전통문(84. 10. 8)

대한적십자사 총재 유창순 귀하,

나는 이미 지난 10월 3일부 담화에서 북과 남의 민족적 유대를 회복하고 통일의 대문을 활짝 열어 나가려는 려원으로부터 북과 남 사이의 다방면적인 합작과 교류를 실현해 나가며 이를 위해 우선 쌍방 적십자단체들 사이의 직통전화를 앞으로 계속 운영해 나갈 것을 밝힌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나는 북과 남의 적십자 단체들 사이의 직통전화 운영문제를 다음과 같이 통지합니다.

1. 북과 남 적십자 단체들 사이에 직통전화를 앞으로 계속 운영한다.
2. 직통전화는 일요일과 쌍방 자기측 공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12시, 오후 2시부터 5시 사이에 통화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3. 쌍방간의 시험통화는 짝수날에는 우리측이, 홀수날에는 귀측이 자기 상대방을 호출하도록 한다.
4. 공휴일은 24시간 전에 서로 상대방에게 알려준다.
5. 통신 실무일꾼들의 기술시험은 매일 아침 8시부터 9시 사이에 하되 호출방법은 3항에 준하며 만약 직통전화선에 이상이 생겼을 경우에는 임의 시각에 서로 시험을 요구한다.
6. 쌍방은 통화내용의 비밀을 엄격히 보장한다.

1984년 10월 8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손 성 필

● 한적 총재, 남북직통전화 운영에 관한 2차 대북전통문(84. 10. 1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위원장 손성필 귀하,

나는 지난 10월 6일 남북적십자간 직통전화의 계속 운영방침을 귀하에게 통지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귀하는 10월 8일자 통지문을 통해 대체로 동의해 왔으므로 나는 다음과 같이 통지합니다.

1. 남북적십자간의 직통전화는 앞으로 계속 운영한다.
2. 남북적십자간 직통전화는 일요일과 쌍방 공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12시, 오후 2시부터 5시 사이에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며, 쌍방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상에 지정된 시간과 날짜에 구애됨이 없이 사전에 날짜와 시간을 설정하여 운영한다.
3. 공휴일은 24시간전에 서로 상대방에게 알려준다.
4. 쌍방 통신 실무자간의 시험통화는 매일 08:00~09:00 사이에 하되 홀수날에는 우리측이 귀측을, 짝수날에는 귀측이 우리측을 각기 상대방을 호출하며, 만약 직통전화 회선에 이상이 생기면 임의의 시각에 서로 시험을 요구한다.
5. 남북적십자간 직통전화의 통화 내용은 쌍방의 합의에 따라 비밀을 보장한다.

대한적십자사 총재 유 창 순

11. 남북연락사무소의 설치 운영에 관한 합의서(92. 5. 7)

남과 북은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제7조에 따라 서로의 긴밀한 연락과 협의를 통하여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평화와 통일을 앞당기는데 이바지 하기위하여 남북연락사무소(이하 『연락사무소』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설치·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제 1 조 연락사무소 명칭은 남측은 『남측연락사무소』라고 하고 북측은 『북측연락사무소』라고 한다.

제 2 조 남과 북은 연락사무소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안의 자기측 지역에 각각 설치한다.

제 3 조 연락사무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① 연락사무소는 남과 북에서 각각 소장 1명, 부소장 1명과 필요한 수의 연락관들로 구성한다.
- ② 연락사무소 소장은 국장급으로 한다.
- ③ 연락사무소 소장, 부소장, 연락관들을 교체할 경우 이를 상대방에 통보한다.
- ④ 앞으로 쌍방이 합의하여 연락사무소안에 필요한 부서들을 설치할 수 있다.

제 4 조 연락사무소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 ① 위임에 따라 남북사이에 제기되는 제반연락업무를 수행한다. 의뢰에 따르는 연락업무도 수행할 수 있다.
- ② 위임에 따라 남북사이의 합의사항 이행과 관련한 실무협의를 진행한다.
- ③ 남북사이의 각종 왕래와 접촉에 따르는 안내와 편의를 제공한다.
- ④ 쌍방 연락사무소 사이에 필요한 수의 전화선을 가설하고 운용한다.

제 5 조 연락사무소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 ① 쌍방은 필요에 따라 연락관 접촉을 가진다. 연락사무소 구성원들 사이의 연락은 접촉 또는 전화를 통하여 진행한다.
- ② 연락사무소 소장회의는 수시로 진행한다.
- ③ 자기측 지역을 왕래하는 상대측의 연락사무소 구성원에 대해서는 신변안전과 휴대품에 대한 불가침을 보장한다.
- ④ 연락사무소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하며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낮 12시까지로 한다.
경우에 따라 쌍방이 협의하여 운영 날짜와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일요일은 휴무일로하며 명절을 비롯하여 각기 제정한 공휴일은 일방의 통지에 따라 휴무일로 한다.

제 6 조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수정·보충할 수 있다.

제 7 조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여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92년 5월 7일

남 북 고 위 급 회 담
남측대표단 수석대표
대 한 민 국
국 무 총 리 정 원 식

북 남 고 위 급 회 담
북 측 대 표 단 단 장
조 선 민 주 주의 인 민 공 화 국
정 부 원 총 리 연 형 북

12. 판문점 방문 규정('92. 9. 14.)

제 1 조(목적) 이 지침은 판문점출입절차규정(통일원훈령 제229호) 제4조 제4항에 의하여 판문점 방문 주선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 2 조(적용) 판문점 방문은 한국정전협정, 국제연합군사령부의 규정 및 판문점출입절차규정(통일원훈령 제229호)에서 따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제 3 조(방문대상) 판문점 방문 주선의 대상은 만 10세 이상의 국민과 정부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한 외국인에 한한다.

제 4 조(방문구분) ① 판문점 방문은 귀빈방문, 특별방문 및 일반방문으로 구분한다.

② 귀빈방문은 차관급 이상 공무원이나 이에 상당하는 사회 지도급 인사의 방문을 말한다.

③ 특별방문은 정부주관 사업에 초청된 외국인의 방문, 기타 남북회담 사무국장이 정하는 방문을 말한다.

④ 일반방문은 제 2 항, 제 3 항 이외의 방문을 말한다.

제 5 조(방문신청) ① 판문점출입절차규정(통일원훈령 제229호) 제 8 조의 판문점 출입협조관(이하 “출입협조관”이라 한다)은 아래 각호와 같이 방문대상자별로 구분하여 방문을 신청하게 한다.

1. 공무원 : 소속 국가중앙기관의 장,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

2.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의원 : 소속 의회의 의장

3. 법인의 직원 : 주무관청의 장

4. 정당인 및 정단관련인(국회의원이 추천하는 지역구민 포함) : 정부

제 1 장 관

5. 교원 및 학생 : 교육부장관 및 관할 교육청의 교육감
6. 대학교 전임강사 이상의 교수 : 교육부 장관
7. 국가가 설립한 사회교육기관에서 연수 중인 자 : 사회교육기관의 장
8. 교포 : 국가중앙기관의 장,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
9. 중앙행정기관에 등록된 사회단체의 구성원 : 주부관청의 장
10. 기타사회단체의 임의단체의 구성원 : 국가안전기획부장
11. 주한 외국 공관원 : 외무부 장관
12. 정부초청·추천 외국인 : 국가중앙기관의 장,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

② 출입협조관은 제 1항에서 정한 신청기관으로 하여금 일반방문은 방문회방일 60일전, 귀방방문과 특별방문은 방문회방일 14일 이전에 판문점방문신청서를 제출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③ 출입협조관은 제 2항의 판문점방문신청서에 방문회방일시, 방문인원수, 인솔책임자 및 인솔책임자의 연락처를 기재하도록 하고 판문점방문 신원(확인·보증)서(별지 1호 서식) 1부와 방문자 명단 2부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제 6조(방문자의 신원확인·보증) ① 제 5조 제 3항의 규정에 의한 방문자에 대한 신원확인·보증은 개인별로 함을 원칙으로한다. 다만, 방문자가 동일기관 소속 공무원으로서 소속 국가 또는 지방행정기관의 장(3급이상)이 보증하는 경우에는 단체로 보증하게 할 수 있다.

② 방문자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소속부서의 3급이상 공무원이 보증하게 한다. 다만, 3급이상 공무원은 별지 1의 신원확인·보증서에 자신이 기명 날인할 수 있다.

③ 방문자가 법인의 직원인 경우에는 주부관청의 3급이상 공무원 2명이 연대 보증하거나 법인주소지 또는 직원주소지 관할 경찰서장이 신

원을 확인하게 한다.

④ 방문자가 교원 및 각급학교 학생(전문대 이상 대학교 제외)인 경우에는 관할교육청의 3급이상 공무원이 신원을 보증하게 한다. 다만, 대학교 전임강사 이상의 교수는 소속 학교의 총장이 보증할 수 있다.

⑤ 방문자가 국가가 설립한 사회교육기관에 연수중인 자인 경우에는 제 2항 내지 제 4항과 제 6항 내지 제 7항에 따라 신원을 보증·확인하게 한다.

⑥ 기타 신청인에 대하여는 주소지 관할 경찰서장이 신원을 확인하게 한다.

⑦ 방문자가 외국인과 영주권을 소지한 교포인 경우에는 별지 1호 서식의 신원확인·보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제 7조(방문자 명단) 출입협조관은 신청기관으로 하여금 제 5조 제 3항의 규정에 의한 방문자 명단에 순번,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여권번호), 주소지(외국인은 거소지), 연락처를 기입하게 한다.

제 8조(방문일정 통보) 출입협조관은 방문일정을 국제연합군사령부와 협의하여 일자가 확정되면 이를 신청기관에 서면 또는 전화로 통보한다.

제 9조(방문인원 제한) 출입협조관은 1회 방문 가능한 방문인원을 일반 방문은 5명 이상 41명 이하, 특별방문과 귀빈방문은 21명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제 10조(일정 조정) ① 출입협조관은 일반방문의 일정을 귀빈방문, 특별방문, 기타 관문점의 사정에 의해 그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출입협조관은 방문일정이 변경되는 경우 이를 즉시 해당 신청기관에 서면 또는 전화로 통보한다.

제 11조(일정취소) 출입협조관은 방문일정이 확정되어 통보된 경우라 할지라도 아래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방문일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판문점에서 남북회담이나 기타 주요한 행사가 진행 중이거나 예정되어 있는 경우
2. 신청서와 그 첨부서류에 허위사실이나 중대한 흠이 발견되는 때
3. 국제연합군사령부측 사정으로 방문이 불가능한 경우

제12조(방문일 제한) 출입협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문점 방문을 원칙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1. 법정 공휴일
2.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경비부대의 휴무일 또는 훈련일
3. 판문점에서 남북회담이 진행 중일 때
4. 판문점에서 군사정전위원회·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가 진행 중일 때
5. 국련사측이 방문제한을 요청하는 경우

부 칙

이 지침은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별지1호)

판문점 방문 신원(확인·보증)서

(KOREAN NATIONAL CLEARANCE DECLARATION)

성명(Name)	연령(Age)	성명(Sex)	
계급/직위(Rank/Position)	방문단명칭(Name of Visitors Group)		
주 소(Present Address)			
주민등록번호(ID Card No)	군 번(Serial No) : 군인경우		
방문자 근무처(Office)	방문자 전화번호(Tel No)		
인솔자 성명 (Leader of Group)	소속 및 직책 (Organization/Title)	전화번호 (Tel. No)	방문자와의관계 (Relation to Visitors)

신원(확인·보증)인 기명 및 날인

(CERTIFYING OFFICAL)

서명 또는 날인 (Signature or Seal) _____

성 명 (Name) _____

직위 및 계급 (Rank & Title) _____

본인은 위의 기재된 사항들이 정확한 사실이며 신청인의 판문점 방문에 아무런 하자가 없음을 (확인·보증)함.

I certify that the above information is ture and correct and that I know of no information which would preclude a visit to the Panmunjom area by subject applicant.

판 문 접수 첩

인 쇄 1995년 7월 20일

발 행 1995년 7월 22일

발 행 처 남북회담사무국
연 락 부
(전화 735-4845)

인 쇄 처 웃 고 문 화 사
(전화 265-2604)
